

# 日帝下 民族系 企業集團 形成과 性格에 관한 研究 —특히 1920年代부터 1930年代까지—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of Korean  
Big Business Group under Japanese Rule

金 聖 壽\*

## 目 次

I. 序 論	資本의 位置
II. 企業集團의 概念과 特徵	V. 日帝下 民族系 企業集團 形成의 事例
III. 民族系 企業集團의 形成과 그 背景	1) 貴族出身 同氏系 企業集團 形成
IV. 日帝下 民族系 資本形成의 實態	2) 大地主出身 金幸洙系 企業集團 形成
1) 1920年代 全產業의 企業體 實態	3) 庶民出身 朴興植系 企業集團 形成
2) 1920年代 民族企業人 進出 實態	4) 庶民出身 方義錫系 企業集團 形成
3) 1930年代 民族企業人 產權別	VI. 日帝下 民族系 企業集團의 性格
工場建設 實態	VII. 結 論
4) 1930年代 朝鮮의 工業化와 民族系	

## I. 序 論

지금 韓國은 IMF體制下에서 企業構造調整을 위한 財閥의 改革이 시작되었고, 政府의 公正去來委員會는 지난 1998년 4월 15일 今年度 30대 大規模 企業集團을 指定하여 지난해의 財閥들의 經營成績表를 발표한 바 있다. 이제 政府도 財閥을 解體하여 大企業集團만이 存在하는 틀을 만들어 每年 企業集團別로 順位를 評價하여 發表하겠다고 하였다<sup>1)</sup>. 이런 環境의 變化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財閥이라는 概念대신 企業集團의 概念으로 意味를 바꾸어야 한다는 새로운 概念定立의 體系化와 企業集團의 理論定立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企業集團의 生成時期를 趙東成(1997, 한국재벌) 教授는 1960년대 중반기부터 시작하여 韓國產業革命期라는 1970년대에 한 주기를 마무리 지었으며<sup>2)</sup>, 바로 이 시기에 삼성, LG, 대우 등 韓國財閥인 大企業集團들이 形成되어 뿌리를 내리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趙璣濬(1978, 한국자본주의 형성사) 教授는 韓國의 民族系 資本集團은 日帝下 1920年代~30年代에서 形成되

\* 慶熙大學校 經營學部 教授, sskim@nms.kyunhee.ac.kr

었으며, 이 時期를 中心으로 資本主義成立史를 提示한 바 있다<sup>3)</sup>. 韓國의 企業集團形成時期를 규명하는 이러한 問題는 韓國資本主義形成史 定立과 韓國產業革命史 時期設定에 중요하기 때문에 本 研究를 통하여 韓國 企業集團形成의 問題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財閥이 企業集團이라는 그 形象 形態를 갖추기 始作한 것은 日帝 植民地 支配下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것은 民族的, 內在的, 生產力의 自主的 發展에 基因한 民族資本形成의 問題로 集約된다<sup>4)</sup>. 그러나 日帝植民地政策과 結付된 外來資本主義 侵奪로 民族系 企業人의 正常的인 行動樣式에는 植民地의 買辦的 性格이 露呈되었음을 認知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民族系 企業集團의 形成과 民族資本家 行動樣式의 根源을 찾을려는 研究는 國內外의으로 踊躇없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本 研究는 財閥이라는 大企業集團의 概念的 意味를 함축한 韓國 最初의 民族系 企業集團의 形成은 그 根源이 언제이며, 어떤 性格을 가지고 展開되었고, 그 形象實態는 어떤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였다. 특히 이것을 통한 韓國資本主義 形成史의 起源을 찾는데도 意義를 들 것이며, 經營史的 文獻發掘을 통한 研究方法에도 目的을 두고 試圖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1920年代부터 1930年代까지 日帝下에서 生成된 韓國 最初의 民族系 企業集團의 形成을 假說로 設定하고, 日帝時代의 各種 文獻과 資料, 雜誌, 新聞記事, 各種統計, 解放以後의 經營史, 經濟史 分野의 研究業績 등을 基礎 資料化하여 客觀的 綜合分析하는 實證的 檢證方法論을 採擇함으로써 經營史나 經濟史 調查研究 方法에도 假說을 設定하여 문헌 발굴을 통한 자료의 제시로서 檢證할 수 있다는 實證的 事例를 활용하였다.

## II. 企業集團의 概念과 特徵

企業集團(Big Business Group)이란 金柄夏教授는 創業者 또는 企業家의 가족이나 친척지배하의 血族 등이 多角的 大企業을 多數 所有하는 것으로 定義를 하고 있으며<sup>5)</sup>, 日本의 安岡重明教授는 막강한 資本과 經營能力을 가진 1人の 創業主나 企業主의 總首가 多數의 企業을 所有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sup>6)</sup>.

고오든(Gouden, R. A) 또는 코크란(Cochran, T. C) 등 企業家史 研究者들이 美國의 하버드大學校의 “企業家史研究所(The Research Center in Entrepreneurial History, 1948)에서 정의한 개념을 보면 經濟近代化 過程에서 創出되는 企業集團이란, 한 家族系列의 株式所有, 重役의 派遣, 企業系列內의 業務提携, 技術交流, 內部金融 效果 등을 經濟的 存立條件으로 하여 가족, 친족 등의 諸手段에 의해서 家族所有 支配企業들이 共同利益 關係를 設定하는 企業集中 形態라고 규정하고 있다<sup>7)</sup>. 이와같은 概念的 定義에 따르면 企業集團이란 形

態的 側面에서의 친족중심이라는一般的 基準을 具體化하기 위해서 大株主 本人 또는 그 親族이經營權을 행사한다는操作的 定義를 선택하여 社會通念上 企業所有主가 多數의 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形態이다<sup>8)</sup>. 安岡重明 교수도 지적하고 있지만 日本의 財閥(zaibatsu)과 美國, 英國, 獨逸 經營學者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大企業集團(Big Business Group, Financial Clique)에 관한概念的 意味는 같다는 사실이다. 趙璣澗, 金柄夏, 黃明水 교수 등과 일본의 經營史學會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財閥이란 中國 表現이지만 日本에서 널리 사용하여 자이바쓰(zaibatsu)라는用語가 생겨났으며, 일본의 財閥은 제2차대전에서敗戰한 뒤 美國 占領軍에 의하여解體되었고, 그 후 再編成된 舊財閥과 새로形成的 大財閥들을 大企業集團(Big Business Group)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歷史的 概念으로서 戰前의 財閥과 구분하는 것이一般的이다<sup>9)</sup>. 그러나兩者 사이에는 內容의 差異가 있는 것이다. 大企業集團은 財閥解體後 戰前의 財閥企業이 再結合되었지만 本來의 財閥과는 具質的인 企業集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0)</sup>. 제2차대전이 종결된時期까지 日本의 財閥은 軍部와 結託하여 戰爭을挑發하고 수행하면서 政經憑着의 대표적 象徵처럼 되었으나 終戰 후에는 工業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國民經濟의 經濟的 效果를 가져오는 필연적 企業集中形態로서 國際競爭의 次元에서 國家의 富를 生成하는 企業集團形態로서 市場經濟의 重要性을 認識하는 資本主義의 企業集中形態이다.

&lt;표 1&gt;

企業集團의 研究概念的 定義

概念的 側面	代表的 屬性	代表的 概念
構造的 側面	大規模 企業集團 多數企業 所有	資本金 大規模 (규모이상 資本金과 拂入資本金)
形態的 側面	親族中心支配 創業者, 世襲專橫	企業所有主(創業者), 大株主 또는 血族, 親族이經營權 行事
環境的 側面	政府支援下의 成長 政府의 協力	政府의 支援: 金融, 稅制行政 등 特惠

企業集團의 形成方式은 利益의 内部留保를 통한 内的成長과 親規資本의 内部轉入을 통한 外의擴大로 나눌 수 있고, 外의擴大는 進出方向에 따라 同種產業內에서의 企業結合과 關聯產業으로의 進出 그리고 異種產業으로의 進出로 구분된다. 企業集團의 經濟的 存立根據는 多角的 經營의 效率性으로 壽命週期를 가진다. 즉 企業集團의 흐름에 따라 形成期, 成長期, 盛需期 등을 거쳐 衰退期에 이른다.

따라서 이곳에서 규명하려는 기업집단의 개념은 韓國近代化過程에서 創業者 家族이나企

業主 多數의 다각적 기업을 所有하고 支配함으로써 동일한 族閥資本系統에 속하는 民族系 企業으로서 당시의 朝鮮總督部의 境外對象이나 協力 및 支援 특히 日帝軍部의 政經蠶着的 買辦性이 크고, 國民經濟의 比重이 높으며, 社會的 批判은 결과없이 계속되어 民族資本으로 形成된 企業集中 形態라고 定義할 수 있다.

이런 기업집단 형성의 특징은 첫째, 自主獨立性을 維持하면서 對等原則下에서 형성된다. 둘째, 企業結合 形態이며, 經營協力 體制이다. 그리고 支配와 從屬을前提로 하지 않는다. 넷째로 다양한 異質的, 多角化的, 資本的 結合인 것이 특색이다. 또한 企業集團 生成動機는 利益共同關係에 의해 연결된 기업집중 형태로서 結合目的의 多樣性, 生產技術의 補完性, 經營的 補完性, 결합형태의 多樣性, 地域的 結合性, 經營理念의 變化性 등을 特徵으로 하고 있다<sup>10)</sup>. 그리고 “民族系 企業集團”이라는 概念은 資本, 勞動力, 原料, 市場, 工場所有土地, 創業者 등 企業의 所有가 韓國人 民族 生產要素라는 것과 企業家의 行動樣式인 經營活動이 民族主義的 經營認識과 民族經濟近代化의 使命感을 가진 韓國民族임을 意味한다. 그리고 創業者나 企業家의 行動樣式이 日帝 또는 朝鮮總督部에 協力하는 植民地的 性格의 形態는 民族系이지만 買辦的 所有者로 규정한다. 여기에서 買辦資本(Comprador Capital)이란 外國資本의 援助를 받거나 또는 외국 자본과 결탁하여 외국자본의 利益을 위하여 行動하는 金融, 產業, 貿易資本 등을 意味한다. 이것을 위하여 그들은 自國의 經濟的 利益도 民族的 獨立도 牺牲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 行動樣式을 말한다<sup>11)</sup>.

### III. 民族系 企業集團의 形成과 그 背景

企業集團의 概念과 特徵에서 살펴보았듯이 企業集團이란 個人 또는 家族이 여러 產業에 걸쳐 多數의 企業을 所有·經營하게 되었고, 그 結果 所有關係로 結束된 企業集中 形態를 말하며 이것을 企業集團 또는 財閥이라 부르게 되었다. 대부분 이러한 企業集團의 形態는 產業革命 過程을 통하여 形成된 大資本이 한 系列企業의 集中된 形態로 凝集된 普遍的 現像이라 한다.

다드웰(Dodwell) 로스차일드(Rothchild) 등의 企業集團은 영국, 프랑스에서 產業革命이 일어난 18世紀 後半에 形成되었고, 록펠러(Rockefeller), 멜론(Mellon), 벤더빌트(Vanderbilt) 등은 美國 產業革命이 마무리 되던 19세기 중반 이후 形成되었으며, 미스비시(三菱) 스미모토(住友) 등 企業集團 역시 日本 產業革命이 시작한 19세기 후반에 그 體制를 갖추었다. 그렇다면 韓國의 企業集團 形成의 根源을 찾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韓國企業集團의 形成史를 二期로 나누어 考察할 수 있다. 첫째로는 開化期의 近代企業의 生成부터 植民地 支配下에서 解放까지의 企業集團, 둘째로는 解放後의 財閥形態의 企業集團이다<sup>12)</sup>. 이곳에서는 韓國 最初의 企業集團이 일제하의 1920년대부터 生成된 것으로 假

說을 設定하고 그 時代를 背景으로 胎動된 企業集團 形成을 檢證하는 것이다.

1920년대 한국인 민족계 자본이 대기업 집단을 형성한 동기에는 첫째로 3.1운동 이후 민족계 기업에 대한 자본동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지주자본가의 등장 및 금융기관의 발달로 독점자본가의 형성이 이루어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18년 토지사업이 끝나고, 대지주 계급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대일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주들이 막대한 화폐자본을 갖게 되었다. 특히 이 지주자본은 상업자본과 협력하여 금융기관의 발달로 이어졌고, 은행저축이 증가하여 금융자본 형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둘째로 농촌의 자급자족의 붕괴와 시장확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1910년대 일제침략 이후 일본공장제 상품의 대량유입으로 농촌이 해체되고 농촌의 과잉노동력이 도시 임금노동자로 변화하면서 자본주의 생성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1920년대부터 국민의식의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가 공존하면서 방직업의 발달과 고무화 생산공장의 증대가 민족자본의 상징처럼 나타났다. 셋째로 1920년대부터 근대교육의 훈련을 받은 경영자, 기술자, 기능공 등이 대량으로 배출하였다는 점이다. 한말의 근대 공업은 기술자가 부족하여 해외고용 기술자를 의존하였으나, 190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국민교육에 함께 각처에 학교를 설립하고, 민족계 자본가들이 사립학교 확장과 해외 유학생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근대교육을 받은 경영자가 기업계에 진출하였고, 기술자 및 기능공도 국내에서 충원할 수 있었다. 이것은 1920년대부터 민족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로 본다.

趙璣濬教授, 金炳夏教授 등 역시 日帝下에서 企業集團이 形成되었다고 보는 맥락은 이와같은 동기에서, 韓國資本主義成立史의 틀을 設定하고 있기 때문에 이 假說을 檢證하는 實證的 연구는 매우 安當하다고 본다.

따라서 일제하 民族系 企業集團의 형성은 첫째로 1919년 3.1運動 이후에 이르는 時期에 企業을 創立하여, 企業集團을 胎動시킨 韓末의 貴族出身 閔泳徵 家門의 閔大植, 閔奎植 등 閔氏系의 企業集團 形成을 發見할 수 있으며<sup>13)</sup>, 둘째로는 湖南의 大地主 出身의 金季洙系 企業集團의 形成<sup>14)</sup>, 셋째로는 商業界의 庶民出身인 朴興植系 企業集團의 形成<sup>15)</sup>, 네째로는 오늘날 韓國經營, 經濟史學界에 알려지지 않았던 韓半島의 自動車王으로서 北鮮交通運輸業界의 庶民出身인 方義錫系 企業集團 形成을 發見할 수 있었다.<sup>16)</sup>.

이와같은 韓國 民族系 企業家 및 企業集團 形成은 대부분 日帝時代부터 企業活動을 시작해 온 創業者들이 主導하였으며, 이들이 日帝下에서 企業을 일으키고 維持해 나가려면 깊든 좋은 日本帝國主義 政策에 順應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韓國과 같이 家門에 名譽를 尊重하는 社會에서는 企業家 個個人의 企業集團을 形成하는 行動樣式은 그 고통과 犠牲의 代價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再照明하지 않으면 안된다.

英國, 獨逸, 프랑스, 日本, 中國, 印度 등 대개의 企業集團들 사이에 僅少한 差異는 있을지

라도 그 形成過程에 있어서도 政府의 庇護나 權力 그리고 外國資本과 結託하여 企業集團을 形成하였으며 企業集團으로 成長하는 共通點을 特性으로 發見할 수 있었다. 그리고 日本의 中川敬一郎 教授는 企業集團의 形成은 先進國보다도 後進國의 工業化 過程에서 나타나는 特有한 形象이며 企業集團 形成으로 可能性이 크다는 것은 이미 檢證된 現實이나 國家體制下에서 民族資本의 企業集團 形成은 特殊한 政策的 關係를 目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7)</sup>. 따라서 資本이 薦積되어 있지 않고 技術이 落後되어 있으며, 經營合理化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市場經濟의 原理에 따라 工業化가 推進될 경우 利潤動機가 強하고 競爭原理에 충실한 革新的 企業家 中에서 經營에 成功하여 企業集團을 形成할 可能性이 크다<sup>18)</sup>. 이는 企業集團을 形成하고 經營을 多角化하는 것이 競爭에 有利하며 利潤 폭을 擴大시킬 수 있다는 資本運動法則의 作用 때문이다. 日帝下에서 우리나라 民族系 企業集團 形成의 過程은 특히 日本帝國主義 政府의 權力이나, 朝鮮總督府의 庇護下에서 各種 金融, 稅制, 行政 등 特惠를 받거나 政經癱瘓型 企業이 아니고서는 大企業 形成을 이룰 수 없다는 事例는 外國 大企業그룹 形成過程의 特性과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당시의 朝鮮의 政治·經濟環境이나 民族系 企業人의 工業發達 過程의 性格에 비추어진 背景만 가지고도 民族系 企業人의 民族資本 形成의 行動樣式이 어떠하였는지, 企業集團形成의 어려움을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企業史的으로 볼 때 韓國에서 最初의 民族系 企業集團이 形成된 것은 1920年代와 1930年代末까지의 日帝下에서 처음으로 그 形象形態로 나타났으며 民族資本 形成을 이루는 決定的 要因이 되었다는 데에서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

## IV. 日帝下 民族系 資本形成의 實態

### 1. 1920年代 全產業의 企業體 實態

日帝下에서 近代企業과 民族資本이 本格的으로 胎動하기 시작한 時期는 1920年代이다. 왜냐하면 1919년 3.1運動이 일어나자 日帝는 植民地 統治의 抑制政治만 가지고는 朝鮮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에 따라 日本帝國主義는 1920년부터 文化政治쪽으로 政策의 變化를 旋回하면서 우리의 民族系 資本家들에게도 企業을 할 수 있도록 許容하였기 때문이다. 즉, 朝鮮總督部는 이 時期에 米穀增產 計劃을 실시하고 日本國內의 遊休資本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植民地規制政策을 緩和하고, 朝鮮人の 工場 建設을 禁止하였던 朝鮮會社令의 폐지를 단행하면서, 日本國內의 獨占資本들이 大量으로 流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植民地 經濟政策을 이용하여 우리 民族系 企業人們은 土地調查事業이 完了되자 朝鮮民族 農業地主들을 중심으로 華폐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機會가 되었고, 經濟的 民族主義를 標榜하

면서 民族企業 建設에 拍車를 加할 수 있었다.

1920년대의 우리 민족계 자본으로 설립된 企業會社의 實態를 <표 2>에서 보면 더욱 그 特徵을 엿볼 수 있다.

<표 2> 1920年代 企業體 數와 挪入資本金 實態  
(單位: 개, 千圓)

產業別	1921		1930	
	企業體數	拂入資本金	企業體數	拂入資本金
제1차산업 (농림수산업)	77	20.972	212	49.481(14.9)
제2차산업 (광업·제조업)	188	32.760	745	108.085(37.7)
제3차산업 (금융, 신탁, 운수, 창고, 보험, 기타사업)	463	146.167	1.940	173.505(47.4)
합계	728	199.899	2.897	331.071(100.0)

자료 : 朝鮮工業協會 會報 1931年 11月, 第7號, p. 6 參照.

1921년부터 1930년까지의 10년간 朝鮮內에 設立된 會社 수는 2.897개에 달하였다. 1921년에 728개에 불과하였으나, 1930년에는 2.897개로 10년만에 약 4倍로 增加하였으며, 拂入資本金도 199.899千圓에서 1930년에는 331.071千圓으로 약 1.6배로 增加하였다<sup>19)</sup>.

이와같이 工場建設이 활발해진 1921년부터 1930년간에는 제1차산업의 企業會社 數 212개, 불입자본금이 49.481千圓으로 全體 拂入資本金의 14.9%, 제2차산업의 기업체 수는 745개로서 불입자본금은 108.085千圓으로 전체 불입자본금의 37.7%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제3차산업의 企業體 수는 1.940개로서 불입자본금이 173.505千圓으로서 전체 불입금 자본금의 4%의 높은 構成比를 示顯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0年代는 全產業에 工場建設이 활발해진 時期로서 企業體 設立과 工業化가 促進된 資本主義 生成期라고 볼 수 있다.

## 2. 1920年代 民族企業人 進出 實態

1920年代의 활발한 全產業의 工場建設에 힘입어 民族系 企業人們도 공장건설에 활발하게 진출하였다. 이들 민족계 기업인들은 過去 貴族, 官僚, 양반들의 土地資本, 農民의 地主資本, 庶民들의 商人資本 등 大規模의 資本을 動員하여 민족계기업 건설에 投資하였다. 이러한 민족계 자본가들이 民族系 企業으로 進出하면서 資本規模도 점차 大型化 되었으며, 기업활동을

本格化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의 民族系 企業과 日本人 企業과의 會社數, 資本金 實態를 比較하면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資料는 1932년 '朝鮮總督部 統計年報'를 參考하여 우리나라 안에 설치된 商業 및 工業會社 實態를 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1920年代 民族系企業의 工業 및 商業 進出實態 (單位: 개, 千圓)

구 分		民族系 企業	日本人 企業	合 計
1920	會社數	130(23.9)	416(76.1)	544(100.0)
	資本金	30.937(16.9)	151.893(83.1)	182.830(100.0)
1930	會社數	332(41.3)	472(58.7)	804(100.0)
	資本金	166.884(37.6)	193.737(62.4)	310.621(100.0)

資料 : 朝鮮總督部, 統計年報, 1932年, p. 195 參照.

朝鮮總督部 統計年報에 나타난 1920年代의 朝鮮民族系 企業의 工業 및 商業의 進出實態는 매우 놀라운 發見이 아닐 수 없다. 1920년에 조선민족계 기업인이 설립한 상업 및 공업회사 수는 130개로서 全體의 23.9%에 불과하였으나, 10년 뒤인 1930년도 統計에는 무려 332개로서 우리나라 전체의 41.3%에 달하는 많은 企業들이 進出하였으며, 資本金 規模도 全體의 37.6%를 차지하는 높은 比重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0)</sup>.

이와같이 1920년대는 위의 統計實態에서 나타난 것처럼 民族企業人의 近代工業에 열망이 대단하였으며, 民族企業人의 產業活動이 활발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 민족자본 형성의 계기가 되었음을 立證하는 것이다.

### 3. 1930年代 民族企業人 事業別 工場建設 實態

1933년도 5월에 發行된 "朝鮮工業協會 會報"에 따르면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5人 以上的 職工을 屢僱하고 있는 工業의 工場建設은 1931年末 현재로 4,656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民族系企業人의 工場建設은 무려 2,424개로 全體의 52.1%로서 日本企業人 工場建設 2,182개 46.9%보다 優勢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1)</sup>.

1931年度 民族企業人 工場建設의 特徵을 보면, 飲食物工場이 2,173개 중 1,235개로서 56.8%를 占有하고 있으며, 化學工場은 999개 가운데 723개 工場을 소유함으로써 69.8%를 점유하고 있어, 日本人建設 化學工場 274개의 29.8%보다 2.6倍의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機械工場은 總 574個의 工場이 우리나라에 建設되었는데 民族系企業人의 所有工場은 182개로서 35.0%를 占有함으로써, 日本人 進出工場 371개 60.9%보다 弊勢로 調査되고 있다. 이와같은 朝鮮工業協會 統計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民族系企業人의 공장건설이 1930

&lt;표 4&gt;

1930년대 民族企業人 業種別 工場建設 實態

(단위: 개, 명, %)

구 分	民族企業人		日本企業人		外 國 人		合 計	
	工場數	構成比	工場數	構成比	工場數	構成比	工場數	構成比
음식물공업	1,235	56.8	933	43.0	5	0.2	2,173	100.0
화학공업	723	69.8	274	29.8	2	0.4	999	100.0
염작공업	118	43.7	143	53.0	9	3.3	270	100.0
기계공업	182	35.0	371	60.9	21	4.1	574	100.0
기타잡화공업	166	25.5	461	72.4	13	2.1	640	100.0
합 계	2,424	52.1	2,182	46.9	50	1.1	4,656	100.0

자료 : 朝鮮工業協會, 會報, 1933년 5월, 第16號, p. 30 參照.

주 : 1931年末 現在, 5人 以上의 職工을 가진 工場主로부터 提出된 調査임. 따라서 朝鮮總督部의 統計보다 더욱 신뢰성이 있음.

年代에 대폭적으로 增加되고 있어 趙璣濬教授의 主張대로 1930年代가 우리나라 民族資本 形成期임을 立證시키고 있다. 우리나라가 日帝植民地下에서 民族資本의 抹殺政策에 고통과 抑壓을 받고 있어서 一部는 親日買辦資本的 性格을 가진 企業人도 있었으나, 일부분의 民族系 企業人은 民族資本主義 利潤動機와 將來에 到來하는 自主獨立國家時代를 대비한 民族經濟建設의 思想과 經營理念이 있었기에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民族企業人的 工場建設에 많은 진출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 4. 1930年代 朝鮮의 工業化와 民族系資本의 位置

##### 1) 1930年代 朝鮮의 工業化

1930年代(1931~1940)에 이르러서는 日本帝國主義 資本의 우리나라 進出이 擴大되고 積極化한다. 이 時期에는 비단 群小資本 뿐이 아니라 日本의 獨占資本이 朝鮮에 進出하여 근대 공업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데 特色이 있다. 1928~29년 日本產業界는 世界 大不慌의 影響으로 심각한 經濟恐慌에 직면해 있어, 이와같은 事態를 打開하는 방면으로 日本의 遊休資本을 朝鮮으로 移轉하여, 植民地 勞動力의 低廉한 賃金과 長時間 勞動으로 工業化를 시도하게 된다. 특히 1931년 以來 日本은 帝國主義 經濟建設을 위하여 滿洲事變을 일으켜 中國의 東北方을 완전히 占領하여 手中에 넣게 되자 大陸前進基地로서의 朝鮮의 工業化는 더욱 절실히 要望되었다.

1931년에 비해 1938년에는 全體 生產額이 11億 1,449万5千圓에서 31億 8,290万6千圓으로

約 3倍 增額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鎳產物과 工產物의 增產率은 두드러지게 높아 鎳產物은 5.1배 工產品은 4.5倍의 높은 增加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1930年代의 朝鮮의 工業化 成長率은 年平均 13.5%의 高度成長을 示顯하였다<sup>21)</sup>.

&lt;표 5&gt;

1930年代 朝鮮의 工業生產額 增加

(1931年과 1938年 比較)

(單位 : 千圓, %)

구 分	1931			1938		
	生産額	構成比	指 數	生産額	構成比	指 數
農產物	702,855	63.1	100	1,574,787	49.5	224
林產物	59,413	5.3	100	167,747	5.3	282
水產物	77,562	6.9	100	189,824	5.9	245
鎳產物	21,741	3.0	100	110,429	3.4	508
工產物	252,924	22.7	100	1,140,119	35.9	451
合 計	1,114,495	100.0	3,182,906	100.0	277	

• 1930年代 工業生產 年平均 成長率 13.5%임 → 朝鮮의 工業化

資料 : 1. 朝鮮總督部 統計年報, 朝鮮經濟年報, 1941~1943年 參照.

2. 趙璣濬, 韓國資本主義 成立史論, 大旺社, 1977, p. 420 參照.

3. 金聖壽, 日帝下 韓國經濟史論, 經進社, 1985, p. 186 參照.

註 : 1930年代 工業成長率은 筆者가 算出한 것임.

이와같이 1930년대 朝鮮의 工業化는 侵略戰爭을 위한 軍需工業化的 植民地經濟政策의 결 과였으며, 어디까지나 日本經濟의 一環으로서 隸屬된 工業生產力의 擴充을 圖謀한 것이었다. 특히 異形的으로 대두된 日本帝國主義의 戰時體制의 對應한 것으로, 朝鮮經濟 自體의 獨立의 要求에 適應할 수 있는 性格의 工業發達은 아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指摘하고 싶은 것은 1930年代의 朝鮮의 工業化를 시카타(西川博), 스즈키(鈴木武雄), 모리타니(森谷克己) 등의 植民史觀의 合理化를 主張하는 諸學者들은<sup>22)</sup> 韓國의 近代化, 韓國의 工業化로 理論構成을 하 고 있어, 植民史觀을 克服하는 研究가 시급히 要請되고 있다. 林鍾哲教授의 日帝末 韓國工業化에 關한 考察에서도 指摘하고 있지만<sup>23)</sup>, 韓國資本主義形成史의 根源을 이 1930년대에서 그 뿐만 아니라 1930년대 朝鮮의 工業化를 進行되어야 하며, 日帝下의 韓國資本主義成立史에 대한 研究는 日本의 經濟史學界, 經營史學界에서도 21세기를 基點으로 옮바른 史觀下에 다시 研究되고 再定立되어야 한다.

## 2) 民族系 資本의 受難과 位置

1937년 日本帝國主義의 中國侵略戰爭以後로 朝鮮總督部의 產業政策은 強權的 國家權力에 의하여 日本獨占資本에게 植民地的 超過利潤을 保障할 것을 약속하였다. 1936년 11월의 朝鮮產業經濟調查會의 決定, 1937년 10월의 臨時資金調整法의 實시, 1937년 3월의 國家總動員法은 日本獨占資本의 支援에 대한 民族系 企業體의 事業資金調整, 帝國產業資金의 供給 등 1939년 이후의 戰時經濟體制로의 轉換과 朝鮮 民族資本의 收奪을 目的으로 한 植民地 經濟政策의 目的이 되었다. 따라서 民族系 企業人們은 企業을 存續시키고, 維持하기 위하여, 民族資本이 金融規制, 租稅壓力, 各種行政 規制 등의 受難을 당하면서도 抵抗을 하고, 變質되기까지 하면서 大企業集團으로, 財閥으로 成長하고, 民族資本을 形成시켰다.

1940年 1月 朝鮮殖產銀行 調查部에서 出刊된 殖產調查月報와 朝鮮銀行 調查部의 朝鮮經濟年報의 資料를 중심으로 民族資本의 位置를 규명해 보도록 하겠다.

〈表 6〉에 의하면 1938年末 現在 民族系 企業人의 會社數는 2,278개로서 42.1%, 公稱資本金은 213,819千圓으로 12.5%, 拂入資本金은 122,660千圓으로 11.2%로 發見되고 있다<sup>23)</sup>.

그러나 會社數가 42.1%인데 公稱資本金이 12.5%라는 事實은 民族系 企業會社가 日本獨占資本系 會社에 비하여 規模가 상대적으로 零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民族系 企業人의 製造工業別 位置를 〈表 7〉에서 살펴보면 紡績工業이 48.7%, 金屬機械器具工業 37.9%, 化學工業 33.0%, 印刷工業 51.2%, 製粉業 57.4%, 酿造業 71.5%, 製藥業 56.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4)</sup>

이와같이 1938年末 現在, 1940年代로 접어들면서 民族系 資本의 企業會社數로는 日本人이 所有하는 企業會社數에 接근하고 拂入資本은 僅少하며 民族系가 所有하는 企業會社는 그 規模로 보아 零細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朝鮮에 進出한 日本의 獨占資本의 規模가 너무나 巨大하고 크기 때문에 民族系 企業은 상대적으로 그들의 基準에 비해서 中小企業 水準의 규모에 속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民族資本의 生成時期가 異고 企業經營의 年輪이 짧은 企業史的 側面과 그리고 日本帝國主義 植民地 過程에서 政治的 抑壓을 받으면서

〈표 6〉 1940年 民族系 企業體 實態  
(1938年末 調査, 1940년 發表) (單位: 개, 千圓, %)

구 分	會社數	構成比	公稱資本	構成比	拂入資本	構成比
民族系	2,278	42.1	213,819	12.5	122,660	11.2
日本人	3,135	57.9	1,499,306	87.5	968,622	88.8
合 計	5,413	100.0	1,713,125	100.0	1,091,282	100.0

資料 : 朝鮮殖產銀行 調査部, 殖產調查月報, 1940年 1月, 第20號

鈴木武雄, 朝鮮統治 性格과 實績, 東洋經濟新報社, 1942, 參照.

&lt;표 7&gt;

製造工業의 民族系 資本의 位置

(1938년 말 현재)

(單位: 개, %)

구 分	會 社 數		拂 入 資 本	
	民族系	日 本 人	民族系	日 本 人
紡 織 工 業	48.7	51.3	20.9	79.1
金 屬 機 條 器 具	37.9	62.1	7.3	92.7
化 學 工 業	33.0	67.0	2.9	97.7
印 刷 工 業	51.2	48.8	30.0	70.0
製 粉 工 業	57.4	42.6	20.4	79.6
釀 造 業	71.5	28.5	46.5	53.5
製 藥 業	56.9	43.1	64.3	35.7

資料：東洋經濟新報社，年刊朝鮮，1942年報，p. 35.

註：筆者가 業種을 選擇하고 構成比를 產出함.

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時代的 思潮의 側面에서 比較해 본다면 朝鮮民族系 企業會社의 發展과 成長으로 民族系企業들이 民族資本을 形成하였던 것은 韓國 經營史學의 研究에 대단히 큰 의미를 줄 뿐만 아니라, 韓國資本主義 뿌리를 규명하는데 새로운 史的 定立이 될 것이다.

## V. 日帝下 民族系 企業集團 形成의 事例

앞에서 民族系 資本의 形成實態를 살펴본 것과 같이 1940年에 우리나라에서는 5,413個라는 企業이 있었으며, 民族系 企業도 2,278個나 되었다. 그 比重은 42.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企業集團 形成의 事例로 構成된 것이 첫째, 舊韓末 貴族出身 家門의 金融界의 代表的 企業家 閔氏系(閔泳徽, 閔大植, 閔奎植)의 企業集團의 形成이며, 둘째는 湖南의 大地主出身 紡織業界의 企業家 金秉洙系 企業集團의 形成, 셋째는 西北地方의 庶民出身으로서 商業界의 企業家 朴興植系 企業集團의 形成, 넷째는 關北의 庶民出身으로서 交通運輸業界의 企業家 方義錫系 企業集團의 形成 등이다.

日帝下에서 日本獨占 資本家들이 朝鮮에서 가장 두려운 競爭者들은 朝鮮의 이 4個의 企業集團의 經營者들이라고 朝鮮總督部 朝鮮產業經濟調查會議錄은 傳한다. 물론 당시 이들 企業集團의 經營者들은 이 나라의 民族指導者들이며 資本家들이고, 言論機關, 教育機關, 農水產業, 交通運輸業, 鐵山, 製造業 등 이 나라의 經濟圈과 國民을 先導할 수 있는 能力과 力量을 所有하고 있는 先覺者들이라고 判斷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以下에서 이러한 民族系 大企業集團 形成의 事例들을 中心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lt;표 8&gt;

## 閔大植·閔奎植系 企業集團 形成

會社名	設立 年度	資本金	大株主	特 徵
東一銀行	1906	資本金 400万圓 拂入資本金 2,775千圓	· 閔泳徽 · 桂成株式會社 · 徽文義熟 · 朴興植系의 和信 · 玄俊鎬系	① 前身 韓一銀行 ② 日帝末까지 남은 유일한 民族系銀行 ③ 1915年 閔泳徽가 大株主로 登場 ④ 1931年 湖西銀行 吸收, 商號를 東一銀 行으로 改稱 ⑤ 1942년 朝鮮總督府의 銀行統合 方針 에 따라 湖南銀行을 吸收·合併
朝鮮絹織 株式會社	1923	資本金 50万圓 全額拂入	· 閔泳徽 · 閔大植 等 閔氏一家	① 閔氏系 設立 ② 本社: 서울 ③ 業種: 生絲 ④ 代表: 閔奎植
永保產業 株式會社	1937	資本金 50万圓 拂入資本金 20万圓	· 閔大植系 永保產業(株) 吳桂成(株)	① 閔氏系 設立 ② 本社: 서울 ③ 社長: 閔大植 ④ 業種: 不動產 賣買業
東光生絲 株式會社	1935	資本金 200万圓 全額拂入	· 閔氏一家	① 閔氏一家 設立 ② 本社: 서울 ③ 代表社長: 高元勳 ④ 業種: 生絲
桂成 株式會社	1935	資本金 50万圓 全額拂入	· 閔泳徽 · 閔文植 等 閔氏一家	① 閔氏系 設立 ② 本社: 서울 ③ 業種: 生絲 ④ 代表: 閔奎植
徽文義熟 印刷所		1900년 前後에 設立된 徽文義熟印刷所는 獨立하여 徽文館을 設立했고, 圖書印刷를 委託하는 것 외에 出版事業을 經營하며 「美國獨立史」, 「羅馬史」, 「蘭西新史」, 「越南亡國史」 등 各國의 歷史書 등과 「幼年必讀」(玄采著), 「泰西物情」, 「交際新禮」 등 教養書, 「算術書(上, 下)」 등 技術書 20여종 出版 간행.		

註: ① 筆者が 參考資料를 調査 整理하여 作成함.

② 參考資料는

③ 東亞經濟時報社,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43)

④ 東洋經濟新報社, 「年刊朝鮮」(1942)

⑤ 東洋經濟新報社, 「朝鮮產業の 共營團 參加體制」(1942) 등을 中心으로 參照하여 作成  
하였음.

### 1) 貴族出身 閔氏系 企業集團 形成

1876년 開港과 더불어 韓國의近代化는始作되었다. 이 韓國의近代化는韓國資本主義形成의 시작이라고規定할 수 있다. 1900年 前後하여舊韓末의貴族인 閔泳徽는 그一家를中心으로近代企業形成의重要性을認識하게되었다. 그리하여 閔大植과 閔奎植이大株主가되어不動產投資와銀行業에重點을두고企業을創立하여企業集團을形成하였다. 우리나라近代企業史에서이韓末의貴族出身인 閔大植, 閔奎植등은日帝下에서民族系企業集團을形成한그룹으로기록되는그실증적자료가〈표8〉에서제시되고있다.

閔大植과閔奎植系의企業集團은資本金50万圓이상의基準으로5개企業을經營하고있다. 그중에서東一銀行은閔泳徽가1915년에大株主가되면서閔氏財團이經營權을갖고운영하였다. 本來東一銀行의前身은1906년에創立된韓一銀行이며, 日帝末期까지남은유일한民族系銀行이었다.

1931年湖西銀行을吸收하고商號를東一銀行으로改稱하였으며1942年朝鮮總督部의銀行統合方針에따라湖南銀行을吸收·合併하였다.

東一銀行의資本金은400万圓이었으며拂入資本金은當時2,775千圓이었다. 大株主로는閔泳徽의柱成株式會社, 徽文義熟, 朴興植系, 玄俊鎬系등으로되어있으며金融界大株主는閔氏系가支配하고있었다.

특히閔氏系의企業集團은東一銀行이외에1923년에設立한朝鮮紗織株式會社(資本金:50万圓, 社長:閔奎植)와1935년에設立한東光生絲株式會社(資本金:100万圓, 大株主:閔泳徽, 桂成株式會社(資本金:200万圓, 業種:不動產投資管理業, 社長:閔大植: 그리고1937年에설립한永保產業株式會社(資本金:50万圓, 業種:不動產賣買業, 社長:閔大植), 등5개企業이)主宗이되어閔氏系企業集團을形成하고있었다.

이상과같이 당시資本金50万圓以上의創立된企業만살펴보았으나그이후로서徽文義熟印刷所등과같이出版文化事業을經營하면서徽文館을設立하고오늘의徽文中高是設立했던徽文義熟等教育事業에도寄與하는등當時日帝下에서民族系企業集團으로서經濟的民族主義理念을바탕에두고民族資本存立의脆弱性과買斷性을沮止하고자學術文化事業에寄與한記錄도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閔氏系의財產은土地이었으며, 이土地資本을土臺로企業活動을展開하고있었으며주로土地및建物등不動產投資와民族銀行인東一銀行을經營하고있었던現代의意味의民族系企業集團의형성이라고할수있다.

### 2) 大地主出身 金季洙系 企業集團 形成

日帝下에서民族系企業集團의代表的事例로서두번째는湖南의大地主出身의金季洙系

企業集團이며 實態調査에서 나타난 創業企業數만도 10개의 事業體가 되었다(表 9 참조).

韓國民族系 資本의 根源을 이루는 유일한 湖南의 財閥系 企業集團 形成으로 金季洙는 近代的 民族 企業家로서 널리 알려졌다.

金氏系 企業集團은 金性洙, 金季洙, 金容完 등이 代表로서 企業들을 創業하였고, 이들은 모두 湖南의 大地主 出身들로서, 그리고 土着氏族資本을 形成한 企業家로서 評價받고 있었다. 企業活動은 紡織業, 農場經營, 言論機關, 教育機關 등 多樣하게 運營하고 있었다.

1919年에 創業한 京城紡織株式會社(資本金: 1,000万圓, 社長: 金季洙, 業種: 紡織業)을 비롯하여, 1911年에 設立하여 1925年에 中央商工株式會社(資本金: 100万圓, 社長: 金季洙, 業種: 生絲·紡織)로 改稱하였으며, 1934年 合資會社 三義社(資本金: 300万圓, 社長: 金季洙, 業種: 農場經營), 東光製絲株式會社(資本金: 200万圓, 社長: 金季洙, 業種: 製絲, 紡織), 滿洲內의 販路開拓에 目的을 두고 1939年에 南滿洲紡織會社(資本金: 1,000万圓, 社長: 金季洙, 業種: 紡織·廣木) 등을 創業하였다.

金融業인 海東銀行을 1927年에 引受하였으며 1940년에 王溪金山株式會社를 資本金 150万圓으로 朝日合作으로 設立하였다(大株主: 日本產金振興·金季洙, 社長: 河部千一(日本人), 業種: 鐵產業). 그리고 1920년에 民族의 言論機關 東亞日報를 創刊하였으며, 1929년 2월에 出損金 60万圓으로 民立大學 創設을 위한 財團法人 中央學院을 設立하였다. 그 後 財政下足으로 運營難에 빠졌던 普成專門學校를 秋收後 5,000石의 土地를 喜捨하여 引受함으로써 民立大學의 母體가 되었다.

이상과 같이 金季洙系 企業集團 形成은 韓國近代工業 發達의 主導를 이룬 韓國纖維工業史의 原動力이 되었음을 否認 못할 사실로 認定하고 있다. 即 京城紡織株式會社는 당시 朝鮮內에서 뿐만 아니라 滿洲에까지 進出한 民族系 資本의 大規模 紡織會社로써 韓國近代工業史와 韓國企業史에 미친 影響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金季洙系 企業集團 形成 역시 當時 植民地 支配體制下에서 企業集團을 形成하는데 日帝와 協力하지 않고서는 不可能하였다는 사실은 論爭의 餘地가 없을 것으로 안다. 企業家는 經濟的 및 營利的 事業分野에서 企業을 위해서 能力과 利益을 發揮할 때 이를 近代的 企業家라고 定義하다고 Cole(H.M)의 理論이 있으며, 非營利的인 社會事業이나 文化事業 기타 政治的인 活動에 있어서까지도 항상 새로운 것(革新)을 創造하고 管理·指揮하는 사람도 近代企業家 性格의 所有者라고 廣義 概念으로 定義하고 있다.<sup>27)</sup>

이러한 意味로 볼 때, 日帝下의 民族系 企業集團을 形成한 金季洙는 近代 企業家 性格의 所有者라고 規定할 수 있다.

### 3) 庶民出身 朴興植系 企業集團 形成

日帝植民地 民族系 企業集團 形成의 세번째는 庶民出身의 商人 朴興植系를 規定하지 않을

&lt;표 9&gt;

## 金季洙系企業集團形成

會社名	設立年度	資本金	大株主	特徵
京城紡織株式會社	1919	資本金 1,000万圓 拂入資本金 750万圓	· 三養社 · 麥英會	① 京紡의 創業者: 金性洙 ② 本社: 서울 ③ 代表社長: 金季洙 ④ 保有車輛: 乘用車 및 貨物車 100餘대 ⑤ 業種: 紡織業
中央商工株式會社 (現 社名 改稱)	1911 1925	資本金 100万圓 全額拂入	· 京紡 · 三養社 · 麥英會	① 1911年 7月 京城鐵紐株式會社 設立의 後身 ② 1925년에 현재 社名으로 바꾸고 體系化함 ③ 社長: 金季洙 ④ 業種: 生糸·紡織
東光製糸株式會社	1935	資本金 200万圓 全額拂入	· 京紡	① 創業者: 金季洙 ② 工場位置: 讀政府 ③ 社長: 金季洙 ④ 業種: 製糸, 紡織
合資會社 三養社	1934	資本金 300万圓 全額拂入	· 金季洙系	① 創業者: 金季洙 ② 本社: 서울 ③ 支社: 全北 扶安郡 ④ 社長: 金季洙 ⑤ 業種: 農場經營(大地主)
南滿洲 紡織會社	1939	資本金 1,000万圓 全額拂入	· 金季洙系	① 創業者: 金季洙 ② 本社: 滿洲 蘇家屯에 設立 ③ 社長: 金季洙 ④ 業種: 紡織·廣木 ⑤ 特徵: 滿洲내의 販路 國外進出 目的
海東銀行	1927	· 京紡		① 引受 ② 業種: 銀行業 ③ 社長: 金季洙
王溪金山 株式會社	1940	資本金 150万圓 全額拂入	· 朝日合作 · 日本產金 振興 · 金季洙	① 1940年 朝日共同合作設立 ② 本社: 서울 ③ 代表: 河部千一(日本人) ④ 業種: 鐵產業
(株) 東亞日報社	1920		· 三養社 · 金性洙	① 金性洙 設立 ② 民族의 言論機關 東亞日報 创刊
財團法人 中央學院	1929	出捐金 60万圓	· 京紡 · 金性洙	① 1929年 2月 출연금 60만圓으로 民立大學 創設을 위한 財團法人 中央學院 設立 ② 1921년 中央學校, 中央高等普通學校 擴張 昇格
普成專門 學校	1932년 3월		· 金性洙 · 金季洙	財政不足으로 運營難에 빠졌던 普成專門學校 를 秋收 후 5,000石의 土地를 喜捨함으로써 引发하여 民立大學의 母體가 된

註: ① 筆者が 參考資料를 調査 整理하여 作成함.

② 參考資料는

- ② 東亞日報社「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43)
- ④ 京城紡織株式會社, 「京紡 五十年史」(1963)
- ⑤ 朝鮮工商會議所, 「朝鮮主要會社表」(1944)
- ⑥ 日本商業通信社, 「朝鮮經濟統計 年鑑」(1938)
- ⑦ 趙俊鎬「三一運動 前後 民族企業의 類型」(1969) - 3.1運動 50周年 記念論集
- ⑧ 東洋經濟新報社, 「年刊朝鮮」(1942) 등을 中心으로 參照하여 作成하였음.

수 없다. 西北地方의 庶民出身의 朴興植은 어려서 商業界에 進出하여 當代의 大企業 集團을 이루는 巨富의 企業人이 되었다. 그가 創業한 株式會社 和信은 和信百貨店의 母體로서 民族系 企業人으로서는 그 時代 最大의 百貨店이었고, 1930年代末 全國의 主要都市에 300여個所의 美國式 連鎖店을 設立하여 經營을 함으로써 當時 日帝資本家의 肝膽을 서늘케 하였으며, 日帝時代 百貨店의 王者가 되었다<sup>20)</sup>.

平南龍江에서 印刷所를 經營하던 朴興植이 서울에 進出하여 鮮一紙業商으로 成功하였고, 民族企業人으로 最初의 東亞百貨店을 設立한 崔楠으로부터 그 百貨店을 引受하여 和信百貨店을 設立하였다<sup>21)</sup>.

和信百貨店은 民族系 企業人으로서는 最大의 百貨店이었기 때문에 이를 中心으로 한 全國의 連鎖店은 日本商人들의 競爭과 挑戰의 對象이 되었다<sup>22)</sup>.

當時 서울에 進出한 日本人 百貨店은 미스코시(三越), 미나카이(三中井), 조지야(丁字屋), 히라다(平田)百貨店 등 4個의 日本人 百貨店이 出現하여 和信과 商權을 競爭하고 있었다. 이러한當時의 미스코시 百貨店 등 日本人 資本의 百貨店은 民族資本으로 經營하는 和信百貨店의 經營에 큰 關心과 競爭의 對象이 되었다.

朴興植系 企業集團 形成은 모두 6개 企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26年 鮮一紙業社(資本金 : 25万圓, 社長 : 朴興植, 業種 : 韓紙·製紙 專門販賣)로부터 시작하여 1931年 株式會社 和信(資本金 : 300万圓, 社長 : 朴興植, 業種 : 百貨店)을 創業하고 1937年에 大東興業株式會社(資本金 : 200万圓, 社長 : 朴興植, 業種 : 高級上品購買 및 販賣業), 1937年에 濟州道興業株式會社(資本金 : 50万圓, 共同代表 : 朴興植·趙俊鑄, 業種 : 農場 및 牧畜業), 그리고 1940年에는 京仁企業株式會社(資本金 : 200万圓 社長 : 夏山茂(創氏名), 業種 : 土建業) 등을 創業하였으며, 이 밖에도 國內民族系 企業에 大量의 資本을 投資하여 株主로 活動하고 있음이 發見되고 있다<sup>23)</sup>.

그러나 역시 朝鮮總督府와 日本帝國主義 政府의 壓力과 庇護下에 協力的 關係를 이루는 民族系 資本의 性格을 띤 企業集團 形成이었으며, 日帝에 協力하지 않으면 안되고, 變質되지 않고서는 企業集團을 形成할 수 없는 植民地의 企業家의 苦惱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4) 庶民出身 方義錫系의 企業集團 形成

日帝下 民族系 企業集團 形成으로 離不掉을 수 없는 企業人이 北鮮의 交通運輸業界를 掌握하고 支配한 方義錫系를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 韓國企業家史의 研究에서 잘 紹介되지 않았던 方義錫系의 企業集團의 形成은 神話的인 人物로 評價되고 있다. 특히 日本企業家史에 비친 方義錫의 人物評價는 韓國의 方義錫 企業家史 研究가 全無한 實情에 비추어 보면 다시 再糾明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表 10〉 1930年代 設立된 近代的 織工場

會社名	設立年度	資本金	大株主	特徵
株式會社 和信	1931	資本金 300万圓	· 朴興植 · 大東織物 · 協成實業學校	① 創業者：1931年 3月 朴興植 設立 ② 本社：서울 ③ 社長：朴興植 ④ 1930年代末 和信百貨店 一韓國百貨店의 王者 ⑤ 従業員：中國人，採用
和信貿易 株式會社	1935	資本金 275万圓 拂入資本金 685千圓	· 朴興植	① 創業者：朴興植 ② 本社：서울 ③ 社長：朴興植 ④ 日本：中國，滿洲 등 貿易盛行 ⑤ 中國山川，特產品 輸入
大東實業 株式會社	1937	資本金 200万圓 全額拂入	· 朴興植	① 創業者：朴興植 ② 本社：서울 ③ 社長：朴興植 ④ 業種：高級上品購買 및 販賣業
鮮一 紙物社	1926	資本金 25万圓 全額拂入	· 朴興植	① 創業者：朴興植 ② 本社：서울 ③ 社長：朴興植 ④ 業種：製紙，韓紙 專門販賣 ⑤ 特徵：鮮一紙物商으로 成功
京仁企業 株式會社	1940	資本金 200万圓 拂入資本金 100万圓	· 朴興植 · 朴容均 · 方義錫 · 崔昌學	① 公同設立 ② 本社：서울 ③ 社長：夏山武(韓國 創氏名) ④ 業種：土木建築業
濟州道 興業 株式會社	1937	資本金 50万圓 全額拂入	· 朴興植 · 趙俊鎬	① 共同代表：朴興植，趙俊鎬 ② 本社：서울 ③ 業種：農場 및 牧畜業

註：① 筆者が 參考資料를 調査 整理하여 作成함.

② 參考資料는

③ 東亞經濟時報社「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43)

④ 朴興植「我觀百貨店斗 連鎖店」, 三千里誌(1935, 7)

⑤ 和信產業株式會社「和信四十年史」(1966)

⑥ 東洋經濟新報社, 「年刊朝鮮」(1942)

⑦ 趙璣濬「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大旺社」(1973) 등을 中心으로 參照함.

1938年 民家時論社刊「朝鮮人物大系」에 의한 日本人이 記錄한 方義錫의 人物評을 살펴보면 그의 朝鮮에서 감추어진 企業家의 資質이 밝혀지고 있다.

「半島의 自動車王, 咸境南道 道議員, 北鮮產業과 交通文化의 開拓者인 方義錫은 드물게 보는 人傑이다. 그의 商權은 北鮮땅에 雖然(融融)히 솟았으며 비단 交通運輸業界 뿐만 아니라 各種 方面에 손을 뻗쳤고, 무릇 社會交通發展에 도움이 될만한 事業에全力을 기울여 努力하는 氏의 氣魄과 國家的 貢獻의 精神은 높이 評價될만 하다.」라고 記錄되어 있다<sup>32)</sup>. 方義錫系 企業集團의 形成은 調査된 것만 12개의 企業으로 구성되었다(<表 11> 參照).

方義錫은 1920年 共興株式會社(資本金 : 100万圓, 社長 : 方義錫, 業種 : 陸海送 物流의 運送擔當)의 創業을 始作으로 1929年에는 北鮮交通株式會社(資本金 : 100万圓, 社長 : 方義錫, 業種 : 海產物, 穀物運送業), 咸興택시株式會社(資本金 : 100万圓, 常務役 : 韓百夏 · 方禮錫, 業種 : 택시業과 貨物運送業)는 小型택시 29대, 咸興버스 42대, 貨物自動車 43개 등 總 114대를 保有하는 當代 北鮮의 第一交通運輸會社이었다. 이어서 1935年 咸南倉庫株式會社(資本金 : 50万圓, 社長 : 方義錫, 業種 : 倉庫業 · 物流센터), 1936年 北青釀造株式會社(資本金 : 50万圓, 社長 : 方義錫, 業種 : 釀造製造 販賣業), 1935年에 六始水產株式會社(資本金 : 10万圓, 業種 : 水產業), 北鮮合同電氣株式會社(資本金 : 1090万圓, 社長 : 方義錫, 業種 : 電氣供給業) 등을 創業하였다. 그리고 北鮮自動車運輸合名會社(1932), 朝日택시 株式會社(1936), 北鮮交通株式會社(1940), 元山택시株式會社(1942) 등을 創業하여 自動車事業의 總帥가 되었으며, 北鮮交通業 · 運輸業의 巨人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木材 · 電氣事業까지 業種을 多樣화하여 日帝殖民地時代 北鮮事業家の 巨木으로서 雄飛하는 企業人으로 評價받고 있었다.

이 朝鮮人物大系의 記錄에 의하면 方義錫系 企業集團은 北鮮庶民 出身의 自手成家한 企業家로서 北鮮自動車運輸業의 開拓者 또는 自動車王으로서 卓越한 經營能力을 발휘한 當時의 財閥로 成長한 企業集團이라고 본다.

그러나 方義錫系 企業集團은 日帝에 協力하여 朝鮮總督府의 庇護와 特惠를 받는 代表의 企業家로서 日本의 太平洋戰爭勃發時に 企業을 存續시키고 成長시키기 위하여 日本帝國主義政府에 朝鮮人으로서는 처음으로 飛行機를 獻納하는 등 철저한 變質된 民族企業 行動을 한 企業家로 전해지고 있다<sup>33)</sup>.

方義錫系의 企業集團은 日本人과 資本的 · 技術的 結託을 하고 朝鮮總督府의 絶對的인 協力과 支持 · 特惠 등 政經撫着의 代表의 財閥로서 成長한 特徵을 보여주고 있다.

方義錫은 타고난 體力과 性品으로 強忍한 忍耐力を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 運命을 스스로의 努力으로 開拓한다는 生活哲學과 리더쉽 그리고 人間關係의 徹底性을 特徵으로 企業을 위해서는 日本資本 어느 누구와도 資本結託 등 合作을 해야한다는 企業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sup>34)</sup>.

&lt;표 11&gt;

## 方義錫系 企業集團 形成

會社名	設立年度	資本金	大株主	特徵
共興 株式會社	1920	資本金 100万圓 全額拂入	· 方義錫 一家	① 創業者：方義錫一家 創業(1920年 9月) ② 本社：咸南 北青邑 ③ 社長：方義錫 ④ 保有車輛：乗用車 및 貨物車 10여대 ⑤ 業種：陸・海送 物流의 運送 ⑥ 特徵：貿易 및 委託販賣 및 運送事業(주로 : 陸海空)
北鮮交通 株式會社	1929	資本金 100万圓 全額拂入	· 方義錫 一家	① 創業者：方義錫(1929年 8月) ② 本社：咸興 北青邑 ③ 社長：方義錫 ④ 業種：海產物, 소금, 米穀 등 貨物輸送 ⑤ 特徵：北青等地에 集積된 特產物, 海產物, 소금, 米穀, 中國產 商品 등의 운송・위탁 판매업
咸興貿易 株式會社	1929	資本金 100万圓 全額拂入	· 方義錫	① 創業者：方義錫(1929年 8月) ② 本社：咸興 ③ 상무취체역：韓百夏, 方義錫(方義錫의 이후) ④ 業種：택시업과 貨物運送業 ⑤ 特徵：⑦咸興中心, 地方都市 등 放射線으로 연결된 交 通手段役割 ◎ 소형 택시 29대 버스 42대 화물자동차 43대 <hr/> 합계 114대 보유함.
咸南倉庫 株式會社	1935	資本金 50万圓 全額拂入	· 方義錫	① 創業者：方義錫 ② 本社：北青邑 ③ 社長：方義錫 ④ 業種：창고업, 物流센터
北青醸造 株式會社	1935	資本金 50万圓 全額拂入	· 方義錫	① 創業者：方義錫 ② 本社：北青邑 ③ 社長：方義錫 ④ 業種：醸造製造販賣業 ⑤ 特徵：北青第一의 醸造製造, 販賣

會社名	設立年度	資本金	大株主	特徵
共興木材 株式會社	1935	資本金 50万圓 全額拂入	· 方義錫	① 創業者: 方義錫 ② 本社: 北青邑 ③ 社長: 方義錫 ④ 業種: 木材, 桃木, 製材 ⑤ 特徵: 咸境道의 豐富한 木材 등으로 日本까지 輸出 시킴.
六始水產 株式會社	1935	資本金 10万圓 全額拂入	· 方義錫	① 創業者: 方義錫 ② 本社: 北青 ③ 社長: 方義錫 ④ 業種: 北鮮水產業 掌握
北鮮合同 電氣 株式會社	1935	資本金 1090万圓	· 方義錫	① 創業者: 方義錫 ② 本社: 北青邑 ③ 社長: 方義錫 ④ 業種: 電氣 供給業
北鮮自動 車運輸合 名會社	1932		· 方義錫	① 北鮮一帶의 交通網 擴張事業 ② 北鮮全域 運送事業 ③ 業種: 倉庫業, 物流센터
韓日택시 株式會社	1936		· 方義錫	① 北鮮全域, 택시事業 ② 택시·버스·화물 운송
北鮮交通 株式會社	1940		· 方義錫	① 咸興택시, 朝日택시, 北鮮自動車 運輸統合 ② 交通事業 一元化體制 構築
元山택시 株式會社	1942		· 方義錫	① 平安택시株式會社 吸收·創業 ② 北鮮自動車 運輸業務 獨占掌握

① 筆者が 參考資料를 調査 整理하여 作成함.

② 參考資料는

⑦ 東亞時報社「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42)

⑧ 東洋經濟新聞社, 「年刊朝鮮」(1942)

⑨ 民衆時論社「朝鮮人物大系」(1938)

⑩ 咸南 都市大觀(1928, p. 50 이하)

⑪ 趙曉濬「韓國企業家史」(1973)

등을 中心으로 參照하여 作成하였음.

## VI. 日帝下 民族系 企業集團의 性格

日帝下 1920年代에서부터 1930年代까지 形成된 民族系 企業集團은 典型的인 植民地의 二重性의 性格을 지니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었다.

植民地의 二重性이란 創業者는 民族系로서 民族主義 使命感을 지닌 대표적 韓國 企業人인데, 그 行動樣式은 變質된 企業家로서 親日 協力的 變質性을 지닌 性格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企業을 維持시키고, 發展시키기 위하여 朝鮮總督府의 庇護와 特惠 아래서 日本獨占 資本과 結託하는 資本結託型의 買擣性도 나타내고 있었다.

일부의 民族系 企業集團에서는 財貨를 蕩積하기 위해서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企業活動을 展開하여 소위 19世紀 西歐經濟社會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無慈悲한 人間型인 *Homo Oeconomicus* 企業家型으로 接近하고 있었다.

日帝下의 企業集團 形態는 순수한 民族資本家型도 있고, 反面에 日本帝國主義 資本과 技術協力 企業家, 日本獨占 資本의 走狗까지 서슴치 않았던 民族系 資本家들이 있었다. 그러나 一部의 企業集團의 企業家中에는 勤勉, 試實, 儉素, 商材도 뛰어나고 企業의 經營能力도 優秀한 民族系 經營者도 있었다.

앞에서 제시한 企業集團의 創業者 類型을 出身性分으로 區分하여 보면<sup>35)</sup> 貴族官僚型의 閔大植, 閔奎植系 등의 閔氏系 企業集團 形成, 地主型의 金季洙系의 企業集團 形成, 庶民型의 朴興植系와 方義錫系 企業集團 形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貴族官僚型의 閔氏系 企業集團은 閔泳徵 家門으로서 閔大植과 閔奎植이 民族主義 企業家精神과 經營能力を 지닌 傳統的 儒教의 家門으로서 不動產과 銀行에 投資하여 財閥을 形成하게 되었다.

당시 士, 農, 工, 商의 階級的 身分社會의 規範 속에서, 企業 賤視的 傾向이 짙은 時代에, 企業家의 社會的 使命의 重要性을 깨달은 閔泳徵는 1910年代에 東一銀行을 大株主로 하는 金融界의 第一人者로서 金融創業 資本을 形成하였다. 1930年代 企業集團 形成까지 閔氏系는 民族資本의 存立과 民族의 自主的 獨立을 目的으로 企業을 經營하여 왔다. 따라서 그들의 企業行動 樣式은 利潤創出과 社會的 責任을 目的으로 하고 外勢侵略을 몰아내기 위한 民族主義 企業動機였다<sup>36)</sup>. 그러나 1940年代에 접어들면서 日帝가 戰時體制로 改編하면서 物資動員令 등 各種 戰時動員收奪政策으로 이 民族系 企業集團은 没落하기 始作하였으며 民族系 所有企業體는 整理의 對象이 되었다.

둘째, 地主型 企業家의 金季洙系 企業集團은 1910年代 紡織業界로 시작하여 1920年代와

1930年代末까지 京城紡織株式會社를 중심으로 10개의 企業集團으로 形成한 湖南의 大地主資本 出身의 民族資本系이다. 日帝下에서 가장 먼저 民族企業家로 登場하고 朝鮮의 近代產業을 支配하고 生成시킬 수 있었던 것은 地主型 企業家가 代表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地主型 企業家는 性格이 保守的이기 때문에 近代產業을 成長시킨다거나 企業을 創業하는 近代的 思考方式을 빨리 흡수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湖南의 大地主資本 出身 金季洙系는 단순한 土地의 地主資本에서 탈피하여 民族產業 資本으로 轉換하는 能力과 手腕을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金季洙系 企業集團은 紡織業, 鐵山業, 言論機關, 農場經營, 教育機關 등 多樣한 業種 등을 經營하는 民族系 大企業集團으로 成長하였다. 그러나 1940年 朝鮮總督府는 民族資本의 抹殺政策의 一環으로 國策會社를 設立하고 民間企業體를 統合하는 戰時產業政策을 敢行하자 1940年 朝日合作 共同出資를 日本產金振興株式會社와 實施하여 王溪金山株式會社를 創業하고, 日本人 河部千一은 代表社長으로 任命하는 등 親日協力的 行動樣式을 갖는 植民地的 買擣性을 지닌 性格으로 变하게 되었다.

셋째, 庶民商人型 朴興植의 企業集團은 1920年代 鮑一紙業社의 創業을 시작하여 1930年代 株式會社 和信百貨店을 設立하는 등 朴興植系 企業集團을 이룬 當代의 商業界의 財閥이었다. 그러나 역시 朝鮮總督府의 庇護下에서 民族資本으로 親日協力的 企業家로의 變質的 性格으로 變貌하는 行態를 示顯하였다. 그리고 庶民商人型 出身으로서 北鮮의 交通運輸業界의 自動車王으로까지 指稱되었던 日帝의 代表的 親日協力企業家 方義錫系 企業集團 形成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方義錫은 北鮮庶民 出身으로서 自手成家한 企業人이었다. 그는 北鮮의 自動車 運輸業에 進出하여 1920年代 共興株式會社를 필두로 하여 3개 企業을 創業하고 1930年代는 咸南倉庫株式會社 등 7개 企業을 創業하였다. 그리고 1940年代에도 北鮮交通株式會社 등 2개의 企業을 創業하는 등 모두 12개의 企業體를 거느린 北鮮의 交通運輸業界를 獨占한 當代의 巨人으로서 大企業集團을 形成하였다. 따라서 方義錫은 日帝에 協力한 變質된 企業家 行態의 代表的 事例로서 이 企業集團은 買擣資本의 性格으로서 朝鮮의 經濟的 利益도 民族의 獨立도 犠牲하는 것을 서슴치 않고 企業經營活動을 하였던 反民族系 資本家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朴興植系 企業集團과 方義錫系 企業集團은 企業의 創業動機가 華폐극대화의 利潤動機와 財貨蓄積을 目的으로 하는 日本帝國主義에게 商業的 經營能力を 認定받아 變質性은 더욱 深化되어 買擣的, 植民地的 國民의 力量誇示를 指向하면서 日帝에 協力한 企業家 行動樣式의 性格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方義錫系 企業集團은 1940年代 日本帝國主義 政府에 飛行機까지 獻納하는 철저한 賣國的 行態로서 植民地統治에 協力한 親日資本結託型 企業家로서 日帝下 政經壦着의 代表的 庶民出身 商人型 企業家이다.

〈표 12〉 民族系 創業者 出身類型別 企業集團 形成의 性格

出身類型	創業者	創業資本	企業集團	特徵, 性格
貴族, 官僚型	閔泳徵, 閔大植	金融界	閔氏系企業集團	- 民族主義 企業家精神 - 비화폐적 利潤動機 - 利潤創出斗 民族主義
地主型	金季洙	紡織業界	金季洙系企業集團	- 民族主義 企業維持 - 國民經濟 近代化性 - 變質性斗 営利主義 - 士著民族資本의 形成
庶民商人型	朴興植	商業界	朴興植系企業集團	- 화폐적극대화, 利潤動機 - 財貨蓄積 民族力量誇示 - 日帝와 協力, 變質性
庶民商人型	方義錫	交通運輸業界	方義錫系企業集團	- 화폐적극대화, 利潤追求 - 親日變質性, 買據性 - Homo Oeconomicus

註 : Homo Oeconomicus란 19世紀 西歐에서 나타났던 富를 蓄積하는데 無慈悲하고 물인정한  
오직 富의 蓄積에 專念한 個人을 말한다. 古典學派의 經濟理論이 經濟主義로서 富의 追求  
人間像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歷史學派가 批判하고 있다.

〈표 13〉 民族系 企業集團의 植民地的 性格

民族系 行動樣式	閔氏系 企業集團	金季洙系 企業集團	朴興植系 企業集團	方義錫系 企業集團
자본	N	N	N	N
노동력	N	N	N	N
토지	N	N	N	N
원료·시장	N	N	N	N
대표·사장	N	NJ	NJ	NJ
세계지원	S, C <sub>1</sub>	S, C <sub>1</sub>	S, A <sub>1</sub>	S, A <sub>1</sub>
금융지원	S, C <sub>1</sub>	S, C <sub>1</sub>	S, A <sub>1</sub>	S, A <sub>1</sub>
행정지원	S, C <sub>1</sub>	S, C <sub>1</sub>	S, A <sub>1</sub>	S, A <sub>1</sub>
경영이념	N	N	N, C	N, C
창업자	N	N	N	N
기업가 행동양식	N, C	N, C	C, J	C, J
비영리적 문화사업	N	N	O	O
매판성	O	C, C <sub>1</sub>	C, A <sub>1</sub>	C, SA <sub>1</sub>
친일협력	O	J, C <sub>1</sub>	J, A <sub>1</sub>	JA <sub>1</sub>
변질성	O	C <sub>1</sub>	A <sub>1</sub>	A <sub>1</sub>
정경유착	A <sub>0</sub> , C <sub>1</sub>	A <sub>0</sub> , C <sub>1</sub>	A <sub>0</sub> , C <sub>1</sub>	A <sub>0</sub> , C <sub>1</sub>
종합적 평가	N, S, C <sub>1</sub>	N, S, J, C <sub>1</sub>	N, CA <sub>1</sub> , J, SA <sub>1</sub>	N, CA <sub>1</sub> , JA <sub>1</sub> , SA <sub>1</sub>

· 민족계=N  
· 배판성=C

· 친일협력 및 자본합작=J  
· 조선총독부 지원=S

· 크다=A<sub>1</sub>  
· 작다=C<sub>1</sub>

· 없다=O  
· 있다=A<sub>0</sub>

이상과 같이 日帝下 民族系 企業集團은 買辦的 植民地의 變質性을 지닌 民族企業家들이 財閥로서 成長하여 왔으며 오늘까지 이어온 企業集團도 있다.

## VII. 結論

지금까지 日帝下의 民族系 企業集團의 形成과 그 性格을 考察하였으며, 本 論文의 結論을導出하기 위하여 (1) 企業集團의 概念과 特徵, (2) 民族系 企業集團의 形成과 그 背景, (3) 民族系 資本形成의 實態, (4) 民族系 企業集團의 形成 事例, (5) 民族系 企業集團의 植民地의 性格 등을 규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最初로 民族系 企業集團이 形成된 時期는 日帝下의 1920年代부터 1930年代末까지로 規定할 수 있으며, 바로 이 時期가 韓國資本主義 形成時期이며, 民族系 企業이 急進의으로 增加하였던 植民地下의 產業革命時期라고 본다(〈表 14〉 참조).

1938年末 朝鮮殖產銀行 調查에 따르면 우리나라 全體 企業數가 5,413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民族系 企業數는 2,278개로서 42.1%의 構成比를 示顯하고 있다. 그러나 公稱資本金은 12.5%, 拂入資本金은 11.2%를 占有하고 있어 民族系資本의 位置는 零細性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라고 생각되는 民族系 資本이 企業集團을 形成하여 日本帝國主義 獨占資本家들과 치열한 競爭을 하면서 存續하고, 成長하였던 事例는 당시 민족기업인들의 민족자본형성에 큰 힘이되었다.

이 민족계 기업집단의 事例가 첫째는 金融界 貴族出身의 閔氏系 資本家 그룹이고, 둘째는 紡織業界 湖南의 地主型出身 金季洙系 그룹이며, 셋째는 商業界의 庶民型出身 朴興植系 資本家 그룹이다. 그리고 넷째는 交通運輸業界의 庶民型 出身 方義錫系 資本家 그룹 등이다.

이상과 같은 民族系 企業集團 形成은 1919년 3.1運動 以後부터 急進의으로 生成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1) 日本政府에 對한 政策轉換의 一環으로 “朝鮮會社令”을 廢止하여 民族人의 企業進出을 制限하는 政策이 緩和된 점, (2) 3.1運動 이후 民族主義 姿勢가 轉換된 점, 특히 日帝의 無斷政治의 反省과 海外에 臨時政府樹立으로 國家의 存續性과 國權回復의 維持, 이에 따른 民族의 力量培養과 民族企業 育成을 통한 民族資本形成의 必要性 提高, (3) 土地調查事業 완료(1918)로 地主資本이 產業資本 形成에 動員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1920年代에 地主資本出身 企業家들이 많이 形成하게 되었다. (4) 1900년 이후 民族 指導者層에서 近代教育의 普及 및 民族教育의 必要性에 따라 私立學校 및 民立大學의 生成이 되었다는 점이다. (5) 1920년대 이래로 民族系 企業集團 形成은 韓國民族의 生存터전과 民族企業 發展意識, 物產獎勵運動 같은 우리 민족기업 商品購入運動 등으로 零細資本이 自守成家型 大企業家로 成功한 事例와

&lt;표 14&gt;

## 日帝下 時代別 民族系 企業集團의 形成

年代 企業 集團	胎動·認識期	形成期	成長期	衰退期(沒落期)	解放以後
	1910年代	1920年代	1930年代	1940年代-解放	
閔氏系 企業集團 (7개)	東一銀行(1915) (閔泳澈大株主) 徽文義熟印刷所 徽文義熟	朝鮮紡織(株) (1923)	東光生糸(株) (1935) 桂成株式會社 (1935) 永保產業(株) (1937)		徽文義熟 (包括徽文中高)
金季洙系 企業集團 (11개)	中央商工(株) (1911) 京城紡織(株) (1919)	中央商工(株) (1925년 개칭) 東亞日報(1920) (財)中央學院 (1929) 海東銀行(1927)	合資會社三義社 (1934) 東光製糸(株) (1939)	王溪金山(株) (1940, 朝日合作)	京祐 三義社 東亞日報 普成專門 (包括高大)
朴興植系 企業集團 (6개)		蘇一紙業社 (1926)	(株)和信(1931) 和信貿易(株) (1935) 大東興業(株) (1937) 濟州道興業(株) (1937)	京仁企業(株) (1940)	(株)和信 和信百貨店
方義鎭系 企業集團 (12개)		共興(株)(1920) 北鮮交通(株) (1920) 咸興貿易(株) (1929)	咸南倉庫(株) (1935) 北青釀造(株) (1936) 咸鏡木材(株) (1935) 六始水產(株) (1935) 北鮮合同電氣(株) (1935) 朝日貿易(株) (1936) 北鮮自動車運輸 合名會社(1932)	北鮮交通(株) (1940) 元山貿易(株) (1942)	

註：時代別 創業企業體

革新的인 性格의 資本家가 利潤極大化를 위한 企業目的達成의 勇氣와 決斷心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民族系 企業集團 形成의 性格은 植民地的 二重性을 지닌 民族主義 行動樣式으로 나타났는데 民族經濟近代化의 使命과 事業報國主義 經營理念을 가진 企業家群, 그리고 華폐적 극대화의 行動樣式으로 日帝에 協力하는 變質된 買撫性을 지닌 企業家群으로 兩分되어진다. 前者は 舊韓末 貴族出身 金融界의 閔氏系企業集團과 湖南의 大地主 出身의 紡織業界企業集團 金季洙系를 指摘할 수 있으며, 後者は 西北地方의 庶民出身 商業界의 朴興植系企業集團과 北鮮關北의 庶民出身의 交通運輸業界 方義錫系企業集團으로 區分할 수 있다. 그러나 1940年代에 이르러서는 日本帝國主義 政府에 적극 協力하고 買撫性을 띤 民族系 企業集團만이 存續될 수 있었으며, 순수한 民族主義 行動樣式의 民族系企業들은 没落하고, 일부 變質性을 띤 民族系企業들은 政經廳着의 形態로 企業을 維持할 수 있었다.

끝으로 더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은 1930年代 소위 “朝鮮의 工業化”가 日本의 獨占資本의 中心으로 推進되었다는 점과 당시의 朝鮮工業化는 日本工業化의 移植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朝鮮產業經濟調查會는 朝鮮에 進出한 日本獨占資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特혜를 부

&lt;표 15&gt;

民族系 企業集團 形成의 動機와 植民地의 性格

區 分	內 容
動 機	<p>民族系 企業集團 形成의 動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財貨蓄積과 利潤 極大化</li> <li>- 民族主義와 企業家의 精神</li> <li>- 民族經濟近代化의 使命感</li> <li>- 事業報國의 經營理念</li> <li>- 國權回復을 위한 民族主義 行動樣式</li> <li>- 創業者의 誇示, 民族企業 指導者의 標榜</li> <li>- 企業의 社會的 責任 具現</li> </ul>
性 格	<p>民族系 企業集團 形成의 植民地의 性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植民地의 二重性 示顯</li> <li>• 民族主義 또는 民族經濟近代化의 使命感 事業報國主義 經營理念.</li> <li>• 變質된 企業家 行態와 親日協力 買撫性</li> <li>- 朝鮮總督府의 特惠와 支援, 親日協力性 示顯</li> <li>- 日本獨占資本과 結托한 買撫資本의 性格</li> <li>- 非貨幣的, 非經濟的 理念型의 抵抗性 企業資本</li> <li>- 植民地統治에 協力한 民族系 資本의 變質性</li> <li>- 民族系 資本存立의 脆弱性</li> <li>- 民族系 資本의 政經廳着 - 金融, 租稅, 行政 등 特惠</li> </ul>

註: 筆者 作成함.

여함으로써 朝鮮工業化는 朝鮮을 植民地工業化하는 데 불과하였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 日本獨占資本의 企業은 金融支援 및 奨勵金을 交付하고, 事業에 필요한 電力, 運貨의 輕減, 運送施設의 支援, 原料의 通期確保, 用水 등에 대한 特典 및 便宜를 제공하였다. 둘째로는 모든 事業에 대한 認可制의 設定, 事業에 필요한 土地수용권의 부여, 租稅에 관한 特典, 關稅의 保護 等 各種 特典과 便宜를 提供하였다.

이와같이 1930年代 後半期 朝鮮工業政策은 日本獨占資本 企業育成을 위한 各種 支援 特惠措置로 이루어져 오직 日本獨占資本의 增殖과 侵略戰爭을 위한 軍需產業 發展에 重點을 둔 植民地 朝鮮의 工業化라는 것을 確認할 수 있었다.

조선의 公業화가 마치 한국의 公業화로 오인되어서는 식민지사관을 극복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本來 이 論文의 또 한 가지 意圖는 日帝의 經濟侵略과 이에 對應하여 成長해 나가는 民族資本의 모습과 그 特리를 찾는데 力點을 두고자 試圖하였다. 특히 民族資本家들이 植民地時代에 苦難과 逆境을 克服하고 外國의 技術과 制度를 받아들이면서 大企業集團을 形成하는 革新的 企業家로서 日本獨占資本家層과 競爭하는 우리 民族系 創業者들의 近代的 企業家의 經營理念과 民族主義 企業家像을 이 時代에 새롭게 評價해보고자 하는데 意義를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資料不足의 限界로 이 部分의 研究는 後日로 미루기로 하였다.

## 參考文獻

- 1) 지난 1998年 4月 15日 公正去來委員會가 “30大 企業集團指定” 發表
- 2) 趙東成, 韓國財閥, 每日經濟新聞社, 1997
- 3) 趙璣濬 韓國民族資本形成史, 大旺社, 1977, pp. 450~459 參照.
- 4) 金聖壽, 日帝下 韓國經濟史論, 經進社, 1985, p. 13 參照.
- 5) 金柄夏, 財閥의 形成과 企業家 活動, 韓國能率協會, 1991, p. 16 參照.
- 6) 安岡重明, 財閥の比較史的研究, 同志社大學, 人文科學研究所, 1985, p. 5 參照.
- 7) 趙璣濬, 韓國 企業家史 研究(博英社, 1974)와 安台鑑, 李義俊, 企業集團의 本質(法文社, 1974) 등을 參照하여 정리하였음.  
Coase, R. M.,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Nov. 1937 參照.  
Williamson, O.E., The Modern Corporation : origins, Evolution and Attribut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Dec. 1981 參照.

- 8) 趙東成, 上揭書, pp. 13, 14 參照.
- 9) 金柄夏, 上揭書, p. 18 參照.
- 10) 金元鉢, 現代企業論, 文音社, 1990, p. 129 參照.
- 11) 鈴木總一郎, 買賣制度, 東亞經濟論叢, 第1卷, 第1號, 1941, 參照.
- 12) 解放以後의 財閥研究는 金柄夏 教授, 趙東成 教授, 黃明水 教授 등이 있으며 韓國經營史 學會에서 研究를 계속하고 있다.
- 13) 東洋經濟新報社, 年刊朝鮮, 1942, 參照.  
    東亞經濟時報社, 朝鮮銀行 會社 組合要錄, 1942, 參照.
- 14) 上揭書, 1942年 參照.
- 15) 朴興植, 我觀百貨店과 連鎖店, 三千里誌, 1935年 7月號 參照.
- 16) 民衆時論社, 朝鮮人物大系, 東京 1938, 參照.
- 17) 中川敬一郎, 第二次大戰の日本における産業構造と企業活動, 三井文庫論叢, 第三號 1969年 參照.
- 18) Cole, A. M., An Approach to the Study of Entrepreneurship(in Enterprise and Secular Charge, ed, by Lave F.C, 1953)
- 19) 朝鮮工業協會, 會報, 1931年 11月, 第7號, p. 6 參照.
- 20) 朝鮮總督部, 統計年報, 1932, p. 195 參照.
- 21) 朝鮮工業協會, 會報, 1933年 5月, 第16號, p. 30 參照.
- 22) 1930年代 朝鮮의 工業成長率 算出은 1976年度 筆者와 博士學位論文에서 참고함.
- 23) 金聖壽, 日帝下 韓國經濟成長論, 經進社, 1985, p. 176.
- 24) 林鍾哲, 日帝末 韓國工業化 一考察, 서울大學校, 經濟論集, 제8권, 제3호, 1969, p. 17.
- 25) 鈴木武雄, 朝鮮統治の 性格と 實績, 東洋經濟新報社, 1942, p. 83 參照.
- 26) 東洋經濟新報社, 年刊朝鮮, 1942, p. 35 參照.
- 27) Cole, A. M., 「An Approach to the Study of Entrepreneurship」(in Enterprise and Secular Charge, ed by Lave, F.C, 1953).
- 28) 朴興植, 我觀百貨店과 連鎖店, 三千里, 1935年 7月號 參照.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of Korean Big Business Group under Japanese Rule

Kim, Sung-So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lonial characteristics and capital formation of Korean Big Business Group under the Japanese rule between 1920 and 1940 with respect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the Japanese imperialistic colony policy in Korea can be divided into two major period. The first period(1920~1930) was the period of an established colony, and the second period(1931~1940) was the period of aggressive wars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its colonial organization.

The first period(1920~1930), the period of an established colony, as a result of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the Japanese imperialists gave up the military government and advocated the so-called culture government, which was a very deceitful one. Accordingly, the Japanese government began to rear Japanese industries in Korea. On April 1. 1920, the ten-year old "Chosun Hwesa Ryung", or the measure for korean company, was removed. This removal was a great turning point in the colonial policy of Japan. The main purpose of the abolition was to permit investments of the Japanese capital into the development of modern industries in korea.

In the 1930's the annual industrial development was marked 13.5%. This was mainly due to the acceleration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y and the decade may be designated as a period of "Korean industrialization" and formation of "Big Business Group" of Korean capitals.

In order to continue business and to accumulate property, korean native capitals

\*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Kyung Hee University, Ph. D.

help the Japanese authorities to control the colony, Korea. With the increase of this sort of businessman the native capital become a parasitic one. There appeared a group of Pro-Japanese parasitic capitals who did not hesitate to conspire with the Japanese capital to achieve a maximal monetary capacity. These native capitals, became the anti-national Big Business Group what has been discussed on the colonial characteristics of Korean Big Business Group under the Japanese Control can be as follows :

- (1) the colonial legacies of Korean Big Business Group revealed the economical double structure.
- (2) parasitism of the native capitals
- (3) pro-Japanese conduct of the native capital

After all, these colonial characteristics of Korean Big Business Group under the Japanese Rule hindered the formation of capitalism in Korea and remained as colonial legacies.

Key-Words : Big Business Group, Japanese Government

# 知識社會的觀點에서 再照明한 프레더릭 테일러의 生涯와 思想

Frederick Taylor : Life and Management Philosophy  
—from the knowledge society perspective—

李 在 奎\*

## 目 次

I. 서론	V.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비판
II. 프레더릭 테일러의 생애와 개인적 특성	VI. 지식사회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테일러의 경영 사상
III. 테일러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VII. 결 론
IV. 과학적 관리법의 본질적 의도와 내용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지적역사(知的歷史)에 있어 테일러보다 더 큰 영향을 준 인물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테일러만큼 의도적으로 왜곡된 사람도 없었으며, 또한 한결같이 잘못 인용되고 있는 사람도 없다<sup>1)</sup>. 살아 있을 때 테일러는 무시당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어느 누구보다도 지식인들 사이에 일·작업·노동을 경시하는 풍조가 가시지 않았고, 확실히, 삽으로 모래를 푸는 일은—테일러가 발표한 가장 대표적인 작업분석이다—그 당시 ‘교육받은 사람’(educated people)에게, 그 일이 중요하든 아니든 간에, 탐탁하게 여겨질 일은 아니었다. 죽은 후 테일러는 역을했다. 왜냐하면, 그후 역사는 그가 옳았고 그 당시 지식인들이 틀렸었다는 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이다.

\* 大邱大學校 經營學科 教授, jklee@biho.taegeu.ac.kr.

1) P. F. Drucker, Post Capitalist Society, Harper, 1993(이재규 역 한국경제신문사). p. 68.  
테일러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전기는 Charles D. Wrege & Ronald J. Greenwood,가 쓴  
Frederick W. Taylor : The Father of Scientific Management, Myth & Reality, Richard  
D. Irwin, 1991. 이 최초이다.

그러나 테일러에 대한 악평의 대부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식(knowledge)을 작업연구(work study)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받은 것이었다. 지식을 작업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그 당시 노동조합에게는 금기였다. 노동조합은 미국 역사상 테일러에 대하여 매우 잔혹한 인격 말살운동을 전개하였다. 드러커는 “간혹, 다윈(C. Darwin)·마르크스(K. Marx)·프로이트가 ‘현대세계를 창조한 삼위일체’로 인용되고 있다. 만약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있다면, 마르크스는 빼고 테일러를 대신 집어넣어야만 한다”고 테일러를 재평가했다<sup>2)</sup>. 산업사회를 마감하고 지식사회·정보사회와 문턱을 넘어선 지금 100년 전 산업사회의 한 가운데서 독특한 사회적·경제적 역할을 했으나 지금까지도 ‘기계론적 인간관의 제창자’ 또는 ‘인간성 말살운동에 앞장 선 사람’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프레더릭 테일러의 생애와 사상을 지식사회적 관점에서 재조명 해보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 2. 연구방법

이 연구의 방법은 규범적·서술적 방법 및 비교방법이다. 테일러가 직접 쓴 저작물들과 테일러에 관한 연구서를 중심으로, 테일러가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상황과 현재의 시대 상황을 비교하고, 테일러의 생애와 성격, 그리고 그것이 테일러의 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당시에 그의 사상이 환영 또는 비판받은 이유를 추적하고, 최근에 발표된 테일러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서<sup>3)</sup>를 기초로 현재적 관점에서 그 의미와 의의를 음미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과학적 관리법의 내용을 깊이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사회·정보社会의 조직이론들이 결코 역사적으로 전에 없었던 것이 아님을 추적하고,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재해석과 재구성의 결과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비교서술 방식을 채택한다<sup>4)</sup>.

## II. 프레더릭 테일러의 생애와 개인적 특성

### 1. 테일러의 연대기적 생애<sup>5)</sup>

- 
- 2) P. F. Drucker, *Ibid.*, p. 74.
  - 3) Robert Kanigel, *The One Best Way: Frederick W. Taylor and the Enigma of Efficiency*, Viking Penguin, 1997.
  - 4) J. Pfeffer, *Will the Organization of the Future make the Mistakes of the Past?*”, Frances Hesselbein, et al. (eds) *The Organization of the Future*, Jossey-Bass, 1997. pp. 43-52.
  - 5) L. Urwick, *The Golden Book of Management*, Newman Neame Limited, 1953. pp. 78-79.

### 1) 학업 시절(1856~1874)

테일러(Frederick W. Taylor)는 1856년 3월 20일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했다.

1872~74년 필립스 엑스터(Phillips Exeter) 고등학교에 다녔고, 부친과 함께 유럽여행을 했으며, 프랑스와 독일의 학교에도 다니는 등 높은 수준의 보통교육을 받았다. 그는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고 하바드 대학에 입학이 허락되었으나, 당시 눈병 때문에 입학을 포기하였다.

### 2) 도제와 기술자 시절(1874~1893)

1874년 테일러는 필라델피아의 작은 펌프 공장인 Enterprise Hydraulic Works에 무보수의 견습공으로 입사하였다. 주물제작 기술자·기계기술자로 승진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고, 술·커피·차와 같은 자극성 있는 것은 마시지도 않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4년 동안의 도제생활을 마쳤다. 자기자신, 즉 몸과 마음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이런 관심은 나중에 규율과 하나의 최선의 방법(one best way)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났다. 필라델피아 시절 테일러는 노동자들과 같이 땀흘리며 일하고, 그들의 생각에 동정심을 가졌으며, 노동자 의식에 대한 그들의 궁지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그가 '나쁜 산업환경'이라고 불렀던 태업, 낮은 관리수준, 노동자와 경영층 사이의 조화의 결여와 같은 것을 또한 목격했다.

1878~1990년 필라델피아의 Midvale Steel Co. 으로 옮겨, 작업장 사무원·기계기술자·반장·직장·유지보수 직장·설계실장·기사장(chief engineer)으로 승진했다.

1883년 뉴저지에 있는 스티븐스 공과대학(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야간을 다녀 공학 학위를 받았다.

1890~1993년 종이섬유 제조업체인 Manufacturing Investment Co.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했다.

### 3) 컨설턴트 시절(1893~1915)

1893~1998년 여러 회사에 경영관리에 대한 기술자문을 했다. 그의 고객들 중에는 William Deering & Co., Northern Electrical Manufacturing Co., Lorain Steel Co., 그리고 Simonds Rolling Machine Co. 등이 있다. 이 당시 그는 독학으로 회계학을 공부했다.

1898~1901년 펜실베니아 배들레헴에 있는 Bethlehem Steel Co.에 근무했다. 이때 마운셀 화이트(Maunsell White)와 함께 고속도구제강법(high-speed tool steel)을 개발하고, 1900년 파리전시회에 처음 전시했다. 파리국제대학 전시회에서 화이트와 공동으로 상을 받았다.

1901~1915년 대가를 받는 업무(working for payment)로부터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미국과 해외에서의 과학적 관리법의 보급을 위해, 무보수 상담역(unpaid consultant)·강연자 등으로 정열을 쏟았다. 1906년 미국 기계기사 협회(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

ical Engineers) 회장에 취임했고, 펜실베니아대학 명예 이학박사를 취득했고, 1912년 호바트대학(Hobart College)의 명예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고속철단기에 대한 공으로 펜실베니아 프랭클린 공대(Franklin Institute of Pennsylvania)의 Elliott Cresson 메달을 받았다. 1910년 동부 철도회사 임율사건(Eastern Rates Case)에 관한 루이스 브랜데이스(Louis D. Brandeis)의 심리과정에서 과학적 관리법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테일러는 일반대중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1911년 워터타운 병기창(Watertown Arsenal)의 스트라이크 결과로 ‘공장관리에 관한 테일러 시스템과 여러 다른 시스템’(the Taylor and other systems of shop management)을 조사하기 위한 의회 심의위원회에 초청되었다. 시간연구의 사용과 추가보너스의 지급은 모든 정부노동자들에게 적용이 금지되었다.

1915년 3월 21일 필라델피아에서 59세로 사망하였다.

## 2. 개인적 특성

### 1) 청교도 가문의 후예

테일러의 아버지는 상당히 부유한 법률가로서 퀘이커 교도 집안출신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1629년 매사추세츠 주 플리머드 항에 도착했던 청교도의 피를 이어 받았다. 퀴커 교도와 청교도의 혈통과 훈육은 훗날 테일러의 인생에 특별한 영향을 주었다. 즉, 진리에 대한 강렬한 탐구정신, 사실을 관찰하고 입증하려는 충동, 낭비와 게으름이라는 악을 없애려는 청교도적 열정을 이어받았던 것이다. 어린시절 테일러는 고전, 프랑스어와 독일어 등을 풍부하게 교육받았으며, 부친과 유럽여행에 동행하기도 했다. 젊은시절, 그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개선·개혁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과학적 탐구·조사·실험에 매료되어 있었고, 천성적으로 최선의 방법이 아닌 어떠한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sup>6)</sup>.

### 2) 성격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가문의 특성이 그의 성격의 가장 강력한 부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테일러는 담배도 술도하지 않았으며, 차나 커피조차도 자극제로서 피해야 할 것으로 간주했다. 그는 ‘뉴잉글랜드의 양심있는 한마리의 고래’(a whale of New England conscience)로 불리워지곤 했다.

그는 대단히 성미가 급했고, 기술적인 연구에서는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회적 선전자(propagandist)로 잘 무

6) 김식현·김종진·박경규, 경영학사,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2. pp. 34~35.

장하지도 못했다. 다시 말해 그는 글로서 자기자신을 표현하는 데 종종 어려움에 부딪히는, 근본적으로 한 사람의 기술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의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동경심이 많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미드베일에서의 그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대단히 실용적인 관리자였다. 초기에 부하들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의 완벽한 성실은 그들의 존경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강렬한 열정이 그들을 압도했던 것이다. 그의 동료중 한 사람은 그를 가리켜 “들을 수만 있다면 시체조차도 열정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he would have filled up a corpse with enthusiasm, if only the corpse could hear)이라고 하였다.

### 3) 천재의 사회적 책임의 본보기

그는 인생에서 보다 보람있는 것은 즐거워야 할 의무(duty of pleasure)보다도 의무의 즐거움(pleasure of duty)을 만들어야 한다고 자주 말했다”. 그는 발명가로서 순탄하게 화려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방종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다. 그는 머리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도제시절에 이어 곧 승진하여 공장 관리자(manager)가 되었다. 그의 몇 가지 금속 발명품은 그를 일찌감치 부자로 만들었다. 따라서 1902년(45세) 이후 테일러가 무보수로 여러 기업에 대해 자문을 했어도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다. 그는 유용한 장치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완성될 때마다 특히 등록하여 재산을 모은다는 생각보다는 사회적 양심이 발동되고, 그의 동시대인들이 그것을 채택하도록 설득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한 때 발명에 대한 그의 관심을 일종의 유혹(something of a temptation)이라고 말했다.

### 4) 고독하고 불우했던 말년

테일러와 동시대 작가들은 테일러를 시간관리와 강압적인 방법의 광신자라고 묘사하기를 좋아했다”. 존 도스 파소스(John Dos Passos, 1896~1970)는 테일러의 죽음을 이렇게 기술했다. “야간 근무 간호사는 테일러가 시계를 감는 소리를 들었다. 59세의 생일이 되는 날 아침 4시반 경 간호사가 그의 병실에 갔을 때, 테일러는 시계를 손에 들고 숨져 있었다.”<sup>9)</sup>

그는 전성기를 지나면서 개인적인 친구들을 잊기 시작했고, 그의 업적에 대한 오해들로 인하여 우울증에 사로잡혔고, 그늘진 말년을 보내는 비극을 맞이했다. 필라델피아 교외 저만타운(Germantown) 웨스트 로렐 힐(West Laurel Hill) 공동묘지에 있는 테일러의 무덤의 묘비에는 Frederick Winslow Taylor, Born 1856~Died 1915, The Father of Scientific Management 라고 간단히 써여 있다<sup>10)</sup>.

7) L. Urwick, Ibid., p. 77.

8) A. Sampson, The Company Men, Harper, 1994. p. 76.

9) John Dos Passos, The Big Money, Signet Classic, 1969. p. 48.

### III. 테일러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 1. 초기 산업사회의 과학관과 분업이론

##### 1) 초기 산업사회의 기계론적 과학관

산업사회의 초기에는 기업가도, 자식인도, 혁명가도 기계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중기기관·시계·직조기·펌프·피스톤 등에 정신을 빼앗겼다. 아이작 뉴턴(Issac Newton, 1642~1727)은 천체를 관측한 결과, 우주 전체가 거대한 시계처럼 정확하고 규칙 바르게 운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산업사회의 문명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찾았다. 뉴턴에 있어서 원인이란 「운동을 일으키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었다. 프랑스의 의사이며 철학자이기도 했던 라 메트리(La Mettrie, 1709~1751)는 1748년에 「인간 기계론」(Man a Machine)을 발표하여 인간 자체가 하나의 기계라고 단언했다.

##### 2) 부(富)의 증가와 분업이론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기계론적인 견해를 경제분야에 적용했다. 그는 경제도 하나의 체계(system)이며, 그 체계는 “많은 면에서 기계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스미스의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Wealth of Nations, 1776)은 그 제목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의 부(富)를 연구한 것이었으며, 부의 성질과 원인이 무엇이냐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스미스의 부의 개념은 생활필수품·편의품·사치품 등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생활수단이었다. 스미스는 부의 생산을 노동의 생산력에서 구하고 노동의 분업에 기초한 이론을 확립하였다. 분업에 관한 스미스의 사상은 그후 찰스 바베파(Charles Babbage, 1792~1871)·테일러·헨리 포드(Henry Ford, 1863~1947) 등에게 계승되어 작업연구(work study)와 시간 연구(time study)로 이어졌고, 대량생산방식(mass production system)으로 확대되었다.

#### 2. 테일러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 1) 인구와 생산량 증가 시기

테일러가 태어나서 활동하던 1860년에서 1900년까지 40년간, 미국의 인구는 3,100만명에

10) Sudhir Kakar, Frederick Taylor: A Study in Personality and Innovation,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70. 서문.

서 두배도 넘는 7,600만명으로 늘어났다.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자연적 인구증가도 있었지만, 이 시기에 유럽이나 아시아로 부터 1,900만명이나 이민왔다. 이들은 주로 미국의 동부 뉴욕·보스턴·디트로이트·클리브랜드 등 공업도시에 집중적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당연히 그 당시 기준으로도 미숙련 노동자들(unskilled workers)이었다.

## 2) 경영 부재의 시대

마르크스가(1818~83)가 1850년대 『자본론』(Das Kapital)을 쓰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아직 경영(management)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전문적인 경영관리자에 의해서 경영되는 기업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산업혁명의 요람지인 영국 맨체스터에서 가장 큰 공장은 마르크스의 친구이며 협력자였던 프리드리히 엥겔스(F. Engels, 1820~95)가 소유했던 종업원 수 300명 규모의 방직공장이었다. 엥겔스의 방직공장은 당시 영국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내고 있던 공장 중 하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경영관리자 따위는 없었다. 동료 노동자를 감독하고 자신도 노동자의 한 사람에 불과한 직장이 몇 명 있었을 뿐이었다<sup>11)</sup>.

대기업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1870년경에 오늘날과 같은 매니지먼트의 발전을 예견할 수 있었던 기업인은 별로 없었다. 선전지명이 없었다기보다 전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일한 항구적인 대규모 조직은 (프러시아의)군대뿐이었다. 그 결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대륙횡단철도·제철소·은행·백화점·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군대의 지휘명령계통이 조직구조의 모델이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따라서 최상층의 소수의 사람이 명령을 하고, 최하층의 다수가 이에 따르는 조직구조가 그후 100년 가까이 모든 조직의 규범이 되었다.

## 3)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업관리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핵심은 하루의 공정한 과업을 기준으로 계획적인 생산을 실시하는 과업관리(task management)였다. 테일러는 과업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공정한 1일의 작업량'(a fair day's work)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하여 생산활동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노동자를 일류 시민(first class man)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테일러는 문제는 노사양측의 무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공정한 하루의 일'과 '공정한 하루의 임금(a fair day's pay)'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수긍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량적으로 '공정한 하루의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분명한 생각이 없었다. 양측 모두 불분명한 느낌과 분쟁을 야기하는 관습에 계속 의존하고 있었다.

11) P. F. Drucker, *The New Reality*, Harper, 1989. p. 266.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테일러의 방법은 어쩔 수 없이 공장주들로부터 악이용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얻은 추가이익은 근로자들에게 심리적·물질적으로 전혀 보상되지 않았다<sup>12)</sup>.

#### 4) 테일러의 연구를 자극한 요인 – 정신혁명

테일러를 자극한 것은 능률(efficiency)을 올리는 그 자체가 아니었다<sup>13)</sup>.

그것은 또한 소유주를 위해 이익을 창조하는 것도 아니었다. 테일러는 생산성의 열매를 가장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은 소유주(owner)가 아니라 노동자(worker)라는 생각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다. 그의 주된 동기는 소유주와 노동자, 즉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가 생산성 향상에 공통으로 관심을 갖고, 지식을 작업에 적용하는 데 있어 협조관계에 있는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1912년 의회 특별위원회의 증언(testimony committee)에서 그는 과학적 관리법의 핵심(essence of scientific management)은 정신혁명(mental revolution)이라고 했다<sup>14)</sup>.

### IV. 과학적 관리법의 본질적 의도와 내용

#### 1. 과학적 관리법의 본질적 의도

##### 1)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용어를 지운 브랜다이스

1910년 테일러는 기술자 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철도운임 인상에 대한 반대운동의 와중에서 반대파를 대표하는 변호사 브랜다이스가 전국통상위원회의 공청회에서 테일러의 관리방식을 과학적 관리라고 격찬하면서, 그것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철도업무에 하루 1백만 달러의 절약이 기대된다”는 놀라운 발언을 하였는데, 이것이 신문에 크게 보도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테일러의 과업관리는 작업합리화를 위한 공학적 실험으로부터 기업을 계몽하는 사회운동의 성격으로 변하여 갔다. 테일러 자신도 브랜다이스에 의해 명명된 ‘과학적 관리’(scientific management)라는 명칭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그러나 그가 사회적 사명을 자부하면 할수록, 노사 쌍방으로부터의 감정적 반발과 비웃음이 심해져 갔다.

12) A. Sampson, Ibid., p. 77. 이 부분은 드러커의 판단과 차이가 있다.

13) Robert Kanigel은 테일러의 능률운동에 대한 거부감을 *The Enigma of Efficiency*로 표현했다.

14) C. D. Wrege, et al., Ibid., p. 191.

## 2) 과학적 관리법의 서문에서 밝힌 의도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원래 미국기계기사협회(ASME)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의 서문에서 과학적 관리법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지금까지 생산활동에 있어 사람(people)－숙련공이라는 의미－이 첫째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스템(system)－앞서 스미스가 경제를 시스템으로 본 것과 같이－이 첫째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sup>15)</sup>. 그렇다고 우수한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훌륭한 시스템의 첫째 목적은 일류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일류의 인재라도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승진이 빠르고 확실할 것이다.”

또한 이 원리가 잘 적용되기만 하면 놀라운 성과가 나올 수 있음을 다양한 예를 통해 쉽게 설명하려 한다. 사례는 가능하면 제조회사의 기사나 관리자는 물론,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선정했다. 그러나 동일한 원리는 모든 사회활동에 응용할 수 있다. 가정 관리 · 농장 관리 · 도소매업 관리는 물론이고, 교회 · 자선단체 · 대학 · 관공서에도 마찬가지로 응용할 수 있음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면 좋겠다<sup>16)</sup>고 썼다.

## 2. 과학적 관리법의 내용

### 1) 과학적 관리의 4개 원리

과학적 관리법의 근본은 4개 원리로 집약된다.

첫째, 주먹구구식 방법을 참된 과학을 기초로 하는 방법으로 대체(They develop a science for each element of a man's work, which replaces the old rule-of-thumb method.)

둘째, 노동자의 과학적 선택과 개발(They scientifically select and then train, teach, and develop the workman, whereas in the past he chose his own work and trained himself as best he could.)

셋째, 노사간의 우호적 협조(They heartily cooperate with the men so as to insure all of the work being don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science which has been developed.)

넷째, 관리자와 노동자가 균등하게 직무를 분담하는 것(There is an almost equal division of the work and responsibility between the management and the workmen.)

테일러는 “시간연구나 기능적 직장제도 등과 같은 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학적 관리의

15) Robert Kanigel, *Ibid.*, p. 19.

16) F. Taylor, 과학적 관리법, 1911. 신영월 역, 한국능률협회, 1988, pp. 17~20.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고 적용하려고 하면 실패로 끝날 수가 있다. 또한 과학적 관리법의 원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너무 성급하게 새로운 것을 채용하려고 하면, 저항에 부딪히거나 심지어는 스트라이크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다년간 그러한 개혁에 경험이 있는 사람의 주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2) 부의 증가 방법—태업의 방지

테일러는 태업(soldiering)이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태업을 방지하므로서 노사간에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7)</sup>.

“만약 노동자들이 각종의 태업 즉, 게으름을 부리거나, 「느릿느릿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노사의 관계를 개선하고 관리자측과 친밀하게 협동하고, 관리자측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원조를 받으면서 전력을 다해 최대 속도로 작업을 하면, 각 노동자 및 각 기계당 산출고를 평균 2 배정도로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1900년대 초) 미국 및 영국에서는 여러가지의 개혁론이 주창되고 있으나, ‘번영을 촉진하고, 가난을 없애며, 고난을 적게 하는’ 데 있어서 태업을 방지하는 것 보다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없다.

미국과 영국에서 근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관세·대기업의 지배권 통제·세습권의 통제·사회주의적인 과세 방법 등과 같은 것이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태업과 같은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태업을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직접적으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향상시키고 생활수준을 높이고 또한 나라전체 생산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 3) 태업의 원인

테일러는 노동자가 태업을 하는데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각 개인 또는 각 기계의 산출고가 증가하면, 그 업종에 속한 다수의 노동자를 실업에 빠뜨리게 된다는 생각—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 1811~7) 원인이다. 그리고 최근 자동화와 IT의 보급과 실업률의 증가와도 유사하다—이 노동자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오해이다.

둘째, 주먹구구식 관리법(rule of thumbs)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고의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작업을 느리게 하지 않으면 각자의 이익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셋째, 비능률적인 주먹구구식 방법이 모든 업종에 걸쳐 행하여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는 노력의 대부분을 낭비하고 있다.

17) F. Taylor, *과학적 관리법*, pp. 31~33.

#### 4)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의문과 답변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 다음 세 가지의 의문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첫째, 과학적 관리법의 원리와 여태까지 행해져 온 기존의 일반적 관리법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둘째, 과학적 관리법을 실행하면 다른 관리법에 비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가?

셋째, 가장 소중한 일은 회사의 사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총원하는 것이 아닐까? 유능한 사장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관리법을 실행하든지간에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맡겨두면 좋지 않겠는가?

가장 좋은 경제적인 방법은 일을 노동자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관리자들은 생각한다.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각 노동자로 하여금 될 수 있는 대로 노력하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입으로 전해 내려온 지식과 숙련 그리고 개인적인 솜씨가 효과적으로 발휘되게 하는 것, 즉, 바꿔말하면 스스로(initiative)하게 하고, 가능한 한 고용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게 하는데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한다”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서, 노동자가 해야 할 그리고 요구되는 갖가지의 성질을 충칭해서 말하는 것이다.

과학적 관리법이 과거의 관리법에 비해 훨씬 능률적인 이유는 노동자의 과업주도권(스스로 하는 것)과 관리자가 새로이 떠맡은 과업(계획)이 결부되어 있는 점에 있다.

#### 5) 경제적 인간관의 본질적 의도

테일러는 과거의 관리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그리고 자극받아’(initiative and incentive)하는 관리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 또는 관리자들로부터 강요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스스로 하고, 연구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러나 사실 근로자들이 항상 스스로 작업을 알아서 한다고 가정할 수가 없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해 주기를 원한다면 같은 직급의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것 이외에 무엇인가 ‘특별 장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장려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승진 또는 승급을 빨리 시켜 준다든지, 빠른 시간내에 홀륭하게 수행된 일에 대해서는 단위 임금을 높이거나 할증급이나 상여금을 준다든지, 노동시간을 짧게 한다든지, 환경이나 노동조건을 개선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 노동자에 대한 개인적인 배려나 친구로서의 접촉과 같은, 마음으로부터 부하의 행복을 바라는 친절심이 없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 한, 노동자가 스스로 일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 V.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비판

### 1. 테일러 당시의 노동조합과 기업주의 비판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본 테일러의 죄는 세상에는 ‘숙련을 요하는 작업’(skilled work)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한 그의 주장이었다. 육체노동에는 다만 ‘작업’(work)만 있는 것이다. 모든 작업은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 분석이 보여주는 대로, 그것이 수행되어져야 하는 방식대로 작업을 할 의사가 있는 어떤 노동자도 ‘일류시민’(first class man)이 되고, ‘최상급의 임금’(first class wage)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오랫동안 도제수업을 받은 숙련노동자가 받는 것과 같거나 또는 더 많은 것이다.<sup>18)</sup>

그 당시 미국의 노동조합들은 직업별 독점조합이었다. 이러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자격은 회원의 아들이나 회원의 친척에게만 한정되었다. 회원이 되려면 5년 내지 7년 동안의 도제수업(apprenticeship)을 받아야 했지만, 체계적인 훈련이나 작업연구는 없었다. 훈련이나 작업연구에 대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해야 할 작업에 대한 비밀을 지킬 것을 맹세했으며, 작업에 대해 비회원과 의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테일러의 주장, 즉 작업은 연구될 수 있고(to be studied), 분석될 수 있으며(to be analyzed), 또한 작업은 일련의 간단하고도 반복적인 동작으로 나눌 수 있고(to be divided into a series of simple repetitive motions), 각 동작은 하나의 옳은 방법(in one right way)으로, 주어진 최적 시간내에(in its own best time), 알맞은 도구(with its own right tools)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고 한 것은 노동조합에게는 치명적 공격이었다.<sup>19)</sup>

테일러는 노동조합을 뿐만 아니라 테일러의 주장, 즉 근로자를 일류의 시민으로 만들어 낭비한 임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소유주들의 감정을 해쳤기 때문에 20세기 초 기업주들과 관계를 개선하지 못했다. 테일러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전혀 쓸모 없는 존재였던 한편 소유주에 대해서도 나쁜 감정을 갖고 경멸하고 있었는데, 테일러는 소유주들을 욕심많은 ‘돼지들’(hogs)이라고 불렸다. 아마도 무보수 컨설턴트인 테일러에게 소유주들은

18) P. F. Drucker, Post Capitalist Society, p. 69.

19) Robert Kanigel, Ibid., p. 441. 1911년 브랜다이스는 “Scientific management seeks to ascertain and apply in every process the best attainable methods, practices, tools, and machines. It necessarily follows that all must be standardized. There is but one best way.”라고 주장했다.

욕심꾸러기로 보였을 것이다.

## 2. 인간관계론자들의 비판

엘튼 메이요(Elton Mayo, 1880~1949)와 하버드 대학의 동료들은 '여러가지 작업조건 아래서 일어나는 작업집단의 태도와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록펠러 재단의 자금지원을 받아 1927년에서 1947년까지 여러 실험을 실시했다(이 실험에 에드워드 데밍도 참여하였다). 그 결과 메이요와 동료들은 작업장에 있어서는 분업·공식조직·차별적 성과급 이외에 인간적인 요소와 개인의 사회적 관계, 즉 비공식집단(informal group)이 작업자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관계론의 주장 가운데 하나는, 작업과정내에 사회적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욕구에 관심있는 노동자들을 인간적·비공식적 배려로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 배치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 3. 조절이론가들의 비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선진 각국에서는 "테일러의 원칙들을 수정하자,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하는 움직임이 조절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sup>20)</sup> 이것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많은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대상황 또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사상이 적용되던 때와는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높아졌고 근로자의 지식수준이 높아졌던 것이다.

뉴턴의 물리학 사상과도 비교할 수 있는 테일러의 기계적 사상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시대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조절이론가들이 본 테일러리즘의 약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21)</sup>.

첫째, 생산성향상을 위해서는 경영통제가 필수적이라는 사상을 가졌다.

둘째, 최적의 작업공정이 있다는 생각은 공정개선의 여지를 없애 버렸다(여기서 카이젠의 길이 막혀 버렸다).

셋째, 사람에 대해 전반적인, 전인적인 접근이 아니었다.

넷째, 결함의 원인을 오직 사람에게서만 찾았다.

20) Regulation을 영어로 번역하면 '규제'라는 뜻이지만, 프랑스어로는 '조절'을 의미한다. 1970년 대 프랑스 경제관료들과 소장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창된 조절이론은 정통파 경제학이 현대 자본주의체제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프랑스의 보아예(R. Boyer), 아그리에타(M. Aglietta), 리피에츠(A. Lipietz), 미국의 피오르(M. Piore)와 세이블(C. Sabel) 등을 들 수 있다.

21) 이재규, 리엔지니어링과 카이젠, 21세기북스, 1994. p. 134.

다섯째, 계획과 집행을 분리하였다.

여섯째, 조직을 시스템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인식하지 못했다.

일곱째, 작업자를 고체가능한 부품으로 보았다.

#### 4. 리엔지니어링 제창자들의 비판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business reengineering)이란 용어를 확산시킨 것은 마이클 해머로서 1990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기고문 Reengineering Work : Don't Automate, Obliterate을 통해서 였다<sup>22)</sup>. 그러나 해머의 논문내용은 레이 호워드(Ray Howard)가 1985년 월 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논문 Don't Automate, Eliminate와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도 유사하다<sup>23)</sup>.

해머는 리엔지니어링을 새로운 기업혁신 선언(a manifesto for business revolution) – 이 표현은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The Communist Manifesto, 1848)을 통해 공산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와의 단절을 선언한 것을 모방한 표현임 –이라고 쓰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산업사회를 지탱했던 경제이론들인 아담 스미스의 분업이론, 분업이론을 경영현장에 적용한 경영방식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앙리 페이욜(H. Fayol)의 경영관리 원칙, 헨리 포드의 대량생산방식, 그리고 관료주의에 의한 계층형 조직을 거부하는 대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표 1〉 참조).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조직변화를 추구하는 전략과 용어들이 범람하였다. 예를 들면, 리스트럭처링,<sup>24)</sup> 리디자인,<sup>25)</sup> 리씽킹,<sup>26)</sup> 다운사이징, 프로세스 이노베이션<sup>27)</sup> 등이 있다. 따라서 비슷한 내용의 용어들이 난무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자들, 경영컨설턴트 그리고 학계의 연구자들은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을 또 하나의 경영 유행어(management fad) 정도로 무시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22) M. Hammer, Reengineering Work : Don't Automate, Obliterate, HBR, Vol. 68, No. 4, July-August, 1990.

23) Ray Howard, "Don't Automate-Elininate", WSJ, October 21, 1985.

24) G. Donaldson, Corporate Restructuring,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25) T. Davenport, et al., "The new industrial engineer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siness process redesign", Sloan Management Review, Vol. 31, No. 4, Summer 1990, pp. 11-27.

26) R. Tomasko, Rethinking the Corporation, AMACOM, 1993.

27) Thomas H. Davenport, Process Innovation : Reengineering Work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3.

&lt;표 1&gt;

과학적 관리와 리엔지니어링의 비교

	과학적 관리	리엔지니어링
직무	분업	통합
프로세스	순차적 직렬적	동시적 병렬적
직업분류	양극적	혼합적
작업경계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품질	평균(기준)	극단적 추구
작업표준	표준화	다양
접근방식	세분화 파편화	전반적

자료 : Reengineering: Implementation Perspective, Hammer & Co., 1994. 3. 18

## VI. 지식사회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테일러의 사상

### 1. 경영 혁신으로서 과학적 관리법

#### 1) 혁신 사상의 뿌리 – 슘페터

슘페터(Joseph Schumpeter, 1883~1950)의 의하면, 자본주의의 역사적 과정은 단순히 인구나 자본의 증대에 따른 연속적인 변화(성장)뿐만 아니라, 비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생산 방법의 변혁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자본주의 과정은 생산방법의 끊임없는 변혁의 역사이다. 이러한 주장은 마르크스의 역사발전에 관한 사상과도 일치한다. 슘페터와 마르크스가 다른 점은, 슘페터는 이와 같은 비연속적 창조적 변혁의 프로세스를 성장(growth)과 구별하여 발전(development)의 메카니즘을 분석 해명하는 일반이론, 즉 발전의 모델을 제시한 데 있다.

슘페터는 발전모델의 중심에 기업가(entrepreneur)라는 개념을 설정한다. 창조적인 변혁이라는 비합리적인 요인을 '혁신=신결합'의 등식에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혁신(innovation)은 새로운 상품·새로운 생산방법·새로운 시장·새로운 원료·새로운 조직–해머가 주장하는 리엔지니어링은 기능별 분업조직을 프로세스별 통합조직으로 바꾸는 조직혁신이다–의 개발 등 온갖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sup>28)</sup>.

이것은 과학적 관리가 그 당시 기준으로 혁신이고, 대량생산방식 또한 혁신이며, 최근의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과 프로세스 혁신도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의미한다.

28) J.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Harper & Row, 1950. p. 83.

## 2) 작업 과학의 수립 - 혁신

그 당시 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금까지 과학적 관리에 대해 설명했는데 과학적 관리에는 과거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몇 가지의 요소는 이전에 없었던 결합을 이루고 있다. 즉, 넓은 지식을 수집·분석하고 분류해서 규칙을 만들고, 그것으로 체계적 과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와 관리자가 각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양자 사이에 업무를 분담하고, 기존의 관리방식에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양자가 친밀하게 우호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일 조차도 대개의 경우, 점점 발달해 온 과학적 수법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실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sup>29)</sup>.

이것은 습페터가 주장하는 혁신 가운데 새로운 생산방법에 해당된다.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은 결코 단일한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 결합을 말하는 것이다.

## 3) 최적 작업방법과 최적 프로세스의 추구

숙련된 삽꾼이 모래를 퍼는 일을 살펴보면, 한번에 삽질하는 무게가 일정할 때 하루의 작업량이 가장 많다. 베들레헴강철회사에서 그때까지 삽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각각 모양과 무게가 다른 삽을 가지고 있었으며, 광석을 뜰 때는 한 삽의 무게가 30파운드에 달한 적도 있고, 같은 삽으로 석탄을 뜰 때는 4파운드 밖에 안된 적도 있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무거워서,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가벼워서 하루분의 일을 끝내지 못한 적도 있었다. 그렇다면 일류 노동자의 1일분의 일의 양은 한 삽의 무게가 5, 10, 15, 20, 25, 30 또는 40파운드 가운데서 어느 것이 가장 적당할까?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실험을 거친 뒤가 아니면 안된다. 먼저 일류의 삽꾼을 2~3명 골라 특별 임금을 지불하고 충실히 일할 것을 약속받았다. 실험의 관찰자는 노동자가 삽의 무게를 여러가지로 바꿔 가면서 일한 결과를 여러 주간에 걸쳐 관찰했다. 그 결과, 한 삽의 무게가 약 21파운드일 때 하루의 일의 양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물론, 한 삽이 언제나 정확하게 21파운드가 되도록 뜰 수는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삽질 연구 결과에 따라, 베들레헴강철회사는 노동자가 스스로 삽을 골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8~10종의 삽을 준비하고, 삽질하는 대상(예, 모래, 석탄, 광석 등)에 따라서 각각 다른 삽을 사용하도록 했다.

새로운 삽질방식을 실행하고 난 3년후의 성적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1톤당 평균작업비용 0.032달러라는 찬 경비는, 사무실 및 공구실의 경비·노무관리주임·직공장·사무원·

29) Robert Kanigel, "A Science of Work?", Ibid, pp. 325-334.

〈표 2〉 일반적 관리법과 과학적 관리법의 비교

	옛날방식	과학적 관리방식
작업장내 노동자수	400~600명	140명
1인 1일의 평균 작업 톤수	16톤	59톤
1인 1일의 평균 임금	1.15달러	1.88달러
1톤의 평균작업 비용	0.072달러	0.032달러

자료 : 과학적 관리법, p.112

시간연구 담당자 등의 급료도 포함된 것이다. 그 해에 새로운 방법에 의해 절약할 수 있었던 총액은 36,417.69달러에 달했다.

그 당시 테일러의 이러한 주장과 사상은 최근 해미와 토마스 데이븐포트 등이 주장하는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기업의 성과를 X 퍼센트가 아니라 X의 몇배로 향상시킨다는 것-이상으로 혁명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2. 지식에 기초한 전문 경영자 제도의 도입

테일러는 공장에서의 권한은 '소유'(ownership)를 기준으로하여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권한은 우월한 지식(superior knowledge)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테일러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전문경영자'(professional manager)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문경영자는 19세기의 자본가들에게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으며, '과격한 이단'이었던 것이다. 테일러는 자본가들로부터 '말썽꾸러기'(trouble moker) 그리고 '사회주의자'(socialist)라는 등 격렬하게 공박당하였다. 실제로 테일러의 가장 친밀한 제자나 동료들 중 특히 바트(Carl Barth, 1860~1939)는 그의 오른팔 격이었는데, 공공연하게 자기 자신들을 「좌익」이라고 선언하였으며 강력한 반자본주의자들이었다.

테일러의 주장, 즉 모든 육체적 작업은 그것이 숙련을 요하는 것인든 또는 단순작업이든 간에 지식을 적용함(application of knowledge)으로써, 분석되어지고 제조직될 수 있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 눈에는 터무니 없는 일로 보였다. 사실 장인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무슨 비법으로 생각한 것은 아주 오래된 사실이었다. 작업에 대한 지식의 적용은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sup>30)</sup>

30) 테일러 시대에는 생산성(productivity)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용되지 않았다. 사실 제2차 세계 대전 전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할 때까지만 해도 생산성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다. 가장 권위있는 영어 사전인 콘사이스 옥스포드에도 1950년까지는 여전히 생산성이라는 용어를 현대적 의미로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 3.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막은 테일러

1930년경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 노동조합과 지식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 선진국을 휩쓸었다. 그 결과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는 어느 정도 ‘부르주아’가 되었다. 제조업의 블루칼라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가 ‘자본가’보다도 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진정한 수혜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1900년까지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고도 선진국에서 마르크시즘이 완전히 실패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sup>31)</sup>.

이것은 또한 1918년 이후, 있는 것이라고는 빈곤과 굶주림과 실업뿐이었던 좌절의 중부 유럽 국가들에서조차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설명해 준다. 이것은 또한 왜 미국의 대공황(1929)이 – 레닌과 스탈린 그리고 모든 마르크스트들이 확신하고 기대했던 –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해명해 준다.

경제학자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는 1944년 그의 저서 「예속의 길」(The Road to Serfdom)에서 사회주의는 불가피하게 노예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라는 것은 없으며, 다만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44년 하이에크는 마르크시즘이 살아남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반대로 하이에크는 마르크시즘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시했으며, 그리고 살아남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었다. 그는 40년 후 1988년에 쓴 마지막 저서 「치명적 환상」에서 마르크시즘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up>32)</sup>.

### 4. 지식사회를 연 테일러

지식이 미래 사회의 핵심 생산요소가 되는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지식사회라는 용어를 지어낸) 드러커는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이 가장 핵심적인 생산요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이 이렇게 중요성을 얻게 된 것은 지식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식의 발전은 3단계를 거쳤다.

첫째 단계는, 지식은 인간의 내부에만 있었다. 고대 중국의 현인들이 도(道)를 박는다거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 지식은 자신의 내면을 향한 것이었다.

둘째 단계는, 지식이 인간의 내면을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기술과 도구로 변환된 것이다. 그것이 곧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이다. 산업혁명의 결과, 증기기관·엔진·자동차 등이 개발되고 노동생산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켰다. 이를 드러커는 생산성 혁명

31) P. F. Drucker, Post Capital Society, p. 38.

32) F. Hayek, The Fatal Concei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productivity revolution)이라 명명했다. 이때부터 지식은 인간의 내면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로 활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그 중요성을 평가받게 되었다. 이 당시의 지식의 의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부분 사람들에게 기술(technology)이 의미하는 바 그것이며, 또한 기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다. 1881년 테일러는 최초로 지식을 작업 연구와 시간 연구에 적용하였고, 그리고 작업을 과학화하였다.

지식의 발전 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지식이 다른 지식들과 결합한 때 부터이다. 이를 드러커는 경영혁명(management revolution)이라 명명했다. 지식이 다른 지식들과 결합하여 (옹용되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게 되면서(창의성이 중요하게 된 이유이다), 인류는 또 한번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 VII. 결 론

과학적 관리법의 4원리 중 둘째 · 셋째 · 넷째는 과거의 관리법에 있어서도 대부분 조금씩은 존재하고 있지만, 과학적 관리법에서 주장하는 과학에 의한 방법 즉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에 따른 혁신은 테일러 사상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불리워지는 테일러의 이론은 처음에 노동자는 물론, 노동운동가들로부터도 심한 비난과 함께 '노동력 착취의 이론'이라고 혹평을 받았지만, '합리적 생산관리'의 기초와 인간노동력에 의한 대량 생산기술의 근간을 제공하여 현대산업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공헌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1902년 그는 '더 이상 유상노동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는 그 생애의 나머지 부분을 특정 기술에가 아니라 그가 진정 인류전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 새로운 원칙을 옹호하는데 바쳤다<sup>33)</sup>.

그러나 테일러는 살아있는 동안 명성을 누리기 보다는 비난받았고 곤혹이 되었다. 그것은, 앞서 말한대로, 노동자 쪽에서 뿐만 아니라 자본가 쪽으로 부터도 신랄한 공격을 받았다. 테일러에 대한 일부 비판들은(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지식수준이 높아진)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테일러는 분명 산업사회에 주춧돌을 놓은 위인이었다.

테일러의 연구와 업적은 오늘날에도 유용하다<sup>34)</sup>. 드러커는,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테일러를 매장하는 것도 아니고, 테일러를 다시 찬양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테일러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테일러가 거의 10여년 전에 육체 노동과 육체 근로자에

33) F. B. Copley & Frederick W. Taylor, Revolutionist, Privately Printed 1916.

34) P. F. Drucker, "The Coming Rediscovery of Scientific Management", The Conference Board Record, June 1976, pp. 23~27.

35) P. F. Drucker, "The Coming Rediscovery of Scientific Management", The Conference Board Record, June 1976, pp. 23~27.

대해 했던 것(시간연구·과업연구 등)을 오늘날의 자식 근로자(knowledge worker)와 지식 작업(knowledge work)에 대해서도 꼭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sup>.

### 참 고 문 헌

1. 김식현·김종진·박경규, 경영학사,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2.
2. 이재규, 리엔지니어링과 카이Zen, 21세기북스, 1994.
3. Copley, F. B. & Taylor, Frederick W. Revolutionist, Privately Printed 1916.
4. Davenport, Thomas H., and James E. Short, "The new industrial engineer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siness process redesign", Sloan Management Review, Vol. 31, No. 4, Summer 1990. pp. 11-27.
5. Davenport, Thomas H., Process Innovation: Reengineering Work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3.
6. Donaldson, Gordon., Corporate Restructuring,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7. Downs, Robert B., Books That Changed America, New American Library, Inc., 1970.
8. Drucker, P. F., Post Capitalist Society, 이재규(역), 한국경제신문사, 1993.
9. \_\_\_\_\_, "The coming of the New Organization", HBR, January-February 1988.
10. \_\_\_\_\_, The New Reality, Harper, 1989. p. 266.
11. Ford, Henry, My Life and Work, Detroit, 1926.
12. Hammer, Michael, and James Champy, Reengineering the Corporation : A Manifesto for Business Revolution, New York : Harper business, 1993. 안중호 외(역).
13. Hammer, Michael, "Reengineering work: don't automate, obliterate", Harvard business review, Vol. 68, No. 4, July-August 1990.
14. Hayek, F., The Fatal Concei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15. Howard, Ray, "Don't Automate-Elininate", WSJ, October 21, 1985.
16. Kakar, Sudhir, Frederick Taylor : A Study in Personality and Innovation,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70.
17. Kanigel, Robert, The One Best Way : Frederick Winslow Taylor and The Enigma of Efficiency, Viking Penguin, 1997.
18. Lipietz, A., "Regulation Approach and Capitalist Crisis in the 90's : Alternative Propositions", Paper for 38th Annual conference of the Japan Society of Polit-

- cal Economy, Yokohama, October 1990.
19. Passos, John Dos, The Big Money, Signet Classic, 1969.
20. Pfeffer, J., "Will the Organization of the Future make the Mistakes of the Past?", Frances Hesselbein, et al. (eds) The Organization of the Future, Jossey-Bass, 1997.
21. Sampson, A., The Company Men, Harper, 1994.
22. Schumpeter, Joseph,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Harper & Row, 1950.
23. Tylor F. The Scientific Management, 1911. 신영철 역, 한국능률협회, 1988.
24. Toffler, Alvin, The Third Wave, 1981. 이규행(역), 한국경제신문사.
25. Tomasko, Robert M., Rethinking the Corporation, AMACOM, 1993.
26. Urwick, L., The Golden Book of Management, Newman Neame Limited, 1953.
27. Wrege, Charles D. & Greenwood, Ronald G., Frederick W. Taylor: Scientific Management, Richard D. Irwin, 1991.

## Frederick Taylor : Life and Management Philosophy —from the knowledge society perspective—

Lee, Jae-Kyoo\*

### Abstract

Frederick W. Taylor was the founder of Scientific Management. But he was not only blamed by employers and craft unions in life, but also criticized by Human Relationists, Regulation Theory, and Reengineering School after death, because of misunderstanding about the nature and intentions of Scientific Management. Scientific Management was inevitably known as alienation and mechanization of human beings, and deprivation of labor.

The real intention of Scientific Management was to give decent money to workers and make them first class men through enhancing the labor productivity and to lower the burden of labor cost for employers in result. The new meaning of Scientific Management in the knowledge society is to increase knowledge(or knowledge worker's) productivity through applying the knowledge to another knowledges to create new knowledge. To do so, we have to use work study and time study methods done in industrial society by Scientific Management School.

Key-Words : Scientific Management, labor productivity, knowledge productivity,  
knowledge society

\* Professor Taegu University, Department of Management.

# 러·중 기업개혁제도의 경영사적 의미분석\*

A Historical Study on the Process of Russian and Chinese Business Reforms

曹圭珍\*\*

## 目 次

I. 서론	2) 모택동의 중국식 사회주의 기업관
II. 러시아(구소련)의 기업개혁 변천사	2. 화국봉과 등소평의 기업개혁
1. 신경제정책과 레닌·스탈린의 사회주의 기업관	1) 화국봉과 등소평의 기업개혁 기조
2. 후루시초프와 브레즈네프의 기업개혁	2) 실용주의노선의 기업개혁
3.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1) 이윤유보제 (2) 이개세제도 (3) 청부경영체·임대경영체
4. 엘친의 기업개혁	3. 등소평·강택민의 기업개혁
III. 중국의 기업개혁 변천사	N. 결론
1. 자유자제도와 모택동의 사회주의 기업관	
1) 자유자제도	

## I. 서 론

과거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 하에 있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 국가에게도 대외개방을 실시하자, 양국은 무한한 시장잠재력 및 풍부한 부존자원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기업의 커다란 관심대상이 되었다. 국제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진출기업의 진출대상국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데, 대부분의 진출기업은 진출대상국 기업인 러시아나 중국기업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기업들의 성장과정 및 제도적 환경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하여, 어떤 진출기업은 양국기업에 대해 현재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기업을 운영한다하여 서구 자본주의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반해, 어떤 진출기업은 양국기업이 과거에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수십 년간 경험하였다하여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 하의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진출기업은 현재 양국기업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 논문은 1998년도 광운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연구소 책임 연구원.

그러나, 실제의 양국기업은 경영방식에 있어서 서구 자본주의국가의 기업과 동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이론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과도 동일하지 아니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양국기업은 현재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과거에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장기간 기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서구 자본주의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반해, 어떤 진출기업은 양국기업이 과거에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수십 년 간 경험하였다하여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 하의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진출기업은 현재 양국기업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의 양국기업은 경영방식에 있어서 서구 자본주의국가의 기업과 동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이론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과도 동일하지 아니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양국기업은 현재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과거에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장기간 기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서구 자본주의기업과 동일하지 아니하고,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하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기업개혁을 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원칙론에 의한 기업과도 동일하지 아니하다. 그런 의미에서, 양국의 기업개혁제도에 대한 일련의 변천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현재 양국기업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논문은 양국의 행정부가 실시한 일련의 개혁제도에 대해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그 특성을 해석함으로써, 각 기업개혁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경영사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장의 서론에 이어 본논문의 2장에서는 러시아의 기업개혁을 대상으로 하고 3장에서는 중국의 기업개혁을 대상으로 하여, 각 기업개혁의 특성이 주는 경영사적 의미를 각각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본논문의 학문적 유용성과 함께 실무적 유용성을 밝히면서 결론을 맺을 것이다.

## II. 러시아(구소련)의 기업개혁 변천사

### 1. 신경제정책과 레닌·스탈린의 사회주의 기업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표방하던 구소련의 기업개혁은 1921년부터 실시되었던 레닌의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 NEP)에서부터 시작된다. 레닌 시대의 신경제정책이란 레닌 초기의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배급제도를 골자로 하는 전시공산주의(戰時共產主義)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라는 명목 하에서 사회

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에서 일정한 부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자본주의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에 의해 대규모 중공업기업, 은행, 외국무역회사, 천연자원 관련기업 및 통신·교통기관과 같은 국가주요기업은 국가가 관掌한 채, 나머지 농업, 상업 및 소규모 제조기업은 사영화하였다. 또한 화폐기능을 부활시키고 농산물 강제징발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 신경제정책은 레닌 사후 무효화되고, 구소련에는 스탈린에 의하여 다시 엄격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가 부활하였다<sup>1)</sup>.

레닌의 집권기간 중 5년간의 신경제정책 시대를 제외한 전시공산주의시대나 레닌 사후의 스탈린시대에는, 다음과 같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전형적인 구소련 기업모델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 국가가 기업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은 주로 국가기금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은행 또는 신용관계를 통해서도 조달되었다. 이를 자금관계 또한 국민경제적으로 계획화되어 있었으며, 기업은 이들 재원으로부터 받은 고유의 기본기금과 유동자금으로 운영되었다. 기업은 자금원을 국가기금에 의존하면서 기업활동에 따른 수입을 자체기업에 적립시키지 아니하고 국가기금에 납부한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은 국가기금과 국가계획에 종속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경영은 일정한 국가계획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계획은 국가계획과 밀접한 연관을 맺었다. 기업계획은 국가계획의 일부 구성부분에 불과하였으며, 기업은 국가가 정한 생산량지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기업의 설립 및 폐쇄는 국가가 결정하였으며,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가격은 국가고시가격으로 책정되는 등, 기업운영의 중요사항은 모두 국가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

둘째, 기업경영은 기업장의 단독책임제를 특징으로 하였다. 이 때 기업장은 원칙적으로 상부기관에 의해 임명되며, 국가계획에 기초하여 종업원들의 집단적 협력을 받아 기업활동을 지도·관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장은 기업활동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의무를 가진 상태에서 단독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그의 권한이란 국가계획이 정한 생산량지표를 달성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의 임면권도 국가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의 권한을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종업원은 종신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의 임금은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에 근거하여 국정 봉급정책표에 따라 결정되었다<sup>2)</sup>.

## 2. 후루시초프와 브레즈네프의 기업개혁

1) 둠 1989, 148-174; Barksdale/Kelly 1978, 264-265; Kosta 1984, 38-41; Heller/Nekr-ich 1981, 191-198.

2) 지역정보센터 1996, 50-52; 이윤 1993, 75-78; Barksdale/Kelly 1978, 265-268; Kosta 1984, 33-38, 41-56; Abalkin/Bystrizkaya 1986, 47-54; Lösch 1987, 35-41.

스탈린 사후 집권한 후루시초프는 1957년 구소련에서의 두 번째 기업개혁을 단행하였다. 후루시초프는 기업을 비롯한 생산수단이 완전히 국유화되고 경제조정이 국가계획에 의해 획일적으로 이루어 지던 스탈린 시대의 중앙집권적인 통제중심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중앙 정부의 공업부 등을 없애고 그 대신 전국을 104개의 공업지역으로 나누는 지방분권화를 단행하였다. 후루시초프는 기업을 비롯한 생산수단이 완전히 국유화되고 경제조정이 국가계획에 의해 획일적으로 이루어 지던 스탈린 시대의 중앙집권적인 통제중심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중앙정부의 공업부 등을 없애고 그 대신 전국을 104개의 공업지역으로 나누는 지방분권화를 단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획일적인 국가계획의 경직성은 많이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후루시초프는 이로 인해 실각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즉, 공업별로 국가계획의 수행이 어렵게 되었고, 지역간 그리고 산업간 종복되는 혼란으로 기업 관리와 경제행정이 크게 복잡해지는 등의 다른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 후루시초프 시대의 지방분권화는 거시적인 면에서의 개혁이라고는 볼 수 있을 뿐, 기업내부의 경영에 대한 미시적 측면에서의 개혁은 거의 없었다<sup>3)</sup>.

후루시초프 때까지는 제품의 생산량만을 중시하고 제품의 질이나 판매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량한 제품이 생산되기가 허다하였고 생산된 제품은 판매되지 않아 제품체화현상이 발생하였다. 후루시초프가 실권한 후 1964년에 집권한 브레즈네프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업을 중심대상으로 하여 개혁을 실시하였다. 물론 그의 개혁도 기업을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계획을 통하여 국가경제를 조정한다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

첫째, 기업에 대한 평가지표로서 실제로 소비자에게 얼마나 판매되었는가를 측정하게 하는 판매액지표를 사용하였다. 과거에는 기업에서의 생산량만을 측정기준으로 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양적 기준만을 기업평가지표로 사용하였는데, 판매액이라는 화폐액수의 지표를 사용하는 개혁을 통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는 질적 기준의 지표를 채택하였다. 이리하여, 기업이 윤개념이 바뀌게 되었다. 개혁 전에는 국가기금에 전입되어야 할 목표액을 산정하기 위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국가 계획에 의해 지표로 미리 책정되었던 사전적 이윤개념이, 개혁 후에는 실제로 판매된 금액에서 실제의 생산비용을 제한 사후적 이윤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개혁 전의 이윤개념에 의하면, 하나도 판매되지 아니하고 또 생산비용이 무한정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도, 생산량만 국가 계획의 기준치보다 초과달성을 하면 초과생산량에다 단위당 기준이윤을 곱한 만큼의 기업이윤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윤을 국가기금에 전입시키면, 다음해는 지난해의 이윤실적에 근거하여 기업운영자금을 국가기금으로부터 할당받았다. 그러나, 개혁 후에는 실제

3) 돔 1989, 350-375 ; Lösch 1987, 41-44 ; Heller / Nekrich 1981, 232-249.

판매액이 실제비용보다 커야 이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개념은 상당히 경영자의 경영능력과 제품판매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이 국가에 귀속된 상태에서 기업운영이 국가계획에 의한다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기본적인 틀은 과거와 전혀 변함없었다. 단지 30 개 이상이던 계획지표의 수가 10개 정도로 대폭 줄여, 기업의 자율성은 그만큼 확대하였다.

둘째, 이러한 판매 후 기업이윤에 대한 기업 내에서의 유보를 허용하였다. 즉, 기금사용료, 자원사용료, 은행 신용에 대한 이자지불 및 국가계획상 정해져 있는 설비투자에 필요한 계획적 지출분과 같은 기업의 국가에 대한 의무적 납입분을 제외하고는, 기업이윤 중 나머지분을 기업에 적립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각 기업은 판매액에서 생산비용을 제한 기업이윤에 대해 평균 40% 정도를 기업에 유보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국가가 무상으로 지급하던 원재료, 기계, 설비나 자원에 대하여, 개혁 후에는 기업으로 하여금 일정비율의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여 생산자원에 대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였던 것이다. 또한 기업유보금 중 상당부분을 물질적 장려기금이나 사회문화·주택건설기금에다 할당하도록 하여, 기업 종업원집단이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도록 하였다. 한 마디로 이는 기업이 국가기금을 이용하되, 자체의 판매수입에 의한 이윤의 일정부분을 기업의 확대재생산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기업운영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업개혁으로 말미암아 생산량은 증가되었으나, 국가로부터의 기업계획에 대한 지표설정 및 제품에 대한 국가고시가격으로 통제하겠다는 계획경제 체제의 기본틀은 바뀌지 않아, 오히려 지하경제가 커지는 역효과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였다.

세째, 기업을 대규모화하고 동일산업 및 동일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을 결합시켜 콤비나트(Kombinat)를 창설하였다. 그리하여, 생산의 기초단위를 콤비나트로 하여 생산에 대한 모든 문제를 대규모화된 콤비나트에 집중시키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산업부문마다 관리구조를 명확히 하여 부문내 각 관리수준의 과제나 기능을 명확히 하였다. 즉, 기업규모의 확대와 기업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생산의 집중·전문화를 통해 제품의 질 향상과 생산비용의 절감 및 연구개발의 촉진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로서는 기업의 통합을 통한 국민경제전체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이점도 가지게 되었다. 이 외에도 콤비나트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위해 콤비나트간의 연합체인 기업연합(Obyedineniya)도 만들었으나, 기업연합의 유기성은 매우 느슨하였다. 즉,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업간 결합은 주로 콤비나트를 중심으로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sup>4)</sup>.

4) 이윤 1993, 78-85; 김익수 1992, 37-40; Skurski 1983, 24-43; Nove 1977, 79-81; Barksdale/Kelly 1978, 268-272; Götz-Coenenberg/Höhmann/Seidenstecher 1988, 13-24; Welfens 1988, 2-13).

### 3.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1985년부터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그라스노스트(개방)라는 가치 아래, 그전까지 폐쇄적이었던 구소련 경제를 완전히 세계시장경제에 개방하였을 뿐 아니라 기업도 대폭적으로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종업원집단이 기업경영에 동수로 참가하는 제한 하에서 민간인도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소유의 다양화를 인정하는 사회주의체제의 틀을 깨뜨리는 혁신적인 개혁까지도 단행하려고 하였지만, 이를 실행하기 전에 소연방이 해체되는 관계로 그러한 혁신적인 개혁은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고르바초프 시대에 실제로 이행된 기업개혁이라 함은 기업소유에 대한 개혁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기업의 국가소유라는 사회주의의 틀 안에서 기업의 경영개혁 및 대외개방만을 말한다.

첫째, 기업경영개혁의 주내용은 기업외부로는 국가계약체를 실시하는 것이고, 기업내부로는 자기자금조달체와 자기관리체를 실시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외부적으로 국가와 계약한 목표액에 대해, 내부적으로 국가재정으로부터 독립된 자기자금을 이용하여 종업원집단은 자주적인 의사결정으로 기업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외부적으로 국가가 정해준 목표판매액에 대해, 내부적으로 기업경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국가기금의 지원에 의한 뿐 아니라, 국가계획에 의한 지침에 의해 통제를 받았었다. 그러나, 개혁 후 기업은 설비투자, 임금지불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기자금의 조달을 기업의 수입에서 충당하였는데, 기업은 이를 통해 국가로부터 기업운영 면에서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기업은 자기자금조달의 중요한 원천으로 자신의 감가상각비를 사용하였는데, 종래에는 감가상각비의 30%만이 기업에 남고 나머지는 국가기금으로 전입되던 것을, 개혁 후에는 국가기금에의 전입 없이 거의 전액을 기업에 유보하게 하였다.

둘째, 위의 3가지제도를 기초로 하여, 기업은 그전까지의 국가가 일방적으로 세운 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만 하는 수동적 경영에서 벗어나 자주적 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자주적 경영이란 기업의 소유는 국가가 하되 기업의 경영은 종업원집단이 하는 경영형태를 말하며, 이는 곧 사회주의적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을 통해 자주적 경영을 목표로 한다고는 하였지만, 기업은 생산액지표, 이윤, 외화수입 등에 대한 경영계획을 세울 때 국가와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혁 후에도 국가는 실제로 있어서 기업을 간접적으로 통제하였다. 또한 기업은 국가가 주문하는 물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장기경제지표를 세우면서 기업의 임금이나 종업원 동기유발정책 등에 대해 포괄적인 지침을 내림으로써, 기업은 개혁 후에도 국가로부터 간접적으로 통제를 받아야만 되었다. 게다가 국가가 기업을 소유할 뿐 아니라 상당수의 주요 제품이 정부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주적 경영개혁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입장에서 본다

면 매우 제한된 자주경영형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세째, 기업개혁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협동조합기업과 임대기업 및 개인기업의 탄생을 들 수 있다. 협동조합기업은 3인 이상의 조합원이 자산과 정관을 가진 상태에서 국가에 등록만 하면 기업창립이 허용되었으며, 유통부분에서 주로 설립되었다. 협동조합기업은 국유기업에서의 국가주문제품 이외의 생산물을 자유로운 시장가격으로 국유기업의 유통경로에 따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졌으나, 대부분 소규모이었기 때문에 국가경제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별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또한 임대기업은 과거 국유기업의 종업원집단이 도산에 대한 책임을 진 상태에서 국가로부터의 재정보조가 없다는 조건에 대한 종업원전체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만, 국가가 종업원집단에게 그 기업을 임대해주는 기업형태이다. 경영권은 완전히 종업원집단에게 주어지며, 임대기업은 국가에 임대료와 세금만 내면 된다. 사회주의환경에 익숙한 구소련 종업원들의 안정된 고용에 대한 선호와 기업도산으로 인한 실직 우려 때문에, 이 기업형태도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확신하는 몇 개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기업은 타인의 노동력을 고용하지 못한다는 제한 때문에, 아주 소규모로 경작하는 농장을 비롯하여 미장원이나 식당 등의 개인서비스 부분에만 한정되었다. 그리하여, 이 3가지의 기업형태는 국가경제전체에서 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의 국가소유라는 사회주의체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네째, 구소련의 개방과 맞물린 개혁은 오히려 여태까지의 폐쇄정책으로 가리워졌던 이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소비자욕구에 대한 미흡한 충족과 비효율적인 생산성을 그대로 나타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인적 자본축적을 금지한 사회주의이론에 의해 개별적으로 화폐를 축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혁 전까지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할 만한 여유자금이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업이 국가에 소유된 관계로 국가가 기업을 폐쇄할 때까지 도산되지 않는다는 비효율적인 기업관으로 제품의 질은 서구제품에 비해 떨어졌으며, 모든 노동인구를 취업시키고자 하였던 정책에 의한 과다한 임금지불로 인하여 제품가격이 그 수준의 서구제품보다 매우 높아, 구소련기업의 제품은 국내시장에서조차 경쟁력이 없게 되었다. 대외개방을 통하여 세계시장경제에로 편입된 상태에서는, 대외개방을 통하여 구소련시장에 진출한 우수한 서구제품과 경쟁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하든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품가격을 그만큼 낮게 책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부족한 여유자금과 외국제품에 대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소련기업의 제품수준은, 구소련소비자로 하여금 오히려 서구제품만을 선호하게 할 정도로 자국제품에 대한 구매력을 더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내시장에서만이라도 경쟁력을 가지는 제품을 위한 새로

운 시설의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그간의 개혁을 통하여 일정부분의 이윤에 대한 기업유보가 허용되었더라도 그 적립규모는 시설투자를 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즉, 기업은 대외개방 후 국내시장에 들어온 서구 제품에 경쟁할 만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를 구입할 축적자금은 매우 부족하였다. 그 결과 구소련기업은 대외개방으로 인하여, 기업의 혁신적 개혁으로 인한 체질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판매액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리하여, 개혁을 통하여 국가기금 및 국가계획으로부터 독립한 기업은 경쟁성을 잃은 자사제품의 판매감소로 인하여, 이윤창출을 통한 기업성장을 커녕 원료비 및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난은 생필품 생산기업의 생산량감소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이는 일부소비자 및 유통기업의 매점매석행위를 동반하게 하여, 대다수 소비자들로 하여금 텅빈 가게에서 부족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경제전체의 일시적 마비현상을 가져왔다<sup>5)</sup>.

#### 4. 엘친의 기업개혁

구소련해체 후 1992년 러시아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택하면서, 엘친은 다음과 같이 국가가 소유하였던 기업을 사유화하는 기업개혁을 단행하였다.

첫째, 체제변환 후 러시아기업은 천연자원개발과 관련된 기업이나 주요 군수관련기업 및 기간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제외하고는 민간에게 사유화되었는데, 사유화의 형태는 기업의 대소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종업원 수가 200인 이하이고 고정자산액이 100만 루블 이하인 소기업은 경매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사유화하도록 하고, 종업원 수가 1,000인 이상이고 고정자산액이 5,000만 루블 이상인 대기업은 모두 주식회사로 전환한 이후 주식매각을 통해 사유화하도록 하였으며, 중간형태인 중규모기업은 경매, 입찰 또는 주식매각 중에서 종업원집단의 결정에 따라 선택하여 사유화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종업원집단에 의한 선택적 사유화의 경우, 독립적인 재무제표를 운영하고 있고 고정자산 규모가 1,000만 루블 이상이거나 종업원 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유화 대상기업이 과거에는 대기업의 하부단위였을지라도 대기업이나 다른 하부단위와 관계없이 별도로 사유화될 수 있었다.

둘째, 러시아기업의 사유화는 대규모기업과 소규모기업이 서로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모든 기업에 있어서 종업원의 우대조치가 이루어졌다.

먼저 대규모기업 경우에 있어서의 주식회사를 통한 사유화방법은 바우처(voucher)라는 증서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전국민에게 1만 루블의 바우처가 1매씩 분배되었다. 러시아인

5) 이윤 1993, 85-95; 정여천 1994, 11-27, 68-71; Ennew/Filatotchev/Wright/Buck 1993, 21-33; Bauer 1989, 6-31; Brahm 1989, 5-17; Buchholz 1991, 220-223; Bohnet/Jaehne 1989, 88-92.

은 누구나 분배된 바우처를 주식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주식회사화된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이 바우처는 매매가능하며, 바우처소지자는 92년 10월부터 94년 6월까지 주식회사로 전환된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여기서 사유화 대상기업의 종업원집단이 바우처를 이용하여 자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기간 후에도 주식구입이 가능하도록 종업원에게 우대조치를 하였다. 즉, 러시아의 종업원은 체제변환 후 자기 바우처의 처분형태에 따라 종업원으로 남을 수 있고 주주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종업원우대조치는 기업이 사유화할 때 아래와 같은 3가지의 종업원 우대조항 중 하나를 종업원이 선택하도록 해야하는 면에서도 나타났다. 첫 번째 선택사항은 사유화대상 기업주식의 25%를 그 기업의 종업원집단에게 의결권없는 주식의 형태로 무상으로 분배해야 할 뿐 아니라, 기업주식의 10%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 30% 할인가격으로 그것도 3년간 분할지불 가능하도록 기업측이 종업원집단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선택사항은, 사유화되는 기업의 종업원집단이 그 기업주식의 5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170% 할증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기업측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선택사항은 기업의 고정자산액이 100만에서 5,000만 루블 이하에 해당될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종업원집단의 합리화계획이 사유화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화 1년경과 후 기업자산의 20%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첫 번째 선택안은 대기업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소속감을, 두 번째 선택안은 대기업 종업원의 경영참가권을, 세 번째 선택안은 중규모기업 종업원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적극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종업원집단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하여 사유화하는데 있어서 종업원에 대해 우대를 한 것이다.

소규모기업에는 이러한 선택안이 없게함으로써 종업원 우대조치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부도위험이 높은 소기업에게는 기업의 계속적인 존속이 기업자체 뿐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최고의 우대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즉, 소기업 종업원의 무선택권 그 자체가 종업원우대조치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러시아에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로 체제변환하였지만, 종업원에 대해 상당한 우대조치를 취하였다.

셋째, 바우처제도는 94년 6월이 지난 후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종업원집단이 자사기업을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정지되는데, 이 때까지 사유화되지 아니한 러시아기업은 민간인이나 민간단체에게 시장가격으로 매매되었다. 이때는 상당한 자본을 축적한 민간인이나 민간단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체로는 부를 축적한 민간인이 그리 많지 아니할 뿐 더러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바우처를 통해 사유화되었기 때문에, 그 수는 그리 많지 아니하다<sup>9</sup>.

지금까지 구소련과 러시아의 기업개혁 변천사 및 각 개혁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표 1>과 같이 요약하여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 러시아(구소련)의 기업개혁 변천사 및 각 개혁의 특성

연도, 실권자 및 내용		
신경제정책 개혁	연도, 실권자	1921년, 레닌
	내용	1. 한시적 자본주의제 도입 2. 농업, 상업 및 소규모 제조기업의 사영화 3. 화폐기능 부활
후루시초프 개혁	연도, 실권자	1957년, 후루시초프
	내용	1. 생산량 국가계획지표에 따른 기업경영 2. 지방분권 3. 개혁의 실패로 인한 후루시초프의 실각
브레즈네프 개혁	연도, 실권자	1964년, 브레즈네프
	내용	1. 판매액 국가계획지표에 따른 기업경영 2. 기업유보금 허용 3. 콤비나트 창설
페레스트로이 카	연도, 실권자	1985년, 고르바초프
	내용	1. 국가와의 계약액에 따른 자주적 경영 2. 세계시장경제에 대한 개방 3. 임대기업 등의 탄생
경제체제전환	연도, 실권자	1992년, 엘친
	내용	1. 바우처를 통한 기업의 사유화 2. 완전시장경제제도 도입

### III. 중국의 기업개혁 변천사

#### 1. 자유지제도와 모택동의 사회주의 기업관

##### 1) 자유지제도

중국의 개혁은 1960년의 자유지제도(自留地制度)로부터 시작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모택동은 당시 제2의 실권자이면서 실무파인 유소기를 전면에 내세워 자유지제도를 실시하였다. 그 주내용은 개인에게 약간의 자유경작지를 허용한 상태에서 시장제도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전문관료와 기술자의 기업경영참여를 허용하는 것이었다. 지방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 관계로, 이로 인해 경제가 상당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지방간부들의 부정부패와 공산당 내 경쟁과 같은 정치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이 개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특히 1965년의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원칙적인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로 회귀하는 바람에, 자유지제도를 통한 개혁의 효과는 완전히 소멸되었다<sup>6)</sup>.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357-370; 정여천 1994, 68-80; Radygin 1996, 5-12; Sabusov /Simonyan 1996, 503-512; McFaul 1996, 292-306; Gurkov /Asselbergs 1995, 199-209).

자유지제도를 실시한 이유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자유지제도를 실시하기 전인 1958년에 중국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가치 아래 대약진 운동(大躍進運動)을 전개하였는데, 이 운동의 실패가 자유지제도 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여기서 대약진운동을 중국식 사회주의운동이라고 강조하여 흔히 말하는 이유는, 건국 이후 줄곧 채택하였던 소련식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중국특유의 인민공사제(人民公社制)를 실시한데서 나온 것이다. 1917년 사회주의 국가를 세운 소련에 비해 30여 년이 지나서야 사회주의 국가를 세운 중국은, 그전까지 기업장의 단독책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소련식 모델을 따랐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업장의 단독책임제를 포기한 중국식 모델이라 하여도, 물론 기업의 국가소유 및 국가계획에 의한 국가경제의 조정이라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었다. 이렇게 소련식 사회주의와 함께 스탈린주의를 따르던 중국은, 후루시초프가 모택동의 원조요구를 거부하고 스탈린을 비판하자,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가치 아래 대약진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 대약진운동은 그전까지 농민들의 모든 개인재산을 10,000 명의 농민으로 구성된 26,000 개의 인민공사에 헌납하여 공동소유로 하면서, 인민공사 단위로 공공사업과 군사방위에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한다는 제도이다. 그러나 인민공사제도는 너무나 집단적이고 평균적인 노동을 강조하여 개인적인 노동의욕과 창의성을 감퇴시켰을 뿐 아니라, 전문기술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급자족을 위한 공산품제조로 인하여 조잡한 제품을 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약진운동 초기에는 가족제 및 사유재산제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나타낸다고 하여, 실제로 가족생활까지도 인민공사 내에서 집단화를 요구할 정도였다. 대약진운동은 결국 국민경제 전체를 궁핍하게 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모택동은 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의 정신으로 자유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sup>7)</sup>.

## 2) 모택동의 중국식 사회주의 기업관

모택동은 5년간의 자유지제도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1949년부터 1976년까지 집권하는 동안, 앞에서 말했듯이 원칙적인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따르면서도 인민공사와 같은 중국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였다. 여기서 중국의 원칙적인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란 자유지제도의 원인이 되었던 모택동시대의 대약진운동과 양약진운동의 원인이 되었던 모택동시대의 문화대혁명에서의 경제체제를 말한다.

첫째, 집권 초기에 스탈린노선을 충실히 따르던 모택동은, 후루시초프 및 브레즈네프 시대에 와서는 구소련의 노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건립초창기에는 구

7) 이상준 1985, 55-57; 지역정보센터 1994, 78-79; Grummitt 1986, 13-15; Hermy 1983, 40.

8) 바네트 1993, 33-109; 이상준 1985, 91-158; 채희준 1991, 81-88; Opitz 1990, 7-16; Kosta 1984, 104-114; Grummitt 1986, 10-13; Hermy 1983, 39-40.

소련기업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구소련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아 기업을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기업인이 직접 구소련기업에 가서 훈련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기반이 어느 정도 잡히고 국제적으로 중국의 세력이 커진 상태에서, 후루시초프가 모택동이 모델로 삼았던 스탈린을 격하하자 소련의 모델을 버리게 되었다. 세계로부터 대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중국은 구소련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구소련이 기술적인 문제에 관심을 더 집중하고 사상문제는 소홀히하고 있다고 생각한데서 발생하는 이념상의 상충관계가 발생한 것이다. 양국의 이러한 갈등은 중국의 해보유 때문에 심해졌으며, 1965년부터 시작된 문화혁명 때에는 홍위병들이 중국소재 구소련 대사관에 난입하였을 뿐 아니라, 몇 년 후에는 우수리 강에서 양국간에 무력충돌도 있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양국은 같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하에서 경제를 운영하면서도, 중국은 아시아 사회주의권에서 구소련은 동유럽 사회주의권에서 맹주로서 서로 약간의 다른 기업경영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모택동은 구소련과 갈등이 있게 되자, 전국 초기의 짧은 기간 동안 따랐던 구소련 모델의 공장장 1인 책임제를 비롯한 기업경영 효율성 중심의 기업경영체제를 버리고,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더 충실하겠다는 정치우선 원칙을 내세워 사회주의원리 및 공산당의 지도에 더 비중을 두는 기업경영을 하도록 지도하였다. 중국기업은 당의 이데올로기를 우선시하여 당위원회 서기가 경영자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어, 경영자의 전문성과 기업의 효율성은 상당히 경시되었다. 그 결과, 구소련기업이 상대적으로 국가계획의 제한된 범위내에서도 기업경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경영자의 권한이 강하다고 한다면, 중국기업의 경영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그 기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감독을 직접 받아야 하는 제도로 인해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 시 경영자의 권한이 매우 약하다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구소련의 기업은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계획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가 국가계획에 따라 조정된다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의 기본틀은 동일하다.

둘째, 중국의 가장 독특한 기업형태는 인민공사제도에서 잘 나타났다. 전국 초기에는 농촌지주의 재산권도 인정할 정도로 유연한 정책을 실시하였던 모택동은 후루시초프가 스탈린노선을 비판하고 중국의 원조신청을 거부하자, 그가 택한 구소련의 기술우선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약진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의 중심제도가 인민공사제도였다. 이 제도는 경제력이 미약했던 실시 초창기에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농업경영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그 적용 대상을 기업의 경영으로 확대하였다. 즉, 모든 가족의 토지 뿐 아니라 가축까지도 인민공사에 헌납한 상태에서, 행정단위인 향(鄉)의 지도자를 인민공사의 사장으로 하여 행정·기업·교육·군사를 자체적으로 구성할 뿐 아니라, 전문가의 기업경영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당위원회의 사상지도와 종업원집단의 경영참여제도는 인민공사제도에서 유래하였다. 결국 인민공

사제도를 통한 기업경영의 핵심은, 개인의 물질적 유혹에 대하여 사상적인 무장으로 극복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중국의 기업들에 영향을 주어, 기업으로 하여금 종업원의 평생고용을 보장하게 하고 기업단위의 복지제공을 중요시하게 하였다. 대부분의 기업은 이의 영향으로, 거의 일률적인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극도의 평등주의적 임금구조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이 제도는 중국기업이 중앙부처로부터의 수직적 통제와 해당 지방정부의 수평적 통제를 동시에 받게하는 비효율성을 야기시켰다<sup>9)</sup>.

## 2. 화국봉과 등소평의 기업개혁

### 1) 화국봉과 등소평의 기업개혁 기조

모택동 사후 실권을 잡은 화국봉은 1978년 초에 중국의 두번째의 기업개혁인 양약진운동(洋躍進運動)을 통하여, 인민공사를 기본단위로 한 상태에서 일본과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 중공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꾀하였다. 화국봉은 정치적으로는 모택동의 계속혁명론을 지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실용주의노선을 내세웠는데, 양약진운동은 이러한 화국봉노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그 당시의 취약한 경제상태를 무시한 채 중공업중심의 무모한 투자로 인한 비현실성으로 인해, 화국봉이 정치적으로 실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개혁의 여파는 계속되어 등소평이 본격적인 기업개혁을 실시하는데 그 기초가 되었다.

1978년 후반부터 실권을 잡은 등소평은 모택동 시대의 기업경영에 대한 실책으로 발생한 경제적 빈곤을 극복하고자 여러 형태의 본격적인 기업개혁을 계속하여 실시하였다. 등소평의 기업개혁은 지금까지 낙후된 농업, 국방, 산업 및 기술을 근대화한다는 기치 하에 실시되었지만, 이러한 기업개혁도 사회주의, 인민독재, 공산당에 의한 지도,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모택동주의의 견지라는 4개원칙을 고수하는 전제 하에서 실시하였다. 사회주의체제를 전제로 하는 가운데에서도 기업개혁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등소평의 경제우선적인 실용노선의 기저에는, 모택동의 사회주의이념에 의한 정치우선의 정책으로 사회주의이념은 공고히 되었다는 이념적 판단과 중국의 경제적인 면에서는 생산력이 떨어지고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동시에 존재한다. 즉, 사회주의이념은 공고히 되었지만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회주의 초급단계인 중국에서는, 기업개혁만이 성숙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sup>10)</sup>.

### 2) 실용주의노선의 기업개혁

9) 바네트 1993, 33-109; 이상준 1985, 91-158; 채희준 1991, 88-98; 김시중 1993, 40-46; Kosta 1984, 104-126; Grummitt 1986, 4-9, 15-20, von Lingelsheim-Seibicke 1985, 33-38; Hermy 1983, 36-39, 41-42; Schreiber 1990, 346-362.

이러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근거하여 등소평은 이윤유보제를 시작으로 이개세제도, 청부경영제 및 주식제 등의 실용주의 노선에 따른 기업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이의 내용을 보면 각각 아래와 같다.

### (1) 이윤유보제

1978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이윤유보제는 과거에 국가기금에 흡수되었던 각 기업의 이윤과 감가상각비에 대해 그 일부를 기업내에 유보하도록 하게 한 제도이다. 기업은 유보금을 생산발전기금, 종업원 복리기금, 보너스기금 등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로 인해 기업은 투자자금을 기업에 유보할 수 있게 되었고 종업원의 복리후생과 노동성과에 대해 물적유인을 할 수 있었다. 즉, 이윤유보제는 기업이윤과 감가상각비의 일정부분을 기업에 유보시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미를 갖는데, 국가가 기업을 소유하고 국가에서 미리 정한 계획에 의해 경제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서의 이윤유보제는 아래와 같은 특성 및 한계점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 이윤유보의 방법으로 초기에는 대체로 정액유보 방식이나 총이윤의 일정비율을 유보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로 전년도 이윤을 참고로 기준이윤액을 정하여 그중 일정비율을 유보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이윤유보는 점진적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기업이 국가계획의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자체판매하여 기업이 임의로 처분가능하게도 할 뿐 아니라, 목표달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국가계획 외의 생산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국가계획지표의 수를 대폭 감소하고 기업조직을 개편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중간관리자급 이하의 종업원에 대한 채용, 진급 및 징계를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자율경영을 상당히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이윤유보 및 자율경영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력은, 국가변두리 지역이라는 제한과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소규모기업이라는 제한 및 유통업 및 농업과 같은 산업이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기업을 인정하게 까지 되었다.

둘째, 개혁 전에는 국가가 정하여준 계획지표에 따라 기업경영을 하였는데, 개혁 후에는 기업 스스로 경영자와 종업원에 대해 책임량을 할당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경제책임제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종업원의 책임의식이 부족했다는 인식에서 기업 내의 개별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임무달성량을 할당하여, 종업원의 개인별 및 부문별 책임 및 노동성향상을 피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영자와 종업원의 책임은 증가한 것에 반해, 기업 경영자와 종업원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과 물적 유인이 주어지지

10) 지역정보센터 1994, 87-94; 병승언 1987, 19-30; 김화섭 / 고정식 / 김홍석 1991, 29-34; 채희준 1991, 112-120; Grummitt 1986, 20-34; von Lingelsheim-Seibicke 1985, 34-56; White 1994, 74-80).

않았다. 이리하여,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에 유보된 이윤에서 물적 유인을 스스로 찾으려는 결과를 가져와, 유보이윤이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같이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고, 대부분 종업원에 대한 보너스지급이나 주택 건설 등의 복리차원으로만 주로 쓰여졌다. 게다가 기업에의 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쓰여져야 할 보너스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모든 종업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어 실질적인 유인제공 효과는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유보이윤이 경제책임제로 인하여 비생산 부문에 대부분 사용되어 기업혁신이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위한 적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투자자금이 고갈되어 오히려 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게 되었다.

셋째, 이윤유보로 인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그 당시 기업조직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많은 한계점을 가지게 되었다. 즉, 기업은 당위원회, 종업원집단 및 경영자의 3원적 지배구조를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기업간부를 관리하고 기업 내부에 대한 사상적 지도를 하는 당위원회가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다음이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집단적 의사자를 내는 종업원집단의 결정사항이어서, 기업경영자는 이들의 감독 및 협력 하에서만 기업의 효율성을 위해 경영을 할 수 있었다. 개혁 전보다는 당위원회의 역할이 약간 약해졌지만, 기업경영자의 측면에서는 종업원집단의 간섭으로 인해 기업경영의 전문성을 제대로 살릴 수 없었다<sup>11)</sup>.

## (2) 이개세제도

이러한 모순점을 극복하고자 등소평은 1984년 이개세(利改稅)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국가에 상납하던 이윤을 납세로 전환하는 제도로, 국가가 소유하는 기업이라도 국가에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은 분리된다는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다. 기업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경영으로 발생한 실질적인 이윤에 대해, 법인소득세나 세율조정정책에 따른 조절세 등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였다.

여기서 법인소득세는 기업의 규모를 세율 기준으로 삼았지만, 그 외의 세금 형태에 대해서는 기업이 속하는 산업이나 기업이 위치하는 지역을 세율 기준으로 삼아, 기업으로 하여금 각각의 사정에 맞는 적정수준으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계획경제로 인한 고정가격 상태에서 시장경제의 전제에서만 가능한 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격구조의 왜곡에 기인한 산업간의 불평등을 상쇄하고자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절세란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이윤유보율을 적정수준인 15%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기업에 대하여 기업간 여건의 차이를 상쇄하고자 각 기업마다 다른 세율을 부과하는 독특한 세제이다. 이 조절세는 초기의 이개세 제도에 있어서의 국가

11) 김시중 1993, 48-51; 린이푸/리조우/차이팡 1996, 134-145; 이상준 1985, 128-133; 조현준 1992, 87-93; Herrmann-Pillath 1987, 45-74, Bohnet/Jaehne 1989, 92-95;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984, 23-24.

납부이윤금을 약간 변형시킨 것이다. 여기서 국가납부이윤금이란 이윤에 대해 국가에 대한 세금납부를 하고도 기업유보금이 적정유보수준인 15%를 초과한 기업에 대해 국가에 납부를 해야하던 잔여이윤금을 말한다. 그리고, 기업유보이윤은 신제품 개발자금, 종업원 복지자금 및 시설확장자금 등으로 쓰이게 하였다. 이러한 이개세제도의 특징과 한계점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첫째, 이 제도로 인하여 국가는 나름대로 확실한 재정확보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국가와 기업은 동일한 개체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기업의 성쇠는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 제도로 말미암아 생긴 기업의 독립성으로 인해 기업의 효율성 및 이윤은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국가조세수입은 늘어 나게 되어 그만큼 국가재정은 튼튼하게 되었다. 특히 지금까지의 이윤을 계산할 때는 순수히 경영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윤 말고도 토지 사용료, 국가에서 무료로 준 자산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모두를 포함하였으나, 이 제도는 실질적인 이윤을 기업성과 및 과세특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에서, 국가에 귀속된 사회주의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효율성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로 인해 중국기업은 그만큼 기업경영의 효율성진작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둘째, 이 제도는 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당위원회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축소시켰다. 즉, 기업의 재정적 독립과 함께 기업은 당으로부터 상당히 분리되어, 당위원회는 종업원의 조직 및 사상교육 및 자문사항에만 권한을 가지게 하여, 경영자는 당위원회의 감독 없이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경영자는 종업원집단에서 결정하는 종업원에 대한 복지문제는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제한은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당의 사상성보다는 경영 효율과 종업원복지에 더 비중을 두는 효율적인 기업경영제도로 바뀌었다.

셋째, 경쟁적인 시장의 부재로 인한 불합리한 가격구조로 인하여, 이 제도는 실제적으로는 기대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재정행정의 중앙집권화 경향을 수반할 뿐 아니라, 높은 세율로 인하여 이 제도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조절세율 또한 기업과 국가 간의 의견으로 국가와 기업 간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또한 이 제도의 전제조건인 기업의 효율성제고라는 동기 부여에 있어서도 실패하여, 기업의 이윤이 몇 년간 실제로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몇 년간만 실시하고 이 제도는 결국 폐지하게 되었다.

넷째,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더욱 진작시키고자, 독립된 기업간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기업집단체제를 이 제도와 함께 실시하였다. 이는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나 산업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여러 기업이 결합하여 기업집단형태를 취하였다. 이 기업집단체제의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개세가 폐지된 뒤에도 기업집단체제는 계속 유지되었다<sup>12)</sup>.

### (3) 청부경영제 · 임대경영제

이개체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등소평은 1987년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부경영제도를 실시하고 소기업에 대해서는 임대경영제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부경영제도란 국가로부터 대기업이라 인정받는 기업이 국가와 일정기간 동안 상호 간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개별기업이 처한 정황을 고려하여 체결한 뒤, 이 계약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경영하는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이 국가에 계약에 의한 일정액의 이윤상납을 해야하며 이를 달성치 못할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물론 납부세금 및 상납이윤에 대한 기준액을 비롯한 계약내용은 개별기업의 규모, 산업환경,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행정부문 및 금융부문과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특히 당위원회의 권한은 약해지고 종업원집단의 권한이 강해졌는데, 종업원집단은 기업 경영의 주요사항에 대해 경영자를 감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영자에 대한 상벌권 및 임면권까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임대경영제란 개인재산을 기업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임차 경영자가, 소규모의 해당기업을 3년 주기의 임대계약을 원칙으로 계약기간 동안 독립적인 경영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임차경영자는 세금납부 등의 의무와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불 및 기업자산 가치의 유지 등의 의무를 수행하는 한, 당위원회나 종업원집단의 감독도 없이 완전히 자주적으로 그 기업을 경영할 수 있었다. 그만큼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정도에 있어서 청부경영제 하의 기업에 비해 큰 차이가 있다. 기업경영자는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 부공장장급 이상의 인사권도 임차경영자가 갖는다. 임대경영 후 시장여건 및 정책여건 등의 외부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손해가 났거나 계약 불이행시에는 경영자개인이나 보증인의 재산으로 배상해야 할 정도로, 경영자의 위험부담은 전적으로 해당 임차경영자가 져야했다.

셋째, 이 기간에 있어서는 기업의 대외개방도 활발히 진척되었다. 중국기업의 대외개방은 등소평이 집권하면서부터 경제특구에 한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는 대외개방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었다. 즉, 심천, 주해, 하문 및 산두지역의 경제특구에만 적용되던 대외개방은 대련, 천진, 청도, 연우, 상해, 광주 등의 연해개방도시로 그 도시의 수를 점점더 확대하다가, 바다를 접하는 모든 성(省)에 대하여도 그 범위를 넓혀가게 되었다. 특히 대외개방지역에서 외국기업은 수출을 통한 중국진출은 물론 국가소유의 중국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사용권취득을 통한 진출도 허용된 관계로, 그만큼 중국기업은 해외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서조차 외국 제품과 경쟁을 하여야 하였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국가가 주도하던 중국기업의 개혁은 기업 스스로에 의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sup>13)</sup>.

12) 병승언 1987, 178~188; 김시중 1993, 52~56, 88~93; 김익수 1992, 15~40; 린이푸/리조우/차이팡 1996, 145~147; Klenner 1988, 639~641; Stewart/Keown 1989, 71~72; Herrmann-Pillath 1987, 45~74.

### 3. 등소평·강택민의 기업개혁

등소평과 강택민은 1993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헌법을 바꾸면서 경제체제의 변환을 실시하였다. 즉, 기업을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경제전체의 조정을 국가계획이 담당하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갖던 중국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환으로 말미암아 기업소유는 국가가 한다는 큰 틀이 바뀌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장에 의해 경제조정이 이루어 되었다. 즉, 당위원회의 기업에 대한 권한을 아주 강화시켜 사회주의의 기조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국가소유 한도 내에서의 기업에 대한 주식제가 도입되고, 기업경영은 기업자율로 하며, 국가계획은 없어지고, 제품가격은 시장에 의해 형성되게 되었다.

첫째, 실질적인 기업소유는 국가가 하면서 주식제를 도입한다는 뜻은, 지금까지 국가가 소유하던 기업으로 하여금 주식을 발행하게 하여 주식회사가 되도록 하되, 실제적인 기업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즉, 일정조건 하에 외국기업을 포함한 어떠한 기업도 상해시와 심천시의 증권거래소를 통해 지금까지의 국유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그 기업에 대해 지분참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서 일정조건이란,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독점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국유기업으로 남기고(國有獨資會社), 대부분의 대기업 주식은 국가가 51% 이상을 소유하게 하며(國家支配會社), 또한 기타 기업도 여러 개의 국유기업이나 기금조직 등이 주식회사화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실제로는 국가가 경영지배를 하게 하거나(國家參與會社), 국가가 100% 투자한 모기업에서 여러개의 자회사를 주식회사의 형태로 만들 때 기업지분의 51% 이상만을 국가가 소유하는 경우(國有持株會社)를 말한다. 즉, 주식제란, 지금까지 100% 국가소유의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기업개혁과는 달리, 대규모 기업에 대해 민간의 기업에 대한 주식취득은 인정하되, 주식의 51% 이상은 국가가 소유하게 하는 기업개혁을 말한다.

둘째, 국가계획을 없애고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경제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즉, 과거에는 정부조직이 지표화된 국가계획을 만들어 경제를 조정하고 제품가격도 정부가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하던 것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경제가 조정되고 제품가격도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체제로 바꾸었다. 국가계획지표는 없어져 이를 따르지 않고 비교적 자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중국정부는 주식제와 시장경제의 도입과 동시에 기업개혁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는 당위원회의 기능을 아주 강화하여, 사회주의이념의 틀 안에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13) 김시중 1993, 47-64; 린이푸/리조우/차이팡 1996, 147-149; 조현준 1992, 89-92; 지역정보센터 1994, 379-386, 428-432; Rondinelli 1993, 76-79; Wei 1995, 188-192; Ma 1996, 529-531, Park 1982, 64-74.

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즉, 대기업의 경영자는 항시적으로 당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함은 물론 당위원회와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업개혁은 철저히 하되 사회주의체제는 굳게 견지하겠다는 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주식제 및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심체는 일당독재의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공산당의 기업개혁을 통한 사회주의의 발전의지를 알 수 있다. 물론 당위원회의 감독강화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분명히 저해한다. 왜냐하면, 당위원회의 구성원은 기술자나 경영전문가가 아닌 당원이며, 이들의 최대목표는 경영효율이 아니라 완숙된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 그 기업의 종업원에게 주식을 매각하게 하여 소기업은 대부분 종업원지주회사가 되었는데, 소기업의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간섭은 없더라도 기업의 주인인 종업원의 총의에 의해 기업이 운영되도록 하였다. 이도 역시 전형적인 사회주의 기업의 소유 및 경영방식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이는 현재의 중국경제를 사회주의의 초기단계로 규정짓고 시장경제 및 주식제를 통해 성숙된 사회주의로 가자는 공산당 지도부의 현 중국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발전전략에서 나온 것이며, 이러한 기조는 등소평 사후의 강택민체제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sup>14)</sup>.

지금까지 중국의 기업개혁 변천사 및 각 개혁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요약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 IV. 결 론

지금까지 2장에서는 러시아(구소련)의 기업개혁제도 변천과정인 신경제정책→후루시초프 개혁→브레즈네프 개혁→페레스트로이카→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경제체제변환을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중국의 기업개혁제도 변천과정인 자유지제도→양약진운동→이윤유보제→이개세제도→청부경영제/임대경영제→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경제체제변환을 살펴보았다. 특히 양국의 기업개혁제도를 역사적으로 서술하면서 이에 대한 특성을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해석함으로써, 각 기업개혁제도의 의미를 기업경영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았다. 이와 같이 양국의 기업개혁제도 변천사 및 각 기업개혁에 대한 특성을 주로 살펴보면서, 구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 하에서의 기업운영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다루었다. 본논문의 이러한 일련의 기업개혁제도 변천사 및 각 기업개혁에 대한 특성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학문적 유용성 및 실무적 유용성을 가진다.

14) 김시중 1993, 79-102; 조현준 1996, 39-98; Parker/Pan 1996, 110-123; Shao/Herbig 1995, 66-70.

〈표 2〉 중국의 기업개혁 변천사 및 각 개혁의 특징

연도, 실권자 및 내용		
자유지제도 내용	연도, 실권자	1960년, 모택동
	내용	1. 기업의 국가소유, 계획경제 2. 약간의 자유경작지 허용 3. 기술자를 비롯한 전문인 중심의 기업경영
양약진운동 내용	연도, 실권자	1978년, 화국봉
	내용	1. 서방자본에 의한 중공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2. 무리한 개혁으로 인한 화국봉 실각
이윤유보제 내용	연도, 실권자	1978년, 둥소평
	내용	1. 판매액지표에 따른 계획경제 2. 기업이윤의 기업 내 유보가능 3. 정부에의 기업이윤 납부의무에 대한 기업총업원 책임
이개세제도 내용	연도, 실권자	1984년, 둥소평
	내용	1. 국가로부터 기업의 재정적 독립 2. 국가에 대한 세금납부 후의 나머지에 대해 기업 내 이윤 유보 (유보이윤이 과다한 경우는 국가에 대한 이윤납부) 3. 당위원회의 권한 축소 4. 기업집단제와 병행실시
청부경영제, 임대경영제 내용	연도, 실권자	1987년, 둥소평
	내용	1. 대기업은 국가와의 계약에 의한 이윤상납과 종업원집단에 감독받는 기업경영 (청부경영제) 2. 소기업은 국가로 부터의 임대에 의한 완전 자율경영 및 임차경영자의 무한 책임 (임대경영제)
경제체제전환 내용	연도, 실권자	1993년, 둥소평/강택민
	내용	1.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2. 대기업 소유의 51% 이상은 국가가 하는 전제하에서의 주 식제 도입과 대기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감독기능의 강화 3. 종업원집단에 의한 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

먼저 학문적인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러에 대한 문헌이 대부분 양국의 법률환경이나 거시적인 경제환경에 대한 것이거나, 기업에 대한 문헌이라도 현재의 새로운 제도나 현상만 보고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본논문은 경제개혁을 기업에 대한 소유 및 경영의 측면에서 분석할 뿐 아니라 일련의 역사적인 기업개혁에 대해 각각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는데 그 학문적 유용성을 가진다. 즉, 실제로 양국에 진출한 기업은 그 나라의 거시적 환경보다는 기업자체의 특성에 더 관심이 많기에 학문적으로는 이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본논문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기업개혁제도의 변천사를 기업의 법률적, 경제적인 환경측면에서가 아니라, 진출기업의 주관심사인 양국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업경영사의 관점에서 그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논문은 양국기업이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경영과 소유의 면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형태로 바뀌어 갔는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양국기업에 대한 현재의 경영방식을 이해하게 하는 데에 그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본논문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 하의 기업과도 동일하지 아니하고 서구 자본주의기업과 동일하지 아니한 현재의 중국기업과 러시아기업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는데 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역사적인 기업개혁과정을 분석하여 양국기업의 성격에 대한 기본틀을 찾을 수 있고, 그 기본틀 하에서는 현재에 있어서의 양국기업에 대한 경영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에서도 여러번의 기업개혁을 하였고 현재는 시장경제체제이기 때문에, 현재 양국 기업의 경영방식은 당연히 원칙적인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 하의 기업의 경영방식과 동일하지 아니하다. 또한 경제체제의 차이로 인해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서구 자본주의기업의 진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에 있는 기업의 경영방식이,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였다 하여 단기간에 서구 자본주의기업과 동일하게 될 수는 없으며 그리하여 현재의 양국기업의 경영방식은 서구 자본주의기업의 경영방식과 다른 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본논문은 그 원인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여 준다.

본논문은 실무적인 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가진다.

첫째, 본논문이 제공하는 양국기업에 있어서 일련의 기업개혁 변천사에 대한 정보는, 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으로 하여금 양국기업과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양국기업과의 관계를 중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수출형태이든, 해외직접투자 형태이든 양국시장에 진출할 때는 양국의 유통기업이나 하청기업 및 협력 파트너기업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진출대상국이 되는 양국기업과의 관계를 중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기업의 변천과정에 대한 정보가 절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본논문은 양국의 기업개혁 변천사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진출기업으로 하여금 양국기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변천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어, 양국기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 간의 갈등 발생위험성을 감소시켜 준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인 지 얼마 안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진출 대상으로 큰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적 자본축적이 금지된 양국 시장에 있는 소비자의 현재 시장구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를 제공해 준다. 물론 양국의 미래 시장잠재력 뿐만 아니라 풍부한 부촌자원은 그 자체가 서구 자본주의기업의 진출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시장이 매력을 갖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기 전에도 양국 모두 여러번의 기업개혁을 한 관계로, 체제변환을 한 지 몇 년 안되는 현재에도 양국시장에 고소득 소비자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민간자본의 축적을 허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가기금으로만 완전

히 기업을 운영한다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 대한 원칙론과는 달리, 실제로는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변환 전에도 양국에는 기업의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개혁으로 말미암아, 기업내에 이윤을 어느 정도 유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업이 시장경제화 또는 사유화함에 따라 15억에 가까운 양국인구의 일부라도 그 기업의 소유자 및 경영자 또는 중간관리자가 되거나 새로운 사영업자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고소득자가 양국에는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기업개혁의 변천사에 대한 분석은 양국시장의 이러한 면을 진출기업에게 설명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본논문의 학문적 유용성 및 실무적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우리나라기업이 양국에 진출할 때는 다른 나라의 기업에 비해 물류비용이 매우 적게 들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양국시장은 시장잠재력과 부존자원만 고려하여 진출하는 다른 서구기업에게보다는 우리나라기업에게 그만큼 더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뿐 아니라 과거의 양국기업 및 시장에 대한 이해는, 다른 나라의 진출기업에 비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 참 고 문 헌

1. 김시중(1993), 「중국 국영기업 개혁의 전개와 전망」(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김의수(1992), 「중국의 기업집단 육성현황과 전망」(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김화섭/고정식/김홍석 (1991), 「중국」, (산업연구원(편):『북방지역국가총람』, 서울, pp. 1-117).
4. 돔(Dobb, M.) (1989), 「소련경제사 (역: 임휘철)」(서울, 협성사).
5. 런이푸/리조우/차이팡 (1996), 「중국의 기적 - 발전전략과 경제개혁 (역: 한동훈)」(서울, 백산서당).
6. 바네트, A. 도크 (1983), 「중공의 도전(역: 신영준)」(서울, 흥성사).
7. 병승언(1987), 「동소평시대의 중국경제(역: 윤영자)」(서울, 비봉출판사).
8. 이상준(1985), 「중공경제론」(서울, 박영사).
9. 이 윤(1993), 「러시아의 기업운영체제」(서울, 산업연구원).
10. 정여천(1994), 「러시아에서의 기업환경변화」(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 조현준(1992), 「중국 국영기업의 고용·임금제도 개혁」(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 조현준(1996), 「중국 국유기업 민영화의 전개와 전망」(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 지역정보센터(1994), 「중국 편람」(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 지역정보센터(1996), 「러시아연방 편람」(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 채희준(1991), 「중국의 경제개혁 현황과 그 한계」(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6. Abalkin, L. I. and Bystrizkaya, E. A. (1986), "Theoretische Auffassungen über die ökonomische Rolle des sozialistische Staates", (in: *Geschichte der politischen Ökonomie des Sozialismus*(Autorenkollektiv), Berlin, Verlag Die Wirtschaft, pp. 44~61).
17. Barksdale, H. C. and Kelly, W. J. (1978), "The Marketing Concept in the U. S. and the USSR: An 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6, No. 4, pp 258~277.
18. Bauer, T. (1989), *The Firm under Perestroika*, Bundesinstitut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Köln.
19. Bohnet, A. and Jaehne, G. (1989), "The Private Sector in the Soviet Union and China", *Intereconomics*, March/April, pp. 88~99.
20. Brahm, H. (1989), *Stagnation, Perestrojka, Krise*, Bundesinstitut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Köln.
21. Buchholz, A. (1991), "Vom Niedergang des Marxismus-Leninismus: Transformationen von Ideologie und Bewußtsein in der Sowjetunion", *Osteuropa*, Vol. 41, No. 3, pp. 219~235.
22.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1984), *Guidebook on Trading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raham & Trotman, London.
23. Ennew, C. T., Filatotchev, I., Wright, M. and Buck, T. W. (1993), "Constraints on the Adoption of the Marketing Concept; The Case of the Soviet Union",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 27, No. 11/12, pp. 21~34.
24. Grummitt, K. P. (1986), *China Economic Handbook*, Euromonitor Publications, London.
25. Gurkov, I. and Asselbergs, G. (1995), "Ownership and Control in Russian Privatised Companies: Evidence from a Survey",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7, No. 2, pp. 195~211.
26. Götz-Coenenberg, R./Höhmann, H.-H./Seidenstecher, G.(1988), "Sovietunion", (in: *Die Wirtschaft Osteuropas und der VR China 1980~1990*(eds. : Höhmann, H.-H./Seidenstecher, G.), Hamburg, Verlag Weltarchiv, pp. 13~82).

27. Heller, M. and Nekrich, A.(1981), *Geschichte der Sowjetunion*, Athen um Verlag, Königstein.
28. Hermy, G.(1983), *China: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1980s*, Metra Consulting Group, London.
29. Herrmann-Pillath, C.(1987), *Inflationsprozesse in der VR China seit 1979*, Bundesinstitut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Köln.
30. Klenner, W.(1988), "VR China", (in: *Die Wirtschaft Osteuropas und der VR China 1980~1990*(eds. : Höhmann, H.-H./Seidenstecher, G.), Hamburg, Verlag Weltarchiv, pp. 595~643).
31. Kosta, J.(1984), *Wirtschaftssysteme des realen Sozialismus-Probleme und Alternativen*, Köln, Bund Verlag.
32. Lösch, D.(1987), *Soziale Wirtschaftswissenschaft*, Hamburg, Verlag Weltarchiv.
33. Ma, Ghu-Y.(1996), "Foreign Participation in China's Privatisation",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8, No. 4, pp. 529~547.
34. McFaul, M.(1996), "The Allocation of Property Rights in Russia: The First Round",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9, No. 3, pp. 287~308.
35. Nove, A.(1977), *The Soviet Economic System*, 2nd ed., Boston, Allen & Unwin.
36. Opitz, P. J.(1990), *Gezeitswechsel: Die Sino-sowjetischen Beziehungen in historischer Perspektive*, Bundesinstitut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Köln.
37. Park, Sung-J.(1982), "Problematik der Auslandsinvestitionen in China: eine Zwischenbilanz", (in: *Chinas Integration in die Weltwirtschaft*(ds. : Park, S.-J. /Yu, C.-L.), Campus Verelag, Frankfurt am Main, pp. 47~92).
38. Parker, D. and Pan, W.(1996), "Reform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in China",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8, No. 1, 109~127.
39. Radygin, A.(1996), "The Privatization Process in Russian in 1995", *Problems of Economic Transition*, Vol. 39, No. 7, pp. 5~19.
40. Rondinelli, D. A(1993), "Resolving U. S.-China Trade Conflicts: Conditions for Trade and Investment Expansion in the 1990s",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Summer, pp. 66~81.
41. Saburov, E. F. and Simonyan, V. I.(1996), "Privatization in Russia: Results and

- Prospects for Development", *Studies on Russian Economic Development*, vol. 7, No. 6, pp. 503~512.
42. Schreiber, H.(1990), *Die Chinesen: Reich der Mitte im Morgenrot*, Manfred Pawlak Verlag, Herrsching.
43. Shao, A. T. and Herbig, P.(1995), "Marketing inside the Dragon—despite China's Bureaucracy",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Vol. 12, No. 1, pp. 65~76.
44. Skurski, R. (1983), *Soviet Marketing and Economic Development: Studies in Soviet History & Society*, London, Macmillan Press.
45. Stewart, S. and Keown, C. F.(1989), "Talking with the Dragon: Negoti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Fall, pp 68~72.
46. Von Lingelsheim-Seibicke, W.(1985), *Das China-Gesch ft Heute und Morgen*. Köln, Deutscher Wirtschaftsdienst.
47. Wei, Shang-J.(1995),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China Reached its Potential?", *China Economic Review*, Vol. 6, No. 2, pp. 187~199.
48. Welfens, M., J.(1988), "Das Phänomen der Schattenwirtschaft im Sozialismus", *Osteuropa*, Vol. 33, No. 1, pp. 1~15.
49. White, G.(1994), "Demokratization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No. 31, Jan. pp. 73~91.

## A Historical Study on the Process of Russian and Chinese business Reforms

Jo, Kyu-Jin\*

### Abstract

This paper analysed the processes of Russian and of Chinese business reforms in historical aspects.

Under the socialistically planned economy the process and the contents of the Chinese business reforms closely followed those of Russia in spite of political confrontations. It is because the essence of business reforms of the two countries is to recover the business inefficiencies of socialistically planned economy respectively. Similarities in the reforms of the countries are distinctive in the following aspects : goal of the central plan has changed from production quantity to sales quantity, then to total sales amount and finally to profits in both countries. Also the generated profit is retained by each company unit, not by the national fund. The similarities are found also in relation to economic system, i.e. these reforms took place without changing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state-owned companies and of business control under central plan.

However, the business reform of both nations took different route since the recent transformation of economic system. China unlike Russia did not fully privatize businesses even though it has adopted market economic system.

Key-Words : business reform, socialistically planned economy, transformation of economic system

\* Vice-Proffessor, Kwang Uoon University, Ph. D.

# 일본의 순수 지주회사 부활

## — 배경과 내용을 중심으로 —

The Revival of Pure Holding Company System in Japan

신 장 철\*

### — 目 次 —

I. 서 론	III. 지주회사의 해금
II. 지주회사의 개요	1. 배경
1. 정의	2. 내용
2. 역사	IV. 해금 논리
1) 전전(戰前)	V. 결론
2) 전후(戰後)	— 전망 및 시사점
— 재벌 해체와 독점금지법	

### I. 서 론

지난 연말을 기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전전(戰前)의 재벌 부활을 막기 위해 50여년 동안 독점금지법<sup>1)</sup>에 의해 설립이 엄격하게 금지하였던 순수 지주회사(純粹持株會社)를 일련의 논쟁<sup>2)</sup>을 거쳐 부활시켰다.

즉, 순수 지주회사의 해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독점금지법이 1997년 6월 10, 11일의 양일간에 걸쳐 참의원(參議院) 및 중의원(衆議院)에서 각각 가결되어 성립되었으며, 지난 해 12월 9일에는 각료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같은 해 12월 17일을 기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상기와 같은 일본의 해금 조치에 의해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을 법적으로 금

\* 승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일본학과 전임강사, japanstu@saint.soongsil.ac.kr.

1) 독점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私的獨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1947년, 법률 제54호에 의해 제정)」이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독점금지법」으로 통일함.

2) 구체적인 것은 후술하나, 전경련(全經連) 및 경단련(經團連), 그리고 경제 동우회(經濟同友會)가 주축이 되어 이미 60년 대초 이후,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에 접어 들어서는 거의 매년마다 지주회사의 해금을 주장해 왔음.

지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꼽히게 되었다. 즉, 한국은 1986년에 개정된 독점금지법 제8조에 의해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을 「원칙금지」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

그런데, 최근의 한국 경제는 그 동안의 침체를 반영, 지난 해 연말에는 금융위기를 초래하여 급기야는 IMF에 대해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 ‘고(高) 이자, 고 물가, 고 실업, 저(低) 성장’ 등의 현상으로 표출되는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경제주체에 대해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소위 ‘재벌개혁’으로 불리는 대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 요구는 강력한 것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정부당국은 상기의 급격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재계의 해금 요구를 수용하고 대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을 위해, 지난 4월 말에 제한된 범위내에서 순수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뜻을 이미 밝혔다.

본 연구는 비록 한정적이나마 조만간 해금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지주회사제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표를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얼마전 순수 지주회사를 해금하였던 일본의 선행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말하자면, 본 연구의 목적은 그 동안에 일본에서 논의된 순수 지주회사의 해금 논의와 그 배경을 살펴보고, 또한 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일본에서 순수 지주회사가 부활하게 된 논리적 당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 독점금지법<sup>4)</sup>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전개될 순수 지주회사의 해금 논의에 일조하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 II. 지주회사의 개요

### 1. 정의

- 3) 한국에서는 독점금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호에 의한 규정) 제8장에서 「누구든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미 설립된 회사는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4) 본 연구에 있어서는 논리 전개상 지주회사 해금과 관련된 법제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순수 지주회사 부활에 따르는 상법, 회사법, 조세법, 증권거래법 등의 법적측면에서의 검토 및 문제점 제기, 그리고 법제도 정비상의 과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로 함. 단, 일본의 지주회사와 관련한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財)資本市場研究會(1996), 「持株會社の法的諸問題 - 資本市場法制研究會報告」及 (財)資本市場研究會編(1995), 「(連載)持株會社の法的諸問題」, 「月刊資本市場」, 1995. 6, 7, 8, 9, 10월호, 각각 No. 118, 119, 120, 121, 122에서 각 분야의 법학자가 중심이 되어 구체적으로 논술하고 있으므로 참조 바람.

지주회사는 그 존재하는 시기와 장소에 의해 그 형태와 기능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어, 엄밀한 개념 정의를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일본 지주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에 앞서 우선 지주회사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일본 독점금지법상에서의 규정에 대해 살펴 본다.

### 1) 일반적인 정의

우선, 일반적으로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는 재벌의 본사로써, 그 산하에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피라미트형으로 지배하는 재벌 구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는 후술하는 실증법상의 규정보다 더욱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즉, 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주식소유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며, 생산·판매 등의 사업 활동을 전력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純粹持株會社, pure holding company)와, 다른 회사의 주식은 소유하나, 그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 지주회사(事業持株會社, operating holding company)」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주회사는 전략 부문(본사 부문)과 사업부문을 완전히 분리한 순수 지주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종래의 독점금지법에서는 물론, 개정 독점금지법에서도 사업 경영(兼營) 지주회사의 설립 금지 규정은 없으며, 일본 대기업의 상당 수는 사실상 사업 경영의 지주회사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 2) 실증법상의 정의

다음으로, 지주회사(持株會社)에 대한 실증법상의 정의를 살펴 보면, 개정 독점금지법 제9조 ③에서 「지주회사는 당해 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사원의 지분도 포함, 이하 동일))의 취득 가액(최종 대차대조표에서 별도로 명시한 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 이하 동일) 합계액이 회사의 총 자산액(공정거래위원회 규칙에 정한 방법에 의한 자산의 합계 금액)에 대한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라고 정의함과 동시에, 제9조에서는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는 이를 설립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를 「지주회사 + 자회사(주식 소유비율이 간접 소유분을 포함해서 50%를 초과하는 회사) + 실질적인 지배적 자회사」를 지주회사 그룹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서 「실질적인 지배적 자회사」라는 것은 「지주회사의 주식 소유비율(자회사의 소유분을 포함, 이하 동일)이 25~50% 이하이며, 또한 지주회사의 주식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기타 같은 비율의 주주가 있는 경우는 제외) 국내의 회사를 일컫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역사

### 1) 전전(戰前)

#### (1) 지주회사의 생성 – 미쓰이가(家)와 오오모토카다(大元方)

일본에서의 지주회사 생성은 에도(江戶) 시대에서 비롯되었다.

미쓰이가의 창업자인 미쓰이 다카도시(三井高利)<sup>5)</sup>는 1673년 에도(江戶, 지금의 東京)에서 옷감 매매 및 환전 업무를 취급하는 점포를 개설한 후, 교토(京都)에 환전 점포를 개설(1686년)하고, 오사카(大阪)에도 환전(1692년) 및 옷감(1693년) 점포를 개점하는 등, 에도, 교토, 오사카의 3도(三都)를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다(多) 점포 경영을 전개하였다.

초기의 미쓰이는 위와 같은 영업망의 확대와 함께 막부와의 어용적 관계에 의해 경영의 안정을 유지하였으나, 막부(幕府) 말기 · 유신기(維新期)에는 막번 체제(幕番體制)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미쓰이의 창업자인 다카도시는 4남으로써 본가의 계승에 있어서 책임이 가벼운 처지에 있었으나, 형인 다카쓰구가 1673년에 사망함을 계기로 그 동안 축적한 재산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처분하고, 할당된 분배분을 스스로가 증식시킬 수도 있었다.

다카도시는 1694년 4월의 사망 직전인 동년 2월에 유언장을 남겨 분할 상속을 지시하였으나, 상속인인 8형제가 맷은 1994년 2월의 서약에 의해 장남인 다카히라를 중심으로 미쓰이가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형제의 공동 사업으로 하고, 형제가 죽고 난 후에도 이 원칙을 지키기로 하였다. 그 후 이와 같은 공동 사업의 영업재산 분할 금지의 원칙은 1722년의 미쓰이가의 가헌(家憲)에 의해 확정됨으로써, 가족적 결합 의식이 생겨났다. 이 가헌에 의해 새로운 분가(分家)의 창출이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개인 자격으로는 자본은 물론 점포도 소유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모든 자본과 점포는 상속인의 공동재산으로 운용하게 됨으로써, 각 가족은 배분 청구권의 비율을 「지분(持分)」으로 부여받게 하였으나, 지분의 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미쓰이가의 영업 자본은 각 출자자의 지분을 공동 기업에 출자한 형태였으며, 상기의 가헌 제정 이후, 기업의 영속성을 중시함으로써 지분의 분할 및 회수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6)</sup>.

5) 도카도시(高利)는 다카도시(高俊)의 4남(장남 도시쓰구(高次))으로 1622년에 마쓰자카(松坂)에서 태어났으며, 14살 때에 부모의 권유로 에도에 내려가 도시쓰구의 점포에서 일하였다, 후에는 지배인이 되어 사업 수완을 발휘하였다. 1649년에 마쓰자카(松坂)에 돌아가 결혼한 후 20세가 된 장남(다카히라(高平))의 협력을 얻어 1673년에 에도에서 옷감 점포를 내었다(安岡 重明編(1982년), 『三井財閥』 日本經濟新聞社, p. 23).

분할은 되지 않았으나, 지분율로 정해진 출자금은 오오모토카다(大元方)라고 하는 중추 조직에서 관리되었다. 이 오오모토카다는 출자자가 모인 합의에 의한 총유 자산에 의한 합명 기업 형태로써 1710년에 빌족되었다. 직계 가족 중 연장자이며 역량이 있는 3명을 회장역으로 두고, 오오모토카다의 용무와 점포를 관리하였다<sup>7)</sup>. 다시 말하자면, 이 조직이 일가의 중추 기관이 되어 모든 점포를 지휘하고, 모든 점포에게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이익금은 다시 오오모토카다에게 환원되게 하여 동족들은 지분에 의해 배분을 받게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 자본가 조직인 오오모토카다와 각 점포와의 관계는 본점과 지점 관계이며, 각 점포는 독립채산제를 취하고 있으며, 각 점포의 영업성적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점인 오오모토카다가에게 있기 때문에 미쓰이가의 오오모토카다는 오늘날의 지주회사로 간주되는 한편, 일본 지주회사의 원형인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sup>8)</sup>.

## (2) 재벌과 지주회사의 발전

메이지(明治)기에 접어들어 정부의 직접보호와 관영사업의 불허를 받아 사업기반을 구축한 미쓰이는 그 후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점차 투자대상 분야를 확대하여 재벌형성의 길을 걸었다.

1877년(明治 21년)에는 미쓰비시(三菱)와 경쟁한 결과 미이케(三池) 탄광의 석탄 독점판매권을 획득함을 계기로, 은행과 무역업을 중심으로 한 미쓰이가 기존 사업부문에 새로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관영(官營) 견사(絹絲) 방직소의 불허에 이어, 마에바시(前橋)방직소, 다니까(田中) 가계제작소(芝浦製作所), 카네보(鐘淵)방직 등의 유력 기업을 산하에 두게 됨으로써 미쓰이 관련 전체 사업을 조직화하고 산업자본 위주의 조직 기구를 편성할 필요가 생겼다.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이 지주회사가 설립하게 된 일반적 이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이 확대되고 다각화되면 필연적으로 각 영역의 관리는 전문성을 요하게 되는 한편, 사업전체를 통괄하는 기능이 중요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사업에 정통한 전문 경영자에게 산하 기업의 경영을 위임하고, 이를 산하 기업을 통괄하고 관리하는 기업조직으로써 지주회사가 설립된 것이다. 이는 곧, 가족 자산의 보전을 전제로 해서 「경영

7) 오오모토카다(大元方)는 직계 가족의 주인들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임원 3명을 중심으로 보좌 역을 두며, 상무 임원으로써 중역들이 관계하였다. 회의는 일정 장소에서 개최되며, 전체 회의에 의해 모든 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음. 구체적으로는 『三井文庫編・刊(1971)』, 『三井事業史』資料編 1, p. 784 및 安岡重明(1982), 전계서, p. 35 참조 바람.

8) 米倉誠一郎(1996), 「持株會社の歴史とパラタイム轉換へのインパクト」, 「持株會社の原理と經營戦略」, ダイヤモンド社, pp. 29~32. 그러나, 오오모토카다와 각 점포와의 관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오오모토카다를 각 점포의 지주회사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는 주장도 있음(安岡重明(1982년), 전계서, p. 36).

과 소유의 분리」가 도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쓰이 재벌은 1881년(明治 25년) 미쓰이 물산의 관할 하에 있었던 미이케 탄광을 모체로 해서 「三井鐵山合資會社」를 설립하였다. 1887년 정부가 주식회사에 상당하는 형태와 합명회사에 해당되는 조합회사를 공인하였고, 미쓰이는 1893년의 상법 시행 등의 시기에 맞춰 은행, 물산, 광산 및 옷감 점포의 주력 4개 회사를 합명회사로 개편하고 「三井家同族會」와 「三井元方」를 발족시켰다. 「모토카다(元方)」는 미쓰이가의 11가족으로 구성된 동족회의 산하에 둔 미쓰이의 모든 사업을 통괄하는 조직이며, 이를 동족들의 모임과 모토카다를 정점에 둔 파라미드형 지주회사 구조가 확립되었다.

1909년(明治 43년)이 되면 미쓰이가(家)의 동족관리부(同族管理部)를 범인화시켜 지주회사인 「三井合名會社」를 설립함과 동시에 기간 사업부문인 미쓰이 은행, 미쓰이 물산, 2년 후에는 미쓰이 광산의 3개사를 유한책임의 주식회사로 개편하였다. 이것이 소위 「三井合名體制」라고 불리는 것으로, 본사가 주식 소유를 통하여 산하의 기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재벌 체제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상기의 과정을 거쳐 미쓰이가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한 것에는 「경영과 소유의 분리」라고 하는 경영상의 명제와는 다른 인센티브가 있었다. 그것은 동족 자산의 보전이라는 목적과 주식회사화에 따른 소득세의 경감에 있었다<sup>9)</sup>.

## 2) 전후(戰後)

### -재벌 해체와 독점금지법

거대기업군을 형성한 재벌 본사인 지주회사는 광범위한 산업분야를 산하에 두고 지배하여, 전전, 전중의 일본 경제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일본 경제를 지배한 것은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住友)를 비롯한 소위, 구(舊) 재벌이었으며, 이 재벌 조직의 중핵에 있었던 것이 지주회사였던 재벌 본사(母회사)였다. 재벌 본사가 산하에 있는 수많은 직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지배하고, 그 직계 기업이 다시 그 산하에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식의 파라미드형 지배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경점에 있는 재벌 본사의 주식은 재벌 가족 또는 그 동족들이 소유·지배하였던 것이다.

패전국인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총사령부는 전전의 일본 경제에 있어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졌으며, 전쟁경제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재벌을 경제 민주화 조치의 일환으로 해체시켰다<sup>10)</sup>.

9) 실제로 1908년(明治 42년)에 미쓰이의 전문 경영자였던 마쓰다 다까시(益田 孝)가 작성한 「三井家營業組織改革意見書」에 의하면, 미쓰이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이유로써 유한책임과 소득세의 경감을 들고 있음.

점령하의 재벌해체 조치는 주로, 「회사 해산의 제한 등에 관한 건」(칙령 657호), 「회사의 증권 보유제한 등에 관한 건」(칙령 567호), 「지주회사정리위원회령(HCSC령)」(칙령 233호) 및 「재벌 동족 지배력 배제법」(법률2호)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이들 제 조치에 의해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安田) 등의 4대 재벌 및 신흥 6대 재벌 가족 56명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및 동산·부동산 등이 처분됨과 함께, 동 재벌 가족의 회사 임원으로서의 취임·유임이 제한되어, 10대 재벌에 대한 재벌 가족의 자본적, 인적 지배력이 배제되었다<sup>10)</sup>.

또한, 상기의 「칙령 233호」에 의해 1946년 8월에 발족된 지주회사정리위원회(持株會社整理委員會)에 의해 총 83개사가 지주회사로 지정되었으나, 이들 지주회사는 그 산하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제공하고, 동 위원회가 이들 주식을 매각·처분함으로써 주식의 공개·분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이상의 조치와 함께 전후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1947년의 4월에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금지법)」이 제정<sup>11)</sup>되어 전전(戰前)과 같은 재벌 조직이 부활되지 못하도록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였다. 또한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1947년 7월에는 총리 직속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독점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기구를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재벌 해체와 제반 후속 조치 등에 의해 재벌 본사는 해산되어, 소유 주식은 강제로 몰수당하였으며, 재벌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재벌 본사 이외의 회사 주식도 몰수되어 이를 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러나, 점령 하에 해체된 재벌은 점령 종료(1952년의 강화조약 성립)전후부터 재결합을 개시하여, 미쓰이, 미쓰비시, 쓰미토모의 구 3대 재벌이 1950년대 전반에 이미 응자, 주식 상호보유, 인적 결합, 경상적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기업집단이라는 새로운 기업조직이 형성되었다. 이들 기업집단 조직의 재편성 과정에서 주체가 된 것은 점령하의 반독점 구조정책에서 제외되었던 은행과, 전전의 구재벌 직계 기업 등에 의해 새로이 형성된 사장회(社長會)였으며, 전전의 구 재벌과 같은 가족에 의한 지배 체계는 부활되지 않았다<sup>12)</sup>.

10) 본격적인 재벌 해체에 앞서, 1945년 11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그리고 야스다(安田)의 4개 본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해체에 관한 각서」를 GHQ에게 제출하고, GHQ는 이들 자료를 검토하여 「지주회사 해체에 관한 건」을 통해 재벌 해체의 방침을 밝히는 형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연합군의 기본 방침이 일본 정부에게 강압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음. 井義雄(1976), 「財閥解體—その移行から再編成まで」, 宮本又次, 中川敏一郎 監修『日本の財閥』日本經濟新聞社, pp. 257~259 참조.

11) 植草 益(1985), 「産業組織論」筑摩書房, pp. 249~254 참조.

12) 柴垣和夫(1974), 「財閥解體と集中排除」,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編, 「戦後改革 7, 経済改革」東京大學出版會, p. 89 참조.

13) 구체적으로는 植草 益(1983년), 전계서, pp. 259~278 참조 바람.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폐전후 재벌의 해체조치에 의해 재벌 본사인 지주회사는 공중 분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산하에 있던 기업은 거의 대부분이 살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정책변화의 흐름에 편승하여 이를 기업이 상호간에 횡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기업집단이라는 새로운 조직 형태로 재편성되었다. 말하자면, 수직적인 소유와 지배관계였던 재벌이 멤버기업에 의한 주식의 상호 보유와 사장회를 중심으로 한 경영자의 상호 지배라는 새로운 기업집단 형태로 이행된 것이다<sup>14)</sup>.

### III. 지주회사의 해금

#### 1. 배경

본 장에서는 주지한 바와 같이 1997년 6월 11일에 독점금지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 회의에서 가결되고, 같은 해 12월 9일에 개정 독점금지법이 각료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지주회사가 부활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주회사의 해금을 가져오게 된 환경적 요소 및 정책적 배경을 정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의 해금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기업측의 개혁 노력을 살펴보고, 정책 당국의 대응 과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 1) 기업의 조직 개혁

일본 기업은 1990년대에 초반부터 경제의 무(無) 국경화와 글로벌 경쟁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본·인재 등의 최적 배분을 모색하였으며, 신규 사업의 전략적 전개, 기존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기업조직 개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순수 지주회사의 전략적 활용을 강조해 왔다.

순수 지주회사 해금과 관련된 일본 기업의 조직 개혁 동향은, ① 기업조직 개혁의 활발화, ② 분사화의 진전, ③ 그룹 경영의 정착 등 세 가지 관점에서 크게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sup>15)</sup>.

#### (1) 기업의 활발한 조직 개혁

지주회사 해금에 앞서, 일본 기업은 기업 활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14) 재벌 해체 후 재편성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井義雄(1976), 「財閥解體—その完了から再編成まで」, 宮本又次・中川敏一郎監修 「日本の財閥, 経営史講座3」 日本経済新聞社, pp. 256~290 참조 바람.

15) 주로, 通産省 내부 자료인 「我が國企業の組織改革の動向」 및 필자의 인터뷰 자료(1997. 7) 등을 참조.

1994년 9월 통산성(通商產業省, 이하 통산성)에 의해 실시된 설문 조사<sup>16)</sup>에 의하면, 조사 대상 기업의 약 45%가 자회사·관련 회사의 통합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약 50%에 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경우, 해외시장에의 진출과 본사 사업부의 분사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본사 사업부의 통합은 비제조업 부문에서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3%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

또한 기업 결합, 영업 양도 등 기업 조직 변경에 관한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었으며, 특히, 1995년도의 합병 신고 건수는 2,520건으로써 과거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 (2) 분사화(分社化)의 진전

최근 들어 일본 기업에 의한 조직 개혁의 주요 흐름을 고찰할 때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한 진출과 그룹력의 강화, 그리고 효율성 추구를 위한 분사화의 진전 등이 주목된다<sup>17)</sup>.

특히 대기업에 있어서 사업부문의 분사화는 독립 채산이나 책임 명확화에 의한 경영의 효율화, 의사결정의 신속화에 의한 경영상의 기동성 증대, 각 업종에서의 조직·노동 조건의 명확화, 종업원의 사기 진작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되었다.

실제로, 사업부문을 자회사화하는 요인을 조사한 노무라(野村) 종합연구소의 자료<sup>18)</sup>에 의하면, 1996년 9월 현재, 조사 대상 91개사 중 88개사가 경영·이익 책임을 명확히하고, 시장·고객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분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통산성이 조사한 자료<sup>19)</sup>에 의해 일본 기업의 업종별 분사화 실시 상황을 보면, 비(非)제조업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기업 중 30%가, 제조업의 경우에는 40.4%가 이미 분사화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업종 중 약 35% 이상이 분사화를 실시하고 있었다. 매출액 규모에서 보면, 1,000억엔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조사 대상 기업 중에서 이미 66% 이상이 분사화를 실시하였으며, 300억엔 이상 1,000억엔 미만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기업 중 약 53%가 분사화를 실시하고 있는 등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분사화의 동기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16) 통산성 내부 자료(1994년 9월에 실시된 설문조사 분석 자료(회답 수 : 247社))에 근거함.

17) 1994년 후부터 기업의 사업재구축책으로써 컴퍼니제 등의 사내 분사화의 움직임이 활발하였음. 구체적으로는 1994년 4월에 소니(ソニー)가 컴퍼니제를 실시하였으며, 10월에는 합병으로 탄생한 미쓰비시(三菱) 화학도 본사의 사업 부문을 9개의 사업 단위로 나누어 대폭적인 권한 위양을 단행하였음. 또한 스미토모(住友) 상사도 「사내 자본금 제도」와 「손익 격립금 제도」에 의한 「연결 업적 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5년 1월에는 히다찌(日立) 제작소도 본사의 사업부를 4개로 나누어 사내 분사체를 도입하였음(東洋經濟新報社「週刊東洋經濟」1995. 4. 22 일자, p. 122 참조).

18) 野村総合研究所(1996. 9), 「連結納稅制度とグループ經營」 참조.

19) 통산성, 「會社分割に關するアンケート」 1995년 8~9월 실시 자료에 의함.

### (3) 그룹경영의 정착

전술한 분사화의 진전에 의해 1개 기업당 자회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들 자회사를 통합하는 작업도 진척되었으나, 그룹의 통합력 강화를 위한 기업 그룹 내에서의 조직 개혁도 활발히 진전되고 있었다.

통신성이 자체 분석한 자료<sup>20)</sup>에 의하면, 일본의 주요 기업의 자회사 수는 1985년 이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매년 증가하였으며, 특히, 1985년과 1994년의 기업 당 자회사 수는 각각 12.3사와 37.1사로 증가하여, 약 10년 동안에 3배에 가까운 급증세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 그룹화의 진전에 의해 일본 기업은 보다 그룹 경영을 중시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또한 분사화의 진전에 의해 기업 그룹이 확대됨으로써 기업 경영은 종래의 단독 결산 중심에서 연결 결산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는 추세에 있었다.

따라서 연결 결산의 활용에 있어서도 사업 분야별 관리, 분기별, 월차별 관리 회계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어났다. 1996년 9월에 노무라(野村)총합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sup>21)</sup>에 의하면, 조사 대상 91개사 중에서 단독 결산보다 중시하고, 사업 분야별 관리에 이용하겠다는 기업이 대부분이었으며, 분기별, 월차 관리 회계를 이용하고 단독 결산의 보조 정보로 활용하겠다는 기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2) 재계 및 정책 당국의 동향

### (1) 경제단체의 끈질긴 해금 요구

지주회사의 해금을 둘러싼 논의는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있었다. 당시 구주(歐洲) 경제 사절단에 의해 1967년 2월 2일에 「산업체제 근대화에 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후부터 지주회사의 시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sup>22)</sup>.

그러나, 당시의 「대기업 비판」이라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1977년에는 독점금지법 규제가 강화되어 한동안 해금 논의가 중단되었으나<sup>23)</sup>, 80년대에 접어들어 경제계에 의해, 경쟁력의 유지(1987년 3월 經團連獨占禁止法部會, 1992년 10월 經濟同友會), 외자에 의한 대일 투자의 촉진(1994년 3월 經團連)이라는 관점에서 해금론이 다시 재기되었다.

이와 같이, 재계를 대표하는 경단련 및 경제동우회 등은 자본 자유화 및 산업 재편성(60년대), 엔고 및 국제화에 대응(80년대), 규제완화와 버블 붕괴(90년대) 등 기업 활동을 둘러

20) 上同。

21) 野村總合研究所(1996. 9), 전계서.

22) 鞠子 公男(1971), 商事法務研究會編『持株會社—その機能と獨占禁止法上の問題點』文唱堂, p. 1 참조.

23) 野村總合研究所(1996), 「純粹持株會社導入と我が國企業經營の革新)—海外事例からの示唆—」, 「財界觀測」8월호, pp. 53~55 참조.

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순수 지주회사의 해금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그 때마다 정부 당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그러나, 1991년 2월의 버블 붕괴에 의한 일본 경제의 충격과 그 후의 심각한 후유증은 정책 당국의 기존 입장을 크게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1995년 2월에 통산성 산업정책국장의 사적 연구회인 기업법제연구회에서 발표한 「순수 지주회사 규제 및 대규모 회사의 주식보유제한의 개정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는 일본 경제의 장기적 침체에 의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검토된 것으로, 통산성과 재계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소위, 「적극 해금론」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선회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1995년 3월에는 총리 직속인 행정개혁추진본부는 규제완화추진계획 속에 지주회사제도의 검토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독점금지정책의 주무 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센 반발에 봉착하여 「3년 이내에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 부터는 경제계의 해금 요망이 거세게 제기되고, 부실채권, 은행 도산 등 금융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써 순수 지주회사의 해금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대세를 형성하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의 해금 요청에 대해 사업 지배력 및 경제력 집중의 초래를 이유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1995년 11월에는 「독점금지법 제4장 개정 문제 연구회」를 발족시켜,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를 부분적으로 해금하는 방향으로 종래의 방침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관계, 학계, 그리고 실업계를 대표하는 자식인이 6차례에 걸친 모임을 가졌고, 같은 해 12월에는 중간 보고서인 「지주회사 금지제도의 향후 방향」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순수 지주회사 설립을 「원칙 금지」한다는 내용의 「부분 해금안」<sup>24)</sup>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인가한다는 소위, 「소극 해금론」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996년 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순수 지주회사의 전면 자유화를 요구하는 자민당(自由民主黨, 이하 자민당) 및 산업계의 맹렬한 요망을 수용하여, 기존의 「원칙 금지」라는 소극 해금안을 대폭 수정하여, 대기업도 포함하는 모든 기업이 원칙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소위, 「원칙 자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sup>25)</sup>.

### (3) 통산성 및 대장성의 적극적 협조

한편, 통산성은 1960년대 후반에 이미 자본 자유화에 따르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

24) 부분 해금의 주요 내용은, ① 분사화한 자회사의 통괄회사, ② 금융 지주회사, ③ 벤처 캐피털에 의한 지주회사, ④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회사에 의한 지주회사 등의 4개 유형임.

25) 日本經濟新聞(1996년 1월 24일자) 참조.

등 합병의 촉진과 기업 재편을 위한 방편으로 지주회사를 구상하고 있었으며, 지주회사제도가 기업경영을 합리화시키는데 적합한 기업시스템인 것으로 인식하고 정부기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지주회사 부활론」을 지지하였다.

또한 대장성(大藏省)도 금융업계의 재편에 지주회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한하여 지주회사의 해금 범위를 검토하여, 지난 해 가을 국회에 금융 지주회사법안을 제출하였다<sup>26)</sup>.

#### (4) 정부 여당의 유연한 대응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도 1997년 1월 29일부터 여당 독점금지법 협의회에서 지주회사 금지제도 개정 등에 대해 논의를 개시하여, 2월 25일에는 여당 독점금지법 협의회에서 자민당, 사민당, 사끼가끼의 연립 3당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등, 당정간의 협력도 지주회사의 해금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sup>27)</sup>

#### (5) 미국 정부의 긍정적 반응

한편, 1946년의 독점금지법의 제정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미국은 그동안 일본의 지주회사 부활 움직임에 대해 기업 계열의 강화와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여 반대 입장을 표방해 왔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미국 정부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정비된다면 용인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sup>28)</sup>, 지주회사 해금을 위한 대외 환경과 조건 등이 성숙된 사실도 중요할 것이다.

## 2. 내용

주지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1997년 6월 11일에 독점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거의 반세기만에 순수 지주회사가 부활되었다.

이하에서는 지주회사의 해금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 독점금지법을 중심<sup>29)</sup>으로 그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여, 지난 12월중에 확정 발표한

26) 日本經濟新聞社(1997년 7월 10일자 5면) 참조.

27) 구체적인 것은 본고의 제4장에서 후술함.

28) 日本經濟新聞(1996년 1월 24일자) 참조.

29) 본 연구에 있어서는 논리 전개상 지주회사 해금과 관련된 법제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순수 지주회사 부활에 따르는 상법, 회사법, 조세법, 증권거래법 등의 법적 측면에서의 검토 및 문제점 제기, 그리고 법제도 정비상의 과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로 함. 단, 일본의 지주회사와 관련한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財)資本市場研究會(1996), 「持株會社の法的諸問題－資本市場法制研究會報告」 및 (財)資本市場研究會編(1995), 「(連載)持株會社の法的諸問題」, 「月刊資本市場」 1995년 6, 7, 8, 9, 10월호, 각각 No. 118, 119, 120, 121, 122. 에서 각 분야의 법학자가 중심이 되어 구체적으로 논술하고 있으므로 참조 바람.

가이드 라인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금지 세 가지 유형을 우선 고찰하고자 한다.

### 1) 개정 독점금지법에 대한 검토

#### -독점금지법 제4장 9조를 중심으로

1947년 4월 14일에 법률 제54호에 의거 제정된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주로 제4장 9조의 지주회사의 금지와 주식보유 총수를 제한하고 있는 제9조 2에 있었다.

따라서, 지난 6월 11일에 국회 통과된 개정 독점금지법의 개정에 있어서 가장 주목이 된 부분도 제4장 9조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개정전 · 후의 독점금지법 제4장 9조를 중심으로 개정 독점금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 (1) 기본 방침

지주회사와 관련된 기존 독점금지법 제4장 9조에서 「지주회사는 이를 설립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의 독점금지법 제9조에서는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는 이를 설립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전 독점금지법 제9조 2항에서는 「회사(외국회사를 포함)는 국내에서 지주회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독점금지법에서는 「회사(외국회사를 포함)는 국내에서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가 되지 안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전의 「원칙 금지, 예외 인정」의 획일적인 지주회사 설립 규정에서, 비록 한정적이기는 하나 「원칙 자유」로 그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 (2) 지주회사의 정의

지주회사의 정의에 있어서도 개정 전 · 후 독점금지법에서는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종래의 독점금지법 제9조 3항에서는, 「지주회사라는 것은 주식(사원의 지분을 포함)을 소유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개정 독점금지법에서는 주지한 바와 같이 「지주회사는 당해 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사원의 지분을 포함)의 취득 가액(최종의 대차대조표에서 별도로 명시한 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국내 회사를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자회사란 개정 독점금지법 제9조 3항 및 4항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국내 회사」로 규정하는 등 지주회사의 요건과 규제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sup>30)</sup>.

30) 그동안 지주회사의 논쟁에 있어서 쟁점이 된 지주회사는 전략부문(본사부문)과 사업부문을 완전히 분리한 순수 지주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종래의 독점금지법에서는 물론, 개정 독점금지법에서도 사업 겸영 지주회사의 설립 금지규정은 없으며, 상당수의 일본 대기업은 사실상 사업 겸영의 지주회사 형태를 이미 채택하고 있음.

### (3)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

개정 독점금지법 제9조 1항 및 제2항에서 「사업 지배력이 과도로 집중되는 지주회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제9조 5항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제9조 5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것은 지주회사 및 자회사, 그 외의 지주회사가 주식 소유에 의해 사업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국내 회사의 종합적 사업 규모가 상당수의 사업 분야에 걸쳐서 현저하게 커야 할 것, 이들 회사의 자금에 관계되는 거래에 기인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하게 크다든지 또는 이들 회사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상당수의 사업분야에 있어서 각각 유력한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의 제5항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한하여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① 사업규모가 상당수의 사업분야에 걸쳐서 현저하게 커질 것, ② 자금과 관련되는 거래에 의해 다른 사업자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하게 커질 것, ③ 상호 관련하는 상당수의 사업분야에서 각각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며, 국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제5항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어, 지난 7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는 세 가지 유형의 가이드 라인안(案)으로 발표되었으나, 지난 12월 17일의 법 시행과 동시에 확정되었다.

### (4) 감시 수속 및 관련 규정의 정비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총자산이 3,000억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每) 사업연도 종료 후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제6항), 새로 설립된 지주회사는 설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종래의 독점금지법 제9조 2항(대규모 회사의 주식보유 총액 제한)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관련 규정도 아울러 정비하였다.

### (5) 시행일 및 개정 규정

개정 독점금지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政令)에서 규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5조에서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후 5년을 경과한 경우,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설립 등이 금지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및 지주회사의 사업활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대규모 회사의 주식보유 총액의 제한 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에 대해 검토하며,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법 제정의 신중함과 시행상의 착오

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도 아울러 마련하였다.

## 2) 가이드 라인에 대한 검토

개정 독점금지법의 시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침이 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가이드 라인안이 1997년 7월 9일에 공포되었다.

주지한 독점금지법 제9조 5항에서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일단 설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가이드 라인으로 책정하기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주무 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독점금지법이 시행된 12월 중순에 보다 구체적인 금지 내용과 유형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지난 7월 9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 라인안으로 발표한 지주회사 설립 금지의 세 가지 유형은 지주회사 범위를 최종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이드 라인안에서 제시된 지주회사 금지 유형은 일반 기업은 물론, 산업체에서 염려하고 있는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아 매우 한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개다가 통산성 및 공정 거래위원회 등 주무 관청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쳤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매우 높았다.

이하에서는, 그동안 수집된 기 발표 자료와 필자의 일본 현지에서의 면담자료<sup>31)</sup> 등을 토대로, 상기의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된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지주회사」의 3개 유형과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는 경우」의 4개 사례에 대해 검토를 함으로써, 개정 독점금지법의 내용과 의의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 (1) 지주회사 설립이 금지되는 3개 유형

#### ① 금지 제1유형 : 구(舊) 재벌과 같은 기업집단

지주회사 그룹의 총 자산이 15조엔을 초과하며, 그와 동시에 5개 사업분야 이상의 주요 사업 분야에서 각각 총 자산 3,000억엔을 초과하는 회사를 소유하는 경우에 설립 금지의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경우, 철강, 기계 등 특정 분야에서만 자산 규모가 거대할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규모가 매우 크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민 경제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지주회사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일본의 경우 현재 6대기업집단이라고 불리는 기업 그룹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 그룹은 종합상사, 전기 메이커, 기계 메이커, 철강 메이커, 부동산 회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각각 독립된 대기업이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31) 구체적으로는, 1997년 7월 지주회사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통산성 산업정책국 산업조직과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이며, 그 외 필자에게 제공된 관련 내부 자료 일체를 포함함.

따라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시된 가이드 라인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그룹 내에 있어서 각 기업이 지주회사로 통합됨으로써 전전의 재벌이 부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금지 제2유형 : 대규모 금융기관을 소유한 경우

총 자산이 15조엔을 초과하는 금융회사와, 금융 또는 금융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업무(채무보증 업무 등)이외의 사업 분야에서 총 자산 3,000억엔을 초과하는 일반 사업회사를 소유하는 경우에 설립이 금지된다. 다시 말하자면 대규모 금융회사와 일반 사업 회사를 함께 지주회사의 산하에 둘으로써 국민 경제에 대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금융회사는 일반 사업회사에 대해 용자 등의 수단에 의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설립금지 제2의 유형을 사례로 들면, 지주회사가 도시은행의 힘을 빌어 종합상사, 부동산 회사 등을 산하에 두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③ 금지 제3유형 : 상호 관련이 있는 유력 기업을 소유한 경우

상호 관련성이 있는 5개사(산업 규모가 매우 클 경우에는 3개사 이상) 이상의 주요 업무 분야에서 각각 다른 유력한 회사(시장 점유율 10% 이상 또는 상위 3위 이내)를 소유하는 경우로써, 여기서 관련성이라는 것은 사업 분야간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및 보완·대체관계가 있는 경우에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한다. 다시 말하자면,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는 사업분야에 있어서 각각 유력한 사업자를 소유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주회사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상기의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지주회사가 유력 자동차 메이커와 자동차의 원재료인 철강, 유리, 전자 부품, 타이어 등의 유력 메이커를 산하에 두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금지한다는 것이다<sup>32)</sup>.

## (2) 비(非) 금지 4개 유형

1997년 7월 9일 공정거래 위원회에 의해 공포된 지주회사의 가이드 라인에는 상기의 금지 3유형과 함께, 금지하지 않는 4가지 사례의 유형도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소위,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는 지주회사」로써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된 순수 분사화, 벤처 캐피털, 금융회사의 다른 업종간 상호 진입의 경우, 총 자산 합계가 3,000억엔 이하의 경우 등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2) 제3유형의 지주회사 금지 사례는, 자동차 분야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에도 적용되는 바, 예를 들면, 은행, 생명보험, 증권, 화재보험 등의 유력 금융기관 중 3개 분야 이상을 지주회사의 산하에 두고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① 순수 분사화

순수 분사화란 모 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리하여 자회사 또는 관계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sup>33)</sup>, 이와 같은 분사화는 기업의 조직 형태 변경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주회사의 금지 목적에 부합된다.

일본 기업의 경우, 주지한 바와 같이 소니<sup>34)</sup>, 히파찌를 비롯한 대기업에서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한 진출과 그룹 재편성 등의 일환으로 이미 사내 분사화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순수 분사화란, 사업부제 및 컴퍼니제하의 본사 내부에 있는 각 사업부 및 컴퍼니를 자회사화하여 지주회사가 모 기업으로써 본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순수 분사화의 경우, 조직 변경후 사업 지배력이 집중될 가능성성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을 통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 ② 벤처 캐피털

벤처 캐피털(Venture Capital)이란 장래성이 있는 미등록, 미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당해 주식의 배당 이익, 양도 수입 차익, 주식 매각 이익 등을 노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써, 고도한 기술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살려 창조적인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중소 기업에 대해 활력을 넣을 수 있다.

### ③ 금융기관의 이(異)종업간에 있어서의 신규 상호 진입

금융기관이 다른 업태에 대한 신규 진입방식의 하나로써 지주회사 형태를 이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특정 금융기관(은행)이 증권 부문에 진입하고자 할 때,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지주회사가 은행 본점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부수적인 업무를 자회사화 하고, 외부에 있던 증권회사를 산하에 둘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을 기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금융 자유화가 전전되어 금융기관의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이 업종간 상호진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 경우에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면 업태간의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의 업태별 자회사 형태보다 합리적이며, 신규 진입에 의한 경쟁 유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33) 武藤泰明(1996),「持株會社組織のメリットと課題」,『持株會社の原理と經營戰略』ダイヤモンド社, pp. 61~62 참조.

34) 소니는 본사 기능의 강화, 신속한 시장 대응, 권한 이양을 통한 각 사업조직의 자율성 확보하기 위해 1994년 4월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사내 분사화를 추진하였다. 소니는 스스로 분사화를 컴퍼니제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였으며, 이후 히파찌(1994년 6월), 다이에(1996년 2월) 등이 분사화를 채택하였음(米倉誠一郎(1996),「持株會社の歴史とパラタイム轉換へのインパクト」,『持株會社の原理と經營戰略』, ダイヤモンド社, p. 48 참조).

④ 총 자산 합계가 3,000억엔 이하인 소규모 지주회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드 라인안에서는 지주회사를 포함한 자회사의 총 자산 합계가 3,000억엔 이하일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은 전전과 같은 대규모 재벌의 부활을 억제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하인 그룹에 대해서는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그룹 재편성과 리스트럭처링을 원활하게 하며, 그와 동시에 기업활동의 자유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였다<sup>35)</sup>.

#### IV. 해금 논리

앞서 언급한 환경 요소와 일련의 해금 논쟁, 그리고 정부의 대응 조치 등을 통하여 일본에서 순수 지주회사가 부활하게 된 해금의 논리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상기의 인식에 근거하여 해금 논리의 유형을 제시하면, ① 1990년대 전후의 기업을 둘러싼 국·내외에 걸친 정치·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②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개혁 노력, 그리고 ③ 관련 정부 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에 준거한 정책 기조의 극적인 전환 등으로써,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1. 해금 논리 I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제 통과의 정합성을 유지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대외적인 비판을 모면하고 자국의 경제적 실익을 도모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한국과 함께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나라였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경제력 집중에 의한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한다는 구실 하에 제정되었던 독점금지법에 의해 지주회사의 설립이 금지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50여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오늘날, 세계화·개방화라고 하는 기업을 둘러싼

35) 상기의 지주회사 설립 금지의 유형 외에도 금융회사 주식보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종래의 규정을 대폭 완화한 사실도 중요함(구체적인 내용은 日本經濟新聞社(1997년 7월 10일자), 제14면 참조 바람). 즉, 독점금지법 개정과 관련된 가이드 라인안에서는 「독점금지법 제11조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해 국내 회사의 주식을 5%(보험회사의 경우에는 10%)를 초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담보권의 행사 등에 의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에 의해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현행 룰을 크게 완화하였음. 금융기관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기존 금융기관간의 전략적 매수를 용이하게 하며, 분사화 등을 통한 기동적이고 탄력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임.

급격한 환경 변화와 버블경제 붕괴후 정체된 일본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해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특히, 최근의 WTO 체제 출범은 무역 장벽을 범 세계적으로 완화시켜, 세계 및 국내 경제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어, 세계 주요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의한 기업간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OECD 및 WTO 등의 세계기구는 교역 활동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계 공동의 경쟁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국제 규범에 적합하게 국내 법령과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것이 당면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날 일본에서 지주회사가 해금되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국제적 법제도와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정책 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1892년에 스텐다드 석유가 지주회사를 설립한 이후 폭넓게 보급되어, 시티코프 그룹 및 J. R. 모건도 순수 지주회사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제국의 대기업도 순수 지주회사제를 채택하고 있다<sup>36)</sup>.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순수 지주회사를 일본만이 자국의 특수한 사정과 경제적 이념을 내세워 금지하였으나, 설립 금지의 당위성과 논리성이 회박하고 또한 금지에 의한 경제적 실익이 적다는 사실이 재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의 특수한 상황을 내세워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으나, 구미의 대기업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조직형태인 순수 지주회사를 일본만이 굳이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자체 반성이 지주회사 해금을 앞당겼다는 견해도 있다<sup>37)</sup>. 말하자면, 일본에서의 지주회사 해금은 외국 기업에 인정되고 있는 선택의 다양성을 국내기업에게도 인정함으로써 경쟁 조건상 불이익을 배제하고, 외국 지주회사의 국내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외국 기업의 대일(對日) 투자 촉진」과 선진 외국 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한다고 하는 실리적 측면의 논리가 깊게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2. 해금 논리 Ⅱ

지주회사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의 약화와 규제완화의 범세계적 추세, 그리고 경제계에 의한 강력한 해금 요구 등에 의한 당국의 정책 기조 전환

순수 지주회사의 해금을 우려하는 대표적 의견의 하나가 전전(戰前) 재벌의 부활이었다.

36) 二味 肇(1996), 「歐美に學ぶ日本の持株會社化」, 「持株會社の原理と經營戰略」ダイヤモンド社 참조.

37) 古賀 茂明(1996), 「持株會社解禁は獨禁政策の證し」, 「月刊資本市場」1996년 2월호, No. 126. pp. 42~43 참조.

종래의 개정 독점금지법 제9조는 「사업 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규제로 써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내·외의 사회, 경제 시스템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기업간 경쟁이 국제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어, 과거의 재벌과 같이 정치적·경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조직의 부활을 염려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재벌 부활을 규제 유지의 근거로 삼는 논리는 현실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순수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근거가 된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객관적인 기준,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한 폐해가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규제를 유지해 온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대두되었다<sup>38)</sup>. 즉, 독점금지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경쟁 제한의 배제」에 있으며 「개별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확보」에 있는 바, 만일,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에 의해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경쟁 제한적인 행위가 있다면, 그 때 구체적인 폐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규제대국」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부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일본이 과거와 같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官) 주도의 경제 운영으로부터 민 주도의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경직화된 경제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하는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규제의 완화 및 철폐는 구조개혁의 촉진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이익의 향상, 산업간 경쟁력의 제고, 국제적인 공동의 률 구축을 위해서도 규제완화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sup>39)</sup>.

특히, 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많은 산업에서 규제완화가 실시되어 경제적 규제의 완화에 의해 경쟁의 촉진,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가격의 하락, 기술혁신의 촉진 등의 성과가 속속 소개되고, 80년대 초에는 재정 개혁의 필요성과 무역마찰 해소의 일환으로 국내시장의 개방이 거론됨으로써, 일본에 있어서도 1980년대부터 규제완화가 실시되었다<sup>40)</sup>.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독점금지법의 개정도 규제완화의 범주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경단련을 중심으로 한 재계에서 끈질기게 제기되었다. 그 결

38) 구체적으로는, 宮内義彦(1996), 「經營戰略の自由度を高める持株會社システム」, 「持株會社の原理と經營戰略」, ダイヤモンド社, pp. 8~12 참조 바람.

39) 經濟企劃廳總合計劃局編(1988), 「規制緩和の經濟的理效果 - 規制緩和研究會報告書」大藏省印刷局 및 宮内義彦(1996), 「經營戰略の自由度を高める持株會社システム」, 전개서 pp. 4~5 참조.

40) 일본에서의 규제완화의 목적, 배경과 동향, 그리고 미국의 규제완화 실시 내용과 성과 등에 대해서는, 植草 益(1991), 「公的規制の經濟學」筑摩書房, pp. 175~195 참조 바람.

과 1995년 3월에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계획 속에 「지주회사 금지를 수정하기 위한 검토」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정부측 입장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완화적 차원에서 지주회사의 부분 해금을 결정하였으며, 그 다음 해인 1996년 1월에는 자민당과 재계의 전면 해금 요구를 받아 들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원칙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게 하는 등 종전의 부분 해금안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개정 독점금지법의 「지주회사 원칙 자유」라는 근간 형성에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해금 논리 Ⅲ

**일본 기업의 경영 자유도를 높이고 기동적 전략 수립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베를 붕괴 후의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

일본 경제는 80년대 후반에 미국을 능가하는 공업 대국, 기술 대국이라고 자부하였으나, 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베를 붕괴와 함께 1991년 2월부터 93년 10월까지 무려 32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소위, 헤이세이(平成) 불황에 빠졌다. 1993년 10월이후 경기 회복기에 진입하긴 하였으나 아직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베를 붕괴 후의 수십에서 수 백조엔에 달하는 부실채권 문제는 일본의 금융 시스템을 위기 상황에 몰아 넣었으며, 일본 정부는 부실채권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금융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sup>41)</sup>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제기된 순수 지주회사 해금 논의는 상기의 거대한 부실 채권에 의해 위기에 봉착한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취지 외에, 당시의 지속적인 엔고에 의한 공동화 현상의 심화, 산업 전반의 정체, 그리고 미국과의 경쟁 열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되었다. 말하자면,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새로운 개념의 산업에 대한 대규모 자본의 적기 투자, 글로벌 시각에서의 사업 재편성, 그리고 기업 그룹내의 강력한 리더로써의 역할 등에 큰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이다.

순수 지주회사의 경영 조직상의 이점 또는 그 효용은, ① 사업과 경영의 분리, ② 분권화에 의한 본사 기능 및 비용의 감소, ③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법적, 회계적 독립성에 의한 경영 책임의 명확화와 투명성 확보, ④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전략적인 대처 수립 가능, ⑤ 기업 매수 및 매각, 그리고 합병 사업 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재편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41)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금융 지주회사제를 활용하여 금융 기관들이 다른 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다른 업종에 있는 금융 기관과의 계통 및 합병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부실채권 부담을 안고 있는 금융 기관의 자구 노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음.

한편, 전전의 재벌은 가족 자본의 봉쇄적 소유와 가족 자산의 유지에 역점을 두었으나, 오늘날의 지주회사는 상기에서와 같이 분권화에 의해 경영 수법의 선택 폭을 여하히 확대할 것인가에 있다. 즉, 전자는 가족 자본의 봉쇄적 소유와 가족 자산의 유지에 역점을 두고 본사 산하의 자회사를 통합하고자 하는 집권 논리였으나, 후자는 사업 행위는 하지 않고 주식 보유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경영 기구를 두고 독립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분권 논리라는 점에서 특이성이 있다.

말하자면, 기존 사업부제나 사업 지주회사 제도하에서는 모회사로 부터의 제약과 집권적 영향이 너무 강하여 경영의 유연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나, 순수 지주회사 시스템은 주지한 바와 같이 그룹 경영상의 사업과 경영의 분리, 분권화에 의한 본사 경비의 삭감, 경영 책임의 명확화, 사업 재구축 등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순수 지주회사의 조직형태가 분권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경영에 있어서 조직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함으로써 당면한 국내 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업 활동과 관련한 시스템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고 하는 관·민의 확신이 해금 논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V. 결 론

### - 전망 및 시사점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개정 독점금지법이 1997년 6월 10일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성립되어, 패전후 1947년부터 금지해 온 순수 지주회사가 거의 50년만에 부활되었다<sup>42)</sup>.

상기에서와 같이, 일본에서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게 된 배경에는 196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전개된 소위, 「지주회사 해금 논쟁」, 1990년대 초의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단련을 비롯한 경제계가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강력하게 해금을 요구했던 사실 등이 중요하다<sup>43)</sup>.

한편, 개정 독점금지법이 공포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순수 지주회사 도입에 따르는 일반의 염려가 여전히 불식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상법, 증권거래법, 세법 등의 관련

42) 또한, 개정 독점금지법이 지난 12월에 17일부로 시행됨을 계기로, 1998년 5월 현재 유통업체인 다이에 그룹과 후지은행을 주축으로 하는 금융 그룹 등이 지주회사 설립을 서두르고 있음.

43) 기업의 재편성과 사업 재구축 등을 통해 90년대 초반 이후의 버블 붕괴에 의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후유증을 치료하고, WTO체제하의 치열한 경쟁 라운드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순수 지주회사와 같은 기업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 입장을 바꾸게 했다고 할 수 있음.

법이 정비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에서의 지주회사의 설립 움직임은 당분간 한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니 및 신일본(新日本) 제철은 순수 지주회사하에서 일단 모회사-자회사로 나누면 자회사의 사업범위를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조직 경직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히다찌(日立) 제작소 등은 순수 지주회사 하에서는 자회사간의 자금·인재의 유통이 어렵다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개정 독점금지법과 밀접한 상법, 증권거래법, 노동관계법, 세법 등의 관련법에 대한 정비와 제도상의 보완을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현행 상법 및 세법이 지주회사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도 차익 과세, 안전관련법 등에 비탕을 둔 인허가 문제 등에 장해가 예상된다 는 점, 그리고 기존 회사가 지주회사로 되는 경우, 자회사에 대한 특화 자본금이나 자산양도 차익세, 등기 변경에 따르는 등록 면허세 등 거액의 제도 코스트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순수지주의 회사 부활에 따른 산업조직론 측면에서의 배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주회사는 경제력 집중에 의해 독점의 폐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정 거래위원회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 등 산업구조 및 정책적 차원의 조정도 필요 불가결하다<sup>44)</sup>.

일본에서 순수 지주회사 해금이 있기 까지는 60년대 이후 장기간에 걸친 정·관·민의 이해 당사자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최근에 마침내 순수 지주회사가 부활 되긴 하였으나, 독점의 폐해에 대한 예방과 경제적 효용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못한 것에 의한 불안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보완도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일본에서의 순수 지주회사가 부활되기까지는 장기간에 걸친 수많은 논쟁과 입법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해금 후 시행 단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에서는 일본의 지주회사 해금과 관련하여, 전경련을 비롯하여 상공회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의 재계와 일부 언론 및 학자, 그리고 관·민간 연구소 등에 의해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 당국은 이미 지난 4월 27일에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제한적으로 순수 지주회사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와 같은 한국에서의 순수 지주회사 도입 움직임은, 지난 연말이후 한국 경제가

44) 拙稿(1997), 「최근 일본의 순수 지주회사제에 관한 고찰」(樂實大學校 社會科學研究院編『社會科學研究』第15輯), pp. 16~17참조 바람.

IMF체제하에 놓였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이 겹친 「복합불황」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등의 어려운 기업경영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순수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주지한 바와 같이 기업의 구조 조정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으며, 자금조달 비용 등을 절감하여 기업이 처한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법제도를 원용하는 과거의 풍토와 관행은 쇄신되어야 하며, 외국 사례를 즉흥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순수 지주회사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에 앞서, 경영 주체인 기업 스스로가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 조정과 경영 혁신을 통한 자구 노력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 주체인 정부 당국도 한국 경제가 당면한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응 방안을총체적으로 수립한 후, 규제 완화 또는 혁파 차원에서 순수 지주회사의 허용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힘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기업의 경영조직과 전략에 대한 선택권은 어디까지나 기업에게 주어져야 하나, 그 결과에 대한 영향과 책임은 일반 국민과 국가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기업이 지주회사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글로벌화 불록화로 대변되는 21세기형의 국가간 경쟁에 있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지주회사의 설립 허용 조치는 구조 조정을 위한 경영 전략상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의미 외에도, 한국 기업이 새로운 가치의 국제 규범과 시스템의 창출에 동참하고, 한국 기업의 폐쇄적인 대외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외국 지주회사의 국내 진출과 대한(對韓)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등 국가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당국은 우선 당면한 공정거래법의 개정과 함께, 상법, 세법, 증권거래법, 회사법, 회계제도 등 지주회사제와 관련한 법규정과 제도 등에 대해서도 규제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비해야 할 것이다. 법·제도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확보야 말로 21세기형의 국가 경쟁 패러다임인 글로벌 시스템 및 제도의 조속한 구축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1. 鞠子公男(1971), 商事法務研究會編 「持株會社－その機能と獨占禁止法上の問題點」(東京,文唱堂).
2. 古賀茂明(1996), 「持株會社解禁は獨禁政策の證し」, 「月刊資本市場」1996년 2월호, No.

- 126(東京).
3. 小谷野薰 外 2人(1996), 「純粹持株會社の導入と我が國企業經營の革新－海外事例からの示唆－」, 野村總合研究所編『財界觀測』1996년 8월호(東京).
  4. 前田雅弘(1995), 「持株會社の法的諸問題(1)」(『月刊資本市場』1995년 6월호, No. 118).
  5. 宮内義彦(1996), 「經營戰略の自由度を高める持株會社システム」, 『持株會社の原理と經營戰略』(東京, ダイヤモンド社).
  6. 武藤泰明(1996), 「持株會社組織のメリットと課題」, 『持株會社の原理と經營戰略』(東京, ダイヤモンド社).
  7. 柴垣和夫(1974), 「財閥解體と集中排除」(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編『戰後改革 7, 經濟改革』,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8. 渡邊恒(1996. 3), 「今なぜ純粹持株會社なのか－解禁論議に缺けている視點」, 『月刊資本市場』(財團法人)資本市場研究會編, No. 127 (東京).
  9. 奥村 宏(1996), 「持ち株會社に異議あり」(毎日新聞社編『エコノミスト』1996. 2. 6).
  10. 米倉誠一郎(1996), 「持株會社の歴史とパラタイム轉換へのインパクト」, 『持株會社の原理と經營戰略』, (東京, ダイヤモンド社).
  11. 植草 益(1985), 『產業組織論』(東京, 筑摩書房).
  12. 二味 嚴(1996), 「歐美に學ぶ日本の持株會社化」, 『持株會社の原理と經營戰略』(東京, ダイヤモンド社).
  13. 経済企劃廳總合計劃局編(1988), 「規制緩和の經濟的理效果－規制緩和研究會報告書」(東京, 大藏省印刷局).
  14. 野村總合研究所(1996), 「純粹持株會社導入と我が國企業經營の革新－海外事例からの示唆－」, 『財界觀測』8월호 (東京).
  15. 日本經濟新聞社「日本經濟新聞」 및 朝日新聞社「朝日新聞」의 관련 기사.
  16. 東洋經濟新報社「週刊東洋經濟」1995. 4. 22(東京).
  17. (財)資本市場研究會編(1996), 「持株會社の法的諸問題－資本市場法制研究會報告」(東京).
  18. (財)資本市場研究會編(1995), 「(連載)持株會社の法的諸問題」, 『月刊資本市場』1995년 6, 7, 8, 9, 10월호, 각각 No. 118, 119, 120, 121, 122 (東京).
  19. 通商產業省 내부 자료 및 필자의 인터뷰 자료.
  20. 기타, 국내관련 신문 및 잡지.

## The Revival of Pure Holding Company System in Japan

Shin, Jang-Chul\*

### Abstract

Japan removed the ban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pure holding company from November, 1997. Pure holding company had revived first time for 50 years. Revival of pure holding company comes from "controversy about removal of a ban relating to pure holding company" from 1960's and the strategies to cope with rapid change international and national environment for enterprises from the early 1990's.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pure holding company, there still remains the arrangement of securities and exchange law, labor law, tax law as well as commercial law and institutional complement with consideration in industrial organization as an important political assignment.

As mentioned early, Japan experienced a dispute over long time and a trial and error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before the revival of pure holding company, but Japan has still a lot of problems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Key-words : pure holding company, anti-trust law

\* Full time lecturer of Dept. of Japanese Studies, Ph.D.

# 複式簿記와 資本主義의 發達에 관한 文獻史的研究\*

## -「좀바르트」의 命題를 중심으로-

A Historical Approach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and Double entry Bookkeeping

高 承 祺\*\*

### 目 次

I. 問題의 提起	3. 複式簿記의 概念規定의 歷史性
II. 資本主義精神의 發現과 資本概念	IV. 複式簿記에 대한 「좀바르트」命題의 檢討
1. 資本主義精神의 發現	1. 初期資本主義와 複式簿記의 經濟史的 意義
2. 古典的 資本·利益概念의 登場	2. 複式簿記에 대한 「좀바르트」命題의 批判的 檢討
III. 複式簿記의 歷史的 概念規定과 資本主簿記	3. 「좀바르트」命題의 現代的 視角
1. 複式簿記의 生成要因으로서의 資本概念	V. 要約 및 結論
2. 資本主簿記의 胎芽	

### I. 問題의 提起

일찍이 獨逸의 文豪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의 작품인 「빌헬름·マイスター의 徒弟時代」(Wilhelm Meisterslehrjahre, 1796)에 의하면, 「…複式簿記가 商人에게 利益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人間의 가장 훌륭한 발명의 하나이다.」라고 複式簿記를 評한 文句가 전해지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이 複式簿記는 상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이의계산의 도구로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문화와 경제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複式簿記는 企業會計의 가장 전형적인 계산기구로서 기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다. 그것은 貸借左右의 대조적인 계정형식을 가진 實在計定과 名目計定의 결합으로 구성된 計定組

\*이 연구는 1998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檀國大學校 經營會計學部 教授

1) Johann F. Schär, "Buchhaltung und Bilanz", (5 Aufl., Berlin, 1922), S. 3(Fussnote 1), 〈林良治 譯, 「シェアー簿記會計學」(東京, 新東洋出版社, 1986), p. 4.〉, 小宮豊隆 譯, 「ヴィルヘルム・マイスターの徒弟時代」(東京, 岩波書店, 1953), pp. 50~51.

織이 체계화되어 있고 各去來는 그 二面的인 성격에 따라 貸借로 分解되며, 複式記入됨으로써 貸借平均의 원리에 따라 自己檢證性이 확보되는 記帳體系를 일컫는다. 이렇듯 複式簿記는 기술적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쓰여져 왔던 單式簿記와는 다르게, ① 거래 구조의 二面性에 의한 均衡性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② 기록계산의 체계적 질서유지에 의한 自己檢證機能을 갖고 있다는 것, ③ 계정조직의 체계화에 의한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資本과 그 운용결과인 利益의 資本主的 計算構造에 따라 本質論에 접근되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特性을 지닌 複式簿記가 자본주의적인 경제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고 발전해 왔는가에 관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複式簿記가 갖는 歷史的 · 經濟的 意味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會計史的 觀點에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複式簿記가 生成 · 發展해온 자본주의적 경제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複式簿記의 계산구조에 의한 資本主義理論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企業과 연계시켜 자본주의적 경제사회의 전개과정에서 複式簿記의 位相을 찾아보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더 나아가서는 위에서 제시한 문제영역에 대하여 직접 · 간접으로 언급한 文獻들을 섭렵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生成 · 發展에 대한 複式簿記의 役割을 찾아보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複式簿記의 사회경제적인 기능에 대하여 적극적 ·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그 후의 연구에 큰 공헌을 한 「좀바르트」(Werner Sombart)의 基本命題에 대하여 분석 ·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소극적 · 부정적인 입장에서 견해를 제시한 「야메이」(Basil S. Yamey)의 所說에 대해서도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갖는 현대적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다.

## II. 資本主義精神의 發現과 資本概念

### 1. 資本主義精神의 發現

15세기 말에서 18세기까지에 이르는 기간은 자본주의적 요소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상업자본주의 또는 初期資本主義의 시대라 일컬어진다. 중세시대의 莊園과 길드에 의한 자금자족경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경제질서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즉, 土地의 私有化가 인정되고 임금 노동력의 상품화가 등장함과 동시에 資本의 투자로 인한 시장생산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자본주의경제의 성립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資本主義의 성립은 지리상의 발견과 르네상스의 발흥, 종교개혁과 시민혁명과 같은 문화적 · 사회경제적 · 정치적 변화를 통한 近代유럽精神<sup>2</sup>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거기에서 資

本主義精神은 發現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근대경제의 기본제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좀바르트(W. Sombart)에 의하면, 「資本主義는 하나의 교환경제체제이다. 거기에는 일 반적으로 두 가지의 다른 인간의 집단, 곧 하나는 생산수단을 소유하며, 동시에 그 지휘권을 가지는 경제주체인 집단과 다른 하나는 무소유의 단순한 노동자(경제객체로서의)의 집단과의 양자가 市場에 의하여 결부되어 서로 협동하는 경제체제이며 거기에는 營利主義와 경제적合理主義에 의하여 지배되는 유통경제조직이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sup>3)</sup>. 이에 따르면 자본주의정신은 營利主義와 경제적 합리주의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정신은 無限 한 것에 대한 추구로 나타난다. 무한에의 추구는 권력욕·지배욕·정복욕·발명욕·기업욕 등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정신이 경제생활을 지배하게 되자, 그것은 봉건적·수공업적인 장원·길드의 경제를 붕괴시키고 화폐가치의 증식, 즉 영리추구로 나타난다고 하여 자본주의정신의 근원을 無限渴望의 정신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브렌타노(L. Brentano)에 의하면, 자본주의정신의 본질은 무한히 貨幣를 얻고 싶어 하는 영리욕에 있으며, 그것은 古代社會나 中世時代에도 존재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영리욕이 중세기에는 가톨릭敎理에 의하여 속박되었으나, 르네상스 이후에 그러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본주의정신으로 발현했다는 것이다<sup>4)</sup>. 그런데 막스·웨버(M. Weber)에 의하면, 倫理的인 善의 입장에서 인식함으로써 일상생활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정신이라는 것이다. 그는 資本主義精神이 직업의식에 따라 기업이윤을 조직적·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라고 규정하고 그 근원을 종교개혁에 의하여 새로이 탄생한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에서 찾고 있다<sup>5)</sup>. 그에 의하면 기독교적윤리에서 유래한 자본주의정신의 담당자는 도시귀족이 아니라 산업적 중산층이었다는 것이다. 산업적 중산층을 기초로 하는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적 직업윤리는 근대자본주의 발전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는 견해이다.

2) 資本主義精神의 基盤이 된 近代유럽精神은 다음의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 ① 無限渴望의 活動精神(여기에서 企業欲과 利潤追求欲이 나타난다.)
- ② 人間幸福追求의 精神
- ③ 合理主義精神
- ④ 權力憧憬의 精神
- ⑤ 個人主義精神

〈朴光淳外『經濟사신론』(서울, 유품출판사, 1997), pp. 174~175〉

3) W. Sombart, "Der Moderne Kapitalismus", Zweite Band, Unverändere Aufl. München, 1919), S. 319; (朴光淳外, 前掲書, pp. 271)

4) 朴光淳外, 前掲書, pp. 175~176.

5) M.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in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Bd. 1, Tübingen, 1920), S. 17~206; (大塚久雄譯, 「プロテスタンティズムの倫理と 資本主義の精神」(東京, 岩波書店, 1989).)

## 2. 古典的 資本·利益概念의 登場

中世時代부터 重商主義에 利益과 資本이라는 概念이 등장하였다. 利益(Profit)은 16~17세기에 나타난 것으로서 人的利益을 표시하는 것이다<sup>6)</sup>. 그것이 후에 營業利益·資本利益으로 구별되기에 이르렀으나, 당초의 商去來에서는 일괄하여 利益으로 이용되었다. 중세시대의 實務家는 이익을 얻는데 資本이 필요했으며 그것이 生產的 資本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의 資本蓄積은 드문 일이었으나 資本自體는 존재했다. 다만, 資本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利益(果實金)을 놓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았을 뿐이다. 近代經濟學者들은 이것을 消費資本(consumption capital)이라고 불렀다. 물론, 資本主義의 방법에 의한 中世의 貸與業도 존재했으나, 자본주의적인 생산경제와는 다른 것이었다. 예컨대, 대여금은 女息의 혼인비용이나 가족의 의료비로 쓰여지는데 빌려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의 대여금은 利益을 얻기 위한 상품을 구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필요에 충당하려는 것이어서 이때의 資本은 重商主義時代의 貨幣와도 다른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자급자족경제에서의 資本은 별로 의미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中世社會의 여러 가지 制度가 붕괴되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기를 거치면서 중세말기 이후의 유럽경제사회는 자본가층과 임금노동자층 그리고 시민중산층으로 구분되었으며 신제품·신시장을 전제로 한 중상주의사상이 팽배하였다. 이때부터 가득한 利益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資本蓄積은 종래의 자급자족경제로부터 탈피하는 요인이 되었고 새로운 경제사상을 출현하게 하는 전기가 되었다. 中世의 경제사상이 儒理나 教會를 기반으로 한 것임에 비하여 15~18세기에 나타난 경제사상은 자유방임의 자본주의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

古典的의 資本·利益概念을 알기 위해서는 18세기 아담·스미스時代의 경제적 배경을 주의깊게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國富論」<sup>7)</sup>이라는 著書를 통하여 資本과 利益의 개념을 규정하고 고유한 경제이론을 구축하였다. 이 시대의 國富는 개개인의 年間所得을 전제로 하여 측정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아담·스미스는 소득산정에 年間生產額의 개념을 이용하였다. 그는 所得을 資本의 보상액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여기서 그는 資本을 고정자본(fixed capital)과 순환자본(circulating capital)<sup>8)</sup>으로 분류하였다. 순환자본에 대한 投資는 제조·구매에 충당하는 것

6) V. K. Zimmerman, British Background of American Accountancy, (Unpublished Ph. D. Thesis : Univ. of Illinois, 1954), pp. 41~63.

7)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Random House, 1937).

8) V. K. Zimmerman, "op. cit., p. 56; (Adam Smith, op. cit., pp. 262~263.)

이다. 이들 자본은 소유하고 있는 한, 이용자에게 收益이나 利益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상품은 화폐로 轉化하기까지 收益이나 利益을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아담·스미스의 資本은 계속적인 유통이나 외부로부터의 還流, 순환 및 交換에 의해서만 利益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資本이 순환자본(운전자본)이며 고정자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하게 된다. 즉, 土地의 개량, 기계나 도구와 같이 소유주를 바꾸지 않고 收益이나 利益을 발생시키는 資本이 고정자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아담·스미스의 二元的 資本分流는 投資所得에 대하여 收益의 二元的 分類를 가능하게 하였다. 즉, 자본의 종류는 투자에 대한 年度利益의 구분을 ① 영업이익으로서 순환자본의 투자에 대한 年度回收率과, ② 資本利益으로서 고정자본투자에 대한 年間收益으로 하였던 것이다. 이들 概念은 영국의 기업사상이나 경제에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利益과 資本의 개념이 英國商法<sup>9)</sup>의 성립에도 영향을 주었고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經濟思潮의 변천에 따라 商業資本에서 產業資本으로 移行되어 가면서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 III. 複式簿記의 歷史的 概念規定과 資本主簿記

#### 1. 複式簿記의 生成要因으로서의 資本概念

오늘날 企業會計의 계산형식으로서 정착되어 있는 複式簿記의 起源은 지리상의 발전이나 物理的인 기계의 발명과는 다르게, 인간이 만들어낸 계산제도(人的서비스制度)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本質觀에 의하여 規定되어진다. 複式簿記의 本質觀은 크게 두 가지로 大別된다. 하나는 형식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複式의 의미를 두 개의 帳簿(分介帳과 元帳), 計定의 對立形式(차변과 대변), 그리고 去來의 二重轉記(어느 計定의 借記와 다른 計定의 貸記)라고 하는 二重性概念을 기초로 한 記帳의 均衡性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複式簿記는 기술적이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것으로서 이해되며 古代로마의 代理人會計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sup>10)</sup>.

이에 대하여 다른 하나는 二重性과 均衡性을 전제로 하면서도 실질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資本과 그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利益에 대한 資本主的 計算制度의 확립에서 複式簿記의 起源을 찾는 경우이다. 즉, 이것은 資本의 殘額(stock)을 계산하는 실질계정(real accounts)

9) Ibid., p. 55: (Accountants and Economists (Editorial), Accountant, Vol. 117, 2nd August, 1947, pp. 65~66).

10) 濱田弘作, 「會計史研究序說」(東京, 多賀出版, 1986), pp. 169~171.

과 그 흐름(flow)을 계산하는 명목계정(nominal accounts)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조직적인 계산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이 本質觀에 의하면, 資本概念의 확립이 複式簿記의 전제가 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代理人會計에 대하여 資本主簿記(proprietary bookkeeping), 또는 이태리式 資本·利益會計(Italian capital-income accounting)라고 일컬어진다. 그起源은 中世의 이태리 北部地方의 상업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나타난 組合會計(Venture Accounting)가 進化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1)</sup>.

이러한 複式簿記가 生成하게 된 要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틀튼教授에 의하면, 複式簿記의 生成要因은 ① 素材로서의 私有財產(소유 관계를 변경하는 힘), 資本(생산에 이용되는 富), 商業(재화의 교환), 및 信用(장래재화의 현재이용)의 네 가지와 표현수단으로서의 書法(기록의 수단), 貨幣(교환수단·공통계산의 척도) 및 算術(계산수단)의 세 가지가 합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sup>12)</sup>. 그러나 이들 일곱 가지의 요인이 단순히 역사적으로 갖추어졌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複式簿記가 生成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 諸要因이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통합되었을 때 비로소 素材를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인 複式簿記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複式簿記의 생성요인 중에서 資本概念에 대하여 살펴보면, 資本이라는 의미는 古代社會에서도 「富」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단순한 富의 존재만으로는 複式簿記가 생성될 수 있는 다른 요건을 유발시키지 못한다. 체계적인 記帳法이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富의 의미는 상품이나 선박의 형태로서 利益을 전제로 하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회전시키고 변형시키면서 새로운 富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古代社會의 富는 복식부기의 생성요건으로서의 資本의 내용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나, 중심으로 하는 상업도시에서 出現한 資本concept은 생산에 이용되는 富의 의미로서 複式簿記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

## 2. 資本主簿記의 萌芽

會計史的인 측면에서 볼 때, 複式記帳은 로마時代의 貸借記錄, 노예를 대리인으로 하는 營業記錄, 그리고 중세말기의 지중해지방에서 발달한 코멘다(commenda)의 업무집행자가 진 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會計記錄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記錄이 複記式 方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自己資本은 존재하지 않고 대리인이나 업무집행자의 관리재산을 나

11) 具種泰, 「複式簿記의 生成史에 관한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7), pp. 18~27.

12) A. C. Littleton, "Accounting Evolution to 1900", (New York, Russell & Russell, 1933, reprinted 1966), pp. 12~14.

타내는 計定과 그것을 제공한 主人에 대한 負債를 나타내는 計定(즉 管理財產=管理負債)이라는 형식의 複式記帳에 지나지 않았다. 환연하면, 이것은 「主人計定」, 즉 대리인이나 업무집행자가 主人으로부터 투자된 元金을 운용하여, 이자나 이익이 발생하는 계정을 설정하든가, 또는 「出資者計定」, 즉 대리인이나 업무집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出資金의 변동을 기록하는 計定을 설정하여 기록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는 했으나 아직 自己資本의 概念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실제적인 출자금의 사용에 의하여 複式記帳을 행한 사람이 資本主가 아니고 대리인이기 때문에 代理人簿記라고 부른다는 것이다<sup>13)</sup>.

그러나, 중세기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모험기업이 資本主의 概念을 도입한 회계기록을 하게 되고 유한책임제도를 가진 기업의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代理人簿記는 기업의 실무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기업형태의 확립과 自己資本의 확립을 시도하게 되어, 결국 自己企業者的인 概念의 도입을 통하여 資本主簿記(proprietorship book-keeping)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더구나 이것은 대리인부기에 있어서의 主人計定을 확대하여 資本主計定으로 換置함으로써 계산제도를 변경함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틀頓(A. C. Littleton)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計定記錄으로부터 複式簿記로 進化한 것이라고 하면서 資本主理論的 企業簿記로 발전하는 제일단계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14)</sup>.

이렇듯 複式簿記는 計定이라는 특수한 계산방식을 이용하여 기업의 財產과 함께 資本의 기록계산을 행하는 것이며, 기업활동(가치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기록계산하는 것이다<sup>15)</sup>. 즉, 이것은 계정형식의 사용이나 복식기입의 형식이 존재하고 있는 簿記라고 하더라도, 資產과 資本의 二面的 計算을 하고 있지 않은 限, 복식부기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결국 資本概念의 확립을 통해서만 복식부기가 성립한다는 논리이다. 이와 같이 복식부기의 성립기는 무엇보다도 資本計定과 損益計定에 의한 대체기록의 성립이나 物的計定의 도입에 의한 複式記帳의 확립도 복식부기의 성립을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리틀頓教授는 분개장과 원장의 설정에 의한 장부의 二重性, 貸借記入에 의한 계정형식의 二重性, 및 기업결과의 균형성이라는 형식적인 것 뿐만 아니라, 投下資本으로부터 발생하는 利益의 자기자본적 계산이라는 실질적인 것을 통하여 複式簿記가 확립되는 指標임을 지적하였다<sup>16)</sup>. 그리고 그는 商業에 이용되는 自己資本을 산출할 수 있는 自己資本簿記, 즉 資本主簿記야말로 복식부기의 성립기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하였다<sup>17)</sup>.

13) 江村 稔, 「複式簿記 生成 發達史論」(東京, 中央經濟社, 1960), p. 31.

14) A. C. Littleton, op. cit., p. 156.

15) 國弘員人, 「企業計理の發達」(產業經理協會, 「產業經理」第7號, 1948年 6月), pp. 56~57.

16) A. C. Littleton, op. cit., pp. 22~40.

17) Ibid., p. 161.

이와 같이 자기자본을 중요시하고 資本計算機構의 완성을 통하여 복식부기의 확립으로 보고, 그 시대를 15세기말 이탈리아의 경제사회에서 찾는 것은 이미 會計史的 通說로 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파치올리」에 의한 著書이다<sup>18)</sup>.

### 3. 複式簿記의 概念規定의 歷史性

독일의 경제사학자인 「좀바르트」(W. Sombart)는 복식부기가 자본주의적 기업의 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에 의하면 「複式簿記의 歷史는 計定의 등장에서부터 비롯되었다. 簿記學을 「計定學」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計定의 設定에 의하여 체계화된 복식부기는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종래에 記帳者의 입장에 맞추어 작성되었던 備忘的인 會計記錄은 두 가지 형태, 즉 借邊과 貸邊으로 구분하여 경제행위를 표시하는 체계적 기록계산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經濟史的 事實에 근거를 둔 複式簿記의 歷史性을 강조하였다<sup>19)</sup>. 그리고 그는 복식부기가 자본주의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경제활동의 질서정립에서 찾고 있다. 즉, 모든 秩序는 우리의 能力を 높여준다. 複式簿記에 의하여 영업활동에 내재하는 질서가 확립되었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 크다고 할 때, 체계적인 복식부기의 秩序는 經濟史的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資本主義는 복식부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形式과 實質과의 관계와 같다. 자본주의가 그 힘(力)을 발휘하여야 할 道具를 복식부기 속에서 발견한 것인지, 아니면 복식부기가 자본주의의 정신 속에서 비롯되어 生成한 것인지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복식부기가 자본주의적 기업의 발달에 기여한 효과는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0)</sup>.

더욱이 「좀바르트」는, 「複式簿記는 경제적 현상을 하나의 조직적인 技法으로 정리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비로소 기계적인 思考위에 구성된 秩序(Kosmos)로서 경제현상을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複式簿記는 합리적인 思考, 즉 모든 경제현상을 화폐수량으로만 파악한다는 思考에 따른 것이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思考는 人間의 歷史속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것이다<sup>21)</sup>.」라고 하면서 체계화된 복식부기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복식부기는 화폐수량적인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財貨나 用役의 질을 망각한 채 그 증감·변화하는 外面의 가치로 환원시킨다. 이 때문에 資本主義에 내재하는 정신, 즉 儲利精神과 경제적 합리주의의 정신을 완전하게 전개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과 자극이 複式簿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렇

18) Lucas Pacioli, "Summa de Arithmetica, Geometria, Proportioni et Proportionalita", (Venezia, 1494).

19) W. Sombart, a. a. O., S. 110~117.

20) W. Sombart, a. a. O., S. 118.

21) W. Sombart, a. a. O., S. 119.

게 하여 資本概念이 비로소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複式簿記의 生成以前에는 자본개념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複式簿記 없이는 資本concept도 出現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資本이라 함은 마치 복식부기에 의하여 파악된 財產 속에 內在되어 있는 價值의 表현이라고 定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복식부기는 일정한 자본의 중식을 목적으로 하는 經濟組織으로서의 자본주의적 기업개념을 創出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개인의 영업활동과 그 計算을 그 人格으로부터 분리하여 완전히 物的인 입장에서 할 수 있게 했음은 물론, 객관화된 계산체계가 갖춰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즉, 개인적인 영업활동체제에서 기업적인 영업활동체제로 경제환경이 변화되어 감에 따라, 복식부기의 구조도 개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商業簿記의 체계로부터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企業簿記의 형태로 변형하면서 자본주의제도의 발달에 유용한 하나의 도구로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복식부기가 資本主義의 형성과 발달에 기여한 역할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會計史의 研究의 시발점으로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복식부기의 生成·發達이 이루어지던 時代 그리고 그 사회의 경제적인 환경여건을 고려하지 않고는 會計史의 研究의 진행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복식부기와 자본주의와의 관계를, 「좀바르트」의 命題를 중심으로하여 分析·檢討함으로써 복식부기의 존재의의를 찾아보려고 한다.

#### IV. 複式簿記에 대한 「좀바르트」命題의 檢討

##### 1. 初期資本主義와 複式簿記의 經濟史的 意義

체계적인 企業簿記로서의 複式簿記는 계정의 형성과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체계화의 과정에서 生成·發展해온 것이다.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대한 복식부기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였던 「좀바르트」는 그의 著書에서 「일찍이 計定이 있었다」(im Anfang war das Konto : die ratio.)<sup>22)</sup>라는 文句를 사용하여 複式簿記의 概念規定의 歷史性을 확인하였다. 그에 의하면 資本主義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경제체제라고 하였다. 즉, 두 개의 다른 人間集團, 다시 말해서 경제주체로서의 경영권을 가진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경제객체로서의 노동자가 市場을 통하여 결합·협동할 뿐만 아니라 舒利性原理와 경제적 합리주의에 의하여 지배되는 流通經濟的 組織이라는 것이다<sup>23)</sup>.

22) W. Sombart, a. a. O., S. 112.

23) W. Sombart, a. a. O., S. 319.

이러한 의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좀바르트」는 資本主義를 자급자족경제나 수공업 경제라는 前자본주의적 경제체제로부터 구별하게 되는 특징으로서 두 가지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즉, 하나는 지도적인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단순한 노동자라는 人的要因에 의한 집단 형성의 대립관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需求충족원리(Bedarfsdeckungsprinzip)와 전통주의를 대신하여 나타난 營利主義와 經濟的合理主義라는 경제원리이다. 이를 두 가지의 要素 중 「좀바르트」가 중요시한 것은 관념적·주관적 요소라고도 일컫는 후자의 경제원리라 하겠다. 이것은 경제의 객관적인 목적을 오로지 화폐의 종식, 즉 이윤추구에서 찾는 營利主義가 자본주의적 조직의 이념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經濟的合理主義가 자본주의적인 경제체제의 고유한 정신적 지주라는 것이다<sup>24)</sup>. 資本主義는 유럽의 精神을 바탕으로 하여 근대의 새로운 국가, 새로운 종교, 새로운 科學 및 새로운 技術의 창조에 박차를 가했던 정신, 즉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갈망하는 「파우스트」의 無限欲求 (Unendlichkeitsstreben)의 精神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한다. 즉, 경제생활의 영역에서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精神은 企業欲(Unternehmungsdrang)에 의한 企業家精神(Unternehmungsgeist)으로 具現되었고, 이러한 정신이 경제생활에 침입·지배할 때 종래의 봉건적인 자급자족경제체제가 무너지고 모든 人間은 營利經濟의 涼中에 말려들어서 그 정신에 적합한 활동무대를 제공하는 경제체제로서의 資本主義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바르트」에 의하면, 資本主義는 이러한 수탈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無限欲求의 정신, 즉 企業家精神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면(Fleiss), 中庸(Mäßigkeit), 절약(Sparsamkeit), 經濟性(Wirtschaftlichkeit), 및 信義(Vertragstreue)와 융합하여 나타난 資本主義精神(kapitalistische Geist)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창조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營利主義와 經濟的合理主義라는 경제원리도 역시 이러한 자본주의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sup>25)</sup>. 더욱이 경제적 합리주의는 계획성·합목적성·계산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① 계획성이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에 원대한 계획에 따른 경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② 合目的性이란 바른 수단의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며, ③ 計算性이란 모든 개별적인 경제현상을 정확히 數值에 의하여 評價·記錄함은 물론, 秩序있는 방법에 의하여 計算的으로 총괄하는 것이다<sup>26)</sup>.

이러한 자본주의가 生成·發展하던 初期는 15~16세기로 볼 수 있다. 물론, 13세기의 이탈리아商業 또는 14세기의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섬유공업 등에서 이미 자본주의적 색채를 찾아 볼 수 있으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적 기업이 大量으로 출현하게 된 15세기에서

24) W. Sombart, a. a. O., S. 320.

25) W. Sombart, a. a. O., SS. 327~329.

26) W. Sombart, a. a. O., S. 320.

16세기 사이의 유럽은 보다 광범한 지역에서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이 시기에 자본주의를 촉진시킨 要因으로는 지리상의 발견,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및 근대적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複式簿記의 완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複式簿記는 자본주의적 기업의 출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좀바르트」에 의하면 複式簿記는 모든 경제현상을 계량화하여 파악한다고 하는 기본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營利主義와 經濟的合理主義라는 자본주의적 경제원리는 이러한 복식부기에 의하여 완전히 開花되었다고 한다<sup>27)</sup>. 營利主義에만 관련시키 보면 複式簿記에서는 순수하게 계량적으로 파악된 경제가치의 종식이라고 하는 單一目的만이 존재할 뿐이고, 複式簿記에 종사하는 자는 모든 財貨와 紿付의 質을 망각할 뿐만 아니라, 욕구충족원리의 모든 有機的關係를 망각하고 營利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理念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양식에 따라 資本概念이 창조되었고, 그것 없이는 複式簿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좀바르트」에 의하면, 資本이란 複式簿記에 의하여 파악된 營利性財產이라고 规定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28)</sup>.

그와 동시에 「좀바르트」는 經濟的合理主義에 대해서도 經濟의合理化는 모든 경제과정에 있어서 計算性이 작용할 때 複式簿記를 통하여 비로소 완전히 달성된다고 하면서 營利主義와 經濟的合理主義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즉, 兩者는 경제상황을 數值로 분해하지만, 전자는 그 增殖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후자는 이러한 목적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29)</sup>. 더욱이 그는 複式簿記에 의하여 경제조직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경제활동을 예측하고 그 활동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여, 複式簿記야말로 경제적 합리화가 지향하는 활동방향, 즉 경제운영의 합목적화와 계획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30)</sup>. 이와 같이 복식부기는 자본주의경제의 기본바탕이 되는 營利主義와 經濟的合理主義의 전개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資本概念을 창조해냄으로써 일정한 자본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형태인 자본주의적 기업의 개념도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資本主義的企業은 資本을 物的基礎로 하는 조직형태이다. 이것을 수공업자의 개인경영이나 동업조합과 같은 前자본주의적 경영형태와 구별되는 특징은 영업의 완전한 독립인 것이다. 이러한 영업의 독립은 복식부기가 計算과 營業의 수행을 기업가의 人格으로부터 분리하여 순수하게 物的見地에서 秩序있는 것으로서 계산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즉, 계산절차를 기

27) W. Sombart, a. a. O., S. 119.

28) W. Sombart, a. a. O., S. 120.

29) W. Sombart, a. a. O., S. 120.

30) W. Sombart, a. a. O., S. 121.

업가의 人格에 의한 恋意性으로부터 탈피시켜, 이것을 표준적이고 관습적인 것으로 행함으로써, 복식부기에 의하여 營業의 질서가 정립되고 영업은 기업가에 대하여 가지는 독자적인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독립적 존재가 된다. 여기에 기업가와 기업은 복식부기를 통하여 서로 분리되며, 이러한 營業의 獨立(자본과 소유의 분리로 인한)이라는 특징을 가진 자본주의적 기업의 성립에 複式簿記의 창조적 협력이 현저하게 나타나 있음을 「좀바르트」는 언급하였다.<sup>31)</sup>

이상과 같이 「좀바르트」는 觀念的이고 演繹的인 論理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의 본질과 그 歷史性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複式簿記와 資本主義의 發展을 연관시켜 形式(form)과 內容(inhalt)의 관계에서 相關性을 찾아내어 資本主義의 成立에 불가결하게 작용한 複式簿記의 역할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初期資本主義時代에 복식부기가 기여한 經濟史的意義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에 대한 복식부기의 역할을 이와 같이 긍정적·적극적으로 평가한 것은 「좀바르트」의 文獻만이 아니다. 論點은 달라하고 있으나, 막스·베버(Max Weber)나 슘페터(J. A. Schumpeter) 등의 著書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sup>32)</sup>, 이들은 실증적·귀납적인 논점에서 접근하여 「좀바르트의 命題」(Sombart's Thesis)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고 있다<sup>33)</sup>.

## 2. 複式簿記에 대한 「좀바르트」命題의 批判的 檢討

상술한 바와 같이 「좀바르트」의 연구는 연역적으로 자본주의의 발달과 연관시킨 복식부기의 역사적 의미를 밝힌 것이었다. 이러한 「좀바르트」의 命題에 대하여 재검토를 시도한 學者가 있다. 「야메이」(B. S. Yamey)는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파치오리」의 簿記論에 근거한 會計帳簿를 분석함으로써, 복식부기의 역사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고, 「좀바르트」에 의한 연구결과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야메이」는 그의 論文<sup>34)</sup>에서 「좀바르트」가 자본주의의 역사적 의미를 복식부기에서 찾고 있는 것은 복식부기의 체계적인 계정조직 속에서 去來를 조직적으로 분석하여 損益이나 資本의 計算과 재무상태의 보고서작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평가한 것으로 보아, 복식부기가

31) W. Sombart, a. a. O., SS. 122~123.

32)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in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Bd. 1, Tübingen, 1920; J.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1942).

33) J. O. Winjum, "The Role of Accounting in Economic Development of England": 1500~1750, (Urbana, Illinois, 1972), pp. 20~23.

34) B. S. Yamey, "Scientific Bookkeeping and the Rise of Capitalism", (The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ol. I, No. 2 & 3, 1949), pp. 99~113.

지닌 이러한 기능, 특히 損益計算(=資本價值計算)의 기능에 좌안하여 15세기말부터 19세기 초까지의 사이에 출판된 수많은 부기해설서의 분석을 행하였다<sup>35)</sup>.

「야메이」에 의하면, 당시의 簿記書에 나타난 教示內容에서 판단하여, ① 損益計算에 있어서 元帳計算의 마감은 오늘날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期間損益의 산정을 목적으로 한 정기결산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부의 更新이나 商人의 廢業 등의 경우에 簿記處理上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② 장부마감 시의 집합계정인 損益計算과 잔액계정도 손익이나 재무상태에 관한 情報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新帳簿에 필요하지 않은 계정잔액을 資本計算에 대체하고 新帳簿에 필요한 계정잔액을 舊帳簿로부터 간편하게 이월 하기 위한 계정정리의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 ③ 개개의 상거래활동을 기초로 하여 설정된 상품계정도 특정상품의 개별적 손익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기재된 상품의 원천이나 수량 및 소유관계와 관련된 정보, 즉 복식부기가 지닌 재산관리적 계산기능의 측면에서 이용되고 있었음을 명백히 밝혔다는 것이다<sup>36)</sup>. 그리고 손익이나 자본의 정확한 계산을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고 복식부기가 경제의 합리화에 공헌한다고 보았던 재산의 계량화, 이익과 投下資本의 비교 및 기업가와 기업의 분리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국 複式簿記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거래가 명료하게 정비된 기록과 현금이나 상품 등에 관련된 서술적인 명세서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sup>37)</sup>.

이와 같이 「야메이」는 당시의 복식부기, 특히 손익계산기능의 실제적인 역할을 實的인 견지에서 소극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동시에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企業이 複式簿記보다도 간편한 會計記錄의 형식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함으로써<sup>38)</sup>, 資本主義의 성립·발전에 복식부기가 크게 기여했다는 「좀바르트」의 주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그 후에도 簿記書의 내용뿐만 아니라, 16세기부터 18세기 후반기까지의 시기에 작성된 會計記錄, 비교적 영국상인들의 會計帳簿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하여 論文을 발표하였다<sup>39)</sup>.

여기서도 그는 先行論文과 같은 접근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손익계산 그 자체는 예컨대 실지조사에 의한 재고조사법과 같이 복식부기와는 관계없이 실행하는 것이며 실제로 복식부기

35) Ibid., pp. 105~106.

36) Ibid., pp. 106~112.

37) Ibid., p. 110.

38) Ibid., p. 105.

39) B. S. Yamey, "Som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Double-Entry Ledgers", (*The Accounting Review*, Vol. 34, No. 4, 1959), pp. 534~546; B. S. Yamey, "Accounting and the Rise of Capitalism : Further Notes on a Theme by Sombar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II, No. 2, 1964), pp. 117~136.

가 채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손익이나 재무상태의 파악과 연결된 장부마감과 잔액계정의 작성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事例는 「야메이」가 조사한 英國商人의 元帳이나 分介帳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論述하였다<sup>40)</sup>. 그리고 당시의 상인들의 損益計算에는 영업상의 비용과 더불어 私的支出이나 家計支出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으며, 복식부기의 채용이 非人格化를 촉진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sup>41)</sup>.

그리고 複式簿記가 당시의 경제상황에서 수행한 역할은 그것이 종래의 회계기록법에 비하여 특색있는 손익계산기능이나 자기검증기능에 의함이 없이, 일상적인 경영관리와 자산의 통제 등에 유용한 회계기록을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관리계산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기능은 복식부기 뿐만 아니라 單式簿記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sup>42)</sup>. 이러한 의미에서 「야메이」는 「좀바르트」가 복식부기를 통하여 경제사회적 의의를 제시한 점에 오류가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評價하였던 것이다<sup>43)</sup>.

상술한 바와 같이 「야메이」는 15세기 이후에 출판된 複式簿記의 해설서나 그 시대에 작성된 會計帳簿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좀바르트」등의 주장이 현실적인 회계상황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論하고, 오로지 개별경제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에 대한 복식부기의 역사적 의의를 극히 소극적·부정적으로 평가한 見解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데인저」(H. T. Deinzer)에 의하면, 「좀바르트」와 「야메이」가 주장하는 바를 분석한 후, 兩者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問題點이 제시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sup>44)</sup>.

### 3. 「좀바르트」命題의 現代的 觀角

최근 會計史의 연구가들은 위에서 살펴본 「좀바르트」와 「야메이」의 見解를 현대적 위치에서 분석하고 이를 兩者의 주장하는 바를 비판적으로 再檢討한 論文을 발표하고 있다. 「윈점」(J. O. Winjum), 「모스트」(K. S. Most) 및 「스트라찬」(J. L. Strachan) 등은 그 대표적인 學者들이다.

우선, 「윈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는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까지의 英國의 簿記書와 그 시대의 英國商人들의 會計帳簿를 실증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兩極의 論理를 展開한 「좀바르트」와 「야메이」의 論點 사이에서 적절한 均衡點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그는 「야메이」

40) B. S. Yamey(1964), Ibid., pp. 120~125.

41) B. S. Yamey(1964), Ibid., pp. 126~127.

42) B. S. Yamey(1964), Ibid., pp. 133~136.

43) B. S. Yamey(1964), Ibid., p. 138.

44) H. T. Deinzer, "Development of Accounting Thought", (New York, 1965), pp. 8~9:  
〈法政大學會計學研究室譯, 「ダインツァー會計思想史」(東京, 法政大學出版局, 1973), pp. 6~8.〉

이」가 연구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당시의 商人們이 複式簿記를 사용한 주된 목적이 개개의 商去來를 단위로 하여 모험기업의 대리인이나 조합기업의 구성원과 고객과의 채권·채무 등에 관한 정확한 記錄을 保有하려는데 있었음을 論證하려고 하였다<sup>45)</sup>. 그러나 그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복식부기가 지닌 손익계산 기능도 점차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손익계산이 복식부기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複式簿記는 다른 어떤 계산방법보다도 우수한 장점, 즉 기업상황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와 더불어 개별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모험기업의 計定은 주로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그것은 동시에 상인들에 의하여 상거래에 관한 개별손익의 산정수단으로서도 이용되기에 이르렀다고 그가 조사한 英國商人의 會計記錄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기업가가 관리·통제를 위한 결정을 내릴 때 유용한 정보로 이용했을 것이라고 언급하여 「야메이」가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회계정보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sup>46)</sup>.

그리고 그는 企業과 家計의 分리에 대해서도 당시 상인들의 元帳에 家計計定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업활동과 私的인 활동(家計 등)의 分離는 완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複式簿記는 상인 자신의 계산에 의한 去來와 대리인이나 조합기업 업무집행자의 去來가 하나의 帳簿에 함께 記帳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회계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원점」은 「야메이」가 주장했던 것처럼 初期資本主義時代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役割을 소극적·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실증적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複式簿記가 개별적 영업활동을 단위로 하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상인들의 회계와 業務에 秩序를 확립하게 함으로써 상인들의 경제활동을 합리화하는데 공헌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좀바르트」의 命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야메이」와는 달리 복식부기의 歷史的意義를 상대적으로 긍정하는 見解를 提示하였던 것이다<sup>47)</sup>.

다음에는 「좀바르트」와 「야메이」의 주장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연구·발표한 「모스트」(K. S. Most)와 「스트라찬」(J. L. Strachan)의 所論을 살펴보기로 하자. 「모스트」는 「야메이」의 所論과 관련된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계속기업의 성장으로 소유자와 경영자의 분리가 구체화되었으며, 이 경우에 소유자(자본출자자)가 투자상황을 알기 위하여 貸借對照表에 의존하게 되고 또한 損益計定도 「야메이」와 같은 단순한 帳簿更新을 위한 기술적 수단이 아니라, 利益測定의 필요에서 초래된 企業成果를 나타내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기업과 소유자(경영과 자본)의 분리도 資本計定이나 利益計定이 제공하는 자본상황과 그

45) J. O. Winjum(1972), op. cit., p. 243.

46) J. O. Winjum(1972), op. cit., pp. 243~244.

47) J. O. Winjum(1972), op. cit., p. 242 & p. 246.

증감에 관련된 情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48)</sup>. 그리고 그는 「좀바르트」가 복식부기의 經濟的 意義만을 과대평가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야메이」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反論을 제기하고 있다<sup>49)</sup>. 한편 「좀바르트」의 所論에 대해서는 模式簿記가 초기자본주의시대의 산물이라는 견해를 비판하고 그것은 古代로마時代부터 이미 계획·통제를 위하여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複式簿記의 古代로마起源說에 입각하여 복식부기와 근대자본주의를 不可分의 것으로 결부시킨 「좀바르트」의 주장을 정면에서 비판하였다<sup>50)</sup>.

더욱이 「스트라찬」도 「야메이」의 見解를 비판하였다. 즉, 帳簿의 마감이 좁은 의미의簿記目的에 이용되었을 뿐, 손익이나 재무상태의 파악을 위해서는 이용되지 않았다는 것에 근거를 두어 복식부기가 의사결정목적에 이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야메이」의 所論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中世 이탈리아商人의 실무에서도 財務諸表의 작성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또한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야메이」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겠지만,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 複式簿記는 의사결정이나 경영관리를 위하여 이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sup>51)</sup>. 특히 「좀바르트」의 所論과 관련하여 「스트라찬」은 연역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자기의 見解를 전개하였다. 즉, 그는 복식부기가 生成하게 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① 통제해야 할 거액의 財產과 관리해야 될 많은 去來를 가진 대규모의 實體, ② 확립된 관리원칙, ③ 거래를 측정할 수 있는 貨幣的基礎의 세 가지를 들고 이를 要件을 충족시킨 史上最初의 實體는 政府組織이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組織實體는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즉, 기원전 100년경 古代로마時代에서도 複式簿記를 계획·통제에 이용하고 있었다고 하여, 복식부기가 자본주의 生成에 있어서 先行條件이 될 수 없음은 물론, 자본주의의 필요성에 합치시키기 위하여 生成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sup>52)</sup>.

이상과 같이 최근의 會計史家들의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복식부기와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원점」의 경우는 「야메이」와 같은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논리전개를 시도하면서도 당시 英國商人의 會計帳簿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복식부기의 이용상황에 대한 분

48) K. S. Most, "Sombart's propositions Revisited", (*The Accounting Review*, Vol. 48,) No. 4, 1972), pp. 727~728.

49) K. S. Most(1972), op. cit., p. 728.

50) K. S. Most, "How Wrong was Sombart?", (*The Academy of Accounting Historians , The Journal of Accounting Historians*, Vol. III. No. 2, 1976), pp. 1~6.

51) J. L. Strachan, "A Synthesis of and Inquiry into the contribution of Double-Entry Bookkeeping", (*The Academy of Accounting Historians , Working Paper*, No. 43,) 1980), pp. 34~36.

52) J. L. Strachan(1980), op. cit., pp. 37~39.

석에서 서로 해석을 달리하고 있으며 복식부기의 경제사적 의의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모스트」와 「스트라찬」은 「야메이」의 「좀바르트」批判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복식부기가 이미 古代로마社會에서도 이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복식부기와 자본주의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주장한 「좀바르트」의 所論에 대하여 부정적인 見解를 표명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V. 要約 및 結論

本研究는 資本主義의 成立·發展에 대한 複式簿記의 역할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도된 것이다. 특히 초기자본주의시대의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연관시켜 복식부기의 歷史性을 적극적·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후의 會計史研究에 큰 영향을 끼친 「좀바르트」의 所論을 分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와 동시에 「좀바르트」命題에 대한 비판자의 입장에서 접근한 「야메이」와 약간 論點은 달리하면서도 兩者의 중간적 입장에서 論理를 전개한 「원점」과 「모스트」및 「스트라찬」의 見解를 接木시킴으로써 복식부기와 자본주의와의 관계를 새로운 視角에서 정리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좀바르트」는 극히 관념적·연역적인 입장에서 자본주의의 生成·發展過程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複式簿記는 資本主義의 成立에 불가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자본주의경제체제에 儲蓄主義와 經濟的合理主義를 開花시킨 요소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즉, 그것은 資本概念을 創案하고 경제과정의合理化를 촉진시켰음은 물론, 기업과 기업가(경영과 자본)를 분리시킴으로써 資本을 物的基礎로 하고 그 종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기업의 형성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 경제적 관점에서 복식부기를 자본주의와 연관시켜 經濟史的意義를 부각시킨 「좀바르트」의 주장은 실증적 접근을 시도한 그 후의 會計史研究者에 의하여 再檢討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야메이」는 복식부기가 개별기업의 수준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하는 개별경제적 관점에서의 批判을 제기한 것이다. 「야메이」에 의하면, 기간손익이나 재무상태의 파악과 결부시킨 帳簿마감과 잔액계정의 작성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진 事例는 당시의 회계장부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손익계정에서 영업비용과 함께 家計費가 기록되어 있던 점을 보더라도 企業과 家計가 분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期間과는 상관없이 개별적인 商去來를 단위로 한 개별손익계산이 가능했던 모험기업의 計定은 손익계산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상품의 거래상황이나 채권·채무 등에 대한 計算的管理手段으로서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회계실무에서 複式簿記는 오로지 일

상적인 경영관리와 상품이나 채권·채무 등의 통제에 유익한 기록을 하려는 관리계산적 기능에 있어서만 평가·이용되는데 불과했다고 지적하여 「좀바르트」의 주장이 현실적인 회계실무에 맞지 않다는 것을 論證하여 복식부기가 갖는 歷史的 意義에 대해 극히 소극적·부정적인 見解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동시에 「원점」의 경우도 「야메이」와 거의 같은 입장에서 그 시대의 英國商人의 회계장부를 분석하여 의견개진을 하였다. 그도 역시 당시의 상인들이 복식부기를 사용한 주된 목적은 질서정연한 기록보존에 있었다는 점에서 「야메이」와 공통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원점」은 모험기업의 計定이 개별거래의 계산적 관리수단 이외에 손익계산의 수단으로서도 점차 이용되어지게 되었다는 것, 또 기업과 家計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지만, 상인 자신의 계산에 의한 去來와 대리인이나 組合企業 業務執行者의 去來는 명확히 구별하여 계산되고 있었다는 것에 着眼하여, 복식부기가 모험기업계정을 통하여 去來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을 가능하게 하였고 상인들의 회계업무에 질서를 잡아줌으로써 경제활동의 합리화를 가져오게 하였다고 說破하여, 「야메이」의 所論에서 벗어나 복식부기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한편, 「모스트」와 「스트라찬」은 복식부기가 古代로마時代부터 이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복식부기를 근대자본주의의 產物 또는 복식부기가 자본주의의 생성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여 兩者的 不可分의 관계를 주장한 「좀바르트」의 견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에서 論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좀바르트」는 그 때까지 거의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복식부기의 사회적·경제적 의미를 근대자본주의의 형성과 결부시켜, 이것을 적극적·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經濟史 및 會計史의 새로운 章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바르트」의 생각 속에 있는 資本主義의 發達과 복식부기와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演繹의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展開된 論理的 構想일 뿐, 충분한 史科의 考證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說得力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실제로 당시 상인들의 會計記錄을 실증적인 분석방법에 따라 論證한 「야메이」와 「원점」의 主張은 그 나름의 說得力を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그 시대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한 「원점」의 견해는 「야메이」가 복식부기의 역사를 좀은 의미의簿記目的에 한정하여 소극적·부정적으로 접근한 것에 비하여, 보다 妥當性 내지는 合理性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6~18세기에 있어서도 英國의 일부 상인들은 이미 복식부기적 기법을 회계실무에 이용하고 있었으며, 종래의 會計記錄法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특징과 장점을 인식·평가하고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야메이」와 「원점」이 각각 실증연구에 이용한 英國商人의 會計記錄의

範圍가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의 本質과 사회적 기능을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보다 더 폭 넓은 會計史料의 수집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照應하면서 分析·解明하는 것이 論證의 公正性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아진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그들의 연구를 통하여 會計史研究의 새로운 里程碑가 세워졌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參考文獻

1. 金宗炫(1996),『近代經濟史』, 서울, 經文社.
2. 閔錫泓(1995),『西洋史概論』, 서울, 三英社.
3. 具種泰(1997),『複式簿記의 生成史에 관한 研究』(檀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4. 朴光淳 外 3人(1997),『經濟사신론』, 서울, 유풍출판사.
5. 慎奎晟(1995),『世界經濟史』, 서울, 法文社.
6. 李正浩(1985),『會計思想史』, 서울, 經文社.
7. 曹廷煥(1995),『會計의 理解－史的接近』, 서울, 三英社.
8. 泉谷勝美(1995),『中世イタリア簿記史論』, 東京, 森山書店.
9. \_\_\_\_\_(1980),『複式簿記生成史論』, 東京, 森山書店.
10. 井上 清(1968),『ヨーロッパ會計史』, 東京, 森山書店.
11. 江村 稔(1953),『複式簿記生成發達史論』, 東京, 中央經濟社.
12. 大塚久雄(1989),『プロテスタンティズムの倫理と資本主義の精神』東京, 岩波書店.
13. 岡崎次郎(1948),『ゾンバルト近代資本主義の歴史的基礎』, 東京, 夏目書店.
14. 片岡泰彦(1988),『イタリア簿記史論』, 東京, 森山書店.
15. 小島男佐夫(1964),『簿記史論考』, 東京, 森山書店.
16. \_\_\_\_\_(1971),『英國簿記發達史』, 東京, 森山書店.
17. 小宮豊隆,『ヴィルヘルム・マイステルの徒弟時代』, 東京, 岩波書店.
18. 中野常男(1992),『會計理論生成史』, 東京, 中央經濟社.
19. 茂次虎男(1975),『十七・八世紀イギリス會計史の研究』『經濟學研究』, 第29卷 第2號).
20. 染谷恭次郎(1984),『我國會計學の潮流』, 東京, 多賀出版.
21. 濱田弘作(1986),『會計史研究序說』, 東京, 多賀出版.
22. 黑澤清(1979),『會計史および會計學史』, 東京, 中央經濟社.
23. 林 良治(1986),『シェア簿記會計學』, 東京, 新東洋出版社.

24. 國弘員人(1948),「企業計理の發達」,(產業經理協會,『產業經理』第7號。
25. 法政大學會計學研究室(1973),『ダインツァー會計思想史』,東京,法政大學出版局。
26. Brown, R. (1905), "A History of Accounting and Accountants", Edinburgh.
27. Chatfield, M. (1968), "A History of Accounting Thought", revised ed., Huntington, New York.
28. Deinzer, H. T. (1965), "Development of Accounting Thought", New York.
29. Gilman, K. (1939), "Accounting Concept of Profit", New York.
30. Littleton, A. C. (1968), "Accounting Evolution to 1900", New York.
31. Most, K. S. (1972), "Sombart's Propositions Revisited", The Accounting Review, Vol. 47, No. 4, pp. 722~734.
32. \_\_\_\_\_(1979), "Sombart on Accounting History", The Academy of Accounting Historians, Working paper, No. 35, pp. 1~19.
33. Pacioli, L. (1494), "Summa de Arithmetica, Geometria, Proportioni et Proportionalita", Venezia, (reprinted by Kojima, Ol, Kyoto, 1973).
34. Previts, G. J. and Merino, B. D. (1979), "A History of Accounting in America : An Historical Interpretation of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Accounting", New York.
35. Schär, J. F. (1922), "Buchhaltung und Bilanz", 5. Aufl., Berlin.
36. Schumpeter, J. A.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37. Smith, A. (reprinted 1973),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Bandam House).
38. Sombart, W. (1919), Der moderne Kapitalismus, Zweiter Band, Erster Halbdband, 3, Unveränderte Aufl., München.
39. Strachan, J. L. (1980), "A Synthesis of and Inquiry into the Contribution of Double Entry Bookkeeping", The Academy of Accounting Historians, Working paper, No. 43.
40. Weber, M. (1920),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in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Bd. 1, Tübingen, ss. 17~206.
41. Winjum, J. O., (1972), The Role of Accounting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England : 1500~1750, Urbana, Illinois.
42. Woolf., A. H. (1912), "A Short History Accountants and Accountancy", London.

43. Yamey, B. S. (1949), "Scientific Bookkeeping and the Rise of Capitalism", The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ol. 1, No. 23.
44. \_\_\_\_\_ (1963), "A Survey of Books on Accounting in English, 1543~1800", in Yamey, Edey and Thomson, (1963), pp. 155~179.
45. \_\_\_\_\_ (1964), "Accounting and the Rise of Capitalism ; Further Notes on a Theme by Sombar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II, No. 2, pp. 117~136.
46. Zimmerman, V. K. (1954), "British Background of American Accountancy" (Unpublished Ph. D. Thesis : Univ. of Illinois, 1954).

## A Historical Approach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and Double Entry Bookkeeping

Koh, Seung-He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been to test the assumption that double entry bookkeeping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apitalistic countries in Europe after Middle Ages. The logic advanced to support this assumption is sound, and double-entry bookkeeping indicates that it would have been an active catalyst and major contributor toward growth of bookkeeping. It was both a manifestation of the spirit of capitalism in its formative period as well as a propulsive agency furthering a significant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According to Sombart's work, *Die Moderne Kapitalismus*, double-entry bookkeeping not only created the concept of capital but also produced the capitalistic enterprise. The creative significance of double-entry bookkeeping is already evident in the very origin of capitalistic enterprise. This study has demonstrated, as envisioned by such scholars as Sombart, Weber, Yamay and Winjum, that double entry bookkeeping for the ordering of economic data did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capitalism.

Key-words : capitalism, double entry bookkeeping

---

\* Professor of Dankook University, Ph.D.

# 地理上發見이 유럽에 미친影響에 관한研究

## A Study on the Effect of Geographical Discovery in Europe

金 新\*

### 目 次

I. 序 論	3. 進出國과 價格革命
II. 地理上發見의 經濟的動機	4. 奴隸貿易의 生成
1. 航海의 中世의 背景	IV. 地理上發見이 貿易環境에 미친影響
2. 새로운 發見의 歷史的條件	1. 香辛料貿易
3. 海洋外出의 動機	2. 貿易中心地 變化
III. 地理上發見의 社會經濟的環境의 變化 分析	3. 新大陸進出과 新貿易圈
1. 새로운 商品의 登場	V. 結 論
2. 進出國과 受入國	

### I. 序 論

發見時代의 探險家들은 모르는 世界의 境界를 점차 넓혀 가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地中海 전체를 여행하고, 대서양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南美와 아프리카대륙을 탐험했다. 印度洋을 건너, 아시아내부도 탐색했다. 언뜻 보기에는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장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探險의 놀랄 만한 위업을 달성해 나갔다<sup>1)</sup>.

이시대에 먼 지역까지 찾아간 사람들은 두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여행을 했던 사람과 원정대를 지휘하던 探險家인데, 이 양자는 뚜렷하게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었다<sup>2)</sup>.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르네상스시대 旅行家나 探險家가 발견한 것에 대해 지녔던 인식의 방법, 또 그들의 발견이 본국에 있는 유럽인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를 설명하는 실마

\* 廉熙大 教授, skim@nms.kyunghee.ac.kr

1) Beaglehole, J. C., *The Exploration of the Pacific*(london, 1966), pp. 116~121.

2) Cameron, I., *To the Farthest Ends of the Earth : the history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London, 1970), pp. 41~45.

리가 된다.

탐험에 임하는 태도는 探險時代의 시간적 경과와 함께 변화해 갔다. 우선 첫째로, 단순히 확인만 하려던 태도가 객관적인 관찰로 변했다. 그들은 오히려 비록 그것이 예로부터의 信念을 뒤엎을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본 것을 받아들여 검토하게 되었다.

둘째는 유럽 主體的 觀點에서 世界的 觀點으로 視覺의 外廷的 擴大가 이루어진 點이다. 그들은 이제 現地文化를 멀시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유럽의 生活方式과 그 토지 고유의 관습을 비교해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깨달았던 것이다<sup>3)</sup>.

이와 같은 변화는 中世後期의 사고방식에서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변천하던 그 시대특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sup>4)</sup>.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의 서유럽은 역사상 '地理上의 發見의 時代'라 불린다. 이 시기에 신 대륙과 많은 航路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견은 그 후 서유럽제국의 經濟活動, 나아가서는 構造生活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르네상스를 근세 유럽의 내면세계의 확장이라 하고 이에 대비하여 지리상의 발견은 외연적 확장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지리상의 발견이 유럽에 어떤 실체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구조적으로 구명하고자 한다.

## II. 地理上 發見의 經濟的 動機

### 1. 航海의 中世的 背景

地理上의 과거와 무관한 우발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선구적인 계기가 된 것은 13~14세기에 있어서는 十字軍의 실패와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 결과 나타난 인디아로의 交通路의 폐쇄이고, 15세기에 있어서는 대양횡해의 답사에 대한 제노바인의 솔선과 포르투갈인의 노력이라 하겠다. 위대한 發見의 동기가 중세적이었던 것처럼 그 발견의 배후에 놓인 지식, 그리고 그 발견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技術的 수단 역시 중세적인 것이었다.

12세기 이후에는 교육받은 사람이나 선원 가운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은 단순히 理論으로만 남아 있지 않았다. 14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포르투갈 선원들은 서쪽으로 대서양의 아조레스제도까지 정규적으로 항해했다.

3) Delpar, H. (ed.), *The Discoverers: An Encyclopedia of Explorers and Exploration* (New York, 1972), pp. 86~89.

4) Herbert, W., *The Noose of Laurels: The Discovery of the North Pole* (London, 1987), pp. 24~45.

이와 같은 포르투갈인들의 航海는 유럽인의 조선 및 항해기술이 1350년경에 이르러 신대륙발견에 도전할 만큼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아조레스제도는 유럽과 아메리카대륙의 3분의 1 거리에 위치했으므로, 技術的 견지에서 볼 때 포르투갈에서 아조레스까지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이라면 新世界로의 항해도 가능했다<sup>5)</sup>.

인도항로를 개척한 것은 누구나 아는 대로 포르투갈인들이다. 포르투갈인이 아라비아인을 몰아내고 지브롤터의 맞은편 세우타에 교두보를 구축한 것이 1415년의 일이고, 航海王子 엔리케는 그 무렵 아프리카 서해안의 탐험을 꾀하였다. 그 목적은 아프리카 서해안의 남쪽에서 대서양에 흘러든다고 얘기되어 왔던, 西나일(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디오피아에 도달한다고 믿었다)의 강입구를 발견하려는 것이었다.

1420년부터 1620년에 걸친 探險이 종래의 것과 다른 점은 여행이 정부나 상인團體에 의해 조직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이다. 거의가 후원자 없이 개인적인 여행이 산발적으로 행해지던 시대는 지나고, 유럽은 개인적인 세계관광여행시대에서 探險時代로, 즉 목적이 뚜렷한 여행시대로 접어든 것이었다. 또 르네상스時代의 뱃사람만큼 짧은 동안에 멀리까지 항해하여 광범한 발견을 이룩한 예는 다른 시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 時代의 유럽인은 지구의 탐험에 나서게 된 욕구나 기술, 상상력에 특수성이 있었다. 즉, 르네상스의 유럽은 黃金屬과 賴료를 구하고 있었다. 중세에는 상인들이 금이나 비단, 후추, 정향유를 극동에서 구했으나, 15세기에 접어들자 政府가 이 탐험에 진출했다<sup>6)</sup>.

르네상스시대에는 단순한 지식획득을 위해 탐험에 흥미를 느끼는 정부는 없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여러 정부는 金이나 銀, 香料 등을 충분히 발견하고 광산개발이나 交易路의 경비를 위해 충분한 정도의 유럽인을 해외부서에 배치한 뒤로는 탐험에 대한 흥미를 잃고 말았다<sup>7)</sup>.

물질적인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탐험에 나섰다 해도, 항해를 이겨내고 새로운 땅을 발견하기에 적합한 배와 숙련된 뱃사람이 없었더라면 그 욕구는 충족되지 못했을 것이다.

르네상스時代의 유럽은 세계의 海洋國 중에서도 이러한 양자를 겸비한 유일한 존재였다. 대서양에 면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탐험에 관한 강한 움직임이 일어날 이유가 여기에서도 說明이 된다.

## 2. 새로운 發見의 歷史的 條件

이와 같은 地理上의 大發見을 촉진한 歷史的 條件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5)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95). pp. 137~142.

6) Penrose, B., Travel and Discovery in the Renaissance(Harvard, 1952). pp. 126~136.

7) Newby, E., The World Atlas of Exploration(London, 1975). pp. 216~223.

첫째, 11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十字軍遠征으로 말미암아 이탈리아 여러 도시의 東方貿易이 크게 자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53년 회교도 터키에 의한 貿易의 요지인 콘스탄티노폴의 점령은 東方貿易의 유지를 거의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商業路에 대한 욕구가 절실했졌다.

둘째, 당시의 아라비아 地理學에 관한 지식의 발전에 따른 중세적 지리관념의 타파와 대포·인쇄술의 발명 등 航海技術의 발전이 대륙발견의 可能性을 넓혔다.

셋째, 카르피니, 뤼브록, 마르코 폴로의 동방여행기가 유럽사람들의 동방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새로운 社會構造의 형성을 들 수 있다. 당시 성립 중에 있던 스페인, 포르투갈 등 통일적인 절대주의 국가들이 동방무역으로 富를 축적하고자 탐험을 시도한 것이 새로운 貿易路의 발견에 의하여 이룩되었던 것이다<sup>8)</sup>.

그런데 국가가 추구하는 國富란 어떤 형태의 것일까? 그것은 금·은 등의 귀금속의 획득에 의한 국력·부력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 까닭은 특히 은은 당시 東方貿易의 결제수단으로서 극히 중요한 재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대량으로 소유하는 일어나 말로 동방무역을 차별하는 첨경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발견의 과정과 그 經濟的 影響을 분석해 보자. '발견'의 선구는 포르투갈, 스페인이었고 이어서 영국, 프랑스 등이 그 뒤를 따랐다. 16세기 초에 걸친 탐험활동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두 나라가 주도하게 된다.

포르투갈에서는 1498년에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에, 1500~1502년에 레알이 그린랜드, 라브라도르 및 뉴파운드랜드 해안을 탐험하고, 1500년에는 카브랄이 브라질에 도달하였으며, 1509~1511년에는 알부케르케가 지휘한 포르투갈탐험대가 페르시아만 입구의 오르모즈와 고아 및 말라카를 점령하였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1499~1500년에 편존이 남미의 동북해안을, 1513에 레온이 플로리다를, 그리고 같은 해에 발보아가 파나마지협을 횡단해서 태평양을 각각 발견하였다.

또한 스페인 사람인 코르테스는 1519~1522년에 멕시코내륙을 탐험·정복하고, 같은 기간에 스페인에 이주한 포르투갈 출신의 마젤란이 이끄는 선대는—마젤란 자신은 선원의 일부와 함께 필리핀의 마크란도에서 원주민에 의해 살해되었지만—世界一周(1523년)에 성공하였으며 이로써 지구구형설은 실증되었던 것이다<sup>9)</sup>.

8) Riverain, J., Concise Encyclopedia of Explorations(Glasgow and Chicago, 1996). pp. 139~147.

9) Kirwan, A. L. P., The White Road:A Survey of Polar Exploration(London, 1959). pp. 310~318.

### 3. 海洋進出의 動機

오늘날企業의 해외진출 동기는 좀더 저렴한 노동력이나 자원, 그리고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해서이다. 탐험 역시 탐험주도국에 큰 이익을 준다. 이러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갖가지의產物이었는데, 이들 신기한 것 중의 하나인 담배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충격을 치유하고 완화하는 것으로 점차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처음 콜럼버스가 서인도제도에서 발견한 담배는 16세기 중엽까지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에 소개되었다. 17세기 초에는 이미 깍연이健康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17세기 초기에 이집트와 터키에서 전해져 온 커피는 이슬람국가가 원산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에 봉착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教皇 클레멘스 8세가 커피의 사용을 허가해 비로소 유럽에 널리 전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政治나 宗教에 관한 토론장으로 성행한 커피하우스가 번성하는 기초를 쌓았다<sup>10)</sup>.

중국의 차와 남아메리카의 코코아, 이 두 가지 음료는 유럽의 생활이나 문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는데, 이것 역시 16세기와 17세기에 이루어진 탐험의 결과로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설탕은 본래 유럽의產物인데, 위에서 말한 두 가지의 음료의 맛을 한결 좋아지게 했으며, 향료와 더불어 르네상스시대의 식단을 풍요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될 만큼 풍부하게 보급된 것은 에스파냐인과 포르투갈인이 사탕수수를 서인도제도나 브라질에 반입하여大量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이후부터였다<sup>11)</sup>.

16세기 전체를 통해서 설탕은 그 유용성에서 역시 새로 소개된 바나나나 칠면조보다도 훨씬 뛰어난 산물이었다. 新大陸의 산물로서 그 중요성에서 설탕을 농가하는 유일한 산물은 감자였다. 남아메리카에서 광범하게 재배되었던 감자는 유럽인의食生活에서 주요재료가 되었다.

탐험은 유럽인이 먹고 마시고 깍연하는 일반생활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보다도 훨씬 궁극적인影響은 유럽제국의 지위에 미친 변화였다. 그 중에서 가장 현저한 예가 포르투갈이다. 포르투갈이 중요한 나라로 등장한 것은 전적으로 탐험가들과 그들이 발견한 땅에 건설된商業的인帝國의 덕분이었다. 그러나 15세기까지의 유럽인들은 플라톤의正義를 빌린다면 마치 개구리처럼 지증해 언저리에 웅크리고 앉아 꿈까울 못했다. 그 후 갑자기 이 막혀버린 바다의

10) Waldman, C., and Wexler, A., Who was Who in World Exploration(New York, 1992). pp. 216~223.

11)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Encyclopedia Britannica, INC., 1995). pp. 33~41.

너무나도 답답한 요람을 끊개치고 大洋과 大陸을 발견하려고 대양으로 출범하였다. 위대한 발견의 動機와 知識, 그리고 手段은 모두가 본질적으로는 중세적인 것이었다. 대양 항해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經濟的인 것이었다.

후추·계피·육두구·생강·정향 등은 모두 동남아시아의 열대기후에서만 자랄 수 있었고, 그것들이 지닌 방부성으로 말미암아 中世 전성기와 중세 말기를 통해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졌다.

중세 말기에는 이슬람·베네치아·제노바의 중간상인들을 거쳐 아시아의 香料들이 사치스러운 옷감, 전귀한 보석들과 함께 유럽인의 가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가격이 너무나 없어 비싸서 누구든지 뱃길을 통해 原產地에서 직접 구해 올 수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해외팽창에는 이런 經濟的인 動機 외에 宗教的인 動機도 있었다. 즉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려는 회망, 그리고 동방에서 상상의 ‘잃어버린 기독교인들(포레스트 존)’을 찾아내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이와 같은 회망은 향료에 대한 욕구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와는 전혀 무관하게 中世에 널리 만연되어 있었다. 이것이 유럽인을 대양으로 내몰게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地理上發見의 社會經濟的 環境의 變化分析

#### 1. 새로운 商品의 登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색채를 띤 작은 生物體로 가득 차 있는 거대한 宇宙船이 地球를 엄습해 왔다고 상상해 보라. 바로 5백년 전 東과 西가 만났을 때의 충격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sup>12)</sup>. 그것은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形態로 맞춰진 것과 같았을 것이다. 각 부분들은 모여서 完成品이 되었고 生活은 수백 가지 형태로 변했다. 새로운 식품이 양대륙의 食生活을 바꾸었다. 설탕과 소, 돼지가 新大陸에 전해졌고, 토마토와 감자, 코코아, 옥수수가 유럽에 전파되었다<sup>13)</sup>.

매독은 西에서 東으로 전염된 것 같다. 미대륙에서 정복자들이 귀환한 후 유럽에 처음 나타났다. 그리고 담배는 新大陸이 구대륙에 전달한 또 다른 膳物이었다. 따라서 去來商品의 급속한 증가와 새로운 商品이 등장하게 되었다.

12) Cranfield, L., *The Challengers : British and Commonwealth Adventure since 1945* (London, 1976). pp. 79~82.

13) Fernandez-armesto, F., *The Times Atlas of World Exploration*(London, 1991). pp. 226~241.

종래의 陸路交易의 경우에는 輸送能力의 제약이라든가, 수송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 등으로 말미암아 交易量이 한정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향료 등 중량과 부피가 작고 높은 가격의 상품이 주로 거래되었다. 그러나 大型船舶의 건조와 항해기술의 발달로 더욱 안전한 해상 수송이 가능해지고 비교적 중량과 부피가 큰 상품도 貿易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됨으로써 貿易 규모가 커지고 상품의 貿易量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貿易量의 확대는 이제까지의 원격지 상업처럼 귀족 등 상류층의 사치적 수요층 쪽에 봉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中產層의 새로운 수요를 발생시킴으로써 뒤에 언급하는 새로운 商品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생활습관을 이루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變化는 급격히 일어난 것은 아니다. 16세기 포르투갈의 동방무역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향료의 독점에 있었으며 면직물, 도자기, 남, 차, 커피, 견직물, 초석 등 東洋商品이 대량으로 유럽에 수입된 것은 17세기에 들어서 영국과 네덜란드가 우수한 항해술과 상업 및 金融組織을 가지고 동양에 직접 진출하게 되면서부터였다. 또한 유럽 新大陸과의 무역에서 등장한 새로운 상품이 대량으로 거래되게 된 것도 이 지역이 유럽인에 의해서 개발되고 新大陸產品이 대규모로 생산된 17세기 이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의 직접적 계기가 지리상의 新發見에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發見의 時代에 있어서 가장 큰 業績중 일부는, 향료나 귀금속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香料나 黃金屬만이 아니라 새로운 물건들이 유럽에 소개되었던 것이다.

담배가 유럽에 이어 동양에까지 보급돼서 人間의 생활에 준 변화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신대륙에서 유럽을 거쳐 동양으로 전해진 또 다른 植物들의 영향도 적지 않다 하겠다. 그중 옥수수만은 원래 舊大陸에도 있었는데, 그게 원래 구대륙에 있던 것인지 신대륙에 있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모두 고마운 것 뿐일 수는 없다. 그래서 新大陸의 풍토병의 하나였던 매독이 콜럼버스 일행편에 일찍이 유럽으로 전해져서 즉시 유럽 전역과 동양에 퍼지게 되었다.

이와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側面도 있었던 것이다.

## 2. 進出國과 受入國

新航路의 개척은 人類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衝擊은 신항로를 개척한 서유럽의 進出者들이나, 그로 인하여 침략을 받기 시작한 受入國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 준 歷史的 의의는 오히려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러한 충격은 당시 서

유럽사람들의 經濟發展에 중대한 变혁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經濟上의 驚기적인 变혁을 후일의 產業革命과 대비하여 상업혁명 이라고 한다. 이러한 變化는 거대한 波高로 社會·經濟構造를 변화시켰다.

신향로개척에 따라서 유럽사람들이 먼저 차수한 것은 現地國에 식민활동을 통한 經濟利潤의 추구였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대륙을 연결하는 일련의 商業活動은 상품의 질과 양, 두 가지 측면에서 驚기적인 변화를 야기시켰다. 즉, 商品의 量과 品目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업중심지가 이동되는 등 상업상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가격면에서도 혁명적인 사건이 뒤따랐다.

이러한 變化는 한편에서는 유럽의 貿易構造에 커다란 变혁을 가져다주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나머지의 여러 나라에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sup>13)</sup>.

첫째, 社會·經濟的 變革은 유럽의 상업중심지를 대서양 동쪽으로 옮아가게 하였다. 16세기까지 상업의 중심지는 이탈리아 사람의 활동무대인 地中海였다. 그들은 여기서 아라비아상인들을 통하여 구입한 동방상품을 독점하는 한편 이것을 유럽상품과 교역함으로써 經濟的 이윤을 독점적으로 누려 왔던 것이다. 그러나 新航路가 개척된 16세기 이래 아프리카 및 동방상품은 포르투갈상인에게, 아메리카상품은 스페인상인에게 각각 독점됨으로써 貿易中心地는 대서양 동쪽으로 옮겨졌다.

이러한 현상은 마침내 世界貿易中心地를 지중해에서 리스본을 거점으로 한 서유럽해안일대로 옮기게 하여, 브리스톨, 리버풀, 암스테르담, 냉트 등 새로운 항구도시를 급속도로 발전하게 하는 主要因이 되었다.

둘째, 生產되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화하고 數量面에서 비약적으로 팽창하였다.

그것은 인접한 사람들끼리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나라 사이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貿易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이와같은 貿易은 香料, 貴金屬, 비단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값이 비싼 물품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항해술의 발달과 大型船舶을 이용한 새로운 商人 등장으로 어떤 商品이든 그것이 교역조건만 유리하면 세계 어디에 있는 것이든 交換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양이 증대되고 품목이 늘어났다.

처음 東方貿易에 앞장섰던 포르투갈은 향료를 독점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16세기 후반부터는 면직물, 도자기, 염차, 후추, 견직물, 초석, 기타 여러 가지가 동방상품으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또한 스페인은 초기에 아메리카大陸으로부터 金·銀 등 貴金屬을 독점수입하였던 것이다.

13) Fernandez-armesto, F., The Times Atlas of World Exploration(London, 1991). pp. 226~241.

그후 재배농장에서 생산된 설탕, 담배, 목화를 비롯하여 모피, 수산물 등으로 품목과 數量이 놀랄 만큼 늘어났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도 이러한 貿易에 뒤따라 등장하였지만, 마지막으로 무역의 패권을 잡는 것은 英國이며 英國은 이것을 새로운 方向으로 조정하게 된다.

### 3. 進出圖 價格革命

國富의 증가를 위한 스페인에 의한 貴金屬의 도입은 아메리카발견의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아메리카가 발견된 직후부터 원주민으로부터 약탈한 금이 스페인에 들어갔지만, 특히 스페인의 '정복자들'에 의한 금의 약탈은 1519년의 코르테스에 의한 잉카제국과 1530년대의 피사로에 의한 잉카제국의 약탈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나 약탈에 의한 금의 유입은 그후 아메리카의 金과 銀開發에는 비교할 바가 못되었다. 가격혁명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경제사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은 바로 후자였다<sup>15)</sup>.

아메리카에서 대량의 은이 생산된 것은 볼리비아에서 포토시 銀礦山이 발견되고 그후 10여 년간에 멕시코의 자카테카스와 구아나후아토 은광이 발견되면서부터였다. 특히 1576년에는 남독일에서 수은 아발감제련법이 도입되어 은생산은 크게 증가하였다.

가장 풍부한 埋藏量을 가진 은광은 구아나후아토 은광이었으나, 포토시 銀礦이 아메리카 은산지의 상징이 되었다. 포토시 은광의 산출량은 1600년경에 절정에 달하였고, 기타 은광에서는 1630년경까지 높은 생산수준이 계속되었다.

植民國家에서의 銀採掘은 스페인민간인이 담당하였고, 채굴작업에는 원주민의 勞動力이 투입되었다. 스페인인들은 원주민을 노예상태에서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그들을 육체적으로 마멸될 때까지 사역시킴으로써 가혹하게 수탈하였다. 포토시 은광에서는 原住民勞動力이 재생산되지 않고 계속 투입됨으로써 노동력부족현상이 나타나자 아프리카의 흑인노예가 투입되었다. 은의 생산비용은 매우 낮았다. 생산된 地金銀은 모두 왕립시험소에 납품되고 그곳에서 봉장 또는 판장으로 주조되어 채굴특허료로 5분의 1세를 국왕에게 지불한 후 대부분이 스페인 본국으로 수송되었다.

이와같이 최초의 20년간 西印度諸島에서 약탈한 것은 금이 주였다. 1520년대와 1530년대 이후의 貴金屬은 멕시코와 페루에서 약탈한 것이었는데 반해서, 1550년대 이후에 급증한 것은 새로운 은광산의 개발에 기인한 것으로서 銀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로 보면 그것은 1590년대에 절정에 달하였다가 그후 감소하기 시작해서 1650년대에는 급감하고 있다. 이외에도 등록된 公式輸出量의 10~50%의 귀금속이 비공식 또는 밀수에 의해서 수입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15) Tourtellot, J. B. (ed.), *Into the Unknown*(Washington DC, 1987). pp.171~183.

기본적으로 農業國이며 국내의 경제적 기반이 약한 스페인이 16세기에 '세계제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경제적 기반은 아메리카산 貴金屬의 유입에 있었다. 그것은 스페인왕실인 힘스부르그가의 대외침략전쟁과 신교도 및 회교도 탄압정책의 재원이 되었고 스페인이 아메리카에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한商品에 대한 지불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스페인에 들어온 貴金屬은 국내보유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재유출되게 되었다. 즉, 그것은 혹거가라든가 웰저가, 그리고 이탈리아금융업자에 대한 왕실채무를 갚기 위해서 세빌리아 또는 안트웨르펜에서 지출되었고, 스페인이 국내수요와 아메리카에의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어류, 각종 공업제품 및 향료 등의 대금으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유럽 各國으로 유출되었다.

이와같은 現象은 오늘날 世界金市場과 유사한 점이 많아 흥미롭다.

그리하여 이 아메리카의 金과 銀이 다량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16세기 중엽 아래 남독일의 광산은 과산을 면치 못하였으며 이를 의지하고 활약하던 남독일상인도 그 세력기반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동시에 東印度貿易에 있어서의 포르투갈상인의 지위도 동요시켰다. 즉 포르투갈상인자본은 남독일의 광산물에 기초를 두었던 것이므로 그 기반이 무너짐으로써 이제는 스페인상인에 종속되고 말았다.

政治·經濟的으로 네덜란드 및 英國商船이 한편으로는 무역에 종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해적업을 겸하여 항상 스페인상선을 습격하게 된 것은 스페인상선에 의하여 운송되는 막대한 귀금속을 탈취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貴金屬이 대량으로 공급된 결과 주화유통이 많아지고, 貨幣經濟가 보다 급속하게 발달하게 되었다. 통화량의 대증화가 가져온 결과로서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현상은 그것이 物價를 넓은 범위에서 등격시키고 「가격혁명」을 야기시켰다는 점이다<sup>16)</sup>.

16세기를 통해서 유럽에서는 물가상승의 요인이 존재하고 있었다. 우선 人口가 증가하고 도시가 성장하는 속에서 곡물가격과 일반물가가 상승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貨幣惡鑄도 화폐가치를 하락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要因이 되었다. 절대군주는 왕실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화폐악주라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物價上昇要因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메리카로부터의 貴金屬의 대량유입이었다. 아메리카로부터의 귀금속의 大量流入에 기인한 물가상승은 스페인에서 먼저 일어났다.

해밀턴에 의하면 1501~1510년을 기준으로 100으로 하면 스페인의 물가지수는 1591~1600년에 303으로, 그리고 1601~1610년에는 340으로 상승하였으며, 한편 勞動者의 임금지

16) Hemming, J. M., *The ConQuest of the Incas*(London, 1970). *Red Gold*(London, 1981). pp. 276~281.

수는 양기간에 각각 277과 361에 달하였다. 해밀턴은 이러한 物價上昇과 귀금속유입과의 사이에는 특히 1535년 이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人類最初의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16세기의 물가상승은 스페인經濟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쳤다. 생산적 기반이 약한 스페인에의 귀금속의 대량유입은 공허한 번영감을 놓게 하고 國王과 教會 등 봉건적 지배층의 사치적 낭비와 다수 국민의 非生產的 활동 등 經濟的 버블 現象을 놓게 하였다.

특히 스페인의 물가상승폭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의 그것보다 커서 스페인의 輸出產業은 크게 불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물가가 임금을 앞질러 상승하는 동안에는 스페인의 經濟活動은 활발하였으나, 17세기에 들어 그것이 역전되자 기술적 진보에 의해서 生產費의 절감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업활동은 위축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스페인의 특징적인 현상은 賃金이 물가와 거의 같은 추세로 상승하고, 결국에는 物價의 상승폭을 상회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임금상승의 直接的인 原因이 된 것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였다. 16세기말에 900만이던 스페인인구는 17세기말에는 600만으로 감소하였다. 인구감소의 원인으로는 傳染病, 국내 회교도(무어인)의 추방, 계속된 전쟁에 의한 人名損失, 아메리카에의 유출, 억압받은 신교도의 해외유출 등이었다. 인구감소는 스페인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가격혁명은 스페인의 구지배계급만이 아니라 중산계급까지 몰락시킴으로써 17세기에는 스페인經濟는 쇠퇴의 과정을 걷게 되었다. 아메리카의 귀금속의 독점을 기반으로 번영한 스페인은 17세기에 들어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에 의해서 그 기반이 무너지고 쇠퇴하게 되었다.

스페인에서 일어난 價格革命은 스페인에 그치지 않고 유럽 전체로 파급되었다. 스페인에 유입된 귀금속은 왕실의 채무상환과 수입상품의 대가로 유럽제국에 재유출되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가격혁명과 그 파급은 유럽의 社會經濟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물가상승이 가져온 결과는 사회계층에 따라서 상이하였다. 무엇보다도 物價上昇에 의해서 곤란한 조건에 놓이게 된 것은 지주와 노동자였다. 地主의 경우 프랑스에서와 같이 현물지대를 수납하는 경우 사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으나, 영국에서와 같이 관습 또는 長期借地契約에 의해서 고정화폐지대를 수납하는 지주는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

한편, 價格革命은 공업과 상업에 큰 자극을 주었다. 공업생산자는 勞動者의 實質賃金이 저하된 만큼 높은 利潤을 올릴 수가 있었다. 이러한 '利潤인플레'가 공업생산자의 자본축적을 촉진하였다. 또한 물가상승은 활발한 상업거래를 놓고 높은 利潤을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귀금속 流入의 증대는 통화의 流通量을 증가시킴으로써 상업거래를 더욱 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金融市場과 投機市場의 발달을 자극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와같은 귀금속의 유입은 서구제국의 근대적 화폐제도의 기반을 확고히 했다. 貨幣制度의 확립과 더불어 화폐지대가 일반화되었으며 이것은 都市의 귀족 중심의 상업을 국민적인 상업으로 발전시켰다.

저임금에 의하여 채굴된 아메리카대륙으로부터 유입되는 다량의 金·銀은 西歐의 貨幣價值를 하락시켰고 物價를 상승시켰다. 16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는 사이에 서구의 물가는 3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現象을 價格革命이라고 부르며 이로 말미암아 유럽의 경제구조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一般物價의 상승이라는 유리한 조건에서 농민과 수공업자는 富를 축적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고정된 화폐지대와 물가상승은 農業利潤을 높였으며, 농민구매력의 증대 및 해외판로의 확대는 수공업발달에 유리한 요인을 조성했다. 이와같은 現像은 最近 國際收入의 黑字로 인한 物價上昇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 4. 奴隸貿易의 生成

地理上의 發見이란 世界的인 大事件에서 새로이 國際的으로 등장한 것은 노예무역이다. 검은 대륙의 奴隸貿易은 16세기 중기까지 포르투갈이 독점하고 있었으나, 그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가 이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유럽商人들은 서남아프리카의 황금해안에서 사금, 상아해안에서 상아를 구입하였다. 그러다가 아메리카대륙에서 재배식민지가 번창함에 따라서 그들의 관심은 노예무역으로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17세기에 접어들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식민지들이 경영하는 아메리카재배농장의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아프리카의 흑인무역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奴隸貿易은 전형적인 삼각교역으로 이루어졌다. 유럽상인들이 총기, 포도주, 목걸이, 거울, 철제품, 포목 따위를 기니아만으로 실고 가서 흑인총장을 통하여 奴隸와 교환한다.

삼각무역에 재미를 본 유럽상인들은 혈안이 되어 그것을 독점하려고 애썼다. 독점권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1580년대에 아메리카의 노예공급 獨占權은 리스본상인이 먼저 잡았다. 그러나 그것은 1701년에는 프랑스로, 1713년에는 영국으로 넘어갔다. 그 배후에서는 절대왕권을 등에 업은 특권상인자본과 무적해양함대가 엄호하고 있었다. 이 3세기 동안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보내진 노예수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고 하며 1700~1786년 사이에 자메이카로 실어 간 노예수만도 대략 61만 명, 1680~1860년 사이에 전영국령 식민지에서 받아들인 노예수는 400만 명에 달했다고 알려져 있다. 人類의 비극이 아닐 수 없었다.

## IV. 地理上發見이 貿易環境에 미친影響

### 1. 香辛料貿易

貿易環境의 變化로 야기된 것으로 특이한 것은 향신료 무역의 변화이다. 북부 유럽과 함께 중세 유럽의 2대 무역권으로 얘기되는 지중해에서 北部 이탈리아의 도시상인들이 취급한 상품은 앞에서 말한 것같이 주로 香辛料·染料·醫藥品·寶石·絹織物 따위였다. 이런 것은 가볍고 부피가 적은 사치품이다<sup>17)</sup>. 그리고 조미료로 널리 이용된 것은 소금·포도주·벌꿀 정도이고, 설탕도 이때는 수입되고 있었다. 차·커피·초콜릿 또는 감자·호박·옥수수·토마토 같은 것은 아직 유럽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sup>18)</sup>. 그러나 독일의 都市들도 이탈리아의 도시들도 강력한 왕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15, 16세기 이후에는 영국·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왕국의 강대한 권력을 배경으로 한 都市商人들한테 國際貿易의 패권을 뺏기고 만다. 따라서 향신료 무역의 주도권도 새로운 貿易環境에 따라 바뀌고 있다.

### 2. 貿易中心地 變化

유럽의 새로운 貿易中心地는 크게 변하였다. 貿易中心地는 프랑스 동북부의 비옥한 상파뉴 평원이었다. 즉 당시의 貿易圈을 크게 북부유럽과 지중해 2개로 나눈다면, 이 두 貿易圈의 접점이 상파뉴평원이었던 것이다.

원래 이 '상파뉴'란 이름은 랭스·상롱쉬르마른 및 트루아 근처의 대평원을 가리키는 라틴어 캄피에서 생겼났다지만, 국제시장으로 된 것은 주위의 水路 덕택이다.

상파뉴는 유럽 하천교통의 중심이라고 말할 만했다. 그리고 이런 지리적 여건이 상파뉴의 대평원을 國際市場으로 변모시킨 셈이다.

이와같이 16세기 商業革命의 내용으로 첫째 지적되어야 할 것은 동서교역의 중심지가 地中海에서 대서양연안으로, 특히 베니스에서 리스본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이다. 지리상혁명을 추진한 가장 중요한 동기가 東洋貿易에서 이탈리아상인의 독점적 지위를 타도하고 동양과 직접 교역한다는 데에 있었던 만큼, 포르투갈에 의한 인도항로를 개척한 그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17) Middleton, D., Victorian Lady Travellers(London, 1962). pp. 263~272.

18) Reid, A., Discovery and Exploration : A Concise History(London, 1980). pp. 197~203.

이러한 배경에서 16세기에 이탈리아 여러 都市의 상인활동이 점차적으로 쇠퇴한 것과 같아, 북해와 발트해를 거점으로 한 유럽상인들에게 강력한 商權을 행사하던 한자동맹도시의 상인활동도 쇠퇴하게 되었다. 그에 대응해서 생산적 기반도 변화하였다.

중세 이래 번영한 프랑스·브라방地方의 모직물공업이 쇠퇴하고 그에 대신해서 영국 毛織物工業이 중심적 인 사관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브르주의 국제상업중심지로서의 지위도 안트웨르펜으로 이동하였다. 안트웨르펜에서는 國內外商人에게 대등한 지위와 상업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됨으로써 유럽제국의 상인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自國商業을 國際商業과 연결시킬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각국상품이 거래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래상품은 香料를 중심으로 들어온 향료는 이곳을 통해서 유럽 각지에 재수출되었다.

20世紀에서도 마찬가지로 안트웨르펜은 國際的 상업거래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이곳의 거래소에서는 향료 등 商品과 함께 貨幣도 거래되었으며 점차적으로 화폐거래가 주가 되었다. 유럽 각국으로부터 환어음이 집중되고 각국의 商人만이 아니라 군주와 귀족들도 이곳에서 화폐를 차입하였다. 안트웨르펜은 '신문명의 경제적 수도'라고 할 만 했다.

남독일 상업도시—베니스—브르즈—한자동도시를 연결한 中世의 貿易構造는 남독일 상업도시—리스본—안트웨르펜—런던 및 북해·발트해 연안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國際貿易 관계로 변화하였다. 그것은 도시상인이 주도한 중세적 원격지상업의 쇠퇴이며 국민적 상인이 주도한 새로운 國際貿易圈의 발흥을 의미하고 있다.

### 3. 新大陸進出과 新貿易圈

貿易環境의 變化는 유럽상업권을 世界的인 규모로까지 확대시켰다. 유럽상업자본의 동양에 대한 직접 진출은 고도의 文明을 가지고 인구가 조밀한 東洋을 유럽과 연결시킴으로써 중세 이래 남유럽과 북유럽에 한정되었던 유럽의 상업권을 동양에까지 확대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스페인을 선두로 한 유럽인의 신대륙으로의 進出과 그의 개척은 신대륙을 유럽의 교역권에 편입시키게 되었다. 또한 노예무역과 관련해서 아프리카와의 교역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16세기의 유럽은 동양과 직접교역을 할 뿐만 아니라 新大陸과 아프리카까지 그의 교역권에 편입시킴으로써 유럽상업권은 비로소 전세계적인 범위로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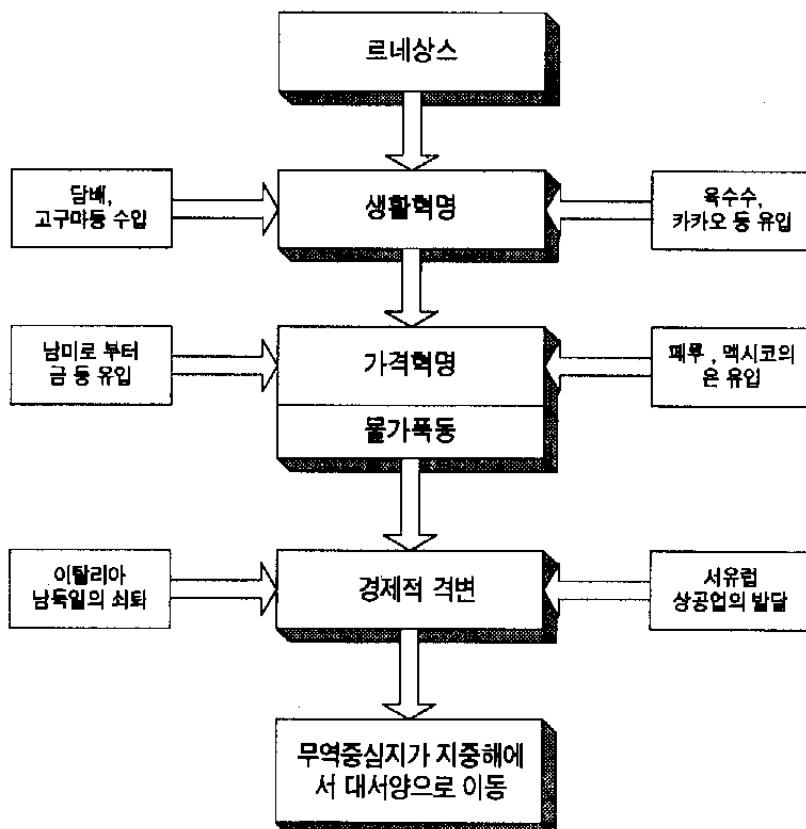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유럽상권 확대의 의의는 단순히 유럽의 교역대상지역이 외연적으로 확대되었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매개로 해서 東洋과 新大陸, 그리고 아프리카가 유

기적으로 밀접한 교역관계에 편입되었다는 데에 있었다.

이와 같은 상업권의 확대는 중세 아래의 유럽상업자본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한편, 근세 유럽상업자본의 세계적 발전의 전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發見은 그후 유럽의 상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탐험을 주도한 포르투갈 및 스페인 두 나라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포르투갈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아프리카沿岸의 황금·노예·상아를 대상으로 1415년 이래 약 80년간 탐험을 전개하였으나 1498년 바스코 다 가마에 의해서 동방과의 직접적인 무역로가 발견되자 지금까지 번성하던 북부 이탈리아 및 아라비아 여러 도시를 제치고 포르투갈상인에 의해서 東方物產이 대량으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결과 동방무역의 중심은 베네치아에서 리스본으로 옮겨오고, 한편 남독일의 商人们도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 이리하여 포르투갈에 의한 동인도항로의 개척은 동방무역의 지중해적인 규모와 성격에 결정적인 변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을 社會·經濟的으로 크게 변모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림 1〉 지리상의 발견이 유럽에 미친 영향 모델

## V. 結 論

新大陸 발견 후, 약 30년에 걸쳐 전개된 중남미의 탐험과 개발은 東印度貿易의 전개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급격히 유럽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영향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海外進出의 결과, 1520년대의 멕시코, 페루의 征服과 銀礦山의 개발을 통해 대량의 은을 유럽에 유입하게 새로운 海外進出의 결과, 되어 16세기의 이른 바 人類最初의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다.

둘째, 그러한 풍부하고도 저렴한 은이 신대륙을 유럽산의 毛織物市場으로 만들어, 國際經濟의 수단인 은의 대량유입은 지금까지 銀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던 남독일의 광산업과 상인의 經濟的 基盤을 무너뜨려 그들의 경제적 번영을 밀바닥으로부터 뒤엎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포르투갈, 스페인에 의해서 제시된 대륙의 발견은 먼저 이들 두 나라로 하여금 새로운 패자로 만들고 동시에 지금까지의 이탈리아·남독일상인의 세력을 몰락시킴으로써 유럽상업 전체, 나아가서는 그 經濟全般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 모직물공업의 번영이다. 즉 東印度貿易과 신대륙무역은 한쪽이 은을 수출해서 그 대가로 동방물산을 수입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산물, 특히 毛織物을 수출하여 은을 수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유럽상인 전체로서 생각한다면 동인도무역을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銀이 필요로 하게 되며, 그 은은 신대륙으로부터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 은을 얻기 위해서는 유럽의 工產物, 특히 모직물생산의 중대를 피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의 인과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毛織物工業의 발전이야말로 동인도무역과 新大陸貿易을 제폐하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이었다. 사실 16세기 전반 스페인은 織物工業, 특히 毛織物工業이 급속히 전개되지만 후반에 들어서면 네덜란드, 잉글랜드에 의해서 대체하게 되는 것은 그들 나라에서의 毛織物工業의 발전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넷째, 오늘날의 國際收支 概念으로 따진다면 進出國의 일방적 黑字였으며, 이 黑字는 예기치 않았던 否定的 側面도 가져왔음이 歷史的으로 證明된 셈이다.

다섯째, 現地國과 海外進出國의 社會·經濟的 環境의 급변을 들 수 있다. 現地國과 海外進出國의 各種物資의 交換은 兩側 모두 이제까지는 경험할 수 없었던 變化를 주었고 이것은 유럽이 向後 變해가는 큰 要因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地理上의 大發見은 한편으로는 광대한 시장의 확장과 經濟的 繁榮을 가져옴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그후 3세기에 걸쳐 유럽제국 사이에 국제상업전을 펼치게 함으로써 이른 바 '商業革命'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結局 20世紀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地理上의 大發見의 가장 중요한 意義가 있다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Badger, G., *The Explorers of the Pacific* (Kenthurst, 1988).
2. Beaglehole, J. C., *The Exploration of the Pacific* (london, 1966).
3. Bonington, C., *Quest for Adventure* (London, 1981).
4. Cameron, I., *To the Farthest Ends of the Earth : the history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London, 1970)
5. Cranfield, L., *The Challengers : British and Commonwealth Adventure since 1945* (London, 1976).
6. Delpar, H. (ed.), *The Discoverers: An Encyclopedia of Explorers and Exploration* (New York, 1972).
7. Fernández-armesto, F., *The Times Atlas of World Exploration* (London, 1991).
8. Goodman, E., *The Explorers of South America* (New York, 1972)
9. Hemming, J. M., *The ConQuest of the Incas* (London, 1970). Red Gold (London, 1981).
10. Herbert, W., *The Noose of Laurels: The Discovery of the North Pole* (London, 1987).
11. Hopkirk, P., *Trespassers on the Roof of the World* (London, 1982).
12. Kirwan, A. L. P., *The White Road: A Survey of Polar Exploration* (London, 1959).
13. Middleton, D., *Victorian Lady Travellers* (London, 1962).
14. Moorhead, A., *The White Nile* (London, 1962).
15. Newby, E., *The World Atlas of Exploration* (London, 1975).
16. Noyce, W. *Springs of Adventure* (London, 1958).
17. Parry, J. H., *The Discovery of the Sea* (London, 1964).
18. Pennington, P., *The Great Explorers* (London, 1979).
19. Penrose, B., *Travel and Discovery in the Renaissance* (Harvard, 1952).

20. Peter Mörter, Neil Grant, *The Great Atlas of Discovery* (London, 1992).
21. Reid, A., *Discovery and Exploration: A Concise History* (London, 1980).
22. Riverain, J., *Concise Encyclopedia of Explorations* (Glasgow and Chicago, 1996).
23. Severin, T., *The African Adventure* (London, 1973).
24.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95)
25. Tourtellot, J. B. (ed.), *Into The Unknown* (Washington DC, 1987).
26. Waldman, C., and Wexler, A., *Who Was Who in World Exploration* (New York, 1992).

## A Study on the Effect of Geographical Discovery in Europe

Kim, Shin\*

### Abstract

Exploration had in fact a greater currency amongst its armchair arbiters in the geographical societies of europe than it did amongst their emissaries in the field.

Geographical exploration almost inevitably means exploration by Europeans, who have accomplished this on a vast scale, worldwide. The knowledge of their discoveries has been widely disseminated by modern techniques.

In search of gold and the mythical christian kingdom of prester john, portugal sent explorers into the uncharted atlantic ocean. In 1488 the portuguese ships rounded the cape of good hope for the first time and entered the waters of indian ocean. The route to the east and the spice markets was now open. A new era commenced following his expedition. From the early sixteenth century, a long-lived portuguese trading empire was established in the east.

Spices and gold were one of the pressing motives that persuaded the spanish and portuguese navigators from Vasco da Gama to Columbus and Magellan, to risk voyages through unknown ocean.

Key-words : Geographical exploration, atlantic ocean

\* Profess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KyungHee University, Ph.D.

# 한국 금융시장의 국제화과정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Investment Trusts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황 남 일\*\*  
김 유 상\*\*\*

## 目 次

I. 연구목적	역할
II. 금융시장의 국제화 추세	V. 투자신탁의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운용효과
III. 금융시장 국제화에 따른 이론적 고찰	VI. 요약 및 결론
IV. 금융시장 국제화 과정에서의 기관투자가의	참고문헌

## I. 연구목적

최근 국내경제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대기업의 연속적인 도산과 중시 폭락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금융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다. 1990년대 초부터는 한국의 금융시장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외국 투자자금 유출입과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라는 신국제 무역질서하에서 금융시장개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금융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면, 외국투자자금 유입으로 통화공급을 증가시켜 물가상승의 유인이 존재하며 국내자금의 해외유출과 환율변동을 가져와 부작용을 초래할수도 있지만, 외국자본이 유입되어 국내금융시장에 참여하면 증권수요의 증가, 증권형태의 다양성 증가, 증권시장의 안정성제고,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절감 등의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금융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증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의 투자의욕도 저하되고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단국대학교 삼경대학 경제·무역학부 교수(經濟學 博士)

\*\*\*투자신탁 협회 회장(經營學 博士), kitca03@unitel.co.kr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 외국자본이 한국금융시장에서 떠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금융공황을 야기시켜 주식시장에서는 해외자금을 빠져나가 주가가 폭락하고, 자금시장에서는 신용불안이 확산되어 금리가 상승하며, 외환시장에서는 외화부족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대외신용도가 하락하여 신규외자조달이 막혀 국내기업의 연쇄부도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분석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한국금융시장의 국제화과정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온 외국자본이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평가·분석하므로서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각국의 금융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일체화되는 금융시장의 국제화과정에서 한국이 실시한 금융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평가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려고 한다.

## II. 금융시장의 국제화 추세

### 1. 금융시장의 국제화

금융시장의 국제화란 국제간 자본이동이 자유롭게된 상태를 의미하며 직접, 간접투자를 가리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자금유입과 외국으로의 자금유출을 허용하며, 이 자금들의 원금 및 이자등에 대한 송금을 자유롭게 보장하여 금융시장 자유화를 완성하는 경제적 조치라고 규정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국제화는 금융시장의 자유화라는 말로 정의되어진다.

여기에 비해 자본시장의 국제화란 일반적으로 자본자유화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자본의 유출입 면에서 간접투자(portfolio investment)로써,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의미한다<sup>1)</sup>.

따라서, 자본시장의 국제화란 증권시장의 구조 및 기능에 관련하여 유통시장에서의 국내외증권투자의 교류, 발행시장에 있어서의 자금조달의 국제화, 국내외 증권의 상호상장, 그리고 증권업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즉, 금융시장 국제화의 전단계를 자본시장 국제화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금융시장 개방화란 엄밀한 의미에서 자본시장 개방화를 의미한다.

자본시장의 국제화의 장점으로는 자본의 자유화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기업의 자금조달확대로 인한 국내금리의 안정, 금융서비스 부문의 효율성 향상, 환율의 가격기능제고,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로 인한 증시 성장·확대 등을 들수 있다. 반면에 자본자유화의 단

1) 魚允大, 「韓國證券會社의 國際化戰略」, 『證券』, 韓國證券協會, 1982, p. 2.

점으로는 대규모 외화자금 유입은 원화가치의 상승 및 통화량 증가로 통화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킬수 있으며, 외국 투기자금(hot money)의 빈번한 유출입은 자본시장의 직접적인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 자유화 초기에 투자신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분적인 개방화 조치를 취한것은 외국자본의유입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결정은 유입자본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자본유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외국의 시장개방을 참고로 한 결과였다. 즉, 중·남미나 동남아 국가들의 경험에서 볼때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할 경우 실물경제의 투자증가와 생산증가로 연결되었으나, 주식투자자금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에는 주식가격은 폭등하였지만 실질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sup>2)</sup>.

## 2. 한국의 금융시장의 국제화 정책

한국정부의 금융시장 국제화정책의 시작은 1981년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을 수립발표하면서 부터이며 이후 정부는 자본시장 개방화의 필요성에 대처하면서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이용한 자본시장의 국제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개방의 첫단계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sup>3)</sup>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펀드를 만들어 국내자본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개방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후 1987년에 「자본자유화 촉진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1988년 12월에는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의 단계별 확대추진」을 발표하면서 년차별 개방일정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외국인들의 간접증권투자를 허용하며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 설치와 합작증권회사 설립도 상호주의 원칙하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1992년에는 「제삼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을 수립 발표하여 1997년까지 5년간에 걸친 자본 시장개방 관련조치의 내용과 일정을 대내외에 밝혔다.

정부는 1996년에 들어 주식시장의 개방확대와 해외증권투자 자유화계획을 발표 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자유화 추진의지 이외에도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가입의 선결조건 중에서

2) 李忠烈, 「資本流入의 短期的 效果分析」, 「金融分析 : 分析과 展望」, 韓國金融研究院, 1994. 3, p. 26.

3) 外國人專用 受益證券은 國內의 投資信託會社가 현행 韓國의 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해 受益證券 을 발행하고, 國내외의 仲介機關을 통해 외국환 관리법상의 비거주자에게 판매하는 國際證券 投資信託으로 판매지역만이 國제화 되어 있는 것이다. 外國人專用 受益證券은 펀드의 설립이 비교적 간단하고, 펀드의운용이 國內 投資信託業法에 의해 이루어지며, 資本의 流出入이 비교적 통제가능하며, 投資信託會社의 업무영역확대와 국제업무의 경험축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졌다. 단점으로는 國際資本市場에서의 거래관습에 부적합하며, 각국의 규제에 의해 公募(public offering)가 쉽지않다는 점이 있다.

문제되는 것은 자본자유화와 무역자유화로 ‘무역거래’ 및 ‘자본거래’에 관한 양대규약의 수용도가 크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가지 제도적·운영적인 측면에서 성숙하지 못한 국내 채권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외국인전용 채권형 수익증권을 허용하였고,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일부 채권에 대해 제한적인 직접투자를 소폭허용하여 부분적으로 개방화 추가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한국경제는 1990년대부터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유출입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sup>4)</sup>.

그후 1997년부터는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 직접투자 허용과 채권형 수익증권 발행한도 확대 및 자유화 추진을 금융시장 개방정책으로 채택했다. 국내 종합금융사의 영업권 남발온 단기자본의 해외차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해외 자본유입을 가속화시켰다. 해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각국의 금융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의미를 갖기는 하나 한국처럼 일시에 많은 해외차입으로 금리격차만을 노린 영업방침에 의한 금융시장의 국제화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수 있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일부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한보, 기아, 대농, 삼미, 진로 등 대기업 부도사태가 이어지면서 총체적 부실을 면할수 없게 되었고, 1997년부터 환율의 인상폭이 커지기 시작했으며, 부도유예협약이 실시됨으로써 금융권 부실에 따른 외화차입난이 본격화된 데다가 정권말기의 정책표류에 따라 해외신인도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외채위기가 가중되었다. 그리하여 한국경제는 6.25동란이후 최대의 민족적 시련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1960년대부터 36년간 지속되었던 성장기를 마감하고 1997년 11월19일 IMF(국제통화기금)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IMF는 구제금융조건으로 경제운영전반에 대한 엄격한 규제, 즉 성장을 하향조정, 긴축재정, 노동의 유연성, 대기업 구조조정 등을 요구받게 되어 한국경제는 최대의 시련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금융산업 개혁추세를 국내금융산업개편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했으며, 선진국들과의 통상마찰 해소 차원에서도 금융시장의 국제화는 불가피 했지만, 경제원리 보다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관치금융, 대기업들의 차입경영 등 국내관행은 이에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IMF 구제금융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되자 신정부는 1998년 3월 30일 ‘외환거래 완전자율화’ 시책으로 「신외환법」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외환거래 완전자유화의 주요내용은 외환거래를 완전자유화 및 외국인 투자

4) 1992년부터 1996년 2월말까지 307.7억달러가 유입되었고, 181.9억달러가 유출되어 총 125.8억 달러가 순유입되었다.

전면자유화를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대폭 강하면서 외환위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1997년 이전까지의 외국인 투자 개방 확대 내용과 1998년 3월의 외국인 투자 개방 확대 내용을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lt;표 1&gt;

외국인 투자 개방 확대내용

업 종	현 행	개 정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임대업 및 분양공급업	• 외국인 투자지분 50% 이하 허용	• 4월1일 전면 개방
증권거래업	• 기존 증권사 투자시 - 투자비율 50% 까지 허용 • 증권사 신설시 - 40~50% 허용	• 4월1일 전면개방
투자회사 등 투자조합	• 외국인 투자자금의 운용을 신주 인수로 제한	• 외국인 투자자금 중 80%이상을 1년 이내 신주·신주인수원부사채, 코스닥 등록벤처기업의 주식 인수 방식으로 투자가능
상품교환업(선물거래업· 상품권 발행업)	• 미개방	• 4월1일 부분개방 - 선물거래법 1대주주가 아닌 경우 50% 미만 까지 투자허용
콜프장운영업	• 제주 중문단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허용	• 4월1일 전면개방
유선방송업종 프로그램 공급업·종합유선방송국	• 외국인 투자지분 15%이하 허용	• 4월1일부터 30% 이하 허용
석유정제업·주유소업	• 외국인 투자지분 50%이하 허용 (99년 1월1일 전면개방)	• 상반기에 조기개방

출처 : 매일경제, 1998년 3월 31일 3면.

### III. 금융시장 국제화에 따른 이론적 고찰

금융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됨과 동시에 자본시장의 개방폭이 커짐에 따라 그 추진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본시장의 자유화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자본시장 개방이 경제정책이나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자본시장 국제화의 영향을 주식

시장에 국한하여 주가의 변동폭이나 투자자들의 거래형태변화에 관심을 두는 연구로 나누어 볼수 있다.

### 1. 자본시장 국제화와 거시경제변수간의 관계

금융시장개방으로 인해 유입되는 외국자본은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절상시키고 국내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수출·입, 물가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국가경제의 정책입안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1990년대초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가 협용된후, 국내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인식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많은 양의 해외자본이 국내 주식매입을 위해 유입되었고, 1996년부터는 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종합금융사의 허가 남발로 해외 단기 자금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시장개방으로 유입되는 해외투자자금은 거시적 측면에서 유입국 경제에 여러가지 영향을 주게된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자본의 초과공급으로 자국 통화의 절상압력을 받게되며 국내금리를 하락시킨다. 그리하여 성장률, 물가 및 경상수지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외국자본의 유입은 국내투자를 확대시켜 자본재공급을 증가시키고, 총공급능력을 증대시켜 생산성이나 산업구조,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sup>5)</sup>.

그러나 한국과 같은 소규모 경제에서는 자본시장의 개방확대는 국내기업들에게 환율 및 금리면에서 더 큰 변동위험을 안겨주게 된다. 즉 해외로부터 자금조달이 확대되고 변동금리로 차입한 자금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환율 및 금리변동이 국내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sup>6)</sup>. 그리고 자본시장의 개방폭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의 금융기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폭되는 등 금융기관의 경영여건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 2. 자본시장 국제화와 주식시장과의 관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 일시에 외화자금이 유입되므로, 이에 따라 통화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물가상승, 원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약화, 빈번한 자금 유출입에 의한 증권, 외환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단기유동자금에 의해 통화정책을 교란하며, 증권가격 변동의 폭을

5) 李忠烈, 전개서, pp. 1~46.

6) 姜浩相·金秉演, 「開放化에 대응한 우리나라 銀行의 國際化 戰略」, 金融研究院, 1994. 1, p. 4.

넓게하여 외환 및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sup>7)</sup>. 그러나 남상구의 연구<sup>8)</sup>에서는 외국인 주식투자 허용 이후 외화자금에 의한 국내 증권시장의 교란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통화 및 외환관리에 있어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외국인의 주식거래가 유동성을 증가시켜 정시에 활력을 불어 넣었을 뿐만 아니라 내재가치 중심의 투자로 증시의 가격기능이 제고되고, 대외적 신용도가 증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전철홍의 1994년 논문<sup>9)</sup>은 주식시장 개방이 국내증시에 미친 영향으로 ① 국내증시의 규모 확대, ② 외국투자자의 거래형태가 주가변동에 미치는 영향, ③ 외국투자자의 내재가치를 중심으로 한 투자전략의 국내확산, ④ 개별기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주식 양극화 현상 등이 발생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연강홍의 연구<sup>10)</sup>에서는 외국투자자의 순매수와 주가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외국투자자의 매수세가 국내투자자의 매수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종만연구<sup>11)</sup>에서도 증시개방후 2년간의 주식거래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투자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투자한도 제한이 주식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있으며, 외국투자자가 국내투자자에 비해 높은 초과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외국투자자의 국내증시 참여는 합리적 투자관행을 촉진시켜 증시의 체질을 개선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있어 건전한 자본시장의 성장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외국투자 자금으로 인하여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외국인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증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겠다.

## IV. 금융시장 국제화 과정에서의 기관투자자의 역할

### 1.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통한 시장개방 역할

자본시장 개방으로 초래될 수 있는 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계적

7) 姜種萬「外國人 投資影響分析」, 「證券」, 韓國證券協會, 1994, p. 43.

8) 南尚九, 「外國人 投資限度의 再檢討와 調整方向」, 「上場協」, 韓國上場協議會, 1993, pp. 116~133.

9) 전철홍, 「證市開放後 證市構造變化」, 「株式」, 韓國證券去來所, 1994. 6, pp. 31~60.

10) 延康欽, 「證市開放前後의 投資主體別 投資行態에 관한 研究」, 「證券學會誌」, 1994, pp. 151~187.

11) 姜種萬, 전계서, pp. 41~60.

인 개방정책이 추진되었다.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의 일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기 쉬운 것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다. 한국과 같은 개도국의 경우, 외국인의 직접적 증권투자로 인한 문제점과 자국 자본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최소화할 방향으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통해 자본시장의 개방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흔히 존재한다.

한국최초의 자본시장개방은 1981년이며, 이때 제1단계로 허용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발매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은 국내투자신탁회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수익증권을 발매하는 계약형인 동시에 투자자가 펀드설정자에 대하여 수시로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개방형 국제투자신탁이다. 국제투자신탁은 설립, 운영주체, 운용대상, 판매방식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 ① 국내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외국에서 판매하는 형태
- ② 국내증권을 편입시키기 위해 설립된 외국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외국에서 판매하는 형태
- ③ 외국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형태
- ④ 외국자본에 의해 내국적 투자신탁을 설립·운용하는 형태
- ⑤ 외국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외국에서 판매하는 형태

이들 가운데 한국은 자본자유화 초기단계에서 실시 가능한 ①, ② 형태를 도입함으로서 외국인의 국내증권시장에 대한 간접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을택하였다. 즉, 국내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은 ①의 형태이며, Korea Fund, Korea Euro Fund와 같은 칸츄리펀드는 ②의 형태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내·외국인이 동시에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혼합펀드(matching fund)도 투자신탁에 의해 1990년 설립되었다.

최초의 외국인수익증권은 1981년 한국투자신탁에 의해 1,500만달러 규모로 설정된 KIT(Korea International Trust)를 시작으로 해서 대한투자신탁의 KT(Korea Trust)가 같은 규모로 설정되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외국인수익증권의 설정이 뒤따랐다.

이들 펀드들은 주로 유럽, 미국, 일본, 홍콩 등의 지역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최초의 한국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효시가 되었으며, 이들 자금은 수익증권 순자산의 90% 이상을 한국의 상장주식에 투자하도록하여, 본격적인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위한 간접적인 증권투자의 문호를 개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같이 한국은 1981년부터 자본자유화를 투자신탁의 펀드나 칸츄리펀드 형식으로 추진한 결과, 외국인의 투자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어 기존의 외채를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달성하였다 볼 수 있다. 증권투자 자금은 외채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장기적인 자금이므로 국내기업들에게는 많은 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 2. 국제투자 신상품의 개발역할

한국의 투자신탁회사들은 1980년대초부터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설정으로 증권업의 선도적인 국제업무능력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990년 혼합형 투자신탁의 설정으로 해외증권 투자능력을 갖추기 시작하자, 각 투신사들은 본격적으로 국제금융 신상품을 개발하여 한국 증권업의 상품개발능력을 제고시키기 시작하였다.

1981년 이후 1995년 말까지 국내 투자신탁회사의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설정 규모는 약 30억 달러에 이르렀다. 대한투자신탁은 1992년에 외국의 면세지역에 Korea Synthetic Fund (KSF)을 설치하여 외화 자금을 조달하고 국내 증권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KSF의 주식투자자는 한국주가 상승시 투자이익을 얻으며, 채권투자자는 3년 만기의 채권으로 3년 후 주가상승시에는 이자전액(3년 LIBOR + 5.4%)을 지급받으며, 주가하락시에는 하락분을 참작하여 지급받되 최저 3년 LIBOR를 지급받게 되어 있다. 발행에 관여한 국내 금융기관은 총 3개사로 럭키증권은 KSF가 발행한 주식의 판매대행기관이며, 외환은행은 KSF가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에 대한 보증기관이고, 대한투자신탁은 KSF의 설립 및 국내의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인 DST(Daehan Synthetic Trust)의 운용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우리나라 투자신탁에서 최초로 발행된 이 파생상품의 주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들의 채권투자자금을 국내 투자자금으로 조달함으로서 국내 증권시장의 부양효과와 기업의 장기 안정적 자금조달에 이용할 수 있었다. 둘째,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서 기존 투자자와는 다른 욕구를 가진 투자를 창출하여 국내 증권시장의 저변확대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국내 증권 기관들이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매매를 주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품개발력 및 판매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 증권산업 해외진출의 촉진역할

국내 자본시장 개방 못지 않게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도 환율관리, 국제수지 및 통화관리의 목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증권사와 투자신탁사의 해외증권투자는 1990년 3월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며 1994년 2월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95년 2월부터는 일반투자의 경우 5억 원까지, 법인의 경우 10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투자신탁회사들은 초창기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해외투자에 대한 경험, 정보, 노하우(know-how)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선도하였으며, 각국의 주식투자에 대한 형태와 그 효과를 조사하여 국내주식시장의 간접개방, 신상품 개발, 해외진출 촉진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 V. 투자신탁의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운용효과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투자자들 보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며, 기업실적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과학적 투자기법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초기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시점에서 정부는 경쟁력이 있는 외국투자자들에 의해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여 투자신탁을 통해 소폭의 간접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외국투자자들이 국내증권시장에서 우월한 투자능력만큼 비정상수익률(abnormal return)을 획득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즉 외국인 투자전략의 우월성은 국내의 펀드운용자 국외의 펀드운용자간 투자성과를 비교분석함으로서 밝혀낼 수 있는 실증상의 문제이다. 이러한 실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투자신탁회사들이 외국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정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과, 외국투자자들이 직접 한국에 투자한 한국대상 국제펀드(country fund)의 투자성과를 분석함으로서 투자형태의 상이점을 추정하고자 한다.

### 1. 성과평가 방법

포트폴리오의 투자성과 평가방법은 1960년대 이후 자본시장이론이 발달함에 따라 발전하기 시작했다. 자본시장이론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 투자성과분석의 기법은,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같은 다른 주식 또는 포트폴리오들의 평균수익률이 다른 그것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였는가 하는 점과 분산투자의 효과를 확보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성과 평가는 자본시장이론을 이용한 Sharpe척도, Treynor척도, Jensen 척도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예측활동(market timing activity)의 적절성을 Treynor-Mazuy척도에 의하여 평가되고 있다.

Sharpe<sup>12)</sup>는 투자수익률 대 변동성비율(reward to variability ratio)로 포트폴리오 성과를 측정하였다.

그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총위험과 기대수익률 사이에 존재하는 균형식을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frac{\bar{R}_p - R_f}{\sigma_p} = \frac{\bar{R}_m - R_f}{\sigma_m}$$

$R_p$ : 포트폴리오 P의 실현(평균)수익률

$R_f$ : 무위험이자율

$R_m$ : 시장포트폴리오의(평균)수익률

$\sigma_m$ : 시장포트폴리오 실현수익률의 표준편차

12) W.F.Sharpe, "Mutual Fund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ol. 39, 1966, pp. 119~138.

$\alpha_p$  : 포트폴리오 P의 실현수익률의 표준편차

여기에서 좌변은 포트폴리오 P를 보유함으로써 실제로 부담한 총위험 1단위당 실현된 위험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우변은 시장포트폴리오의 총위험 1단위당 실현된 위험프리미엄이 된다. Sharpe는 투자보수 대 분산 비율(reward to variability ratio : RVAR)로 표현되는 Sharpe지수  $(R_p - R_f) / S_p$ 를 투자성과의 측정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 비율이 한 투자기간 동안에 있어 위험의 1단위당 무위험 이자율을 초과달성한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정도를 나타내며 이것이 높으면 위험조정후 성과가 좋음을 의미하고 비율이 낮으면 성과가 낮음을 의미한다.

Treynor<sup>13)</sup>는 투자성과에 대한 위험 측정치로 표준편차 대신 체계적 위험수치인 베타계수를 사용한 지수를 제시하였다. 이는 자본시장의 기울기보다는 증권시장선에 의한 평가를 주장한 것으로,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다면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며 비체계적 위험은 대부분 분산에 의해 제거된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Treynor 성과척도인 ‘투자성과 대 민감도비율(reward to volatility ratio:RVOL)’은 체계적 위험 1단위당 실현된 위험 프리미엄을 표현하고 그 값이 클수록 투자기간 중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우월한 것으로, 적을수록 열등한 것으로 판정된다. RVOL은 다음과 같은 증권시장선을 이용하여 구한다.

$$\frac{\bar{R}_p - R_f}{\beta_p} = (\bar{R}_p - R_f)$$

위 식에서  $\beta_p$ 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베타계수이며, RVOL은  $(\bar{R}_p - R_f) / \beta_p$ 를 나타낸다. 이 때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이 효율적이고 균형적이면 어떤 증권 또는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 1단위당 실현된 위험 프리미엄은  $(\bar{R}_p - R_f) / \beta_p$ 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프리미엄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Jensen<sup>14)</sup>은 포트폴리오의 성과분석시 성과와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신념하에 이전 연구의 상대적 성과평가방법을 비판하고 절대적 성과평가의 수단을 제시하였다. 자본자산가격모형(CAPM)을 절편화가 존재하도록 완화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R_{pt} - R_{ft} = \alpha_p + \beta_p(R_{mt} - R_{ft}) + \mu_{pt}$$

$\alpha_p$  : p편드매니저의 증권선택능력

$\beta_p$  : p편드의 베타

13) J. L. Treynor, "How to Rate Management of Investment Funds", Harvard Business Review, Vol. 43, 1965, pp. 652~654.

14) M. C. Jensen, "Risk and the Pricing of Capital Assets and Evaluation of Investment Portfolio", Journal of Business, Vol. 42, 1969, pp. 167~247.

만약 체계적인 주식선택능력이 존재하면,  $\alpha > 0$ 이고  $E(\mu_a) = 0$ 이 된다.

즉 Jensen척도는 시계열자료에 의해 CAPM의 증권특성선을 구했을 경우 절편을 말한다.  $\alpha_a$ 가 양(+)의 값일 경우에는 우월한 운용기술에 의하여 우월한 수익률을 실현한 경우이고,  $\alpha_a$ 가 0일 경우에는 특별하게 뛰어난 운용능력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  $\alpha_a$ 가 음(-)의 값일 경우에는 열등한 운용실적으로 같은 체계적 위험관리가 되지 않은 포트폴리오 만큼도 못한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위의 세가지 전통적인 성과측정방법들은 대부분 주식선택능력에 대한 이론이나 검증을 위주로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직접적으로 운용포트폴리오의 시장예측능력을 발견하기 위한 모형개발에 주력하였다. 이차항 회귀분석은 우월한 시장예측능력을 가지고 운용된 수익율곡선이 기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선형이 아닌 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Treynor – Mazuy<sup>15)</sup> 는 CAPM을 이용하여 Jensen 알파를 계산할 때 시장수익률의 이차항을 포함시키고, 이차항의 계수가 시장예측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주장하였다.

$$R_a = \alpha_p + \beta_p R_{mt} + \gamma_p (R_{mt})^2 + \varepsilon_a$$

$R_a$  : 펀드수익률,

$R_{mt}$  : 시장수익률

$\alpha_p$  : 펀드운용자의 주식선택능력,

$\beta_p$  : 펀드p의 베타.

$\gamma_p$  : 펀드운용자의 시장예측능력

즉 우월한 시장예측능력을 가진 펀드운용자는 주가상승기에는 더 많은 시장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주가하락기에는 적은 시장포트폴리오를 보유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수익률은 시장수익률에 대하여 비선형 관계를 가지므로  $\gamma_p$ 가 양(+)의 값을 가진다.

## 2. 분석자료

펀드의 발매 이후 1996년 4월말까지의 운용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펀드의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 NAV)를 이용하여 월간 투자수익률을 산출하였다. 펀드의 순자산가치는 펀드의 배당금지급과 주식분할(stock split)을 고려하여 수익률의 단층을 없애고 연속성을 가지도록 가공하였으며, 홍콩, 뉴욕, 런던에서 형성된 칸츄리펀드의 가격은 그 당시의 환율을 고려하여 원화가치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할 기준포트폴리오(benchmark portfolio)는 한국 증권거래소가 발표하는 종합주가지수수익률을 사용하였다. 본 장의 분석대상 펀드중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있

15) J. L Treynor and K. K. Mazuy, "Can Mutual Funds Outguess the Market?" Harvard Business Review, Vol. 44, 1996, pp. 131~136.

〈표 2〉

분석대상펀드

투자펀드종류	투신사	펀드명		분석기간
		영문명(약어)	한글명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	대한투신	KT	코리아 트러스트	1984. 8 ~ 1996. 4
	대한투신	ST	서울 트러스트	1985. 5 ~ "
	한국투신	KIT	한국국제 트러스트	1984. 8 ~ "
	한국투신	SIT	서울 국제 트러스트	1985. 5 ~ "
	국민투신	GKT	한국성장형 트러스트	1985. 3 ~ "
외국인설립 대한투자 컨츄리펀드		KF	코리아 펀드	1984. 9 ~ "
		KEF	코리아 유러펀드	1987. 5 ~ "
		KAF	코리아 아시아 펀드	1991. 5 ~ "

〈표 3〉

분석표본들에 대한 요약통계량

	표본수(월수)	월평균수익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KT	141	0.0103	0.0661	-0.2134	0.1881
ST	132	0.0109	0.0599	-0.1276	0.1949
KIT	141	0.0145	0.0695	-0.1633	0.2351
SIT	132	0.0153	0.0738	-0.2960	0.2921
KGT	133	0.0113	0.0581	-0.1331	0.1830
KF	140	0.0141	0.0741	-0.1902	0.3430
KEF	108	0.0151	0.0663	-0.1623	0.2139
KAF	60	0.0180	0.0710	-0.1262	0.1904
주가지수	141	0.0167	0.0725	-0.1810	0.2094
국공채	141	0.0124	0.0017	0.0091	0.0161

는 펀드는 총 3개이며 국내인들이 운용한 펀드는 5개의 외국인전용 수익증권들이다. 펀드들의 구분 및 명칭은 <표 2>와 같다.

분석대상 8개 펀드들의 월간수익률에 대한 요약통계량이 다음 <표 3>에 나와있다. 평가시 시장수익률로는 종합주가지수의 월간수익률을 이용하였으며, 무위험이자율로는 한국은행이 매월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발표한 국공채 유통수익률, 1년 미만의 통화안정채권의 유통수익률 등을 사용하였다.

### 3. 실증분석결과

국내 투자신탁회사들이 설립한 외국인 전용수익증권(5개)과 외국인들이 운용하는 외국인 설립 투자 펀드(3개) 간의 투자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로써 한국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능력이 외국투자자들과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다. 투자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앞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harpe척도 Treynor척도, Jensen척도, Treynor-Mazuy 척도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상의 여러가지 척도들 가운데서 Jensen척도와 Treynor-Mazuy척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regression)을 사용해야 한다.

분석대상 펀드들의 투자성과를 Jensen모형으로 측정한 결과가 다음 <표 4>에 나와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평가척도인 Jensen 알파를 보면,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중 KGT가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저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나머지 7개 펀드들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으므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러나 비유의적이지만,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알파값이 전부 음(−)의 값을 가지므로 칸츄리펀드 보다 전반적으로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펀드의 체계적 위험수준인 베타를 보면, 모든 펀드가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가지며, 특히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베타평균이 0.7066으로 칸츄리펀드 평균 0.6592보다 높게 나타나, 펀드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 <표 5>는 절대적인 성과측정치인 Jensen척도와 동시에 시장예측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Treynor-Mazuy모형의 평가결과이다. Jensen척도의 경우를 보면, 위의 <표 4>에서 저성과를 나타냈던 KGT의 알파값이 비 유의적인 음(−)의 값으로 개선되었으며, 동시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열등한 시장예측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KGT펀드의 저성과는 잘못된 시장예측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 펀드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Jensen척도는 없으며, 시장예측능력의 경우 칸츄리펀드 중 KF가 매우 저조한 시장예측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정보의 입수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외국투자자들의 현실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나머지 칸츄리펀드들도 저조한 시장예측능력을 보이고 있다. 국내펀드들도 별다른 시장예측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lt;표 4&gt;

Jensen척도의 추정결과

펀드명	Jensen 알파	t값	유의성	베타	t값	유의성	R <sup>2</sup>	Durbin- Waston
KT	-0.0023	-0.63	0.52	0.6914	13.71	0.0001	0.5720	2.71
ST	-0.0049	-1.58	0.11	0.6482	15.45	0.0001	0.6448	2.66
KIT	-0.0014	-0.50	0.61	0.8360	20.88	0.0001	0.8567	2.11
SIT	-0.0006	-0.12	0.90	0.6497	9.89	0.0001	0.4251	2.73
KGT	-0.0047**	-2.17	0.03	0.7078	24.181	0.0001	0.8156	2.39
KF	-0.0016	-0.40	0.68	0.7771	13.86	0.0001	0.5792	1.66
KEF	0.003	0.71	0.47	0.6778	11.62	0.0001	0.5564	0.27
KAF	0.0076	0.94	0.34	0.5228	4.32	0.0001	0.2306	2.32

주 1)\*\* : 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

2) Jensen모형 :  $R_{pt} - R_{ft} = \alpha_p + \beta_p (R_{mt} - R_{ft}) + \mu_{pt}$ 

&lt;표 5&gt;

Treynor-Mazuy척도의 추정결과

펀드명	Jensen 알파	t값	유의성	베타1	t값	베타2	t값	R <sup>2</sup>	Durbin- Waston
KT	-0.0030	-0.68	0.49	0.6858	12.66	0.14	0.29	0.5691	2.68
ST	-0.0059	-1.52	0.12	0.6414	14.25	0.18	0.42	0.6425	2.62
KIT	0.0018	0.53	0.59	0.8609	20.21	-0.65	-1.63	0.7596	2.23
SIT	0.0021	0.34	0.72	0.6688	9.5	-0.50	-0.76	0.4232	2.78
KGT	-0.0019	-0.71	0.47	0.7277	23.43	-0.52*	-1.80	0.8187	2.50
KF	0.0046	0.94	0.34	0.8235	13.91	-1.22**	-2.19	0.5905	1.73
KEF	0.0078	1.5	0.13	0.7037	11.67	-0.90	-1.55	0.5622	2.28
KAF	0.0105	1.02	0.31	0.5453	4.15	-0.64	-0.45	0.2200	2.34

주 1) \* : 10%유의수준에서 유의적, \*\* : 5%유의수준에서 유의적.

2) Treynor-Mazuy모형 :  $R_{pt} = \alpha_p + \beta_p R_{mt} + \gamma_p (R_{mt})^2 + \varepsilon_{pt}$ 3) 표의 베타1은 회귀식에서  $\beta_p$ , 베타2는  $\gamma_p$  를 줄여서 나타내는 것임.

나, 분석결과를 볼 때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은 가장 성과가 저조한 KGT를 제외하면, 별다른 우월한 운용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투자성과를 측정하는 척도인 Sharpe척도, Treynor척도들의 평가결과를 다음 <표 6>에서 살펴보자. Sharpe척도, Treynor척도는 Jensen척도와는 달리 분석대상 펀드들이 서로 상이한 기간동안 운용 되었기 때문에, 펀드간 척도값을 서로 비교하여 순위를 매길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Sharpe척도, Treynor척도는 시장수익률에서 산출한 값을 평가기준으로 삼아서 펀드의 운용성과를 분석해야 한다.

우선 KT의 경우를 보면, Sharpe척도에서는 시장기준치 대비 우월한 운용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Treynor척도에서는 시장기준치 대비 열등한 성과를 달성하여 평가척도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KT가 체계적 위험과 총위험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sup>16)</sup>. Jensen척도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펀드인 KAF의 경우, Sharpe척도에서는 열등한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Treynor 척도에는 시장기준치보다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KAF의 시장예측능력이 베타2가 음(−)이므로, KAF가 달성한 고성과는 주로 주식선택활동(stock selection)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6> 투자성과 측정결과

	Jensen 척도	Sharp 척도		Treynor 척도		시장예측 능력
		펀드	시장	펀드	시장	
KT	-0.0030	0.0648	0.0096	0.0009	0.0043	0.14
ST	-0.0059	0.0916	-0.0234	-0.0044	0.004	0.18
KIT	0.0018	0.0616	0.0303	0.0043	0.0058	-0.65
SIT	0.0021	0.0743	0.04	-0.0002	0.0024	-0.50
KGT	-0.0019	0.0899	-0.0178	-0.0056	0.0023	-0.52
KF	0.0046	0.059	0.0238	0.0037	0.0055	-1.22
KEF	0.0078	-0.0067	0.0415	0.0033	0.0033	-0.90
KAF	0.0105	-0.0374	0.0067	-0.0054	-0.0054	-0.64

주 1) Sharpe척도 :  $\frac{R_p - R_f}{\sigma_p} = \frac{R_m - R_f}{\sigma_m}$

2) Treynor척도 :  $\frac{(R_p - R_f)}{\beta_p} = (R_m - R_f)$

16) Sharpe척도는 총위험, Treynor척도는 체계적 위험을 측정하며, 두 가지 위험간의 차이는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상의 투자성과 평가에서 나타난 사실들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펀드들의 투자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Jensen척도로 측정한 결과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 중 1개만이 유의적으로 저조한 투자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들도 대체로 외국인들이 운용한 칸츄리펀드 보다 낮은 투자성과를 보이고 있지 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국내 투자신탁들이 외국인 설립펀드들보다 열등한 운용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전체 펀드들 중에서 유의적으로 우월한 시장예측능력을 가진 펀드는 없으며,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 중 1개와 칸츄리펀드 중 1개가 열등한 시장예측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펀드들의 경우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대체로 칸츄리펀드 보다 우월한 시장예측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내 투자신탁의 펀드들이 외국인들 보다 우월한 시장예측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Jensen척도로 평가되는 증권선택능력은 외국인들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VI.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의 분석은 한국자본시장의 국제화정책에 관련된 투자신탁의 역할을 평가하는 것이다. 분석은 크게 네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정부의 자본시장 국제화정책, 자본시장 국제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 투자신탁이 자본시장 국제화과정에서 수행한 역할, 투자신탁의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의 운용성과 대한 평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정부는 자본시장 국제화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직접개방할 때 예상되는 통화정책이나 환율, 증권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 없이 외국인의 투자자금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투자신탁을 이용해 왔다. 그 결과 1980년대 초반의 취약한 시장발달 수준에서 벗어나 1990년대 초부터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개방된 자본시장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성공적인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이루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성공적인 금융시장의 국제화정책은 세계 경제환경의 급변에 한국경제가 기민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자본시장은 1980년대 초반에서부터 상당히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시장효율성의 증대, 시장여건의 정비, 기관투자가들의 육성, 금융기관들의 국제화 및 해외시장진출 등의 사전준비를 통해 국제화 조류에 잘 대처해왔다. 그러나 1980년 후반부터 거세게 불기 시작한 선진국의 경제개방압력은 종전의 점진적인 시장개방정책보다는 좀더 가속화된 자본시장의 개방을 요구하였다.

정부의 자본시장 개방정책, 특히 1992년 주식시장의 직접개방은 1981년 이후 점진적인 시

장개방을 통해 거시경제변수의 안정을 기하였기 때문에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초기 자본시장의 개방과정에서 정부가 이용하였던 정책은 투자신탁의 외국인전용 수익증권과 칸츄리펀드를 통한 시장개방이었다. 이는 점진적인 시장개방정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본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다른 동남아국가들과 유사한 과정을 거친 것이며, 한국만의 특징으로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기관투자가로서 성장해온 투자신탁을 통해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집중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국 주식시장의 성공적인 개방은 채권시장의 개방과 각종 금융기관들의 영업에 대한 문호개방시 급격한 개방보다는 정책적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점진적인 개방정책을 수행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한국의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정책은 거시경제변수의 혼란이나 증권시장의 급변을 초래하지 않고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995년 부터의 종합금융사의 인가남발등에 의한 급속한 금융시장개방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의한 관치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국내기업들의 연쇄부도가 발생하게되고 국가신인도가 하락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시장에서 외화가 부족되므로써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姜種萬, 「外國人 投資 影響分析」, 『證券』, 韓國證券協會, 1994. 3.
2. 姜浩相, 金秉演, 「開放化에 대응한 우리나라 銀行의 國際化戰略」, 金融研究院, 1994. 1.
3. 南尚九, 「外國人 投資限度의 再檢討와 調整方向」, 『上場協』, 韓國上場協議會, 1993.
4. 大韓投資信託, 「對外 資本自由化와 投資信託의 役割」, 『投資信託』, 1987. 8.
5. 魚尤大, 「코리아펀드設立과 證券市場의 國際化」, 『證券投資信託』, 韓國投資信託, 1981. 5.
6. \_\_\_\_\_, 「韓國證券會社의 國際化戰略」, 『證券』, 韓國證券協會, 1982.
7. 延康欽, 「證市開放前後의 投資主體別 投資行態에 관한 研究」, 『證券學會誌』, 1994.
8. 李建喜, 우리나라 機關投資家의 投資行態 와 國際比較, 『證券學會誌』, 韓國證券學會, 1993.
9. 李忠烈, 「資本流入의 短期的 效果分析」, 『金融分析: 分析과 展望』, 韓國金融研究院, 1994. 3.
10. 전철亨, 「證市開放後 證市構造變化」, 『株式』, 韓國證券去來所, 1994. 6.
11. 證券監督院, 「株式市場 開放實績 및 評價」, 『證券調查月報』, 證券監督院, 1993. 4.
12. Jensen, M. C., "Risk and the Pricing of Capital Assets and Evaluation of Investment Portfolio", Journal of Business, Vol. 42, 1969.

13. Sharpe, W. F., "Mutual Fund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ol. 39, 1966.
14. Treynor, J. L., "How to Rate Management of Investment Funds", Harvard Business Review, Vol. 43, 1965.
15. Treynor, J. L., and K. K. Mazuy, "Can Mutual Funds Outguess the Market?", Harvard Business Review, Vol. 44, 1966.

## A Study on the Role of Investment Trusts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Hwang, Nam-Il\*  
Kim, You-Sang\*\*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ole of security investment trusts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vestment trusts were established in the 1970s when the capital market was not yet stabilized and considered as the medium of transferring small investments into a major source of capital. Moreover, as investment trusts have over fifty percent of the listed bonds in Korea, they have contributed a great deal in establishing a bond market as a major source of capital for firms.

Second, to evaluate investment trusts' role in the secondary market,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stabilizing policy and the trading behavior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been analyzed. Although, the direct market interventions of the governments did not have great influence, they did slightly reverse the downward trend of stock prices.

Third, to assess the role of investment trusts in the process of the financial market liberalization, opening policies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and the experiences of the other major countries were reviewed. Also the performance of investment trusts, exclusively for foreign investors, and foreigners' country funds have been compared. The result shows that no significant difference exists in the performance of the two kinds of fund. The gradual opening policies of the Korean financial market through investment trusts seemed to be successful.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pport the followings.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institutional investors to make the bond market active. As many problems are found in the government's direct intervention, alternative government policies are demanded.

Key-Words : financial market liberalization, investment trust

\* Professor of Dankook University, Ph.D.

\*\* Chairman of Korea Investment Trust Companies Association, Ph. D.

# 일본의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의 역사적 고찰\*

##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변천을 중심으로–

A Historical Approach to the Regulation for  
Insurance Industry in Japan

李 洪 茂\*\*

### 目 次

- |                   |                   |
|-------------------|-------------------|
| I. 서 론            | IV. 빅뱅과 업무영역의 재편성 |
| II. 보험사업의 전업주의    | V. 결 론            |
| III. 업무영역의 충복과 조정 |                   |

## I. 서 론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은행·증권·보험을 3대축으로 업무영역이 엄격히 구분되어 오고 있으며, 보험제도는 일본<sup>1)</sup>의 영향을 받아 골격을 형성해 왔다.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 말의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완화부터이며, 이는 최근의 금융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업종간의 업무영역 구분의 철폐가 주장되기도 하며,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이 되는 등 금융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다. 또, 1997년에는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인해서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면서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경제성장과 함께 금융시장의 성장시기가 한국보다는 빨랐던 일본에서는 금융시장에서의 업종간 경쟁이 전개되고, 그 결과 우리보다 침애한 업종간 대립이 있어 왔다. 더욱이,

\*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조교수(상학박사)

1)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합계로 1993년도 세계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비율은 미국이 31.31%로 제1위 일본이 30.36%로, 제2위 독일이 6.44%로, 제3위 영국 6.15%로, 제4위 프랑스 5.27%로, 5위 한국이 2.12%로서, 제6위를 기록하고 있다(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Fact Book 1996—Property Casualty Insurance Facts, p. 12 참조).

최근에는 일본판 박병으로 금융업종간 업무영역이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과 금융제도의 골격이 흡사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일본의 각종 논쟁이 매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근년의 급속한 국제화와 규제철폐에 의해 일본의 보험회사와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동일시장에서 경쟁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일본의 보험회사 업무영역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업무영역의 제한은 곧 금융서비스의 제한이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경쟁상대국보다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것은 국제경쟁력 저하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보험회사와 동일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서는 일본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을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일본 보험회사 업무영역의 변천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한국의 보험회사 업무영역에 대한 논쟁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보험사업의 전업주의

보험회사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손보를 분리한 전업주의와 실체적 감독주의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것만으로는 보험회사의 도산을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수를 통제해서 각사가 일정수준 이상의 시장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하 그 내용을 고찰한다.

### 1. 생손보의 분리

1879년에 유한책임 동경해상보험회사(현재의 東京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의 전신회사의 하나)가 「적하보험」을, 또 1881년에는 주식회사조직의 메이지(明治)생명이 「생명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일본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의 근대적 민영보험사업의 시작이다. 이 두 회사는 모두 동경부지사(東京府知事)의 인가를 받아 설립 된 것으로 당시의 보험회사는 면허제가 아니었다.

1890년에 제정된 상법에서는 경영과 계산을 분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생명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의 겸업을 인정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상황하에서 당시는 생명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을 겸업하는 보험회사도 있었다<sup>3)</sup>. 당시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불 등을 위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채 당기순이익을 계상하여 고율의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 결과

보험사업은 고수익 사업으로 비추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립기준이 관대한 합자회사조직에 의한 유사보험회사가 300개 가까이 설립되는 등 많은 보험회사가 설립되어, 보험료할인에 의한 치열한 요율경쟁이 전개되고 도산하는 회사가 속출하게 되었다. 보험회사는 예측원가에 근거해서 산출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시에 미리 받아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시에는 실제적인 지출이 없어 보험료할인 경쟁이 유발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보험회사의 도산에 대응하기 위해 1899년에는 새로운 상법이 시행되었다. 이 1899년 상법에 의해서 보험업의 타업종과의 겸업이 금지되고, 생손보의 겸업도 처음으로 금지되어 생손보가 분리되었다. 생손보를 분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sup>4)</sup>. 첫째는 보험기간이 장기이고 저축적 자금인 생명보험계약자를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손해보험의 거대위험에 의한 손실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sup>5)</sup>. 즉,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을 노후대책이나 유가족 대책으로 가입해 둔 생명보험의 비축자금으로 보전하고 이로 인해 도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생명보험계약은 영업직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손해보험계약은 대리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등 경영수법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생명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각 사업에 대한 감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1900년에는 보험업법이 제정되고 상호회사와 주식회사로 한정한 보험사업의 면허주의, 기초서류<sup>6)</sup>인가에 의한 감독방식, 겸업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한 대장대신(大藏大臣)이 언제라도 보험회사의 업무 또는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감사할 수 있게 되어, 보험사업의 실체에 대한 계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체적 감독주의」가 채용되었다.

## 2. 생손보 20사체제

1923년 9월에 일어난 관동대지진의 영향으로<sup>7)</sup> 다시금 손해보험사들의 보험요율 인하경쟁이 격화되어, 약소회사의 도산이 속출하게 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1939년에 개정되었다. 또, 1942년에는 전쟁체제의 일환으로써 보험회사의 정리·통합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39년에 48사 있던 손해보험회사는 전쟁

2) 石田 滿, 「保険業法の研究 I」, (文眞堂, 1989年), pp. 22~26.

3) 「日本保険業史・上巻」, (保険研究所, 1980年), pp. 172~175.

4) 竹内昭夫, 「保険業法の在り方(上巻)」, (有斐閣, 1992年), pp. 84~85.

5) 李洪茂, 「保険事業と規制緩和」, (일본, 成文堂, 1996年), pp. 64~65.

6) 보험회사 경영의 근간에 관계되는 5종류의 서류로, 정관,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재산이용방법서가 있다(보험업법 제1조2항).

7) 鈴木辰紀, 「火災保険契約論」, (成文堂, 1979年), pp. 10~12.

이 끝난 1945년에는 16사로 줄었다. 그 후, 한국의 6·25전쟁(1950년 6월~1953년 7월)으로 전쟁물자 수요가 급증한 일본의 호경기를 배경으로 하여 손해보험회사 4사가 신설되어 손해보험업계는 20개사체제가 성립하게 된다. 손해보험의 20개사체제<sup>8)</sup>는, 오끼나와<sup>9)</sup> 본토복귀와 함께 1972년에 혼자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대동화재(大同火災)보험주식회사가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제외하면, 1979년에 외국보험회사로 설립된 올스테이트 자동차·화재보험주식회사가 1982년에 내국손해보험회사로 영업인가를 받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1942년에는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회사의 정리·통합이 이루어져 1941년에 27개사였던 생명보험회사의 수가 1945년에는 20개사로 감소되었다. 또,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의 생명보험회사의 수지상황은 27억엔을 넘는 재외자산의 상실과 제2차세계대전 수행중에 정부가 약속한 약1,100억엔에 달하는 전시보상금의 지급을 중지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는 사실상의 파산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생명보험회사의 사실상의 파산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보험 각사는 제2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신규계약은 이 신설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보험사업을 점진적으로 신설회사로 이전하였다<sup>10)</sup>. 당시 생명보험회사는 3개사 이외는 모두가 주식회사였지만, 점령군총사령부(GHQ)의 요청과 대자본이 사회주의 세력 등에 의해서 공격대상이 되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제2회사를 신설한 14개사 중 13개사가 자본금을 가지지 않는 상호회사로 조직을 변경했다. 그 결과 생명보험회사는 상호회사 16개사, 주식회사 4개사의 상호회사 중심의 20개사체제가 확립되고, 1976년에 세존생명보험주식회사(西武·올스테이트가 1990년에 사명을 변경함)가 외국자본으로는 처음으로 보험업법 제1조에 근거한 내국생명보험회사로써 영업을 개시하게 되기까지의 약30년간 20개사체제는 계속되었다.

### III. 업무영역의 증복과 조정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사업은 보험업법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한편, 각각 다른 취자의 법률에 근거하고 보험회사 이외의 기관이 영위하는 유사보험제도가 발전해 오고 있었다. 그

8) 鈴木辰紀, 「保險の現代的課題」, (成文堂, 1983年), pp. 47~72.

9) 오끼나와(沖繩)는 제2차 세계대전시 유일하게 미군과 지상전이 벌어져 극심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던 일본 최남서에 위치하는 섬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미군관리 하의 류큐(琉球) 정부가 통치하고 있던 오끼나와에는 4개사의 손해보험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1963년에는 통·폐합으로 2사로 줄고 1972년에 일본정부에 반환되기 전년인 1971년에는 1사로 된다.

10) 保険研究所, 「日本保險業史(上)」, 1980年, pp. 57~62.

결과 보험회사와 유사보험사업과의 업무영역에 중복이 생겨나게 되었다.

### 1. 생손보간의 업무영역

보험업법(제7조)은,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생명보험계약(제673조)과 손해보험계약(제629조)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만, 보험업법에서는 양사업에 대한 정의가 없다. 따라서, 제3분야보험으로 불리우는 상해·질병보험은 어느 쪽의 사업에 속하는가 하는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에 관한 논쟁이 1950년대 중반에 일어났다. 생명보험업계는 생명보험이라고 주장하고,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보험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하여, 1960년 12월에 대장성은 「상해보험은 생명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종목과 조합해서 판매하고 단독상품으로서는 판매하지 못하나, 손해보험회사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질병보험은 원칙적으로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다.」라는 판정을 내렸다.

1996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보험업법(1939년제정)에서는 상해·질병·개호보험에 대해서는 정액성이나 손해전보성의 구분에 상관없이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 모두가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생손보 상호간에 자회사방식에 의한 상호진입을 허용했다.

자회사를 별도법인으로 받아들이는 한에 있어서는, 생손보의 겸업금지를 전폐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3분야 보험에 있어서 본체의 겸업을 인정한 것은, 전술한 대장성의 일시적 미봉책이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 자회사방식에 의한 생손보 상호진입의 허용은 여전히 생손보분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크로스마케팅(cross-marketing; 자회사가 모회사의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인 생손보 겸업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회사방식에 의한 생손보의 상호진입은 각사가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해서, 도산하는 보험회사가 없도록 하는 적절한 수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자회사방식에 의한 생손보의 겸업을 인정함으로써 1996년에는 손해보험회사에 의한 생명보험회사가 11개사, 생명보험회사에 의한 손해보험회사 6개사가 설립되었다. 그 결과 1996년 12월 현재, 일본에서 손해보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는 내국손해보험회사 33개사(주식회사 31개사, 상호회사 2개사), 외국손해보험회사<sup>11)</sup> 30사로써 합계 63개사가 되었다. 또한, 일본에서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내국보험회사가 40개사, 외국보험회사 4개사, 합계 44개사이다.

11)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본에서 지점 또는 대리점으로 사업면허를 받은 보험자를 일반적으로 「외국보험회사」라고 칭하고 있다.

## 2. 타업종과의 업무영역

### 1) 공제사업 및 간이보험

공제(共濟)와 간이보험(簡易保險)은 보험업법과는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해온 제도이다. 2차세계대전후 GHQ에 의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추진되어 각종 협동조합법이 성립되었다. 이 법률들을 근거로 한 협동조합보험의 공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잇달아 생겨났다. 공제사업<sup>12)</sup>을 보험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보험사업과 함께 보험업법에 의한 규제를 적용하려는 주장 또는 시도는 지금까지 몇차례나 있어 왔다. 그러나, 공제사업이 일정한 근거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또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있어 보험업법하에 이들을 일원화시키려는 시도는 저항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공제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1952년부터 생명공제사업을 개시하였다. 당초는 공제의 이용자격자를 조합원에 한정하고 있었지만, 이용자격을 일반대중으로 확대하면서 보험회사와 경합하게 되었다. 공제사업은 장기공제, 연금공제, 단기공제로 나누어져, 그 모두가 생명공제 뿐만이 아닌 손해공제, 저축 등의 폭넓은 종목을 취급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이 인수하는 이들 공제를 총괄하는 것이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全國共濟農業協同組合聯合會)」(이하 '전공련'으로 칭함)이다.

간이보험(한국의 체신보험에 해당)은 1916년에 건강진단을 생명보험의 가입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진단)소액보험을 취급하는 국영독점사업으로써, 간이생명보험사업법에 근거하여 개시되었다. 당시의 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가 연납인 유진단계약을 중심으로 주로 고액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자층의 생활조건 개선과 사회불안 완화라는 사회정책적인 필요성때문에 생명보험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이생명보험의 탄생했다. 그러나, 1945년 전후에는 생명보험회사도 무진단의 소액보험과 월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후 간이생명보험은 보험금 한도액을 높여 상품의 다양화를 꾀해 오고 있다<sup>13)</sup>.

12) 공제사업에는 농업협동조합공제(농업협동조합법, 농림수산성), 수산업협동조합공제(수산업협동조합법, 농림수산성), 중소기업등협동조합공제(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통산산업성), 소비생활협동조합공제(소비생활협동조합법, 후생성), 산림조합공제(산림조합법, 농림수산성), 교통재해공제(지방자치법, 자치성), 노동조합공제(노동조합법, 노동성) 등이 있다(괄호안은 근거법, 감독관청).

13) 1994년 10월 현재로 정기연금을 포함하는 11종류의 간이보험을 취급하고 있다(『みなさまの簡易保險』, (郵政省簡易保險局, 1994年), p. 47 참조).

1996년도의 보유계약고를 기준으로 생명보험과 간이보험, 전공련의 생명공제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lt;표 1&gt;

생명보험, 간이보험, 전공련의 점유율

(단위 : 만건, 억엔, 괄호 안은 %)

생명보험(개인)			간이보험		전 공 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보 험	13,003 (55.4)	14,956,832 (77.0)	8,432 (35.9)	2,022,641 (10.4)	2,048 (8.7)	2,447,017 (12.6)
연 금	1,471 (67.2)	871,023 (97.2)	563 (25.7)	16,341 (1.8)	156 (7.1)	8,491 (1.0)

자료 : 日本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1997年版 生命保険 Fact Book」, 1997년 9월,  
p. 84, 103, 105에서 발췌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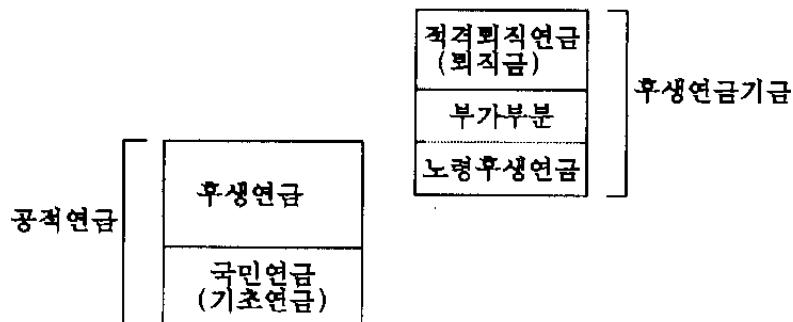
## 2) 신탁은행

보험회사와 은행은 연금을 중심으로 업무영역이 중복되게 된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2층 구조로 공적연금에 사적연금을 가산하는 형식이다. 공적연금은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급여생활자가 가입하는 후생연금이 있다. 이러한 후생연금의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으로 부담하며 국민연금에 대해서 일정액을 부담한다. 또, 자영업자 등은 국민연금에만 가입하며 일정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나 실제로는 급여생활자의 후생연금의 기초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으로도 불리워 진다. 여기에 퇴직금을 연금화한 적격퇴직연금제도가 별도로 존재한다.

1965년에는 후생연금보험법의 개정에 의해 국가에 의한 후생연금과, 민간에 의한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금제도와의 조정이 이루어 졌다. 그 결과 생겨난 것이 후생연금기금인데, 이는 일정규모(단독인 경우는 500명, 공동인 경우는 3,000명) 이상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후생연금기금」이라는 특별법인을 설립해서 생명보험회사나 신탁은행에 그 운용을 위탁하는 제도이다. 그 내용은 후생연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노령후생연금에 기업독자적인 추가분을 더하고 또 적격퇴직연금 등의 퇴직금상당액을 가산한 기업연금제도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연금제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연금<sup>14)</sup> 시장에서는 생명보험회사와 신탁은행, 전공련이 경

14) 기업연금은 종업원의 퇴직금을 연금화한 것으로, 보험료에 대한 세법상 우대조치가 인정되고 있는 「적격퇴직연금」, 세법상 적격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비적격퇴직연금」, 「후생연금기금」 등이 있다.



〈그림 1〉 일본의 연금제도

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할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62년에 도입한 적격퇴직연금이다. 적격퇴직연금의 기관별 계약상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적격퇴직연금의 계약상황(1996년도)

(단위 : %)

생명보험계약		신탁계약		전공련계약	
건수	자산	건수	자산	건수	자산
89.2	58.3	9.7	40.8	1.1	0.9

자료 : 日本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1997年版 生命保険 Fact Book」, 1997년 9월, p. 91에서 발췌하여 작성(총건수 90,243건, 총자산액 17조9억엔).

후생연금기금의 계약상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후생연금기금계약 비율(1996년도)

(단위 : 건, 억엔, 팔호 %)

생명보험계약		신탁계약	
건수	자산	건수	자산
512(27.2)	156,985(34.9)	1,372(72.8)	292,603(65.1)

자료 : 日本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1997年版 生命保険 Fact Book」, 1997년 9월, p. 91에서 발췌하여 작성.

이상과 같이 적격퇴직연금분야에서는 생명보험회사와 신탁은행이 경합하고 있으며 후생연금기금은 신탁은행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1992년 6월에는 손해보험업계가 연금지급적립상해보험을 판매함으로써 개인연금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 3) 기타금융기관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후보장과 금리선호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과 증권업계의 연금시장에의 참여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자유화 문제가 제기되었다. 개인연금형 상품으로는 1980년에 은행, 신탁은행, 증권회사의 각 금융기관이 모두 참여했고 이듬해, 우정성(우리나라의 체신부에 해당)도 종래의 우편연금을 개조한 신우편연금을 발매했다. 또한 후생연금기금은 1987년 5월부터 자산운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계열, 증권계열, 외자계열의 계산회사가 자산운용이외의 업무에 참여했고, 1990년 4월부터는 투자고문회사가 자산운용에 참여했다. 그 결과 후생연금기금분야에서는 생명보험회사, 신탁은행, 투자고문회사간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또, 최근에는 자산보유량이 많은 생명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자산운용면에서의 국제화를 표방하게 되었다. 생명보험사업은 원래 극히 지역적인 사업이다. 생명보험사업은 그 지역(국가)의 사망률 또는 생존율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영업직원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관계에 입각한 모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업은 국내에서 소액자금을 흡수하면서 자산운용에서는 글로벌운용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후 경제생활의 안정을 피하기 위해 비교적 장기에 걸친 저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도 이러한 상황하에서 사업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저축성상품인 적립보험의 개발·판매에 노력하고 있다. 또, 유리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중요시 되어 자산운용분야에서는 금융업종을 불문하고 상호간 경쟁조건을 똑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96년 4월 중·참·양의원에서 신보험법에서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구체적으로 규제해 왔던 기초서류인 「재산이용방법서」가 폐지 되었다. 또, 보험·은행·증권 간의 자회사에 의한 상호참여가 조기에 가능하도록 노력한다고 부대결의 되고 있다.

## IV. 빅뱅과 업무영역의 재편성

최근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판 빅뱅은 은행·증권·보험의 업무영역 구분을 사실상 철폐해서 금융기관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업무영역의 철폐를 위한 전제조건이 「금융지주회사」의 해금이다. 이하, 그 내용을 고찰한다.

## 1. 일본판 빅뱅

하시모토(橋本) 일본수상은 1996년 11월에 빅뱅 구상을 발표했다<sup>15)</sup>. 이 「일본판 빅뱅」의 내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개혁의 3대 원칙은 「Free · Fair · Global」이다. 「Free」는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동경시장을 「시장원리」가 작용하는 자유시장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Fair」는 디스클로우저(disclosure :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Global」은 자금이 국경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전자(電子)상거래」와 파생금융상품의 눈부신 발달에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적인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0여년전부터 「금융자유화」의 목소리만 높았을 뿐 종론찬성 각론반대로 실현된 것이 별로 없었다. 이에 대한 돌파구를 외국환거래의 자유화에서 찾기로 한 것이다. 즉, 국내에서의 외국환거래를 완전히 자유화할 뿐만이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예치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환거래를 자유화하면 10년만기 국채이자율이 1%대(1998년 5월 14일 현재 년 1.3%)인 초저금리의 일본보다도 훨씬 높은 금리와 낮은 거래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되는 해외로 일본의 금융자산이 봇물터진 듯이 유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이렇게 되면 업계의 이익을 위해 온갖 주장을 하면서 꼼짝도 하지 않던 은행, 증권, 보험업계도 고객을 일본 국내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경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일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금융기관과 실질적인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금융기관은 해당업계의 특수상황을 이유로 개혁을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고 이 틈에 금융제도의 대개혁을 실시하면 금융업계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였다. 따라서, 1998년 4월 1일부터 실시된 외국환거래의 자유화<sup>16)</sup>는 일본판 빅뱅의 실질적인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국환거래의 자유화는 해외자본의 일본 국내로의 유입과 일본자본의 해외로의 유출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나, 일본금융업계가 두려워하는 것은 초저금리 상태에서 일본의 금융자산이 급격하게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다. 일본 금융자산의 급격한 해외유출이 일어날 경우, 거품경제붕괴로 인한 부실채권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일본 금융기관의 채산성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업적이 나빠지면 자금사정이 악

15) 미스터엔이라고 불리우는 사카키바라 대장성 국제금융국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하시모토수상이 결단했다고 전해진다(Forbes, August 1977, p. 53).

16) 외국환은행제도가 폐지되어 슈퍼마켓에서도 환전이 가능하게 되고 생명보험회사도 스스로가 외화를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은행을 통한 환전이 필요없게 되었다.

〈표 4〉 일본판 빅뱅의 요지

Free	* 은행·증권·보험의 상호진입 * 상품규제의 철폐, 취급업무 범위확대 * 각종수수료의 자유화 * 외국환관리의 철폐 * 자산운용업무규제의 개정
Fair	* 충분한 정보제공과 규칙의 명확화 * 규칙위반에 대한 처분의 적극적 활동
Global	* 파생금융상품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 * 회계제도의 국제표준화 * 국제적인 감독협력체계의 확립(G7서미트·재무부장관회의 등에서 확인)

▽

은행	*금융지주회사의 해금 ◎ *외국환거래완전자유화 ◎ *채권의 유동화에 관한 법제정 ◎ *단기금융시장의 정비 ◎ *논뱅크(여신전문회사 등)에 의한 사채발행 ◎ *투자신탁의 창구판매 ◎ *은행, 증권, 신탁회사의 업무완전자유화 ○ *전문금융기관제도의 철폐 (보통은행에 사채발행해금) *전자화폐에 관한 법제정 △ *보험상품의 은행 창구판매 △
	*증권파생상품의 전면해금 ◎ *증권종합구좌의 해금 ◎ *지주회사의 해금 ◎ *투신의 이편성향상 ◎ *유가증권의 법위의 재검토 ◎ *거래소집중주의의 재검토 ◎ *점두시장의 유통개선 ◎ *미상장·미등록주의 취급해금 ◎ *증권업자의 동록제이행 ◎ *수수료의 완전자유화 ○
	*지주회사의 해금 ◎ *준보요율의 자유화 ◎ *시가회계 도입 ○ *보험상품의 신고법위의 확대 ○ *타금융업종과의 상호진입촉진 △

◎ 1997년도 실시, ◉ 1998년도 실시, ○ 1999년도 실시, △ 2001년까지 실시

화되어 부도가 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금융기관 상호간에 무담보로 당좌자금을 서로 유통하고 있고, 당장은 수중에 예금 등의 현금이 있기 때문에 도산의 시기가 늦춰진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이 도산했을 때의 손실액은 일반기업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거래사업회사의 연쇄도산을 초래하는 등 그 충격도 사업회사의 부도시와는 비교가 안된다. 이러한 충격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청이 부실금융기관을 조기에 발견해서 해당금융기관에 대해서 업무정지명령을 내리는 수 밖에 없다. 이를 제도화한 것이 조기시정조치<sup>17)</sup>이다.

조기시정조치의 기준은 총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나,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은폐해서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관청을 신설한다. 실제로 금융기관이 도산한 후에 확인해 보면 대장성에 보고했던 수십배의 부실채권이 드러나곤 했다. 이러한 부실채권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이 「금융감독청」이며, 기존의 대장성 금융검사부의 150명, 중권국과 은행국의 110명, 증권거래감시위원회 사무국 91명 총 350명을 중심으로 1998년 7월에 발족된다.

각 금융기관은 1998년 4월부터 실시된 조기시정조치의 기준에 따라 부실채권 등의 자산내용을 정확히 자기사정(自己査定)해서 금융감독청이 그 결과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자기자본비율이 기준(국제적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8%, 국내활동만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4%)미달인 경우는 즉시 경영개선명령을 발동한다. 기준의 절반(4%, 2%)미만인 경우는 업무축소명령을 발동하고 자본잠식인 경우는 업무정지명령을 내린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처리를 자연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일본에서는 과격한 금융기관의 정리·통합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는 아직도 보험회사 정리·통합의 전제조건인 보험계약자보호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1996년 4월에 개정된 보험업법에 의해서 창설된 「계약자보호기금」은 임의가입으로 회원사가 경영파탄에 빠진 보험회사에게 자금을 원조하는 형태였으나, 후술하는 낫산생명(日產生命)의 도산처리에 기금이 바닥나고 말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보험회사가 강제 가입하고 일정액을 부담해서 개인보험에 한정한 일정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지불을 보증하는 「지불보증제도」를 1998년 12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자보호제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보험회사를 도산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불보증제도가 도입되는 1998년 12월 1일부터는 경영이 부실한 보험회사를 강제도산시킬 준비가 완료

17) 조기시정조치는 미국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금융기관의 도산이 급증해서 예금보험기금이 고갈된 것을 배경으로 예금보험기금 손실을 억제하기 위해서 1991년의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FDICIA)에 의해 처음 도입된 것이다.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불여력(Solvency Margin)을 기준으로 한 조기시정조치의 생명보험판이 1998년 결산(1999년 3월말)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보험회사도 지불여력 기준치에 의해 3단계로 분류되고 제1단계는 경영개선계획의 작성 및 실시명령, 제2단계는 증자계획의 작성이나 종자산의 감축 등 개별조치명령, 제3단계는 업무정지명령의 발동이 예상되고 있다. 「지불여력기준치」는 지불여력의 합계를 위험의 총계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text{지불여력기준치} = \frac{\text{지불여력(Solvency Margin)}}{\text{위험(Risk)의 총계}}$$

분자(分子)부분인 지불여력은 자본금(기금, 자본금, 법정준비금, 임의적립금 등), 가격변동준비금, 위험준비금, 대손충당금,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미할당분, 주식 미실현이익의 90%, 토지 미실현이익의 80%,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의 합계이다.

분모(分母)부분인 위험의 총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위험의 총계} = \frac{\sqrt{(R1)^2 + (R2+R3)^2 + R4}}{2}$$

(R1 : 보험Risk, R2 : 예정이율Risk, R3 : 자산운용Risk, R4 : 경영관리Risk)

보험Risk(R1)는 사망·생존 등의 위험별로 보험금액의 일정비율을, 예정이율Risk(R2)는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을, 자산운용Risk(R3)는 주식·부동산 등의 가격변동위험에 대해서 장부가액의 일정비율과 대출금 등의 신용위험에 대해서 대출잔액의 일정비율을 계량화한 수치이다.

지불여력기준치가 클수록 지불능력이 큰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불여력기준치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분자부분인 지불여력을 크게 하고, 분모부분인 위험(Risk)의 총계를 작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불여력기준치에 대한 대책은 자본 등을 늘리고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일본에는 생명보험회사 3분의 2 이상이 자본금이 없는 상호회사라는 특수한 사정<sup>18)</sup>이 있다. 상호회사에도 주식회사의 자본금격인 「기금」이 있다고는 하나 상호회사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기금 거출자에게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대형생명보험회사의 경우도 기금은 수백만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상호회사는 이익금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환원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이익금의 99% 이상을 계약자에게 환원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상호회사는 지불여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상호회사를 증자가 가능한 주식회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

18) 李洪茂, 「保險事業と規制緩和」, (일본, 成文堂, 1996年), pp. 6~7.

으나, 실무상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준하는 제도(후순위채권 등)를 상호회사에도 인정하는 것이 긴급과제가 되고 있다. 또, 분자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계약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험자산을 줄이는 것에 집약된다. 즉, 자산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주식, 금 등을 줄이고 부실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단기간에 지불여력기준치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움직임도 예상된다. 실제로 경영부진에 시달려 오던 도호생명(東邦生命)은 GE캐피탈과 합작으로 1998년 4월에 새로운 보험회사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신규계약은 새로운 합작회사가 인수하고 도호생명은 기존계약 처리후에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제2차대전 후 패전으로 부실화된 생명보험회사를 정리한 것과 흡사하다<sup>19)</sup>. 이와 같은 외국자본의 참여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판 빅뱅<sup>20)</sup>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환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본의 금융자산을 해외에 개방한다. 호송선단방식으로 유지되어 온 일본금융기관은 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과 고객(금융자산) 쟁탈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업무영역이 사실상 철폐된다. 이와 같이 경쟁이 심화되면 금융기관의 도산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금융기관의 도산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량채권을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한 금융감독청을 신설해서 부실금융기관을 조기에 발견하고, 셋째, 조기시정조치로 재건불능의 금융기관을 해체하는 것이다. 또, 넷째, 금융기관의 정리·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순수금융지주회사를 해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일본판 빅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융업종을 규제하는 각종법률(증권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24개법률)을 일괄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시스템 개혁법(안)」이 1998년 3월 13일에 국회에 상정되었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기다려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 2. 금융지주회사의 해금

지주회사에는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의 두 종류가 있다. 사업지주회사란, 스스로도 사업경영을 하면서 산하에 많은 자회사를 두고 있는 지주회사이며, 현재 대기업의 그룹 경영은 대부분이 사업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서 사업활동은 모두 자회사에 맡기고 자신은 총본사로서 그룹전체의 경영전략체계와 종합적 관리운영에 전념하는 것이 순수지주회사의 전형적인 형태이다<sup>21)</sup>. 2차대전전의 대재벌<sup>22)</sup>의 총본사가 이러한 순수지주회

19) 이홍무 외, 「保險論」, (일본 成文堂, 1997年), pp. 95~96.

20) 이홍무 역, 「금융빅뱅」, (두남, 199년 6월).

사 형태였으며, 이러한 순수지주회사는 2차대전 이후 50년간 줄곧 금지되어 왔다. 순수지주회사의 금지를 규정한 독점금지법<sup>21)</sup> 제9조는 재벌의 부활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쟁포기를 선언한 헌법 제9조와 더불어 2차대전후를 상징하는 성역이었다. 이와 같은 순수지주회사가 독점금지법에 의해서 금지된 것은 2차대전후의 연합군에 의한 재벌해체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재벌의 부활을 영원히 방지해서 경영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이 1997년 6월에 성립한 개정독점금지법(1998년 1월 1일 시행)에 의해서 해금되었다. 순수지주회사 해금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사화(分社化)와 정리·통합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순수지주회사 해금으로 인해서 2차대전전과 같은 형태의 재벌이 부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도 행해졌다. 그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의 지주회사설립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사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sup>22)</sup>. 첫째는 규모가 거대하고 동시에 넓은 분야에서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규모가 거대하다고 하는 것은 총자산 15조엔을 넘는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둘째는 대규모 금융회사와 일반사업회사를 동시에 지주회사 산하에 두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대규모 금융회사란 시중은행을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이 중심이 되어 일반사업회사를 포함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셋째는 상호관련성을 가지는 사업분야에서 각기 유력한 사업자를 가짐으로 해서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자동차제조업체가 타이어, 유리, 젤강업체와 함께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지주회사의 해금은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보험사업을 고찰대상으로 하는 한 금융지주회사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금융지주회사를 해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이다. 해외금융기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각 금융회사와 보험회사가 업무를 제휴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은행·증권·보험을 복합한 종합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산하의 은행, 신탁, 증권, 파생금융상품전문회사 등의 자회사를 상호간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21) 순수지주회사의 전형적인 예가 2차대전전의 미쓰이(三井)·미쓰비시(三菱)·스미토모(住友) 등에 의한 거대 콘체른의 총본사이다. 이를 재벌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족 또는 혈족이 순수지주회사(본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가족지배였고, 순수지주회사의 주식은 상장되지 않았다.

22) 구재벌에는 미쓰이(三井)·미쓰비시(三菱)·스미토모(住友)의 3곳외에 야스다(安田)(安田銀行·東洋汽船·帝國鐵道·沖電氣 등), 닛산(日產)(日立製作所·日產自動車·日本冷藏), 네즈(根津)(東武鐵道·日清紡·日本精工), 아사노(淺野)(淺野シメント·日本鋼管) 등 많은 수가 있었다(회사명은 당시).

23) 정식 명칭은「私の獨占禁止およ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이다.

24) 1997년 2월에 일본공정거래위원회가 「事業支配力が過度に集中することとなる持ち株会社の考え方(骨子)」를 발표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도 EC(현재의 EU)지침에 근거한 1982년 보험회사법에 보험회사는 생손보험업과 타업종의 겸업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나 자회사를 통한 보험회사의 타업종에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증권회사나 은행의 보험판매도 가능하다<sup>25)</sup>. 독일에서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에서 조차도 은행에 한해서 인정해 온 은행지주회사를 금융서비스지주회사로 확대해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sup>26)</sup>.

셋째는 금융 업종별로 자회사를 설립해서 상호진입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상호진입이 각종 업법의 규제로 인해서 사실상 곤란한 경우는 금융지주회사의 산하에 각 업종별 자회사를 설립해서 진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더욱이, 지주회사 산하의 금융회사는 독립된 자회사이므로 자회사의 도산위험은 당해회사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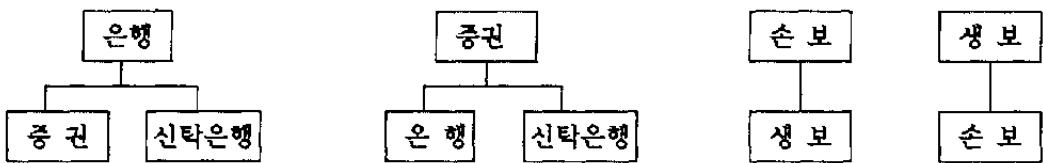
넷째는 분사화와 통합을 통한 금융산업의 재편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하나의 금융기관을 부문별로 별도회사로 독립시켜서 비효율적인 부문(회사)만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서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합병에서 일어나기 쉬운 합병사와 피합병사간의 마찰을 피하면서 합병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파생 금융상품회사를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설립하는 경우, 은행은 연공서열로 하고 파생금융상품회사는 농력급으로 하는 식으로 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를 각기 다른 별도의 급여체계로 운영함으로서 불필요한 노사분규를 회피할 수 있다. 또, 합병후의 회사내 파벌 등에 의한 불협화음을 방지할 수 있다. 즉, 합병에 의해 거대한 조직이 되기보다도 노동조건을 바꾸지 않고 금융지주회사의 산하에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해금으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는 지주회사를 만들어 그 산하에 각 금융업종의 회사를 거느리고 임원을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자본과 영업방침은 산하 각 자회사가 공통되나 각 자사간에는 모자(母子)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주회사 산하에 들어가는 저항도 적다. 이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해금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이루어 지며, 2001년 3월 31일 까지는 완전히 해금된다.

이상과 같이 금융지주회사의 실립이 완전히 해금되고 타금융업종의 상품판매가 허용되면 적어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금융업종간의 업종구분이 철폐되는 것이다.

25) 牛越博文, 「英國生保販賣」, 『生命保險經營』, 第382卷, (生命保險經營學會, 1997年 7月), pp. 1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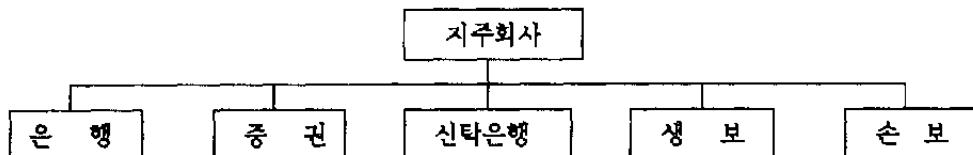
26) 武藤泰明, 「持ち株會社のすべて」, (東洋經濟新聞社, 1997年 7月), pp. 63~75.



〈그림 2〉 기존의 업종별 자회사방식



〈그림 3〉 제1단계 해금 후의 금융지주회사



〈그림 4〉 제2단계 해금 후의 금융지주회사

### 3.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일본판 빅뱅은 은행·증권·보험의 업무영역 구분을 철폐해서 금융기관이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업무영역의 철폐를 위한 전제조건이 「금융지주회사」의 해금이다. 이점에 관해서 생명보험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은행에 의한 보험판매이다. 은행의 보험판매는 부가보험료를 절감해서 영업보험료를 인하시키고, 원스톱쇼핑(one stop shopping)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명보험계약의 모집은 영업직원 또는 대리점을 통해 이루어 지나, 90% 정도는 영업직원을 통한 모집<sup>27)</sup>이다. 생명보험회사가 방문판매를 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은행은 고객이 스스로 찾아 오는 곳이며 거대한 지점망을 갖춘 은행에서 일시에 보험을 판매한다는 것은 생명보험업계로서는 충격일 수 밖에 없다. 은행의 보험판매가 해금되면, 생명보험회사 각사가 2차대전 후 막대한 경비를 지불해서 구축해 온 영업조직이 붕괴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업계는 은행 등에 의한 보험판매는 보험계약자보호, 경쟁조건 공평성 확보라

27) 「生命保險實務講座・マーケティング I」, (有斐閣, 1991年), p. 269.

는 관점에서 폐단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변액보험의 판매에 관해서 소송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나, 낫산생명(日產生命)<sup>28)</sup>의 파산원인이 은행의 실질적인 보험판매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거품경제시대에 적당한 대출처를 찾지 못했던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당시로서는 대출금리보다 수익율이 높았던 변액보험에의 가입을 권유했던 것이 주가가 폭락하자 소송이 빈발하게 된 원인이고, 비슷한 방법으로 낫산생명이 유력한 지방은행 등과 제휴해서 고수익율의 일시지급 개인연금을 중점적으로 판매한 것이 낫산생명의 파산 원인이라는 것이다.

은행의 보험판매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대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은행은 결제기능을 통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은행과 보험회사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거래은행제도를 통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막대한 것이다. 또, 개인에 대해서도 급여입금, 공공요금의 자동납부를 통해서 고객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모집수수료의 인상가능성이다. 은행은 수수료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쟁이 격화되면서 여수신 이율차가 좁혀짐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수수료 수입이 높은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골라 판매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보험요율이 자유화된 상황하에서는 은행이 대량모집을 무기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수수료인상 압력을 행사해서 모집수수료가 인상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판매원에 대한 교육문제이다. 보험상품이란 장래의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그 자체이므로 그 내용이 난해하다. 이는 현재 보험업계에서 막대한 교육비용을 투자해서 해결하고 있는 문제이나, 보험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은행원이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은행은 보험계약자에게 적절한 내용의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상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은행의 보험판매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심의회는 1997년 6월 13일 최종보고안<sup>29)</sup>을 제출해서 은행·증권·보험의 상호진입과 은행의 보험상품판매에 대한 해금을 자문했다. 은행과 증권의 자회사를 통한 상호

- 28) 1987년 4월 25일에 업무정지와 청산이 결정되었다. 최종 채무초과액은 2,500억엔 정도로 추정 된다.
- 29) 그 내용은 은행·증권·보험의 상호진입,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의 해금, 보험계약자 구제제도의 창설, 손해보험요율의 자유화로 요약된다. 이 중에서 손해보험 요율의 자유화는 1996년 12 월의 미일보험협정에서 1998년 7월부터 자동차, 화재, 상해보험의 요율자유화가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다.
- 30) 1992년 6월 19일 「금융제도 및 증권거래제도를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金融制度及び證券取引制度のための關係法律の整備等に關する法律)」이 제정되어 은행과 증권의 상호진입이 가능해졌고, 시중은행과 증권회사의 신탁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진입은 이미 인정되고 있으나<sup>30)</sup>, 동보고서에서는 은행·증권과 보험의 상호진입도 2001년까지 실시한다고 실시시기를 명기하고 있다. 또, 손해보험상품인 주택대출관련의 장기화재보험과 생명보험상품인 대출관련의 단체신용생명보험의 2가지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산하의 형제회사인 보험회사 상품에 한정해서 2001년까지 은행의 보험판매를 허용할 것을 자문하고 있다. 뒤이어 1998년 3월 3일에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규제완화 3개년 계획」<sup>31)</sup>에서는, 은행·증권과 보험의 상호진입은 즉시 관계법률을 개정해서 1998년 12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은행의 보험판매도 보험심의회의 보고대로 2001년까지 허용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은행의 보험판매를 빅뱅의 마지막 시한인 2001년까지 미루고 대상범위를 한정하고는 있으나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도쿄미쓰비시은행(東京三菱銀行)의 출현을 계기로 종합금융기관(universal bank)<sup>32)</sup> 내지는 종합금융기관을 지향하는 시중은행사이에서는 「기능상호보완형」의 합병은 금융재편의 모델케이스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합병분위기가 활발해졌다<sup>33)</sup>. 그러나, 도쿄미쓰비시은행이 합병후에 구조조정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을 보고, 지주회사를 축으로 한 그룹형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높아가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많은 수는 「상호회사」이며, 주식회사와 같이 주식의 매매에 의해 매수나 합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회사는 자신이 100% 출자한 자회사를 금융지주회사로 설립하고, 그 산하에 생명보험·손해보험과 신탁은행, 투자신탁 등을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보유하려는 구상이다. 이미 손해보험자회사를 설립하고 생손보 상호진입을 하고 있는 6대생명보험회사<sup>34)</sup>는 모두 상호회사이므로, 주식회사의 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해서 금융종합회사로의 탈바꿈을 지향할 방침이다. 이러한 구상의 배경에는 거대화한 조직을 분사화하고 각각 기동성 있는 경영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위기감이 있다.

또, 세이부(西武)백화점 등을 중핵으로 하는 세존그룹과 미국의 올스테이트보험은 1997년 11월 12일,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세존생명과 올스테이트자동차·화재보험의 합병을 각각 실

30) 1992년 6월 19일 「금융제도 및 증권거래제도를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金融制度及び證券取引制度のための關係法律の整備等に關する法律)」이 제정되어 은행과 증권의 상호진입이 가능해졌고, 시중은행과 증권회사의 신탁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31) 「保險毎日新聞」, 1998년 4월 6일.

32) 은행과 증권업무는 본체(in house)에서 취급하고 보험업무 등은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를 통해서 취급하는 은행이다. 현재 독일을 비롯한 많은 EU국가가 채용하고 있다.

33) 국내에 강한 미쓰비시은행(三菱銀行)과 해외에 강한 도쿄은행(東京銀行)이 합병했다. 또, 1997년 4월 1일에는 히카이도은행(北海道銀行)과 히카이도탁쿠쇼쿠은행(北海道拓殖銀行)이 1998년 4월 1일에 합병할 것을 결정했다.

34) 일본생명(日本生命)·제일생명(第一生命)·스미토모생명(住友生命)·메이지생명(明治生命)·야스다생명(安田生命)·미쓰이생명(三井生命)이다.

질적으로 해지하고 세존그룹이 올스테이트측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양사를 완전자회사화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빅뱅이 진행되는 가운데 합병으로는 신속한 대응력을 갖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생명(日本生命)이 종래의 생보레이디라고 불리우는 여성영업직원과 별도로 고도의 금융지식을 가지고 고객 자산관리의 컨설팅까지 담당할 생손보병행판매의 전문영업직원 「라이프 프로듀서」를 조직원으로 하는 전략적 판매조직 「닛세이 그라드」를 1998년 3월에 발족시킨 사실이 알려지는 등<sup>35)</sup> 금융빅뱅을 대비한 판매경로의 재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그와 함께 생손보상호진입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도 표5와 같이 생명보험영업직원의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취득에 한층 더 주력하고 있으며, 자회사(또는 제휴회사)의 손해보험상품을 병행판매하는 크로스마케팅(cross-marketing)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5〉

생손보자회사의 판매력

생보의 손보자회사	영업직원수	손보의 생보자회사	대리점수
닛세이손해보험	47,000	도쿄해상안심보험	17,000
다이아치손해보험	10,000	미쓰이미래생명	10,000
스미세이손해보험	30,000	스미토모유우생명	13,500
메이지손해보험	20,000	일본해상파트너생명	6,800
미쓰이라이프손해보험	10,000	치요다화재에비스생명	5,200
야스다라이프손해보험	9,700	다이도쿄해복생명	8,600
		니찌도우생명	9,000
		후지생명	9,350
		쿄이화재진심생명	6,000
		도와생명	7,100
		쿄에이화재신토생명	4,300
합계	126,700	합계	96,850

(주) 영업직원수는 모회사(생명보험회사)의 영업직원 중 손해보험대리점자격을 취득한 직원의 수이며, 대리점수는 모회사(손해보험회사)의 대리점중 생명보험모집인 등록의 등록인 수(출처: 「日本經濟新聞」, 1997년 10월 2일).

## V. 결 론

일본 보험제도의 역사는 규제강화의 역사였다. 보험회사의 도산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사업의 타업종과의 겹침을 금지하고, 생명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을 분리해서 적절한 수의 보험회사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경쟁을 원하지 않는 보험회사 자신이 희망하는 바이기도 했다.

35) NISSAY GLAD는 Good Life Advisory Department의 약자.

한편, 보험업법에 의거하지 않는 은행, 공제 등이 인수면에서 보험회사와 경합하게 되고, 소비자의 금리선후의식의 고양은 자산운용면에서 업종간의 경쟁을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보험산업의 효율화와 소비자이익의 증대를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되며, 규제 완화와 자유화라고 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업종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러한 규제완화의 추세 속에서도 보험사업자의 도산을 방지하려고 하는 기존의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고 있었다.

한편, 외국금융기관은 광범위한 업무를 취급하면서 고도로 전문화된 복합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금융기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업무영역의 구분을 철폐해서 종합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율적이고 복합상품을 제공해서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부응할 수 있는 경영조직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 결과 도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최종 대응방안이 자회사방식에 의한 업종간 상호진입이며, 금융지주회사의 해금이었다. 이러한 자회사나 지주회사 산하의 형제회사를 독립법인으로 파악하는 한 보험업의 전업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나, 크로스마케팅과 형제회사인 은행의 보험판매 등 비교적 광범위한 업무제휴를 인정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겹업의 효과를 누리도록 배려되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간 또는 은행과 증권과의 자회사를 통한 상호진출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은행과 보험의 자회사방식에 의한 상호진출과 은행의 보험판매는 실시 시기를 일본판 빅뱅의 완료 시기인 2001년까지로 미루고 있다. 은행과 보험의 상호 진출은 보험회사의 도산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보험회사 도산시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 보호제도가 준비되고 자회사방식에 의한 상호진입과 금융지주회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회계상의 금융업종간의 업무영역 구분은 위험차단을 위해서 유지되나, 적어도 경영과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업무영역 구분은 철폐된다.

이상과 같이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을 철저히 구분해온 일본은 보험업계의 반대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업무영역을 철폐하는 방향에 있다. 그 목적은 업무영역이 일본의 보험회사보다도 광범위한 업무영역을 가지는 외국의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즉, 과거에 보험회사 업무영역을 제한한 이유가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보험계약자를 완벽하게 보호하는데 있었다면, 현재는 일정금액을 한도로한 개인보험에 한정해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융업종간의 업무영역을 철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7월에 제3분야보험에 대한 생손보 겹업을 인정했다. 또, 금융산업은 은행·증권·보험으로 나누고 상호간에 자회사방식으로 진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는 시간을 늦추면서 일본의 역사를 따라온 것처럼 중복

된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는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일본이 구재벌의 부활을 경계하면서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융지주회사를 해금한 것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시사하는 바 크다.

### 참 고 문 헌

1. 이근창, 「금융권 업무영역 조정과 보험산업」, 『보험학회지』, 제50집, (한국보험학회, 1997년10월).
2. 이홍무, 「일본의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와 업무영역에 대한 고찰」, 『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1997년5월).
3. \_\_\_\_\_, 「일본판 빅뱅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생협』, (생명보험협회, 1998년5월).
4. 이홍무 역, 『금융빅뱅』, (두남, 1998년).
5. 황남일 · 이홍무, 「무역보험의 이론과 실제」, (무역경영사, 1997년).
6. 홍범식, 「일본의 금융제도 개혁과 향후전망」, 『생협』, (생명보험협회, 1997년2월).
7. 相澤幸悅, 『ユニバーサル・バンキング』, (日本經濟新聞社, 1989年).
8. 石田 滿, 『保險業法の研究 I』, (文眞堂, 1989年).
9. 牛越博文, 「英國生保販賣」, 『生命保險經營』, 第382卷, (生命保險經營學會, 1997年7月).
10. 宇佐見憲治, 「生命保險業100年史論」, (有斐閣, 1984年).
11. 倉澤康一郎, 「新保險業法の意義と新法の特色」, 『保險學雜誌』, 第556號, (日本保險學會, 1997年3月).
12. 鈴木辰紀, 「火災保險契約論」, (成文堂, 1979年).
13. \_\_\_\_\_, 「保險の現代的課題」, (成文堂, 1983年).
14. 鈴木辰紀 · 李洪茂 外, 「保險論」, (成文堂, 1996年).
15. 竹内昭夫, 「保險業法の在り方(上卷)」, (有斐閣, 1992年).
16. 竹林一則, 「日本保險史」, (同朋舍, 1978年).
17. 刀禰俊雄 · 北野 實, 「現代の生命保險」, (東京大學出版會, 1993年6月).
18. \_\_\_\_\_, 「金融ビッグバンとこれからの販賣戰略」, 『生命保險經營』, 385號, (生命保險經營學會, 1998年1月).
19. 原信 · 森田達郎, 「東京マネー・マーケット」, (有斐閣, 1992年).
20. 武藤泰明, 「持ち株會社のすべて」, (東洋經濟新聞社, 1997年7月).
21. 保險研究所, 「日本保險業史 · 上卷」, 1980年.

22. \_\_\_\_\_, 「日本保險業史・下卷」, 1980年.
23. 山中廣『生命保險金融發展史』, (有斐閣, 1986年).
24. 楠本博, 「日本版ピッグバンのすべて」, (東洋經濟新報社, 1997年4月).
25. 『生命保險實務講座・マーケティング I』, (有斐閣, 1991年).
26. 『みなさまの簡易保險』, (郵政省簡易保險局, 1994年).
27. 李洪茂, 『保險事業と規制緩和』, (成文堂, 1996年).
28. Buley, R. C., *The American Life Convention, 1906~1952*, American Life Convention, 1953.
29. Hendrick, B. J., *The Story of Life Insurance*, The McClure Press, 1952.
30.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Fact Book 1996—Property Casualty Insurance Facts*.
31. Keller, M., *The Life Insurance Enterprise, 1885~1910*, Havard College, 1963.
32. Maeshall, R. A., *Life Insurance Company Mergers and Consolidations*, The S. S. Huebner Foundation for Insurance Education, 1972.
33. McDowell, B., *Deregulation and Competition in the Insurance Industry*, Quorum Books, 1989.
34. Westall, M. O., *The Historian and Business of Insuranc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4.

## A Historical Approach to the Regulation for Insurance Industry in Japan

Lee, Hong-Mu\*

### Abstract

For many years, the insurance industry of Japan has operated in a relatively safe and secure regulatory. It was exempted from antitrust legislation and protected from such potential competition as that from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In recent years, Japan government dramatically permit establishing of pure holding company, and proposed a legislation that would permit establishing of financial holding company.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have allowed banks to perform securities, insurance through separate subsidiaries. Allowing the banks to compete in the sale of insurance would destroy the cherished Japanese insurance soliciting system.

Deregulation for the insurance company like this means the changing of the target of the regulation for the insurance industry from protection of insurance insolvency to consumer's profit through the competition.

Key-words : deregulation, financial holding company, insurance company

\* Assistant professor of Dankook University, Ph. D.

# 日帝下 土着綿工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研究 (2) - 1920年代를 중심으로 -

Characters of the Native Capitals in the Korean Cotton  
Industry Under the Colonial Period(2)

李 漢 九\*

## 目 次

I. 序論	1. 官僚出身型
II. 植民地의 棉作增產 強行	2. 地主出身型
III. 民族系 綿產業의 存在樣態	3. 商人出身型
1. 製造業	4. 安州貿易의 출현
2. 商業 및 貿易業	V. 結論
IV. 代表的 企業家 類型	

## I. 序 論

일제하에서 한국의 공업화는 철저하게 일본 중심으로 주도되었다. 당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식민본국과 식민지라는 틀속에서 한국의 공업화가 추진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공업화는 일본 공업화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원료공급지로서의 공업화와 일본제품의 판매시장으로서의 공업화였다.

주지하는 바처럼 한국의 면방직산업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대표적인 공업부문이었다. 그런데 이 산업이 일제에 의한 반식민지, 식민지화 과정에서 한국 공업화의 중심 산업부문으로 부상, 근대화-기계화, 대량생산화, 경영근대화등-가 진행되었다. 그과정에서 다수의 한국인 자본가들이 일부분의 공업화에 참여함으로써 근대화는 한층 진작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민들 衣類需要의 대종을 차지하는 編紡織產業이 朝鮮總督府의 綿產業政策의 전개와 일본 면방직 자본이 주도한 근대화과정에서 이산업에 참여한 민족계 자본의 성격과 면방직산업의 근대화에 대한 기여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항이래 일제에 의한 반식민지, 식민지 지배기간(1876~1945) 전체를 연구대상 기간으로 정하고 동기간중에서 설립된 기업체들과 이를 회사의 설립 및 경영에 참여

\* 수원대학교 교수

한 민족계 자본가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대상 산업은 棉花栽培, 織綿, 紡績, 紡織 등 제조업 및 상업, 무역업 등 면업관련 산업을 전부 포함하였다. 그러나 작업량이 방대하여 연구의 편의상 ① 개항기(1876~1909) 및 ② 1910년대(1910~1919), ③ 1920년대(1920~1929), ④ 1930년대(1930~1939)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에 발표한 ① 開港期 新興 棉業資本의 성격에 관한 研究〈筆山 黃明水 教授 華甲紀念論叢－韓國企業經營의 歷史的 性格－에掲載〉와 ② 日帝下 土着綿工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研究(1)－1910년대를 중심으로－(經營史學, 第10輯에掲載)의 후속작업으로써 1920年代(1920~1929)를 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수행에 사용한 자료로는 기존의 문헌(① 東亞經濟時報社 編, 朝鮮銀行會社要錄<1921년판, 1927년판, 1939년판, 1941년판>, ② 張在洽 編, 朝鮮人大商店辭典<1927년>, ③ 朝鮮織物協會 編, 朝鮮織維要覽<1943년판>, ④ 東亞日報, 1922~1929년치, ⑤ 木山耕藏 編, 朝鮮紳士銘鑑<1911>, ⑥ 朝鮮研究會 編, 新朝鮮成業銘鑑<1917>, ⑦ 朝鮮新聞社 編, 朝鮮人士與信錄<1922>) 등을 이용하였는데 이들 자료에는 주로 공칭자본이 1萬圓 이상의 회사조직을 갖춘 기업체를 중심으로 수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정 규모이상의 대표적인 기업체들을 전부 조사하여 연구대상화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이 일제하 한국 면산방직업을 주도한 자본의 성격규명에 두어졌기 때문에 개별기업들의 경영양식, 기계화 정도, 자본의 축적과정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 II. 植民地的 棉作增產 強行

朝鮮總督府는 한국에서 「第1期 陸地棉獎勵計劃」(1912~1918)을 성공리에 완성한 후 1919년부터 「棉作獎勵 第2期 計劃」을 실시하였다. 제 2기 계획은 전라, 경상도 등 남선지방에는 陸地棉을, 황해, 평안도 등 서선지방에는 在來棉의 개량증식에 초점을 두었다. 총독부는 이 계획의 실시목적을 첫째, 일본 방직공업에 필요한 방직원료의 공급 둘째, 한국내 면화수요의 자급 셋째, 농가경제의 향상 등에 두었는데 이 계획의 달성목표량은 作付總段別 25만 町步, 實棉生產高 2억 5천만 斤이었다<sup>1)</sup>. 總督府는 동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19년에 설치한 평안남도 龍岡棉作出張所에 서선지방의 면화재배 농가에 대한 농사지도 및 강습과 농사개량을 위한 조사, 시험임무를 부여하였다<sup>2)</sup>.

「棉作獎勵 第 2期 計劃」은 면화 재배지역을 종래 전라, 경상, 충청도 등 남한지역에서 경기

1) 1921年 朝鮮總督府 施政年報, pp. 213, 214 참조.

2) 1921年 朝鮮總督府 施政年報, p. 213 참조.

및 서선지방으로 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 계획은 1919년부터 1928년까지 만 10년간 추진되었는데 그 결과 1928년 현재 면화 재배면적은 20만 5,300여 정보로 목표 재배면적의 82.12%를 달성하였다. 또한 實棉生產高는 1억 7,816만근에 달해 당초 목표인 2억 5천만斤의 71.26%를 생산하였다.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목표치에 근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sup>3)</sup>.

年齡別 棉花生產推移 (단위: 千町, 千斤)

	육 지 면		재 래 면		합 계	
	작부단별	수 확 고	작부단별	수 확 고	작부단별	수 확 고
1920	106	88,641	39	26,256	145	114,897
1922	104	88,778	47	29,929	151	118,707
1924	117	106,926	52	30,928	169	137,854
1926	150	118,264	65	43,819	215	162,083
1928	137	121,771	67	49,095	204	170,866
1930	132	127,329	60	41,441	192	168,770

\* 1930年度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pp. 98-99에서 작성

한국에서 생산된 면화는 국내의 조면공장에서 1차 가공하여 내수용으로 소비되거나 혹은 일본 등지에 수출되었는데 조면의 수출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20년 현재 조면 수출량은 6백62만 6천斤으로<sup>4)</sup> 동년 국내 실면생산량의 25.2%를 점한다. 실면의 경우 去核 등의 작업을 거쳐 조면으로 틸바꿈하기 때문에 조면 생산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이 비율은 점감하여 1930년에는 조면 수출량이 1천 7백 63만 9천斤으로<sup>5)</sup> 동년의 실면 생산고 1억 6천 8백 77만 근의 10.5%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1928年 朝鮮總督府施政年報, p. 229 참조

4) 1920年度 統計年報, p. 135 참조.

5) 1930年度 統計年報, pp. 266~276 참조.

조면의 수출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면방직 수요가 증가한 때문이다. 이 기간 중 면화 생산고는 매년 증가한 반면 조면의 수출비율이 줄고 있는 것은 아무렵 국내 면방직산업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원료인 조면의 국내수요가 증가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동기간 중 면직물의 수입추이를 보면 1920년 현재 打綿 1,413천근, 면사 2,774천근, 生金巾 등 면직물 53,552 천方碼, 白木綿 1,986천 段 등이었다<sup>6)</sup>. 이후 면직물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1930년에는 조면 11,545 천근, 타면 3,601 천근, 면사 8,360 천근, 生金巾 등 면직물 107,577천方碼, 백면 9,637 천方碼<sup>7)</sup> 등으로 동기간 중 타면은 2.55배, 면사는 3.01배, 생금건 등 면직물은 2.01배 등으로 각각 증가하였는데 이들 제품의 절대다수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다.

과거 수입 면직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生金巾, 白木綿 등 최종생산물의 수입 증가율은 1920년대 이후 점차 둔화되는 반면, 중간생산물인 打棉, 繩綿, 綿絲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점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타면, 조면, 면사 등 중간생산물을 수입, 한국에서 면포, 의류 등을 생산하는 방적 및 방직시설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반증하는데 이는 한국에 조면, 방적, 방직부문의 근대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00년대가 한국 면산업 근대화의 맹아기였다면 1910년대는 본격적인 발흥기였다. 그러나 1910년대에 일제는 일본 면방직산업에 필요한 원료인 면화의 한국생산에 주력함으로써 아무렵 한국 면산업의 근대화작업은 면화 재배 및 조면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sup>8)</sup>.

따라서 1910년대는 국내에서 생산된 면화가 일본에 수출되어 그곳에서 면사, 면포로 제조되었고 이들 중 일부가 국내에 재수입되는 구조였음을 감안할 때 1920년대는 조면, 방적, 방직 등 면직물공업의 일관생산화 진전 및 생산확대, 그리고 그 와중에서 근대 방직업에 대한 한국인들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는 시기였다<sup>9)</sup>.

### III. 民族系 編產業의 存在樣態

6) 1920年度 統計年報, pp. 142~145 참조.

7) 1930年度 統計年報, pp. 266~274 참조

8) 1910년대에 설립된 공장자본 1萬圓 이상의 업체는 총 71개 업체이나 이 중 방직업체는 조선방직 등 단 2개 업체만 발견된다(拙稿, 日帝下 土着綿工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研究<1>, 經營史學 第 10輯, pp. 8, 9 참조).

9) 일본 면산업의 근대화의 중심은 紡織業이었다. 따라서 한국 면산업의 근대화는 일본 방직공업에 필요한 원료의 조달과 관련한 繩綿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면사를 재가공하여 최종생산물을 생산하는 紡織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한 참고 논문은 拙稿, 日帝下 土着綿工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研究(1) – 1910년대를 중심으로 – <1993년 4월, 經營史學會 發表 論文>가 있다.

1920년대에 면방직산업에 새로 진출하는 기업체들 중 공칭자본 1萬圓 이상의 업체는 제조업 3개 업체, 상업 및 무역업 41개 업체 등 총 44개 업체이다. 1910년대에 설립된 제조업 16개 업체, 상업 및 무역업 56업체 등 총 71개 업체의 61.99%에 불과하여 1920년대는 1910년대에 비해 다소 둔화하였다.

한편 1920년대에 새롭게 설립된 기업체들의 산업별 진출내역을 보면 조면업 1개 업체, 방직업 2개 업체 등 제조업 부문에서는 단 3개 업체만 발견된다. 그러나 면직물 판매 및 무역업 등 상업 부문에서는 무려 41개 업체로 동기간 중 면산업 진출업체수의 93.18%를 점하여 1910년대의 78.87%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1920년대는 1910년대 보다 상업부문에 대한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업체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성 10개 업체, 대구 5개 업체, 부산 4개 업체, 평양 3개 업체 등으로 한국최대의 도시에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면직물의 최대수요처이기도 하나 이 도시들의 배후지역은 대체로 棉花 主產地란 점이다. 뿐만 아니라 1920년대는 이전 시기에 비해 기업체 설립지역이 지방군소도시로 확대되고 있다.

民族別 企業體 現況

(단위:업체수)

	제 조 업			상업	총 계
	조 면 업	방 직 업	계		
한국인 기업		2	2	35	37
일본인기업	1		1	5	6
한일공동경영				1	1
총 계	1	2	3	41	44

자료 : 張在洽 編, 朝鮮人會社大商店辭典, 中村賚良 編, 朝鮮銀行 會社組合要錄,  
1921년 版, 1927년 版, 1939년 版, 1941년 版에서 작성

1920년대에 설립된 업체들의 민족별 현황을 보면 일본인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는 6개 업체이며 한일 공동경영회사는 단 1개 업체이다. 반면에 한국인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는 총 37개 업체로써 전체 기업체수의 85.4%를 점하여 1910년대의 77.46%를 높가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들의 설립년도별 추이를 보면 1920년에서 22년까지 3년간에 전체업체의 58.1%인 26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그중 일본인 업체는 단 2개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24개 업체가 민족계 기업체라는 점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시기에 특히 민족계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출현한 이유는 첫째, 3.1運動이 초래한 민족 의식의 고취였다. 비록 3.1운동은 한민족의 독립열망을 표출하는 것으로 종료되었으나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운동은 物產獎勵運動으로 이어졌다. 특히 物產獎勵運動은 1920년대 전반기에 요원의 메아리처럼 전국각지로 파급되었는데 이와 같은 민족의식이 다수의 土着資本 家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1920년에 그간 한국내에서 기업설립을 극도로

設立年度別 推移 (단위: 업체수)

	제 조 업			상 업	총 계
	조면업	방직업	계		
1920년	1	1	2	8	10
1921				12	12
1922				5	5
1923				4	4
1924	1		1	4	5
1925				3	3
1926				2	2
1927					
1928					
1929		1	1	2	3

자료: 張在治 著, 朝鮮人會社大商店辭典, 中村實良 著,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21년 판, 1927년 판, 1939년 판, 1941년 판에서 작성

규제하던 會社들이 철폐되었다는 점이다. 회사령의 철폐 결과 회사설립이 비교적 자유로와 민족계 기업설립운동을 촉진하였던 것이다. 세계, 이시기 이후 일본자본의 한국진출 규모가 종래보다 확대되면서 한국의 상권침탈이 우심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항하여 기존의 한국상인 등은 자기들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일본 자본의 침투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만 했다.

### 1. 製造業

이 시기 제조업부문에서 새로 출현한 기업체는 단 3개 업체로 1910년대의 16개 업체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참고로 1910년대에 설립된 제조업체 16개의 내용을 보면 조면업 7개 업체, 방직업 8개 업체 등인데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업체는 조면업 전부와 방직업은 朝鮮紡織 1개 업체였다. 나머지 7개 방직업체가 토착자본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중 京城紡織을 제외한 나머지 6개사는 양말, 메리아스 등을 생산하는 군소 직물업체였다. 일본인 경영의 기업체는 비교적 자본규모가 큰 반면 한국인 경영의 업체는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점과 일본인 자본은 조면업에, 한국인 자본은 방직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갖는다. 한편 1920년대에 신설된 제조업체로는 조면업의 濟州綿業株式會社와 방직업의 東洋染織과 株式會社 松高實業場이 있다. 濟州綿業은 면화가공 및 매매를 목적으로 1924년에 제주읍에서 설립된 자본 20萬圓의 日本 朝鮮棉花株式會社의 계열 기업이다<sup>10)</sup>.

東洋染織<sup>11)</sup>은 1920년 1월 24일에 경성에서 金德昌, 崔冀鉉, 崔奎翼 등이 공칭자본 50萬圓(12만 5千圓 불입)으로 설립하였는데 동사는 金德昌을 비롯한 종로 포목상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족계 방직업체이다. 동사의 총 주식수는 1萬株이고 株主는 총 17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李昌林, 金寅枰, 金德昌이 각각 800주씩 소유하고 있다. 그외에 崔奎翼 600주, 李鍼 570주, 金東殷, 金學奎, 金永信 등이 각 500주, 朴興瑞 380주, 崔冀鉉 340주, 崔灝植 300주, 崔永載 250주 등이었다.

한편 동사의 경영진을 보면 사장 崔冀鉉, 전무 金德昌, 상무 崔奎翼, 취체역 咸世豐, 邊相鎬, 李昌林, 金東殷, 감사역 金潤洙, 崔灝植, 朴興瑞 등이다. 이무렵에 등장한 대부분의 민족계 기업체들 중 자본규모가 비교적 큰 제조업의 경우 예외없이 귀족, 관료출신 및 대지주 출신 등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그러나 東洋染織만은 순수 商人資本만으로 설립된 매우 특이한 기업체로서 商業資本이 產業資本으로 전화한 대표적인 民族企業體 중의 하나였다<sup>12)</sup>.

松高實業場은 1910년에 南감리교회 朝鮮宣敎部에서 松都高普 및 보통학교 학생들 중 학자

10) 中村資良 編,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41년 版, p. 408 참조.

11) 東洋染織에 대해서는 挪著, 染織界의 始祖, 金德昌 研究－東洋染織株式 會社를 중심으로－, 經營史學 第 8輯, pp. 225~258 참조.

12) 中村資良 編, 상계서, 1921년 版, p. 58.

금 조달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실업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방직공장이었다<sup>13)</sup>.

이 실습장은 일본으로부터 力織機(動力を 이용하여 裁織하는 기계) 9대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실습케 하는 한편 생산된 면직물을 시판하였는데 여기서 생산한 松高織은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朝鮮紡織, 京城紡織 등이 면직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동 실업장은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1929년에 개성의 기업인인 金正浩가 인수, 자본금 20萬圓의 주식회사로 재발족하였다<sup>14)</sup>.

제조업의 경우 1920년대에는 1910년대에 비하여 신규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러 韓國近代綿紡織工業의 一貫化가 시도되었는데 예를 들어 朝鮮紡織은 1923년에 紡機 5,200錘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綿絲生產을 개시하였다<sup>15)</sup>. 따라서 1920년대의 한국 면방직산업은 조면, 방직, 방직, 염색 등 일관화와 대량생산의 기틀이 형성되는데 조면, 방직업부문은 일본인이 독점적으로 장악한 반면 한국인은 방직, 판매업부문에 집중적으로 출현한다.

## 2. 商業 및 貿易業

이시기에 설립된 상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중 공칭자본이 50萬圓 이상인 비교적 규모가 큰 회사들로는 1920년에 부산에서 자본 50萬圓으로 설립한 株式會社 東成商會와 日人系인 興和產業株式會社(1929년 경성에서 자본 100萬圓으로 설립) 등 단 2개 사뿐이다.

東成商會는 미국, 비료, 면사포, 해산물 등의 무역 및 위탁매매, 금융업을 목적으로 鄭在澗, 金時龜 등 경남지방의 지주 및 상인 자본가들이 합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sup>16)</sup>.

興和產業의 전신은 崔潤錫商店인데 동 상점은 종로 白木廬 四房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상점에서는 국내외에서 공급된 緞織, 毛織物, 唐布, 白苧, 布木 등을 취급하는데 주인인 崔潤錫은 당시 이름있는 경성 포목상 중의 하나였다<sup>17)</sup>. 이 상점이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 장기간 휴업상태에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무렵에 일본인에게 넘어가 1929년에 興和產業으로 재창업하였다<sup>18)</sup>.

당시 일본 상인들은 전고개에서 오늘날 신세계 백화점에 이르는 거리를 장악하고 있었고 한국인 포목상들은 종로에서 동대문에 이르는 상가에 밀집해 있었다. 일본 상인들은 한국 포목상들의 온상인 종로에 진출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노력을 경주하였다. 일상들의 침투로부터

13)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41년 版, pp. 137, 138.

14) 趙璣濬, 韓國企業家史, 1983, p. 277 참조.

15) 大韓紡織協會 編, 紡協十年志, 1957, 第2部, 會員工場 篇, p. 1 참조.

16)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21년 版, pp. 199~200.

17) 東亞日報, 1920年 4月 2日字 廣告.

18)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41년 版, p. 426 참조.

종로 상권을 지키기 위한 한국상인들의 노력도 대단했는데 당시 종로상인들의 이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오래전부터 종로 상업지 일대를 통하여 큼직한 가옥은 일체 조선사람 상인 이외에는 아니 팔기로 일반 동업자간에 굳은 결속을 해서 지내왔다”<sup>19)</sup>.

자본금 10萬圓 이상의 民族系 企業體로는 맨스포드상회(李相弼이 1923년에 경성에서 자본 20萬圓으로 설립), 興一社(張斗鉉이 1924년에 경성에서 자본 10萬圓으로 설립), (주)朴承稷商店(1925년에 경성에서 자본 18萬圓으로 설립), 東興商會(李錫模 등이 1921년에 대구에서 자본 20萬圓으로 설립), 尹炳準商店(1920년에 부산에서 10萬圓으로 설립), 元東貿易(李祐植, 具麟旭 등이 1920년에 마산에서 20萬圓으로 설립), 南一物產(金殷雨, 鄭在澜 등이 1920년에 하동에서 30萬圓으로 설립), 安州貿易(金灤樞 등이 1923년에 안주에서 10萬圓으로 설립) 등이 있으며 일본인에 의하여 설립된 업체는 4개 업체이다.

공칭자본 10萬圓미만의 기업체는 총 27개 업체로 이기간중 상업부문에 진출한 기업체들의 65.9%에 해당하는데 이 업체들중 대부분이 한인계 업체들이다. 이 업체들 중 대부분은 기존에 운영해 오던 개인상회를 근대적인 회사조직으로 전환하였는 바 이러한 속성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의 기업체들의 경우 가족경영의 폐쇄성이 엿보인다.

#### 1920年代에 설립된 企業體 現況

조면	濟州棉業(제주, 1924, 20萬圓, 金根善<사장>, 任昌鉉<감>, 石井榮太郎, 朝鮮棉花系)
방직	東洋染織(경성, 1920, 50萬圓, 사장 崔翼鉉, 전무 金德昌) 大邱洋襪製造所(대구, 1921, 기계부품도 판매, 禹且學) 東洋染織所 晉州支店(1923, 5千圓, 秋謙鑄) 松高實業場(개성, 1929, 20萬圓, 사장 金正浩<주>, 상무 黃中顯, 취체역: 禹相淳, 孔鎮恒, 禹鍾濡, 許瓊, 崔仁鑄<주>, 林漢祖<주>, 尹 永善<주>, 감사: 白樂濬, 金善炳, 韓宗洙) 日鮮產業(순천, 1928, 3.2萬圓, 徐丙圭)
상업	高麗洋行(경성, 1920, 李教儀) 大同商店(경성, 1922, 張善永)

19) 東亞日報, 1925年 11月 11日字.

田永鎮商店(경성, 1921, 田永鎮)

멘포드스商會(경성, 1923, 20萬圓, 李相弼)

興一社(경성, 1924, 10萬圓, 張斗鉉)

朴承稷商店(경성, 1925, 6萬圓, 전무 金春基<주주>, 취체역: 朴承稷  
朴熙乘, 高井兵三郎<주주>)

興和產業(경성, 1929, 100萬圓, 濟田虎雄, 日本系)

平戶商店(경성, 1921, 50萬圓, 平戶清治, 日本系)

義濟綿布(경성, 1920, 10萬圓, 加藤左馬吉, 日本系)

仁川布木商組合(1922, 5萬圓, 京勸 총대리점, 鄭順澤)

金俊俊商店(수원, 1923, 金俊俊)

張漢武商店(천안, 1925, 松高織 판매, 張漢武)

禮山商會(예산, 1922, 1.5萬圓, 成天永)

宋榮九商店(의리, 1923, 宋榮九)

根永商會 織物部(군산, 1924, 龐遂亮)

大昌商會(광주, 1921, 1萬圓, 李在鴻)

大昌號(목포, 1926, 李敬倫)

寶興運輸組(목포, 1921, 1萬圓, 崔芳鉉)

金潤鎬商店(대구, 1925, 金潤鎬)

大華商店(대구, 1922, 朴順華)

李漢五商店(대구, 1921, 1.5萬圓, 李漢五)

東興商會(대구, 1921, 20萬圓, 李錫模, 李福雨)

長光商會(대구, 1920, 30萬圓, 長光長三郎, 日本系)

大邱布木商組合(대구, 1921, 5萬圓, 金相)

尚州商事(상주, 1920, 20萬圓, 裴垣德三郎, 朴實陽<주, 취>, 朴正準  
<감사>, 韓日合資)

慶信商會(부산, 1922, 薛慶海)

尹炳準商店(부산, 1920, 10萬圓, 尹炳準)

尹炳模商店(부산, 1921, 尹炳模)

三忠商會(부산, 1921, 10萬圓, 西本榮一, 日本系)

元東貿易(마산, 1920, 20萬圓, 李祐植, 具麟旭, 玉鳳煥, 明道寅, 金冕  
允, 南璣祐, 주주: 정재완, 李基一, 金載亨, 朱寧南)

姜汝鉉商店(진주, 1921, 姜汝鉉)

南一物產(株)(하동, 1920, 30萬圓, 사장: 余璇輝<주>, 전무: 李輔衡<주>, 취체역: 李殷雨<주>, 金烘泰, 全宅魯, 金鄉源, 趙東燦, 東一商店(사리원, 1921, 李東錫)
朝鮮物產商會(平陽, 1921, 3萬圓, 崔龍勳, 平陽포목상 조합장)
中信委託(平陽, 1924, 5萬圓, 成大英)
普盛商會(平陽, 1924, 2萬圓, 朴燮, 黃履茲)
安州貿易(안주, 1923, 10만원, 사장: 金灝權, 취체역: 韓大勳, 文用奎, 감사: 金益弘, 李基勳, 1941년 현재 존속)
龍陽商會(선천, 1920, 3萬圓, 魏晶璽)
新義州鐵造組合(1926, 양말제조, 3萬圓, 李熙迪)
李寬用商店(영흥, 1921, 7천원, 李寬用)
東興商會(신흥, 1921, 林成長)
朴順哉商店(복청, 1929, 4.5萬圓, 朴順哉)

\*<주>: 대주주를 의미

\*\* 자료: 張在洽 編, 상계서, 中村資良 編, 1921, 1927, 1941년판에서 작성

#### IV. 代表的 企業家 類型

1920년대에는 1910년대에 비해 면업관련 기업의 설립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민족계 기업가들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그런데 이시기에 등장한 기업가들 중 상당수가 출신불명인 자들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출신성분이 확인된 기업가들을 귀족, 관료출신형, 지주출신형 그리고 상인출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속하는 기업가들의 계보 및 성격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sup>20)</sup>.

1920년대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영에 관계한 민족계 기업가들 중 기업설립을 주도한 인사들은 총 99명이다. 이들은 한국인 및 일본인 기업체를 불문하고 고루 등장하는데 이들의 경영참여 형태는 회사의 발기인, 취체역 및 대주주 등이다. 이 중에서 출신성분이 확인된 자들은 총 51명인데 귀족, 관료출신형 기업가는 李恩雨, 金時龜 등 2명, 지주출신형 기업가는 金正浩, 李相弼 등 2명이며 나머지 48명은 전부 상인출신형 기업가들이다.

이들 중 방직업에 진출한 기업가는 金德昌, 金寅樞, 邊相鎬, 李昌林, 金東殷, 金潤洙, 崔灝

20) 이러한 구분방법 및 유형별 기업가들의 특성에 대하여는 指著, 日帝下 韓國企業設立運動史, 1989, pp. 103~105 및 日帝下 土着綿工業資本의 性格에 대한 研究(1) 참조.

植, 朴興瑞, 金正浩, 黃中顯, 孔鎮恒 등이고 나머지는 전부 면직물 판매 및 무역업, 금융업에 진출하였는데 유형별 기업가들의 활동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官僚出身型

1920년대에 면방직산업에 진출한 민족계 기업가들 중 관료출신형 기업가는 李恩雨와 金時龜가 눈에 띈다.

李恩雨는 1881년 4월에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당시 일본에 유학하여 1909년에 일본 中央大學 經濟學科를 졸업하였다. 그는 졸업과 함께 귀국하여 舊韓國政府의 侍從으로서 그리고 1910년 한일합병 후에는 李王職 賢侍란 관직에 있었다. 이무렵 그는 普成專門學校에 出講하기도 하였으나 퇴관 후 그는 향리인 하동으로 낙향하여 그곳에서 기업가로 변신하였다<sup>21)</sup>.

그의 기업가활동은 1920년에 南一物產株式會社(공칭자본 30萬圓, 7萬5千圓 불입)를 설립하면서부터였다. 동사는 곡물, 직물 및 해산물 무역,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동사의 사장은 余琮燁이 맡았고 전무는 李輔衡이 맡았으며 李恩雨는 취체역을 담당하였는데 이들 3인은 대주주로써 동사의 실질적인 공동 경영자였다<sup>22)</sup>.

또한 그는 1928년에 하동에서 공칭자본 5萬圓으로 설립된 운수, 창고업체인 河東自動車株式會社의 감사를 맡는 한편 경상남도 農會 特別會員, 河東郡 農會 副會長, 官選 道評議會 會員, 河東金融組合長을 역임한 하동지방의 유력한 地主이기도 하였다<sup>23)</sup>.

그가 기업가로 변신한 것은 지주로서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할 여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술한 그의 학력 및 경력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는 당시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민족계 기업가로 평가될 정도로 이지역에서 설립된 다수의 유력한 기업체들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맡고 있는 기업내에서의 역할로 볼 때 그는 기업활동의 중심은 아니었다.

金時龜는 1920년에 부산에서 鄭在琬, 姜漢朝, 金泓祚, 鄭泰均 등이 곡물, 해산물, 면사포류의 위탁매매 및 금융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株式會社 東成商會(공칭자본 50萬圓, 불입자본 12만 5千圓)의 취체역으로 참여하고 있다<sup>24)</sup>. 그는 구한말 中樞院 議官, 경남 漆原郡守, 正三品 通政大夫 등의 벼슬을 지낸 金秉先의 장남으로 1889년에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다. 金秉先是 4,000두락, 밭 2,000두락에 소작인만 1,000여명을 거느린 경남일대의 대지주로서 관직에서 물러난 후 상업, 광산업 등을 경영하여 부를 중식시켰다. 金時龜는 厚陵 參奉으로서 六品

21) 阿部薰編, 朝鮮功勞者銘鑑, 1935, p. 316.

22) 中村資良編, 上계서, 1927년 판, p. 268.

23) 抽著, 日帝下 韓國企業設立運動史, p. 161.

24) 中村資良編, 上계서, 1921년 판, p. 199.

承訓郎이란 하급관직에 있었으나 곧 이를 사직하고 일본에 유학하여 1914년에 愛智縣立窯業學校를 졸업하였다. 그는 1919년 3·1 운동을 전후하여 기업가로 변신하는데 그는 동사 외에도 1920년에 부산에서 설립된 三山自動車株式會社 및 白山 安熙濟가 1919년에 설립한 白山貿易株式會社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sup>25)</sup>.

이은우, 김시구 등은 전통적인 양반출신으로 세습된 막대한 토지자본에 근거하여 기업설립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오히려 지주출신의 경영자였다. 그러나 그들은 기업내에서의 역할을 볼 때 중심적인 경영자는 아니었다.

## 2. 地主出身型

金正浩는 金季洙, 玄俊鎬 등과 함께 일제시대 민족계 기업설립운동을 주도한 자로서 1886년에 개성의 대자산가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후 그는 일본 明治大學 法學科를 졸업하였다. 그가 일본에서 귀국하여 기업가로 변신한 것은 1912년에 설립된 合資會社 永信社의 대표 취체역을 맡고부터였다. 그후 그는 高麗夢葉社, 松都陶器株式會社, 松都殖產株式會社, 開城電氣株式會社 등 개성 굴지의 민족계 기업의 설립 및 경영을 주도하였다<sup>26)</sup>.

그가 면산업에 진출한 것은 1929년에 松高實業場을 인수하면서부터이다. 그가 이 實業場을 인수함과 동시에 崔仁鏞, 林漢祖, 尹永善 등을 주주로 끌어들여 공칭자본 20萬圓의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 또한 그는 동사를 경영하기 위하여 개성 유수의 자산가인 黃中顯, 孔鎮恒 등을 경영진으로 포섭하였다<sup>27)</sup>.

李相弼에 대하여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 그의 출신을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는 당시 미국에 유학하여 陸軍大學을 졸업한 것으로 보아 그 또한 당시 명망가 혹은 大地主의 자손으로 추정된다.

그는 1923년 10월 京城 竹添町에서 자본 20萬圓의 맨스포드상회를 설립하였는데 동 상회는 직물, 모포, 모사, 화장품, 잡화 등을 구미 각 지역으로부터 직수입하여 판매하였다. 그가 이러한 사업에 손을 댄 것은 그는 美國留學派라는 점외에도 京城西洋人俱樂部 會員으로써 당시 서양인들과의 깊은 유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후 그는 韓一銀行 감사역(1927년)을 맡기도 하였다<sup>28)</sup>.

1910년대까지 귀족, 관료출신 및 지주출신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토지자본에 근거하여 대규모 방직업체인 조선방직, 경성방직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25) 振善, 상계서, pp. 117, 118 및 中村資良 編, 상계서, 1921년 版, p. 175 참조.

26) 振善, 상계서, pp. 165~166.

27) 中村資良 編, 상계서, 1939년 版, pp. 147~148.

28) 張在洽 編, 朝鮮人會社大商店辭典, 1927, p. 97 참조.

들 계층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부진, 주변적인 존재에 머무르고 있다.

### 3. 商人出身型

상인출신형 기업가들 중 대표적인 기업가들로는 경성의 朴承稷, 張斗鉉, 金德昌, 金東殷, 金潤洙, 李昌林과 개성의 黃中顯, 孔鎮恒 그리고 부산의 鄭在澗, 尹炳準, 안주의 金灝櫓, 文用奎, 제주의 金根蓍 등이 있다.

이부럼 朴承稷과 張斗鉉은 한국 상계를 대표하는 상인출신형 기업가로서 민족경제계의 중심적인 존재로 군림하는데 朴承稷은 그간 운영해오던 개인상회를 확대발전시켜 1925년에 株式會社 朴承稷商會(자본 6萬圓)를 설립하였다<sup>29)</sup>.

동 상회의 경영진에는 金春基, 朴承夔, 朴熙秉과 일본인 高井兵三郎이 참여하고 있는데 朴承夔는 그의 친형이며 朴熙秉은 그의 장조카이고 金春基는 朴承夔의 사위였다<sup>30)</sup>.

이로 미루어 보건데 동 상회는 전형적인 家族會社였다.

張斗鉉은 1924년에 자본금 10萬圓의 주식회사 興一社를 설립하였는데 그 또한 종로 포목상 출신의 대자산가로 1919년에 설립된 京城紡織의 취체역 및 朝鮮商業銀行의 감사역을 역임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22년에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汤太平洋協會 商業大會에서 朝鮮支會長으로 선출되었으며<sup>31)</sup>, 1923년에는 서울 낙원동 協成學校에서 개최된 物產獎勵會 初代理事로 선출되기도 한 당시 한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인출신형 기업가였다<sup>32)</sup>.

金德昌은 「한국 染織界의 始祖로서」 「1897년경부터 염직업에 종사하여 染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자못 풍부한 자이다.」<sup>33)</sup>. 그는 이미 1902년 2월에 소규모의 金德昌染織工所를 설립하여 직물생산을 개시하였는데<sup>34)</sup> 동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1915년에 개최된 韓國物產共進會에서 金賞을 받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sup>35)</sup>.

방직업자로서 그의 이러한 명성 때문에 그는 당시 종로 포목상들을 끌어들여 자본 50萬圓의 東洋染織을 설립하였는데 동사에는 무려 177명의 주주들이 참여하고 있다. 동사의 설립에 이처럼 엄청난 수의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동사 설립직전에 발발한 3.1運動의 결과

29)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27년 판, p. 313.

30) 趙璣濬, 上계서, p. 201.

31) 東亞日報, 1922年 11月 6日字.

32) 趙璣濬, 朝鮮物產獎勵運動의 展開過程과 그 歷史的 性格, 尹炳與外 編, 韓國近代史論, 3권, pp. 62~91 참조.

33) 張在洽 編, 朝鮮人會社大酒店辭典, 1927, p. 89.

34) 高承濟, 韓國經營史 研究, 1975, p. 90.

35) 鮮宇日 編, 共進會實錄, 1916, p. 292.

고취된 民族經濟 建設意識과 종로상인들의 상권을 지키고자하는 염원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는 1923년 1월 20일 낙원동 協成學校에서 발기된 朝鮮物產獎勵會의 創立總會에서 同社의 취체역인 金潤洙와 함께 初代理事로 선출되기도한 대표적인 상인출신형 기업가의 한사람이었다<sup>36)</sup>.

동사의 설립 및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金東殷은 원래 종로 3丁目에서 주단, 포목상을 경영하여 부를 축적한 자로서<sup>37)</sup> 이미 1910년대부터 근대기업가로 변신하여 金潤冕이 설립한 東洋物產 및 株式會社 東益社의 취체역, 鐵路金融組合長<sup>38)</sup> 등을 겸하고 있다.

金潤洙는 1911년 私立五星學校 商科를 졸업한 후 1915년에 京城商會(주단, 포목상, 남대문통 1정목 127)<sup>39)</sup>의 주인이 되면서 상인으로 변신하였다. 그후 그는 1919년에 東洋物產의 상무, 光化門金融組合 감사, 京城布木商組合 理事 등을 맡으면서 근대 기업가로 변신하는데 1922년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沖太平洋商業大會에 朝鮮人 代表로 참가하여 동 대회의 副會長에 추대되었고<sup>40)</sup>, 귀국 후에는 金德昌, 張斗鉉 등과 함께 朝鮮物產獎勵運動에 기업가 대표로 참여하는 등 당시 한국민족 경제계를 이끄는 청년 기업가 중의 한 사람이었다.

黃中顯과 孔鎮恒은 金正浩가 설립한 松高實業場의 취체역으로 등장하는데 黃中顯은 孫鳳祥, 孔聖學 등과 함께 개성을 대표하는 인삼상인이다. 孔鎮恒은 孔聖學의 차남으로 1900년에 태어났는데 그는 개성 第一公立普通學校를 거쳐 일본, 유럽 등지에서 유학을 한 후 귀국하여 기업가로 변신하였다<sup>41)</sup>.

공진황이 기업가로 변신한 시기는 대체로 (株)松高實業場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부터였다. 그후 그는 1935년에 자본 50萬圓의 滿蒙產業株式會社를 설립하였는데<sup>42)</sup> 그 또한 金正浩의 경우처럼 菜業經營을 통하여 축적된 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개성출신의 기업가였다.

이 부류에 속하는 기업가들 중 비교적 활발한 기업활동을 전개한 자는 부산 동래지방의 鄭在完이다. 그는 개항직전인 1875년에 경남 하동에서 출생하여 이무렵에는 부산 동래온천에서 山海旅館을 경영하고 있었다<sup>43)</sup>.

36) 趙璣濬, 朝鮮物產獎勵運動의 展開過程과 그 歷史的 性格, 尹炳煦 外 編, 韓國近代史論, 3卷, p. 62 참조.

37) 東亞日報, 1920年 4月 2日字 廣告.

38) 東亞日報, 1920年 4月 2日字 廣告.

39) 東亞日報, 1924年 1月 1日字 廣告.

40) 東亞日報, 1922年 10月 29日字.

41) 趙璣濬, 上계서, pp. 289~292 참조.

42) 趙璣濬, 上계서, p. 291 참조.

43) 朝鮮新聞社 刊, 朝鮮人事與信錄, 1922, p. 322.

그는 1920년에 관료출신의 金時龜 등과 함께 부산에서 자본금 50萬圓의 株式會社 東成商會를 설립하여 사장에 취임하였다<sup>44)</sup>. 뿐만 아니라 그는 하동에서 그지방 유자들이 설립한 南一物產 및 마산에서 설립된 자본금 50萬圓의 元東貿易의 경영에도 참가하는 등<sup>45)</sup> 이루렵 경남지방의 대표적인 민족계 기업가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이들 외에도 鄭順澤, 尹炳準 등 지방도시를 기반으로 한 대상인들이 이시기에 근대 기업가로 새롭게 등장한다. 尹炳準은 원래 부산 동래지방의 巨商으로서 그는 축적한 자본을 근거로 하여 근대 기업가로 변신한다. 그가 기업가로 변신한 시기는 1912년 慶南銀行의 설립시 주주로서 참여하면서부터인데 그후 그는 東萊銀行 취체역 및 대주주, 慶南印刷株式會社 주주, 釜山穀物信託株式會社의 취체역으로 활약하는 등 부산지방의 대표적인 기업가의 한 사람이었는데 尹炳準商店은 그의 자본축적의 중심이었다<sup>46)</sup>.

鄭順澤은 仁川府 內里에 소재한 大東商會의 주인으로써 오랜 기간동안 포목상으로 치부한 인천 포목계의 대부이다<sup>47)</sup>. 이와 같은 그의 사업력 때문에 그는 인천의 한인 포목상들이 결성한 仁川布木商組合의 長을 맡는다.

한편 이기간 중에는 繢綿業에 유일하게 1개 업체가 설립되는데 동사는 제주도에서 설립된 濟州綿業株式會社이다. 동사는 朝鮮棉花의 系列社로서 1924년에 자본 20萬圓으로 설립되었는데 동사의 경영진으로 金根蓍(사장), 任昌鉉(감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sup>48)</sup>.

金根蓍는 1922년에 제주도에서 설립된 濟州商船株式會社(자본 15萬圓)의 사장이기도 하였다. 동사는 일본 大阪, 下關과 한국의 연안지방을 왕래하며 여객 및 화물수송을 전담하는 海運會社인데 동사의 경영진에는 그외에도 당시 제주지방의 대표적인 기업가들이 朴宗實, 金壬吉 등이 참여하고 있다<sup>49)</sup>.

金根蓍가 濟州綿業 및 濟州商船의 경영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동사에 어느 정도의 자본을 투자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의 경제적 여건으로 보아 그는 金壬吉, 朴宗實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시 제주도를 대표하는 상인출신형 기업가로 추정된다.

1920년대 한국 면공업 근대화를 주도한 계층은 상인출신형 기업가들이었다. 이들은 과거부터 영위해 오던 면직물 판매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기업설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시기 상인출신형 기업가활동의 중심축은 상업 및 무역업 등이었다.

44)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21년 版, p. 199

45) 東亞日報, 1922年 7月 9日字, 廣告

46) 拙著, 上계서, pp. 170, 171 참조

47) 東亞日報, 1921年 2月 25日字 廣告

48) 中村資良 編, 上계서, 1927년 版, p. 309

49) 中村資良 編, 上계서, p. 92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그간 축적한 자본에 근거하여 방직업 등 면직물의 제조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소규모 방직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 결과 토착 산업자본가들은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획책, 점차 근대적인 부르조아계층으로 성장하고 있다.

1920年代 代表的 企業家들의 類型

출신성분	기 업 가 명
官僚出	李恩雨, 金時龜
地主出	金正浩, 李相弼
商人出	黃中顯, 孔鎮恒, 張斗鉉, 朴承稷, 朴承善, 金春基, 朴熙秉, 鄭順澤, 金侑俊, 張漢武, 成天永, 宋榮九, 龍達亮, 李在鴻, 李敬倫, 崔芳鉉, 金潤鎬, 朴順華, 李漢五, 李錫模, 李福雨, 金相, 薛慶海, 尹炳準, 尹 炳模, 鄭在澗, 金泓祚, 姜汶鉉, 李東錫, 崔龍勳, 朴燮, 金深權, 文用 奎, 洪禹璣, 魏晶璣, 李寬用, 林成長, 朴南極, 金德昌, 金潤洙, 金東 殷, 李昌林, 崔奎翼, 邊相鎬, 金根蕃

자료: 張在洽 編, 上계서, 中村賚良 編, 上계서, 1921, 1927, 1939, 1941년 판,  
東亞日報, 1920-1929년치에서 작성

#### 4. 安州貿易의 출현

이시기 민족계 기업설립운동과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安州貿易株式會社의 설립을 들을 수 있다. 동사는 1923년에 평안도 안주에서 자본금 10萬圓으로 설립되었다<sup>50)</sup>. 安州貿易은 안주에 있는 민족계 포목상인들이 조합을 결성한 후 조합차원에서 설립한 특이한 기업체이다<sup>51)</sup>.

따라서 동사의 주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주식 또한 주주들에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東洋染織과 유사하다.

50) 張在洽 編, 上계서, 332 및 中村賚良 編, 上계서, 297 참조.

51) 이러한 형태로 기업을 설립한 경우가 朴承稷, 崔仁成, 金元植, 崔景瑞 등이 일본으로부터 紡織  
布를 직수입하기 위하여 1905년에 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원 340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본금 20,600圓의 合資會社 共益社(1914년에 재창업)가 있다. 이외에도 이시기에는 특장지역  
의 포목상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차원에서 물건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  
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安州貿易은 그 색채가 다분히 민족적이라는데서 이들과는 상당  
한 차이가 있다(中村賚良 編, 上계서, 1921년 판, pp. 164, 165 참조).

동사는 이시기에 출현한 기업들과는 다른 배경으로 설립되었는데 회사설립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즉, 종래 안주지역의 면직물 공급은 일본인 수입상조합이 독점, 장악하고 그들의 눈에 난 한국인 포목상에는 물건을 공급하지 않는 등 횡포가 심했다. 그런데 이들이 불황으로 야기된 급유핍박을 구실로 대금 결제기간을 종래 30日 期限에서 1923년 1월 1일을 기하여 20日로 단축, 일방적으로 한국인 포목상들에게 통보하면서 비롯되었다.

경제계의 불황으로 고전하고 있던 한국인 포목상들은 이와 같은 日商들의 횡포를 시정해줄 것을 몇차례 건의하였으나 日商들은 한국상인들의 이러한 요구를 번번히 묵살하였다. 차재에 安州邑內의 한국인 면포소매상 70여인은 자기들의 요구를 관찰하기 위하여 安州布木商組合을 결성하는 한편 1개월 이상 日貨排斥運動을 전개하였는데 당시 동 조합에서 제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합원은 안주에 있는 (일본인)수입상과 거래를 끊을 것.

둘째, 본 조합원은 조합 가맹금으로 10圓씩 적립하고 맹서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조합에서 제명하고 거래를 끊을 것.

셋째, 安州仲介組合에 통고하여 輸入商組合 物品은 본 조합에서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증개차 말 것.

安州布木商組合의 통지를 접한 安州仲介組合에서는 組合員 會議를 개최한 후 포목상조합의 요구수렴 여부를 토의하였다. 그간 증개조합원들은 일본 수입상들의 회유와 경찰을 동원한 협박 등 방해공작에 시달렸다. 그러나 끝내 布木商組合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후 곧 행동을 개시하여 이후부터 일본인 수입상들이 공급하는 물품은 일체 증개할 것을 거부하였다.

한편 안주포목상조합에서는 일본인 수입상들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대신 외국으로부터 면직물을 직수입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출자, 별도로 자본금 15萬圓의 회사설립을 기도하였는데 이러한 소식이 당시 언론을 통하여 방방곡곡에 알려지자 큰 호응을 얻었다<sup>52)</sup>.

日貨排斥運動이 장기화하고 安州布木商들의 회사설립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하자 이번에는 일본 수입상들이 다급해졌다. 일본 수입상들은 직·간접으로 안주포목상조합과의 타협을 모색하였으나 타협은 번번히 실패하였다. 사소한 사건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당시 安州警察署에서는 안주포목상 조합원의 회의석상에 공공연히 警官을 파견하여 조합원들의 언행을 감시하기도 하였는데 그 와중에서 회의 도중 강경한 발언을 하던 張子元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였다<sup>53)</sup>.

52) 東亞日報, 1923年 2月 5日字

53) 東亞日報, 1923年 2月 5日字

이와 같은 배경으로 1923년 4월 10일에 안주지방의 유지인 金漢植, 洪禹疇가 중심이 되어 자본금 10萬圓의 安州貿易이 설립되었는데 동년 3월 25일 창립총회에서 취체역에는 金漢植 등 5인이, 감사역에는 李明權, 金基漢 등이 선출되었다<sup>54)</sup>. 그 후 안주지방 포목계의 백전노장인 金漢植가 사장을 맡고<sup>55)</sup> 안주면 建仁里에서 오랜 기간동안 포목상을 경영해온 文用奎가 취체역을 맡는 등<sup>56)</sup> 동시에 안주지방의 포목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이후부터 安州貿易은 외국으로부터 면포 등을 직접 수입하여 안주읍내에 있는 한국인 포목상들에 면포 등을 공급하며 일본인 수입상들의 안주상권 침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안주무역 설립 후 일본인 수입상의 동향과 安州貿易의 활동에 대해서는 더이상 기록이 없어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안주무역은 태평양전쟁중인 1941년에도 존속한 것으로 보아<sup>57)</sup> 안주의 포목상인들은 동시에 통해 일본 상인자본의 안주지역 침투를 방어하며 이부문에서 민족경제를 온존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보듯 안주무역은 이시기에 출현한 여타 기업들과는 다른 배경과 경로를 통하여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시기 면산업에 새롭게 참여한 민족계 기업들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V. 結 論

일본의 산업혁명은 1880년대 중엽 면방직공업의 기계제 공업의 성립<sup>58)</sup>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방직업의 근대화, 대규모화는 原綿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해외 판매망의 제약 등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차제에 일본은 한국을 그들의 식민지로 확보함과 함께 일본 면산업의 근대화에 필요한 면화의 자금, 해외 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한국을 그들의 原料供給地로서, 編絲布 등 면직물의 大量 需要地로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속에서 韓國 編絲布產業의 近代化가 이루어졌는데 1910년대까지의

54) 東亞日報, 1923年 4月 10日字.

55) 張在洽 編, 上계서, p. 332.

56) 東亞日報, 1920년 4월 8일자 광고.

57) 東洋經濟新報社 編,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41년 版, p. 404 참조.

58) 일본의 산업혁명 개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데 첫번째는 면방직공업 분야의 機械化 開始期(1880년대 중엽~1890년대)說(大內力 說)과 두번째는 소비재 및 생산재 부문의 산업자본 성립개시기(1880~1900년대) 설(山田盛太郎 說), 세째 사회적 생산에 있어 산업자본이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한 시기를 기준하는 설(1910~1920년대)(吉島敏雄 說) 등이 있다.

근대화 방향은 일본인 자본의 주도하에 日本 編產業과는 補完의인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즉, 일본은 한국에서 면화를 재배, 이를 수입하여 면직물을 제조한 후 다시 한국에 내다 팔았기 때문에 한국 면방직산업의 근대화는 면화재배 및 조면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면방직산업 구조는 1920년대 이후부터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구조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은 토착자본의 진출이었다. 즉, 京城紡織과 東洋染織, 松高 實業場 등이 대량 생산에 착수, 방직부문의 대량생산체계를 갖춤으로써 한국의 면방직산업은 조면, 방직부문의 기계화 및 대량생산체계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최대의 방직업체인 朝鮮紡織이 1923년부터 면사생산에 본격화하면서 국내의 면방직산업은 조면, 방직, 방직, 염색 등 일관생산체계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1920년대 민족계 자본의 면방직산업에 대한 진출은 그간 왜곡된 면산업구조를 바로 잡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무렵 한국 면방직산업의 근대화의 중심축은 포목상 등 상인자본이었다. 이들은 일본인을 중심으로한 면방직업의 근대화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종래 판매기능에서 벗어나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등 사업영역을 넓히면서 근대적인 산업자본으로 전환, 부르조아계층으로 성장한다.

또한 安州貿易과 鐵路商人들의 예에서 보드시 한국인 면업계 자본은 일본 상업자본과 대립, 경쟁하면서 민족상권을 확고히 지키기도 하였다. 더구나 3.1운동 직후 전국규모로 전개된 물산장려운동에 張斗鉉, 金德昌, 金潤洙 등이 조선 실업계의 대표로서 이운동을 주도하는 등 이부문에서 민족성향이 강하게 들어난다.

한국인 면업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하에서도 나름대로 민족경제를 지키고자한 저변에는 첫째, 3.1운동으로 촉발된 민족의식의 고취와 이어 전국적으로 전개된 물산장려운동의 영향, 둘째, 일본 상인들의 상권침탈에 대항, 그들의 생존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발로 등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920년대는 일제의 전통치기간을 거쳐 민족경제 건설운동이 가장 뚜렷히 나타난 시기였는데 그러한 조짐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부문이 면방직 및 상업부문이었다. 그와중에서 면방직업의 근대화는 종래 일본 면산업과의 보완적인 발전관계에서 경쟁적인 발전관계로, 불균형성장에서 균형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 Characters of the Native Capitals in the Korean Cotton Industry Under the Colonial Period(2)

Lee, Han-Koo\*

### Abstract

Korean cotton industry was influenced by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Japanese cotton industry under the Japanese rule. At that time the most important issues of the Japanese cotton industrialization were export expansion of the cotton products and stable supply of raw materials, for example cotton. Therefore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Korean cotton industry was dependent on the modernized Japanese cotton industry.

The Korean cotton industry grew up in unequilibrium type. And the Korean cotton industry was developing into the compensating pattern to the Japanese cotton industry until 1919.

But this pattern was changed after 1920. Causes of the changing pattern were the establishment of Japanese modern cotton firms and the massive inflows of the native capitals on the Korean cotton industry between the the decade of 1920s. These factors contributed to the equilibrium growth of the Korean cotton industry.

The leading group of the cotton industrialization was the native merchants. The native merchants grew up the entrepreneurial class by the business activity. And became the burgeoise. Some of the native capitals developed as the anti-colonial capitals, capitals, for example, Anju trading company and Chong-ro's drapery merchants.

The 1920s was the most important periods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Korean cotton industry.

Key-Words : native capital in korea, industrialization of the Korean cotton industry

\* Professor of Suwon University

# 해방이후 귀속재산의 변동에 관한 연구 —면방직공업부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Vested Property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徐文錫\*

### 目 次

I. 머리말	III. 귀속면방직설비의 변동효과 분석
II. 귀속면방직설비의 상황과 변동	1. 방직부문
1. 제1기 - 해방 이후 미군정기	2. 직포부문
2. 제2기 -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기	IV. 맷음말
3. 제3기 - 한국전쟁 이후 1961년	

### I. 머리말

해방 이후 1960년대 이전까지의 한국경제에 대한 연구는 60년대 이후 고도성장과정의 기반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내의 이 시기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들은 적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해방 이후 소위 '식민사학'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면서 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나 일제의 침략과 수탈에 대항하는 민족의 주체적 독립투쟁이라는 측면에 연구의 초점이 놓여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해방 이후 한반도에 남아있었던 일제의 경제적 유산에 대한 깊이 있는 경제적 측면의 연구는 미흡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된지 반세기나 지난 지금은 본격적인 연구를 가로막았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사라짐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연구가 가능한 시점에 와 있으며, 특히 당시의 관계자들과 구체적 자료들이 일부라도 남아있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보다 진척되어야 한다고 본다.

\* 檀國大學校 經濟學科 講師(經濟學博士), seoms@chollian.net.

한편, 국내의 이러한 연구경향과는 대조적으로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일제하의 소위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고도경제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기반이 형성되었다는 논리가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시각은 국내의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식민지근대화논쟁'에서 한 축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일제의 유산으로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 존재하면서 일정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歸屬財產<sup>1)</sup>**의 변동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귀속재산의 기여나 역할을 파악하여 일제의 한반도지배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평가를 내리기 위한 새로운 試論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귀속재산 중에서도 특히 규모면에서 가장 커서 대표적인 귀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면방직공장의 설비를 紡機와 織機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연구의 대상시기는 해방 이후부터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로 대일교류가 재개되면서 귀속재산의 성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1961년전까지의 시기로 한정한다.

제Ⅰ장의 머리말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해방 이후 1961년까지를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귀속 면방직설비의 상황과 변동과정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귀속설비의 역할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新設備와 舊設備의 대체에 따른 효과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결론을 맺는다.

## II. 해방 이후 귀속면방직 설비의 상황과 변동

귀속면방직 설비의 변동상황은 다음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해방 이후 미군정기로 이 시기는 해방 이후의 혼란속에서 설비의 손실과 미군정의 현상유지적 관리정책이 맞물려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일부 손실을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던 시기였다. 두 번째 시기는 정부수립 후 한국전쟁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각 공장들이 설비를 정비하여 해방 이전 수준으로 급격하게 설비가 증가하다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설비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는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한국전쟁이후 1961년까지의 시기로 전후복구사업으로 인해 해방 이후 최초로 신규 면방직설비가 도입되는 한편, 罷災設備의 재생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급격한 설비의 증설과 구설비의 개체 등이 일어났다. 이

1) '歸屬財產'은 일본인 소유재산이 해방 이후 미군정에게 소위 '敵產'으로 처리된 후 한국정부 수립 이후에 정부에 귀속되면서 '歸屬財產'으로 관리되다가 민간에게 拂下되었던 資產이다. 그러나 일본인 소유기업체로 판정되어서 적산기업체로 된 기업체들이 완전히 일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는 점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서문석, 「귀속 면방직공장의 설립과 변화유형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제 16집, 1997, 259~260면 참조).

장에서는 각 시기별로 그 변동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다.

### 1. 제 1기-해방 이후 미군정기

1945년 8월 당시 우리나라 면방직설비의 상황은 일제시기 면방직설비의 최종적인 결산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해방 당시 조선에는 조선인 소유의 2개 공장(京城紡織, 松高實業)과 일본인 소유의 12개 공장 등 모두 14개의 면방직공장이 있었다<sup>2)</sup>.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실태가 파악된 면방직공장들의 설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解放當詩의 工場別 施設狀況表

工場別	紡績機(錘)			織布機(臺)		
	設置施設	未設置施設	總設備中各工場設備의比重(%)	設置施設	未設置施設	總設備中各工場設備의比重(%)
郡是紡績(大邱)	19,928	15,672	10.5	0	408	4.2
大日本紡(京城)	0	0	0.0	417	0	4.3
大和紡績(倉洞)	0	0	0.0	150	0	1.5
東洋紡績(京城)	45,328	0	13.4	1,440	231	17.3
(仁川)	35,088	0	10.5	1,292	0	13.4
朝鮮紡績(釜山)	40,000	10,304	14.9	1,264	49	13.6
朝鮮棉花(木浦)	0	0	0.0	86	0	0.8
朝鮮製麻(仁川)	4,480	0	1.3	0	0	0.0
鐘淵紡績(光州)	35,104	3,264	11.3	1,440	70	15.7
(京城)	48,320	1,400	14.7	1,525	0	15.8
所屬不明確	0	48,224	8.9	0	211	10.6
小計	228,248	78,864	91.0	7,614	969	89.3
京城紡績(京城)	25,600	4,600	8.9	896	0	9.3
松高實業(開城)	0	0	0.0	130	0	1.3
小計	25,600	4,600	8.9	1,026	0	10.6
合計	253,848	83,464	100.0	8,640	969	100.0
總合計	337,312		100.0	9,609		100.0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記念誌」, 1957, I-12~13면에서 작성.

주 : (1) 본 표에서 미설치시설이라 함은 설치중에 있는 설비를 포함함.

(2) 이외에도 吳羽紡績 大田工場, 朝鮮紡績 大邱分工場, 朝鮮麻紡績 全州工場, 鐘淵紡績 春川工場의 統計는 원 자료에 빠져 있음.

(3) 京城紡績과 松高實業은 조선인 소유공장이므로 편집과정에서 분리하였으며 소속이 불명확한 설비는 일본인 소유로 간주하였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37,312대의 紡機 중에서 91%에 해당하는 307,112대가 귀속 면방직공장에서 보유했던 紡機였으며, 총 9,609대의 織機중에서 89.3%에 해당하는 8,583 대가 귀속면방직공장에서 보유했던 織機<sup>3)</sup>로 나타나 있다. 반면에 미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2) 면방직공장들의 명칭은 미군정기와 정부수립과정에서 관리방침의 변화, 복하 등으로 지속적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론되는 시점에서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전체적인 자료는 1961년의 공장명을 쓰기로 한다.

서 일제가 일본으로부터 疏開해 온 설비들 중에는 이미 부설예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속이 밝혀져 있던 설비들도 있었지만, 이송중인 설비들은 역근처에 약적되어 있어서 소속이 불명확했던 것도 존재하였다<sup>4)</sup>.

해방 후의 혼란으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였던 각 공장들은 1946년이 되면서 거의 정상적인 조업을 시작하였다. 각 공장들은 기존에 설치된 설비들을 정비하고, 미설치된 설비들은 설치하였는데 일본인 기술자들이 철수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정비에 필요한 각종 機料品조차 부족한 상태여서 정비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 1) 紡績設備

1947년 말에는 해방 당시 규모의 약 15%정도 되는 4만주 정도를 정비함으로써 1947년 말에는 실제로 설치된 방기가 약 30만주에 가까웠다. 당시의 설비들은 전부 일제하의 적산설비였으며 미군정이 도입해준 機料品이 정비에 도움이 되었다. 이 시기까지 각 工場別 紡機의 정비상황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방 후 일부 설비들은 일본기술자들의 귀국과 機料品의 공급 중단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정치적 혼란과 공장내부에서의 노사간의 대립 등으로 파괴되었다. 이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피해는 大邱紡織 大邱工場(舊 郡是紡績 大邱工場)의 설비피해를

〈표 2〉 年別 紡績既存設備(未設置設備包含) 整備狀況表 I

日帝時代 工場名	1950年 韓國戰爭時의 工場名	1945年 8·15時 設備(臺)	再整備進階狀況		1948年末 設備(臺)
			1947年 整備臺數	1948年 整備臺數	
鐵淵紡績(光州)	全南紡織(光州)	35,104	3,264	0	38,368
鐵淵紡績(京城)	高麗紡織(永登浦)	48,320	1,400	0	49,720
東洋紡績(仁川)	東洋紡績(仁川)	35,088	0	0	35,088
東洋紡績(京城)	第一紡績(永登浦)	45,328	0	0	45,328
朝鮮紡織(釜山)	朝鮮紡織(釜山)	40,000	10,304	0	50,304
吳羽紡績(大田)	大田紡織(大田)	0	5,376	5,336	10,712
大日本紡績(京城)	大韓紡織(永登浦)	0	8,190	10	8,200
郡是紡績(大邱)	大邱紡織(大邱)	19,928	3,200	6,800	10,000
鐵淵紡績(春川)	高麗紡織(春川)	0	5,136	0	5,136
帝國製麻(仁川)	朝鮮製麻(仁川)	4,480	0	0	4,480
合 計		228,248	36,870	12,146	257,336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I-13면에서 편집재작성.

- 3) 이 자료의 본문에는 미설치 직기가 435대로 표시되어 〈표 3〉보다 534대가 적은 9,075臺의 직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p. I-12).
- 4) 위의 책, 5면 참조; 실제로 이 때의 소개설비들이 영동포 역 주변에 약적되어 있었는데 이 중 일부를 김성곤이 불하받아 금성방직을 설립하였다(성곡전기간행위원회, 「별일없제—省谷 金成坤先生逸話集」, 1985; 황명수, 「省谷과 金星紡織」, 「經營史學」第2輯, 經營史學會, 1987).

들 수 있다. 이 공장에서는 해방 당시 보유하고 있던 19,928추의 방적기가 해방 직후 전소된 뒤 1947년에는 3,200추, 1948년에는 6,800추를 재정비하여 1948년 말에는 10,000추의 紡機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해방 당시 15,672추의 未設置紡機를 설치하고 소실된 설비를 재생한 것이다.

## 2) 織布設備

직포설비부문에서는 第一紡績 永登浦工場(舊 東洋紡績 京城工場)의 1,440대의 직기 중에서 약 20%에 이르는 300여대의 직기가 감소하였다.

방적부문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설치되지 않았던 직기들이 설치되었는데 全南紡織公社 光州工場(舊 鐘淵紡績 光州工場)에서 70臺, 大邱紡績公社(舊 郡是紡績 大邱工場)에서 408臺, 高麗紡織公社 春川工場(舊 鐘淵紡績 春川工場)에서 200臺를 설치하였다. 이 외에 大韓綿業公社 木浦工場(舊 朝鮮棉花 木浦工場)에서 72臺의 織機가 증가하였는데 이 설비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未設置織機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의 구체적인 정비상황은 <표 3>과 같다.

<표 3> 年別 織布既存設備(未設置設備包含) 整備狀況表 I

日帝時代 工場名	1950年 韓國戰爭直前의 工場名	1945年 8·15時 設備(臺)	再整備進階狀況		1948年末 設備(臺)
			1947年 整備臺數	1948年 整備臺數	
鐘淵紡績(光州)	全南紡織(光州)	1,440	70	0	1,510
鐘淵紡績(京城)	高麗紡織(永登浦)	1,525	0	0	1,525
東洋紡績(仁川)	東洋紡織(仁川)	1,292	-12	0	1,280
東洋紡績(京城)	第一紡績(永登浦)	1,440	-300	0	1,140
朝鮮紡織(釜山)	朝鮮紡織(釜山)	1,264	-6	55	1,258
朝鮮大和紡績(倉洞)	大亞紡織(倉洞)	150	-2	0	148
朝鮮棉花(木浦)	大韓綿業(木浦)	86	72	0	158
大日本紡績(京城)	大韓紡織(永登浦)	417	-4	0	413
郡是紡績(大邱)	大邱紡織(大邱)	0	408	-408	0
鐘淵紡績(春川)	高麗紡織(春川)	0	200	-200	0
合 計		7,614	426	-553	7,432

자료 : 大韓紡織協會,『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I-13~14면에서 편집재작성.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7년에는 전체적으로 426대의 직기의 증설이 있었지만 1948년에는 오히려 553대의 직기가 감소하였다. 1947년 제일방적(영등포)의 300대의 감소는 해방 이후 과도기의 혼란속에서 파손되어 철거된 것이며, 1948년에 감소된 550여대 중에 대구방직(대구)의 400여대는 燃失되어 철거된 것이고, 고려방직(춘천)의 200대는 설치대체관계로 철거된 것이다.

## 2. 제 2기 –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기

해방 이후 면방직공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원료와 전력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였지만 업계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국전쟁 직전까지 설비의 정비를 계속하였다.

당시 새로운 설비의 도입은 없었으며 일제하에서 조선에 들어왔던 설비 중에 이미 설치되었던 설비는 정비되었고 미설치설비는 설치되었다. 한편, 각 공장으로 이송 도중 역근처에 쌓여있었던 설비는 불하되어 신규공장의 설비가 되었다.

### 1) 紡織設備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기까지 紡機의 설비 추수가 크게 변했던 공장은 大田紡織(大田), 大韓紡織(永登浦), 高麗紡織(春川), 大邱紡織(大邱), 金星紡織(安養－新設), 三護方織(大邱－新設) 등이었다. 이 중에서 大邱紡織(大邱)을 제외하면 해방당시에는 실제 운영 중이거나 보유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없던 공장들이었다. 그러나 大邱紡織, 高麗紡織(春川) 등은 이미 해방 이전에 설립되었던 공장으로 미설치설비를 설치하였으며, 大田紡織, 大韓紡織(永登浦)<sup>5)</sup> 등은 공장이 해방 이전에 설립되기는 하였지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시기에 실제로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 외에 金星紡織의 경우에는 영등포역과 안양역 주변에 아직되어 있던 紡機를 불하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三護方織은 대구지역의 귀속설비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부의 소개설비를 통해 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두 공장은 해방 이후에 새롭게 설립된 공장들이다. 그리고 高麗紡織(春川)은 이미 한국전쟁 이전에 紡機가 해방 당시 수준의 절반이하로 감소하였다<sup>6)</sup>.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 각 공장별 설비의 정비상황은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수립 이전까지 활발하던 정비작업은 이 시기에 들어오면서 다소 둔화되었다. 그 원인은 정부수립 이전까지는 일제시대에 설치되지 못했던 설비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활발한 설비증설이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그러한 증설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던 것이다.

5) 이 공장은 大日本紡織 京城工場이 1946년 6월에 大韓紡織公社로 개칭된 것이며, 郡是紡織 大邱工場이 1955년 8월에 개칭된 大韓紡織株式會社와는 다른 회사이다(서문석, 앞의 논문, 267면 〈표 4〉 참조).

6) 이 설비의 감소는 ‘赤徒의 放火로 全紡織施設을 燥失’한 것이 그 원인이다(大韓紡織協會, 「協會創立十周年記念誌」, 1957, II-107면).

&lt;표 4&gt;

年別 紡織既存設備(未設置設備包含) 整備狀況表 II

日帝時代 工場名	1950年 韓國戰爭時 工場名	1948年末 設備(錘)	再整備進階狀況		1950年 6·25時 設備(錘)
			1949 年末(錘)	1950 年末(錘)	
鐘淵紡績(光州)	全南紡織(光州)	38,368	0	0	38,368
鐘淵紡績(京城)	高麗紡織(永登浦)	49,720	0	0	49,720
東洋紡績(仁川)	東洋紡織(仁川)	35,088	0	0	35,088
東洋紡績(京城)	第一紡績(永登浦)	45,328	0	0	45,328
朝鮮紡織(釜山)	朝鮮紡織(釜山)	50,304	0	0	50,304
吳羽紡績(大田)	大田紡織(大田)	10,712	5,136	0	15,848
大日本紡績(京城)	大韓紡織(永登浦)	8,200	456	2,344	11,000
郡是紡績(大邱)	大邱紡織(大邱)	10,000	2,000	8,000	20,000
鐘淵紡績(春川)	高麗紡織(春川)	5,136	428	0	2,140 <sup>(*)</sup>
帝國製麻(仁川)	朝鮮製麻(仁川)	4,480	0	0	4,480
朝鮮麻紡織(全州)	全州紡織	-	-	5,700	5,700
	金星紡織(安養)	0	8,966	1,530	10,496
	三護紡織(大邱)	0	0	3,600	3,600
合 計		257,336	16,986	15,474	292,072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 十周年 記念誌」, 1957, I-13면, II부에서 편집재작성.

주 : (1) 조선방직(부산)은 1948년중에 720주의 「콘덴서」 설비를 별도정비하였다.

(2) 고려방직(춘천)은 1950년 화재로 정비설비의 일부를 소실하였다.

&lt;표 5&gt;

年別 織布既存設備(未設置設備包含) 整備狀況表 II

日帝時代 工場名	工場名 (1950년 당시)	1948年末 設備(臺)	再整備進階狀況		1950年 6·25時 設備
			1949年末 (臺)	1950年末 (臺)	
鐘淵紡績(光州)	全南紡織(光州)	1,510	0	0	1,510
鐘淵紡績(京城)	高麗紡織(永登浦)	1,525	0	0	1,525
東洋紡績(仁川)	東洋紡織(仁川)	1,280	0	0	1,280
東洋紡績(京城)	第一紡績(永登浦)	1,140	0	0	1,140
朝鮮紡織(釜山)	朝鮮紡織(釜山)	1,258	0	0	1,313
朝鮮大和紡績(倉洞)	大亞紡織(倉洞)	148	0	0	148
朝鮮棉花(木浦)	大韓綿業(木浦)	158	0	0	158
大日本紡績(京城)	大韓紡織(永登浦)	413	0	0	413
郡是紡績(大邱)	大邱紡織(大邱)	0	0	105	105
鐘淵紡績(春川)	高麗紡織(春川)	0	176	0	176
	金星紡織(安養)	0	50	0	50
小 計		7,432	226	105	7,818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 十周年 記念誌」, 1957, I-13~14면에서 편집재작성.

## 2) 織布設備

이 시기의 직포설비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1948년에 大邱紡織(大邱)에서 408대의 직기가 화재로 인해 감소되었으며, 이 직기는 1950년에 105대를 재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948년 고려방직 춘천공장에서 설치대체관계로 200대가 감소되었다가 이듬해 176 대의 증설이 있었다. 이것은 종연방직을 관리하던 고려방직공사가 귀속설비를 불하받으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이 공장에서는 1950년에 있었던 화재로 인해 紡機는 손실을 보았지만 織機는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49년에 금성방직에서 귀속설비를 정비하여 50 대의 직기를 증설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은 <표 5>와 같다.

## 3)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

면방직업계는 1947년에 '朝鮮綿紡織協會'를 창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설정비와 생산을 시작해 한국전쟁 직전에 紡機 316,572臺에 織機 9,075臺의 설비를 갖추어 해방 당시에 비해 각각 24.7%, 5.0%의 시설증대를 이룩하였다. 조업율도 최고의 호황기였던 1938년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었으며 생산량도 縱絲는 92.1%, 縱布는 132.7%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대규모 귀속기업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불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15개 공장 가운데 我軍地域에 있었던 조선방직 부산공장과 대구공장, 그리고 삼호방직 대구공장 등 두 회사의 세 개의 공장을 제외한 모든 기업체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는 당시 전체 공업피해의 약 70%에 해당되는 규모였다고 한다<sup>7)</sup>. 귀속 면방직 기업체들의 피해상황은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개 귀속 면방직공장들에서 292,072臺의 紡機중 195,080臺, 7,818臺의 織機중에서 5,102臺의 織機가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전체 紡機의 66%, 織機의 65%에 해당하는 피해로 국내 면방직업계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즉, 1930년대 이전에 제작되었던 노후설비들이 대부분인 이 설비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제하에 조선에 들어왔던 면방직설비의 대부분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그 원형을 상당부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와중에서 전쟁의 피해를 결정적인 계기로 하여 고려방직(춘천), 재일방직(서울), 대아방직(창동), 대한면업(목포) 등은 공장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 공장의 일부 설비들은 疏開되거나 분해되어 판매되었을지라도 원형이 복구되지는 못하였다<sup>8)</sup>.

7) 위의 책 1957, 8~9면.

8) 자세한 내용은 서문석, 「귀속 면방직공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11면, <표 III-28> 참조.

&lt;표 6&gt;

韓國 織紡業 企業體의 工場別 韓國戰爭 損害狀況

日帝時代 工場名	韓國戰爭時 工場名	紡機(錘)			織機(臺)		
		戰前 設備	被 害 設 備	被 害 率 (%)	戰前 設備	被 害 設 備	被 害 率 (%)
郡是紡績 大邱工場	朝鮮紡績 大邱工場	20,000	0	0	105	0	0
大日本紡績 京城工場	全南紡績 서울工場	11,000	11,000	100	413	413	100
東洋紡績 京城工場	第一紡績 서울工場	45,328	45,328	100	1,140	1,140	100
東洋紡績 仁川工場	東洋紡績 仁川工場	35,088	15,000	100	1,280	32	2.5
吳羽紡績 大田工場	大田紡績 大田工場	15,848	15,848	100	-	-	-
朝鮮大和紡績 倉洞工場	大亞紡績 倉洞工場	-	-	-	148	148	100
朝鮮棉花 木浦工場	大韓紡業 木浦工場	-	-	-	158	158	100
朝鮮紡績 釜山工場	朝鮮紡績 釜山工場	50,304	0	0	1,313	0	0
朝鮮麻紡織 全州工場	全州紡織 <sup>2)</sup>	5,700	2,700	47.3	-	-	-
帝國製麻 仁川工場	東洋紡績 鶴翼工場	4,480	4,480	100	-	-	-
鐘淵紡績 京城工場	高麗紡績 永登浦工場	49,720	49,720	100	1,525	1,525	100
鐘淵紡績 光州工場	全南紡績 光州工場	38,368	38,368	100	1,510	1,510	100
鐘淵紡績 春川工場	高麗紡織 春川工場	2,140	2,140	100	176	176	100
	金星紡織 安養工場	10,496	10,496	100	50	0	0
	三謙紡績 大邱工場	3,600	0	0	-	-	-
합 계		292,072	195,080 <sup>1)</sup>	66	7,818	5,102 <sup>1)</sup>	65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I-14면, II부에서 작성.

주 : 1) 자료내에 서로 다른 통계수치가 존재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수치를 이용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2) 全州紡織의 경우는 II부 공장별 현황을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일부시설 燃失'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1954년에 다시 조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과거 방적기 설비수는 그대로 있지만 운전가능수의 수가 戰前에 3,900수에서 1,200수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가 설비의 완전한 소멸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피해는 그 원형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설비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파괴된 시설의 일부는 1950년대 내내 계속 재생되면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綿紡織工業이 당했던 심각한 피해는 오히려 전후복구과정에서 원조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면방직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 4) 휴전이전까지의 복구

전쟁이 한창 진행중이던 1951년 12월에 면방직업계는 '緊急再建計劃'을 수립하였다<sup>9)</sup>. 이 계획은 향후 실시될 장기부흥계획의 사전정지작업이라는 측면에서 전쟁의 피해를 입은 설비(罹災設備)를 재생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紡機 86,824錘와 織機 748臺를 재생하고

9)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I부 14~16면 참조.

1953년 12월 말로 종결되었다<sup>10)</sup>.

이후 長期再建計劃은 1952년 1월 31일 면방직공업부 흥의 기본지표라고 할 수 있는 '綿紡工業復興 메모랜덤'<sup>11)</sup>이 발표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메모랜덤'(Memorandum)은 정부보유 23만달러로 구매한 機料品과 UNCACK에서 계획하고 있던 583,582달러로 機料品을 보충하여 당시 운전중인 7개의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77,800추의 紡機를 166,000추로, 2,061대의 織機를 필요에 따라 2,550대로 늘려 조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sup>12)</sup>.

한편 이 시기에는 編織需給이 충족될 때까지 직기부 흥 착수가 금지되었고 부흥건설의 우선권이 軍需要位置(남에서 북으로)와 資本投資能力 등에 의해 부여되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韓國綿紡織工業 復興對策要綱'<sup>13)</sup>이 1952년 12월에 발표되었는데, 이 요강은 1953년부터 5년간 해방 이후 최초로 紡機 398,000추, 織機 8,522대의 新規設備를 도입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sup>14)</sup>.

긴급재건계획에 따른 여러 지원책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1953년까지 총 86,824추의 방기와 748대의 직기를 재건하였지만 이 시기까지 새로운 방기와 직기의 도입은 전혀 없었다. 다만 마련된 자금으로 도입한 機料品을 사용하여 기존 설비를 재건한 것이었다.

### 3. 제 3기 – 한국전쟁 이후 1961년

한국전쟁의 휴전으로 인해 면방직업계는 본격적인 복구를 시작하였다. 당시의 복구는 기존 설비의 정비와 재생뿐만이 아니라 정부나 원조당국의 자금으로 신규설비를 도입하여 설비의 비약적인 증설과 현대화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 1) 紡績設備

- 10) 이 계획에서는 1949년 ECA자금과 정부보유 23萬달러로 도입된 기재가 복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며, 소규모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들 기업에 한하여 자유판매를 허용해 주기도 하는 등 정책적 지원도 있었다.
- 11) 전문은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記念誌」, III부 34~37면을 참조 바람.
- 12) 이 계획은 기존공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 이유는 기존공장들이 기술자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공장들의 규모를 크게 할수록 규모의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였다. 또한 전쟁피해를 입은 공장이라고 해도 일부건물은 남아있었으며, 파괴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완전히 파손된 것은 아니었으며 발전기나 기타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회복이 더욱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었다.
- 13) 이 요강의全文은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記念誌」, III부 37~39면을 참조 바람.
- 14) 이 요강의 주요한 내용은 ①도입설비의 소화 대상, ②도입설비의 배분순위와 조건, ③적정규모의 한계, ④기업참가의 기회조성 등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명시된 조치들은 ⑤귀속기업체의 불하, ⑥긴급재건계획의 급속완수, ⑦자금조달, ⑧국산면의 중수대책, ⑨면방직공업부 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⑩기본적 조사, ⑪稅의 경감 또는 면제 등이었다.

대규모 설비도입은 UNKRA와 정부보유자금을 통하여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먼저 UNKRA자금 280萬달러를 배정받아 이것으로 55,440추의 방적기를 도입하여 全南紡織, 大田紡織, 金星紡織에 각각 18,480추를 균등배분하였는데 그 설비 중 混打棉機는 미국에서, 기타 설비는 영국에서 도입하였다. 또한 정부보유 591만달러로 168,200추의 방적기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이 설비의 일부가 1953년 12월에 부산항에 처음 도착하였다. 이 설비들은 대구 메리아쓰에 紡機 10,000추가 배정되었는데 이것이 해방 이후 최초로 도입된 신규설비였다.

1954년에는 UNKRA자금에 의한 55,400추와 政府保有달러에 의한 109,568추의 신규 방적기가 도입되어 모두 165,008추가 설치되어 대폭적으로 증설이 이루어졌다<sup>15)</sup>. 이 설비와 더불어 8,472추의 이재설비가 증설되어 총 173,440추의 방기가 증설되었는데, 이로써 1954년말에는 모두 350,872추의 紡機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모는 한국전쟁 이전과 비교할 때 약 12%, 해방 당시와 비교하면 약 38%가 증가된 것이었다.

1955년에는 물가가 급등과 함께 면직물의 수요가 저조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설비의 증설이 활발하지 못했다. 三纏紡織의 신규설비 3,200추, 亞洲紡織의 구설비 2,000추, 京城紡織의 新規紡機 13,200추, 大東紡織의 再生紡機 800추<sup>16)</sup>, 內外紡織의 1,560추<sup>17)</sup>가 증설되어 총 19,760추가 늘어났다. 또한 이 해에는 경영난으로 인해 1만추 이하의 소규모 공장들이 폐업을 하거나 경영권을 양도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新興紡織과 東亞紡織이 폐업을 하였으며 韓永紡織과 三興紡織, 大東紡織이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그 결과 5개 회사의 24,944추의 재생방기와 17,200추의 신규방기가 각각 移設되었다.

1956년에는 東洋紡織 5,600추, 京城紡織 2,000추, 大田紡織 5,600추, 泰昌紡織 永登浦工場 50,400추의 설비를 늘림으로써 총 63,600추의 증설이 있었다<sup>18)</sup>.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泰昌紡織이 大東紡織의 9,600추까지 더해서 총 60,000추의 최대설비를 갖춘 공장이 되었다는 것이 특기할만한 일이다<sup>19)</sup>.

15) 이 설비들은 모두 7개 공장에 99,104추의 신규시설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6개 기존공장에 65,904추의 증설을 가능하게 하였다(서문석, 「귀속 면방직기업의 변천에 관한 연구」, 117면 참조).

16) 후에 대동방적이 1956년 기업통합에 의해 태창방직에 그 설비가 인수될 때 9,600추 전체가 재생설비였음이 드러났으므로 1953년부터 가지고 있던 설비 8,800추와 1955년에 증설된 800추도 역시 재생설비였다(大韓紡織協會, 「鐵雄年報」, 1956, 國內動向編, 4면 참조).

17) 여기에는 內外紡績에 의한 買受移設로 新興紡織이 보유하고 있던 4,800추 중에서 구설비 3,600추와 신설비 1,200추가 포함되어 있다(위의 책, 4~7면 참조).

18) 그러나 면방직공장들의 이러한 발전속에서는 사용연한을 훨씬 넘은 노후설비나 재생설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 188,792추의 방적기는 대체가 시급한 것으로 판명되었다(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記念誌」, 1957, I-20면 참조).

이러한 상황속에서 1956년 10월에 '합동경제위원회'(CEB : Combined Economic Board)는 57년 ICA산업용 기계자금에 의한 면방직설비 도입에 대하여 개체보수용 또는 특별공정시설로 한정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면방직업계의 설비도입에 제한조치가 가해져 대규모 방직설비의 증설은 마감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7년 아주방직의 18,336추는 1월 중에, 태평방직의 10,000추는 3월 중에 금성방직에 설치되어 금성방직은 58,416추의 대규모 공장으로 발전하였다<sup>20)</sup>

동양방직은 4,320추의 신규설비를 증설하였고, 대한방직 수원공장에서는 2,000추의 신규설비를 증설함으로써 1957년에는 총 6,320추의 방기가 증설되었다. 이 해에는 업계의 불황타개책으로 「스프」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기간설비의 증설이 일단락됨으로써 조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부대시설의 보충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가공설비를 갖추는데 주력하였다.

1958년에는 풍한산업 대전공장에서 10,240추의 최신방직기를 신설하고 3월부터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전남방직에서 10,000추, 대한방직 수원공장에서 8,000추를 증설하여 총 28,420추의 설비의 증설이 있었다. 이 중 전남방직의 10,000추와 대한방직의 10,000추(1957년 2,000추와 1958년 8,000추), 동양방직의 4,320추(1957년) 등 총 24,320추는 기존의 노후설비의 대체를 목적으로 신규방기를 도입한 것이었다<sup>21)</sup>.

1959년에는 신규설비의 증설이 전혀 없었으며 노후설비의 改替를 위한 機料品, 부속품을 비롯한 가공설비가 도입되었다. 그 결과 罷災紡績機 7,840추의 증설만이 있었다. 삼호방직의 7,200추, 금성방직의 288추, 한영방직의 352추는 모두 이재설비가 복구증설된 것이었다<sup>22)</sup>.

1960년에는 조선방직에서 면방직설비 50,304추 중에서 5,200추를 梳毛紡績機로 전환하여

19)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高麗紡織을 정부보유 250萬달러로 紡績機 50,000疊와 織機 1,500臺의 최신설비를 보유하는 공장으로 재건하려고 하였으나 1955년 방침이 변경되어 이 공장을 一般公賣로 처분하였다. 같은 해 3월에 정부보유 550萬달러로 紡績機 50,000疊와 織機 1,200臺, 精梳棉機一式, 建築資材, 附帶施設 一切를 일본으로부터 도입하여 공장부지를 물색하다가 태창방직과 현존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장건설을 시작함으로써 고려방직의 재건계획은 폐기되었다(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1956, 國內動向編, 8~9면 참조 ; 大韓紡織協會, 위의 책, 1957, I-22면 참조).

20)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1958, 國內動向編, 3면 참조.

21) 1958년부터는 신설비로 대체한 후의 구설비 문제가 면방직업계의 최대현안이 되었다. 이것은 대체된 구설비가 능률면에서는 훨씬 떨어지지만 개체나 보수를 통해 일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이유가 그 원인이 되었다. 설비의 폐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원면의 배분 등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구설비를 폐기하는 조건하에 신설비를 도입하였다(大韓紡織協會, 「紡協二十年史」, 1967年, 144면 참조).

22)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1960, 國內動向編, 4면 참조 ; 이 시기의 ICA자금은 노후설비를 개체하도록 한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여기에서 나온 노후정방기는 총 41,664추였다(같은 책, 5면 참조).

&lt;표 7&gt;

解放當詩의 工場別 施設狀況表

(單位 : 鍾)

工場名	1953年 期未設備	年度別 増設内訳										1961年 期末設備	
		1954年		1955年		1956年		1957年		1958年			
		舊設備	新設備	舊設備	新設備	舊設備	新設備	舊設備	新設備	舊設備	新設備		
韓聯紡織 (釜山)	50,304										5,200	45,104	
人韓紡織 (大邱)	20,768			11,808	4,608							25,376	
三護紡織 (大邱)	12,976	12,976	15,424		3,220	3,200				7,200	7,200	32,576	
全南紡織 (光州)	17,040	17,040	4,000	26,280	22,580				10,000	10,000		31,160	
東洋紡織 (仁川)	29,712	29,712	384				5,600	5,600	4,320	4,320		20,640	
亞洲紡織 (馬山)	5,536	5,536	10,800	10,800	2,000	2,000			-18,335	7,536		9,320	
大東紡織 (水登浦)	8,800	8,800			800	800	9,600	9,600					
鶴永紡織 (水登浦)	5,488	5,488	448	448							352	6,288	
新興紡織 (大邱)			4,800	3,600	-4,800	3,600							
內外紡織 (大邱)	10,000	10,000			1,200	1,200						11,200	
金星紡織 (安養)			30,080	30,080				28,335	7,536	288	288	58,704	
大田紡織 (大田)			23,056	23,056			5,600	5,600				29,456	
興統紡織 (仁川)			10,358	10,358								10,358	
太平紡織 (安養)			10,000	10,000				-10,000	10,000				
泰昌紡織 (水登浦)						50,400	9,600				-1,784	7,816	
京城紡織 (水登浦)	12,200	12,200	13,200	13,200	2,000	2,000					4,000	40,600	
大韓紡織 (水原)			10,000	10,000				2,000	2,000(?)	8,000	8,000		20,000
國安紡織 (天安)			10,000	10,000								10,000	
昌德產業 (大田)									10,240	10,240		10,240	
日新紡織 (光州)											31,160	31,160	
合計	177,432	167,432	173,440	8,432	19,760	3,260	63,600	6,320	28,240	7,840	-6,984	22,928	
	10,000	10,000	155,872	165,008	137,052	16,400	434,222	61,000	(440,552)	6,220	(465,792)	(462,648)	
									28,240	(476,632)	(462,576)	23,928	
												312,886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I-22~23面 ;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各年度, 國內動向編, 會員工場編 ; 大韓紡織協會, 「紡協三十年史」, 1977에서 작성.

주 : 1) 舊設備는 불하받았던 藏產設備인데,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았던 설비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災災設備, 再生設備가 포함되어 있다.

2) 1953년 말 東亞紡織의 4,608주는 大韓紡織(大邱工場)에, 大東紡織 8,800주는 泰昌紡織의 增鍾에 각각 포함되어 있다.

3) 1955년 新興紡織의 4,800주는 腹葉으로 인해 內外紡織에 포함되었음.

4) 1955년 東亞紡織의 11,808주는 腹葉으로 인해 大韓紡織(大邱工場)의 增鍾 11,808주에, 大東紡織 9,600주는 泰昌紡織에 각각 포함되었으며 이는 企業統合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5) 표의 고딕부분은 隸屬設備 또는 무관한 설비를 보유한 회사들이다.

면방직설비 5,200추가 감소되었으며, 태창방직에서는 60,000추 중에서 罷災紡績機 1,784추가 실제로 사용불가능하여 폐기됨으로써 업계전체에 총 6,984추의 설비감소가 있었다<sup>23)</sup>.

1961년에는 전남방직이 8,400추를 신설하고 日新紡織과 분할됨으로써 두 회사가 각각 31,160추의 설비를 갖게 되었다. 또한 경성방직이 4,000추의 방기를 중설하였고, 풍한방직이 10,528추를 중설함으로써 이 해에 총 22,928추의 중설이 있었다.

이 시기의 설비상황을 1953년 이후 도입되기 시작한 新設備와 귀속설비인 舊設備로 구별하여 각 공장별로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4년에는 177,432추의 노후 적산설비와 비슷한 규모인 165,008추의 신규방기가 도입되었다. 이 수치는 前年度인 1953년 국내전체 설비인 177,432추에 접근하는 규모였다. 따라서 적산 노후설비의 정비와 재생을 통해서만이 설비를 보유할 수 있었던 당시의 한국 면방직업계는, 이제 전체 설비의 약 50%정도의 신규방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결과적으로 1961년에 업계전체에서 총 492,576추의 紡機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 중 新設備는 총 312,632추이고 舊設備<sup>24)</sup>는 179,944추를 보유하게 되었다.

## 2) 織布設備

이 시기에는 縱絲의 수급이 충분해질때까지 직기의 중설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紡機만을 계속 도입하였고 그로 인해 織機가 부족한 상황이 초래되자 이 시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직기의 중설이 이루어졌다.

대규모의 중설을 살펴보면 1954~1955년도 UNKRA자금 275萬달러를 직기도입자금으로 확보하고 織機 2,100대의 도입을 확정하였던 것이 처음이다. 그런데 당시 방직공업의 호황으로 이 직기를 보유하기 위한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지자 방직시설보유자에게로만 배분을 한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신규직기 2,100대의 도입은 해방 이후 최초의 일이었다. 그리고 정부보유 550만달러로 신규직기 1,200대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연한을 훨씬 넘은 노후설비나 재생설비에 대한 조사에서 신규직기 3,300대 이외의 거의 전부인 5,160대의 직기가 시급히 대체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sup>25)</sup>.

23)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1961, 國內動向 編, 5면 참조.

24) 新設備는 모두 1953년부터 해외로부터 도입된 설비이지만 舊設備는 해방 이후 敵產設備를 불하받은 것이었다. 여기에는 한국전쟁의 피해를 입었던 罷災設備 중에서 재생한 再生設備와 한국전쟁으로부터 전혀 피해를 보지 않고 敵產設備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舊設備도 있었다. 前者の 대표적인 경우가 1950년대 후반까지 罷災設備를 재생하여 再生設備로 중설을 계속하였던 全南紡織을 들 수 있으며, 後자의 대표적인 경우는 대규모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보지 않았던 朝鮮紡織 釜山工場을 들 수 있다.

25) 大韓紡織協會, 「紡協十周年記念誌」, 20~21면 참조.

&lt;표 8&gt;

年別 工場別 機械 増設 狀況

(單位:臺)

工場名	1953年 期未設備	年度別 增設内訳												1951年 期未設備			
		1954年		1955年		1956年		1957年		1958年		1959年		1960年			
		舊設備	新設備	舊設備	新設備	舊設備	新設備	舊設備	新設備	舊設備	新設備	舊設備	新設備	舊設備	新設備		
朝鮮紡織 (釜山)	1,568	1,568	55	69	69	-	-	-	-	-	-	2	2	-26	26	1,668 1,667 2	
大韓紡織 (大邱)	438	438	12	12	66	66	-	300	300	-	-	-	-	-	-	816 516 300	
全南紡織 (光州)	181	181	223	824	200	108	108	1	1	10	10	4	4	-	-	-239 239 556 236 556(?) 320	
東洋紡織 (仁川)	1,234	1,234	-	-	82	82	-	-	-	-	-	-	-	-12	12	-	1,304 1,304
三豐紡織 (大邱)	-	-	300	300	-	-	-	300	300	-	-	-	-	-328	300 28	-	272 272
興錦紡織 (仁川)	-	-	220	-	-	-	-	-	-	-	-	-	-	-	-	-	220 220
金星紡織 (安養)	-	-	224	300	100	392	200	392	525	525	50	163	163	-	-	-	1,654 324 1,330
三興紡織 (安養)	-	-	-	-	50	50	-	-	-	-	-50	-	-	-	-	-	-
泰昌紡織 (永登浦)	-	-	-	-	-	1,200	-	1,200	-	-	-	-	-	-400	400	-	800 800
京興紡織 (永登浦)	400	400	324	324	171	171	5	5	5	5	-	168	168	-	-	-	1,068 724 344
大田紡織 (大田)	-	-	-	-	-	-	-	-	600	600	-	-	-	-	-	-	600 600
内外紡織 (大邱)	-	-	-	-	-	-	-	-	300	300	-	-	-	-	-	-	300 300
日新紡織 (光州)	-	-	-	-	-	-	-	-	-	-	-	-	-	-	-	556 237 319 556 237 319	
合計	3,822	3,822	1,358	1,358	1,562	517	1,700	108	2,081	173	173	174	174	-766	338 -239 239	9,815 5,228	
	(5,180)	(5,180)	(6,742)	(6,742)	(1,045)	(8,442)	(1,502)	(10,473)	(2,081)	(10,646)	(10,820)	(10,646)	(10,820)	(10,646)	(428) (9815)		4,587

1954년에는 조선방직 부산공장 55대, 조선방직 대구공장 12대, 전남방직 223대, 경성방직 324대, 삼호방직 300대, 홍한방직 220대, 금성방직 224대가 각각 늘어서 총 1,358대의 증설이 있었는데 이 설비는 모두 재생설비였다<sup>26)</sup>.

1955년에는 조선방직 69대, 대한방직 대구공장 66대, 전남방직 824대, 동양방직 82대, 경성방직 171대, 금성방직 300대, 삼흥방직 50대가 각각 증설되어 총 1,562대의 증설이 있었는데 이 중 재생설비는 517주, 신규설비는 1,045주였다<sup>27)</sup>.

26)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1955, 國內動向 編, 3면 참조.

27)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1956, 國內動向 編, 7~10面 참조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記念誌」, 1957, Ⅲ부 會員工場 編 참조.

1956년에는 전남방직 108대, 금성방직 392대, 태창방직 1,200대의 직기가 충설되었는데 이 중 재생직기는 108대, 신규직기는 1,592대였다<sup>28)</sup>.

1957년에는 UNKRA자금 275萬달러로 1956년도부터 들여온 직기가 전부 도입됨으로써 대폭적인 증설이 있었다. 대한방직의 300대, 금성방직의 525대, 전남방직의 1대, 대전방직의 600대, 경성방직의 5대, 내외방직의 300대, 삼호방직의 300대가 증설되어 총 2,031대의 신규 직기가 확보되었다. 이 당시 삼흥방직이 보유하고 있던 직기는 회사의 통합에 의해서 금성방직으로 이전되었다.

1958년에는 UNKRA자금에 의한 직기의 도입이 1957년까지 끝났기 때문에 대규모 신규직기의 도입은 없었으며 전남방직에서 10대, 금성방직에서 163대의 직기만이 증설되었다.

1959년에는 조선방직에서 2대, 경성방직에서 168대, 전남방직에서 4대를 증설하여 총 176 대의 직기가 증설되었다.

1960년에는 조선방직에서 20대, 동양방직에서 12대, 삼호방직에서 328대의 직기가 감소하여 총 366대의 직기가 감소하였다. 이 직기들은 모두 罷災設備로 1959년말 각 공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용이 불가능하여 각 공장에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sup>29)</sup>.

1961년에는 전남방직에서 239대의 직기가 감소되어 총 1,112대의 직기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절반인 556대를 日新紡織과 분할하였고, 泰昌紡織의 400대는 1958년부터 組織用으로 전환하여 가동되었기 때문에 감소하였다. 따라서 1961년에 감소된 직기는 639대로 이것은 노후된 罷災設備였다<sup>30)</sup>.

이 시기의 설비상황을 新設備와 귀속설비인 舊設備로 구별하여 공장별로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設備臺가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1954년까지는 재생직기의 증가였지만 그 이후에는 신규설비의 증가가 設備臺의 증가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1958년 이후에는 직기의 설비대수가 소량씩 감소하였는데 이는 노후설비의 해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 III. 귀속 면방직설비변동의 효과분석

앞 장에서 분석한 각각의 시기들을 통합하여, 구체적인 統計가 작성되기 시작하였던 1947

28)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1957, 國內動向 編, 6面 참조.

29)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1961, 國內動向 編, 5面 참조.

30)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1962~1963年 合本號, 國內動向 編, 6面 참조; 罷災設備의 처분외에도 광목수요의 감퇴와 舊設備로 고급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그 원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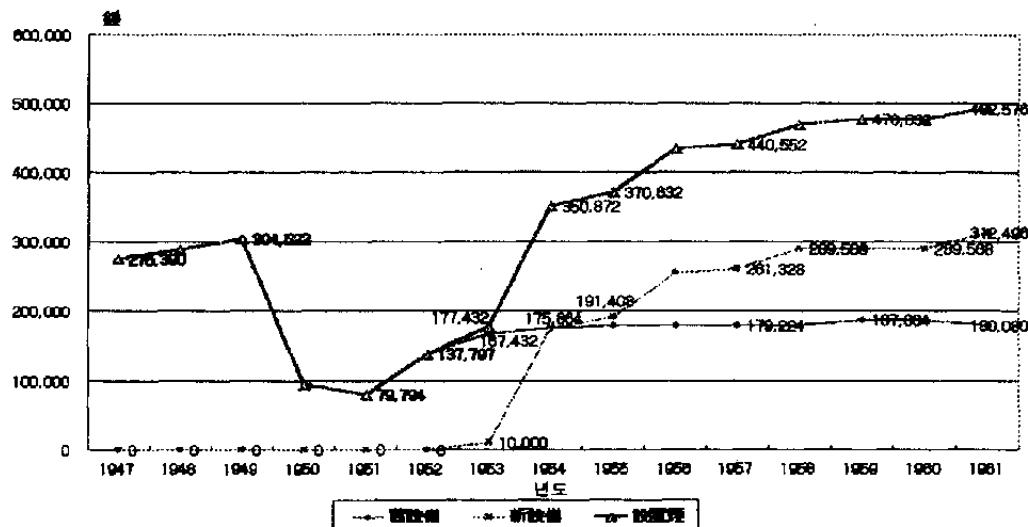
년부터 1961년까지 전체시기에 대해 설비의 구성변화에 따라 生產量, 單位當 生產量, 單位當 使用人員, 運轉率과 收率 등에 미치는 효과를 紡績部門과 織布部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1. 방적부문

방적설비 중에서 舊設備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70%정도의 설비가 감소하였는데 이후 지속적인 再生을 통하여 1950년대 중반까지 급격하게 그 수량이 증가하였다.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현상을 보이다가 1950년대 말부터 노후로 인해 해체되면서 수량이 감소되었다.

한편 新設備는 1953년 대구메리야쓰에 도입된 10,000주 의 紡機를 시작으로 정부보유자금과 원조자금으로 지속적인 증설이 있었다.

방적설비의 신·구설비간 변화추이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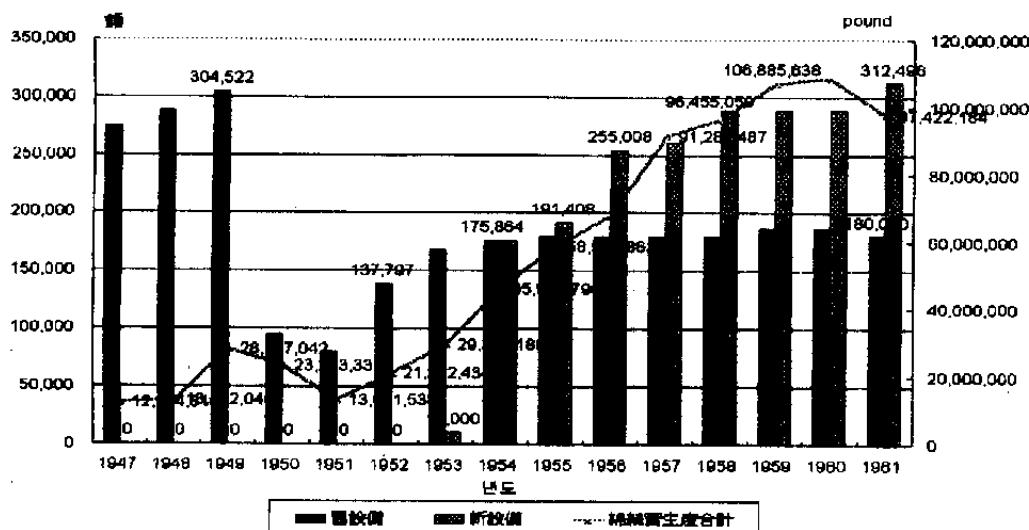


<그림 1> 紡績設備 變化推移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舊設備의 경우 1949년에 약 30만주 정도의 설비가 있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약 8만주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1952년부터 본격화된 설비의 재생 과정을 거치면서 舊設備는 1953년까지 17만여주로 급격하게 증가한 후 20만주에 육박하는 규모가 1961년까지 유지되었다.

新設備는 1957년을 제외하면 1953년부터 급격한 증설이 이루어져서 1961년에는 약 30만여주의 新規紡機를 보유하게 되어 총설비수는 약 50만주정도가 되었다.

紡機의 이러한 변화가 방적부문에서 緜絲生產量, 20'S1時間1錠量, 20'S相當使用人員, 運轉率과 收率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그림 2〉 設備構成과 縹絲實生產量變化推移

### 1) 방적설비의 변동과 縹絲實生產量과의 관계

먼저 설비의 구성변화와 縹絲實生產量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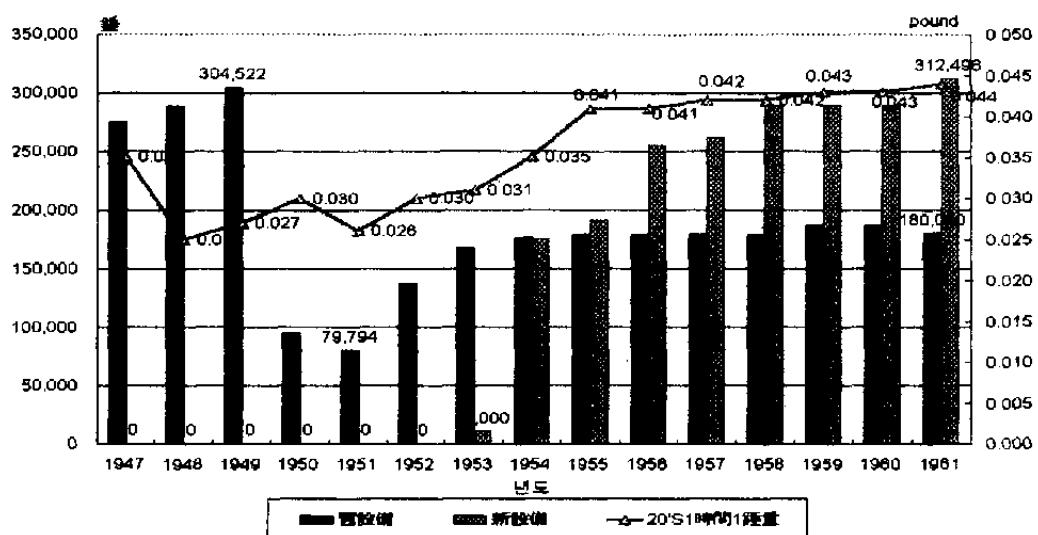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이전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舊設備은, 설비에 비해 면사생산량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1949년에는 설비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약간의 생산량 증가가 나타났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1949년 이전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舊設備은 1953년까지 설비의 재생과 정비과정을 거치면서 전쟁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가 新設備의 급격한 증설이 나타났던 1955년 이후에는 거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61년에도 舊設備 규모가 新設備의 2/3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新設備가 1954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縹絲實生產量도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新設備의 증설이 마무리되고 국내의 면제품수요가 감소되었던 1959년부터는 하락하였다. 따라서 면사생산량과 신설비의 증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 방적설비의 변동과 설비생산성과의 관계

이제 1시간당 1대의 방기가 20'S의 실을 얼마나 생산하는 가를 보여줌으로써 설비구성의 변동에 따른 방적설비의 효율성을 나타내주는 20'S1時間當1錘量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8년에 급격하게 감소하였던 20'S1時間當1錘量은 한국전



〈그림 3〉 設備構成과 20'S時間當1錘量 變化推移

쟁기간에 약간의 상승을 보였다. 이것은 전쟁기간 동안 조선방직과 삼호방직만이 가동되어 생산량이 급감하자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전쟁기간에 일본으로부터의 機料品의 도입으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했던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던 설비는 1954~1955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新設備의 도입으로 인한 것이었다. 급격한 新設備의 증가가 있었던 1956년까지 20'S時間當1錘量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것으로 보아, 20'S時間當1錘量은 신규설비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신규설비의 도입으로 인해 설비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機料品의 도입과 1950년대 중반이 되면 거의 모든 機料品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다는 상황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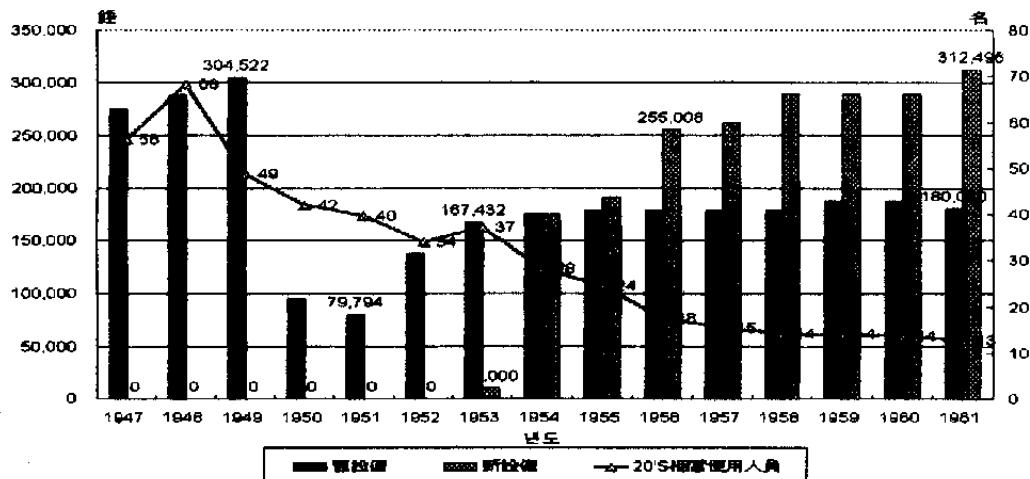
#### 4) 방직설비의 변동과 노동생산성과의 관계

설비구성의 변화와 방직부문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주는 20'S相當使用人員의 추이를 보면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S相當使用人員을 보면 新設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49년 68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20'S相當使用人員은 1954년 설비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신설비가 들어오기 시작한 1953년에서 1956년 사이에 20'S相當使用人員은 약 절반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新設備의 증가가 둔화되면서 20'S相當使用人員의 감소폭이 줄어들었지만 1961년에 이르면 13명 정도로 까지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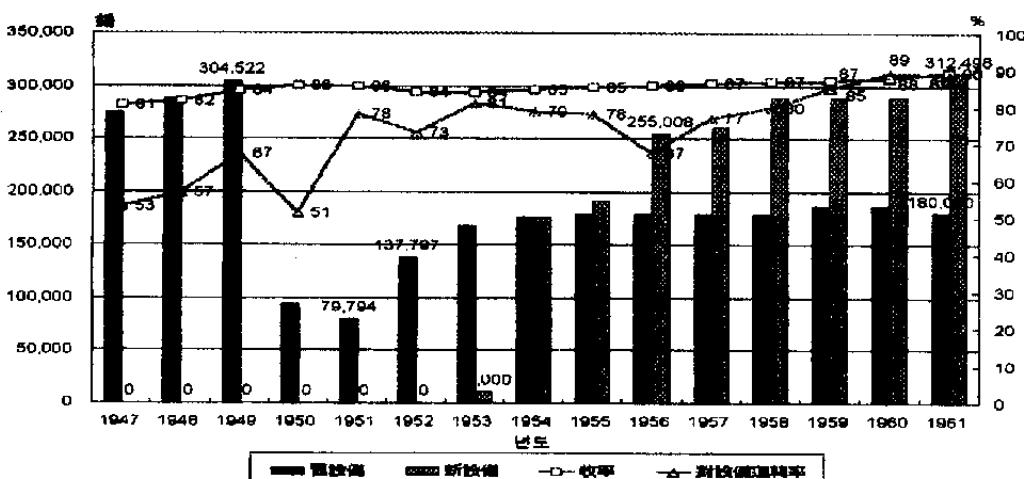
따라서 설비의 현대화가 당시의 면방직공업의 노동생산성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設備構成과 20'S権當使用人員 變化推移

### 5) 방적설비의 변동과 설비운전율·수율과의 관계

생산과 조업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對設備運轉率과 收率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設備構成과 對設備運轉率·收率 變化推移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설비운전율은 한국전쟁기인 1951년과 복구가 한창 진행중이던 1953년에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1956년에 급감하였다. 이것은 당시 면방직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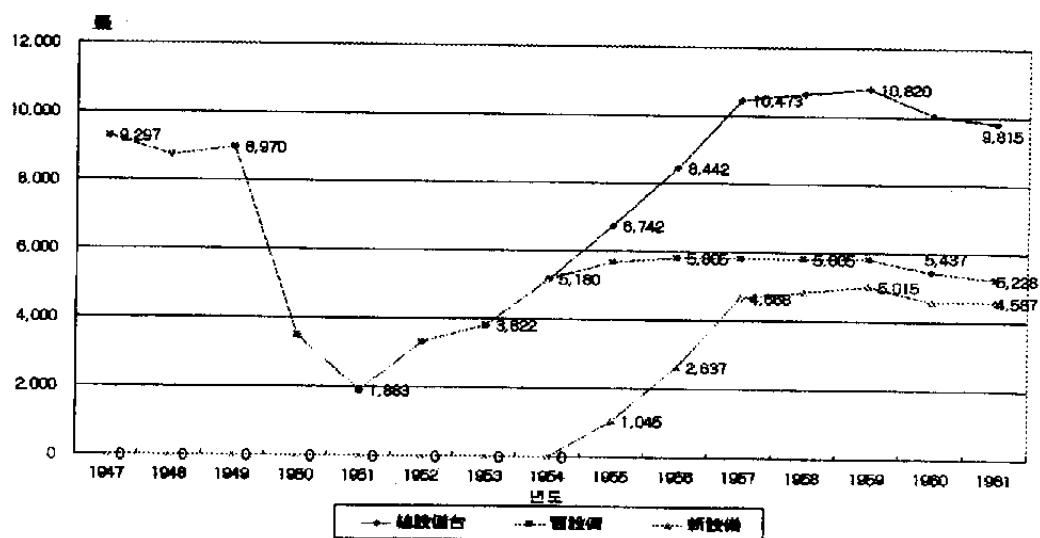
의 불황으로 인해 소규모공장들이 폐업을 하거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설비들의 移設過程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1956년에 67%정도로 하락했던 對設備運轉率은 1961년에는 약 90%정도로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중설을 위한 설비의 도입이 중지되고 노후설비의 대체목적으로만 설비의 도입이 한정되면서 설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노후설비의 폐기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설비구성의 변동과 대설비운전율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원료사용의 효율성을 나타내 주는 收率은 1947년 81%를 기록하고 있다가 차츰 상승하여 1961년에는 약 90%까지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수율이 설비의 구성이나 증감과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2. 직포부문

직포설비 중에서 舊設備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약 60% 정도가 감소하였는데 이후 지속적인 再生을 통하여 1950년대 중반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1950년대 말부터 改替되는 과정을 밟았다.

한편 新設備는 정부보유자금과 원조자금으로 지속적인 중설이 있었는데 직포설비의 변화추이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織布設備의 變化推移

<그림 6>과 같이 직포부문에서는 한국전쟁 이전에 약 9,000추 내외의 舊設備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약 2,000추 정도의 舊織機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舊設備는 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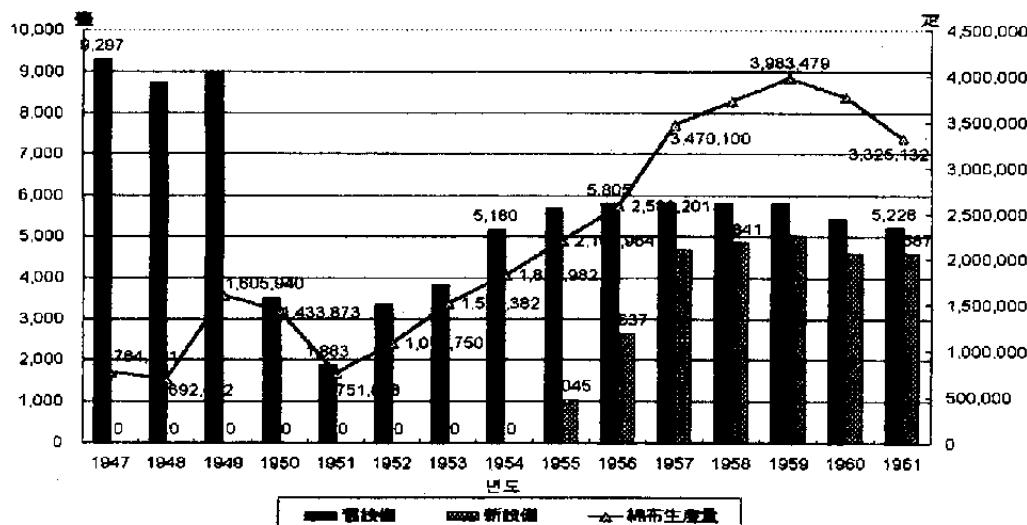
년까지 지속적인 재생과정을 거치면서 약 6,000추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1960년에는 노후설비의 대체관계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61년에도 신규설비보다 많은 5,000추의 舊設備를 보유하고 있었다.

新設備는 1954년부터 1957년까지 급격한 증가를 보이다가 1958년부터는 소량의 증가가 계속되어 1961년에는 총 9,800추의 織機를 보유하였다.

織機의 이러한 변화가 직포부문에서 縢布生產量, 廣木1時間1臺量, 廣木1正當使用人員, 對設備運轉率과 收率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 1) 직포설비의 변동과 면포생산량과의 관계

설비의 변화에 따른 면포생산량의 변화추이는 아래의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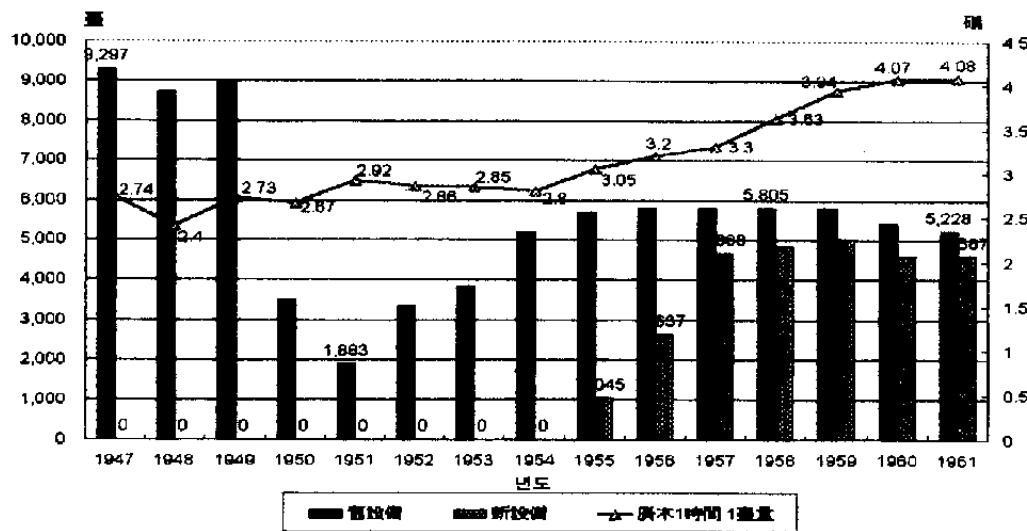
<그림 7> 設備構成과 縢布生產量 變化推移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포생산량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1951년에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가 罷災設備의 재생으로 인해 195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新設備의 도입이 본격화되는 1955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면포생산량은 1950년대 말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면서 운전율이 감소하였고, 노후설비들이 개체되는 1959년부터는 면포생산량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면포의 생산량도 신규설비의 증가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2) 직포설비의 변동과 설비생산성과의 관계

설비자체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廣木1時間1臺量의 변화추이는 아래의 <그림 8>과 같다.



<그림 8> 設備構成과 廣木1時間1臺量 變化推移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廣木1時間1臺量은 한국전쟁기간 중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新設備가 들어오는 1955년이 되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의 직기도입이 완결된 1957년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4.08碼까지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新設備의 설비효율이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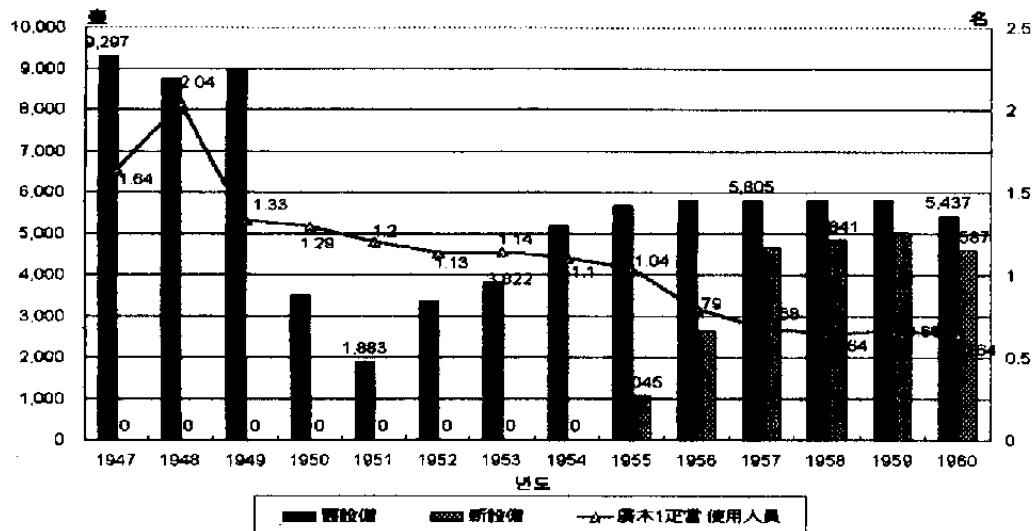
따라서 신규설비와 廣木1時間1臺量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 3) 직포설비의 변동과 노동생산성과의 관계

설비구성에 따른 廣木1疋當使用人員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9>와 같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포부문의 노동생산성으로 볼 수 있는 廣木1疋當使用人員은 1948년에 약 2명까지 이르렀다가 1949년에 1.33명으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1955년 이후 新設備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1명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1961년에는 0.64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新設備로 인해 廣木1疋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노동력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설비구성과 노동생산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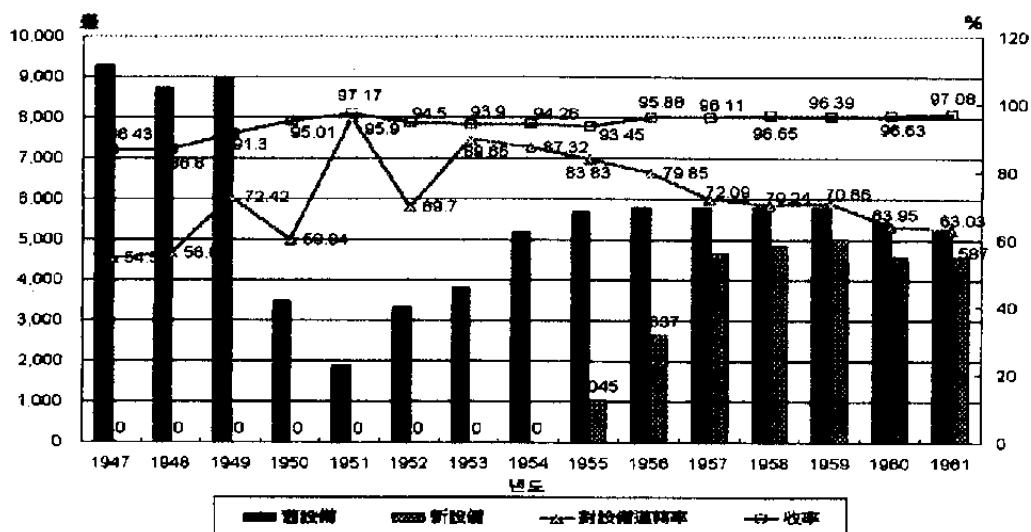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新設備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광목 1필당 사용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설비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비구성 뿐만 아니라 기술수준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다.



〈그림 9〉 設備構成과 廣木1疋當 使用人員推移

#### 4) 직포설비의 변동과 설비운전율·수율과의 관계

설비구성과 對設備運轉率·收率의 변화추이는 아래의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設備構成과 對設備運轉率·收率 變化推移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설비운전율은 한국전쟁기간에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았던 공장들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가 전후 점차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1950년대 중반이 되면 면방직업계에 과잉공급현상이 나타나면서 운전율이 감소하였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비구성과 대설비운전율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수율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95%대에서 설비의 변동과는 거의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료사용의 효율성은 설비와는 큰 연관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IV. 맷 음 말

해방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해방 이후 1960년대 이전까지 다수 존재했던 귀속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귀속재산 중에서 귀속면방직공장들의 중요 설비인 紡機와 織機를 통하여 이 재산들의 변동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먼저 귀속설비의 변동과정을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시기는 해방 이후 미군정기에 이르는 시기의 변동이다. 이 시기는 미군정에 의해 소규모의 불하가 이루어지고 관리인이 선정되는 상황속에서 귀속설비의 정비와 설치가 계속되었던 시기이다. 즉 설비측면에서는 해방 이전에 설치되었던 설비를 정비하고 미설치 설비들을 설치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해방 직후의 혼란속에서 일부 설비의 피해도 있었다.

둘째 시기는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기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전반부인 한국전쟁이전 까지는 지속적인 정비와 미설치 설비의 설치로 인해 해방 이전의 상태로까지 회복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체설비의 약 70%에 가까운 설비들이 파괴되어 귀속설비의 '원형'은 여기에서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시기는 한국전쟁 이후 1961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외국으로부터 신규설비들이 도입되었던 시기이다. 이 설비들의 도입으로 인해 면방직업계는 492,576주의 방기와 815대의 직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실은 1961년에도 재생과정을 거치거나 한국전쟁의 피해를 모면한 귀속설비가 전체 방기의 37%, 전체 직기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방직설비의 변동과정속에서 新·舊設備의 변동에 따라 生產量, 單位當 生產量, 單位當 使用人員, 運轉率과 收率 등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를 紡績部門과 織布部門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먼저 방직부문에서는 해방 직후에 원료나 전력, 그리고 사회적 혼란으로 말미암아 극히 생산량이 저조했지만 1951년부터 1953년까지 구설비의 정비과정에서는 생산량의 증가가 나타났다. 1953년 이후에는 신설비의 도입과 더불어 급격한 생산량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설비

의 생산효율면에서는 신설비가 도입되었던 1953년부터 1955년 사이에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노동생산성측면에서도 역시 1953년부터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 설비의 운전율이나 원료사용의 효율성측면에서는 신·구설비의 변동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포부문에서는 한국전쟁이후 구설비의 정비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신설비가 도입되었던 1955년부터 상승폭이 더욱 증가하였다. 하지만 1959년을 기점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노후 구설비의 개체가 이루어졌다. 설비의 효율성면에서는 구설비의 정비과정에서는 변동이 없다가 신설비의 도입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노동생산성면에서도 구설비의 재생과정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신설비 도입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율이나 원료사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국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면서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비구성의 변동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민지하에서 형성된 귀속재산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커던 면방직설비들을 중심으로 이 설비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변동되었는가를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의 연구들과는 다른 몇 가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로는 귀속설비들이 한국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파손됨으로써 단절되었다는 주장은 오류라는 것이다. 舊設備는 여러 가지 기술향상과 부속품의 자체조달로 인해 1961년까지도 전체 방기의 37%, 전체 직기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설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설비의 성격자체는 한국전쟁의 극심한 피해로 인해 크게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변질로 인해 많은 구설비, 즉 귀속재산으로 불하받았던 설비들이 존재했지만 귀속설비로의 성격보다는 한국 면방직업계의 노력에 의해서 복구된 것으로 그 성격에는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는 원조와의 관련속에서 미국식의 설비들로 인해 면방직업계의 설비자체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주장도 오류였다. 1953년부터 들여온 설비들은 미국설비만이 아니었으며, 절반에 가까운 귀속설비들이 여전히 존재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일교류가 재개되면 일본식의 설비체계로 상당부분 복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전까지 귀속재산에 대한 논의에서 소위 '식민지조선의 공업화'를 강조하거나 '피불하자들의 대자본가로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제기된 식민지시대 경제적 유산의 '연속론'적인 주장이나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면서 제기된 '단절론'적인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구도로는 실제로 존재하면서도 그 질적인 내용이 전환되었던 상황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식민지시대 경제유산의 '質的轉換'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파악할 것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설비측면으로 연구가 한정됨으로써 식민지시대의 유산에 대한 일면적인 해석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적자원'부분은 지속적인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1. 경성방직주식회사, 「경성방직 50년」, 1969.
2. 경영사학회 편, 「성곡 김성곤 연구」, 1988.
3. 공제옥,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1993.
4. 권태억, 「한국근대면업사 연구」, 일조각, 1989.
5.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푸른산, 1990.
6. 대한방직협회, 「방협 20년사」, 1967.
7. 대한방직협회, 「방협 30년사」, 1977.
8. \_\_\_\_\_, 「방협 40년사」, 1987.
9. \_\_\_\_\_, 「방협창립십주년기념지」, 1957.
10. \_\_\_\_\_, 「섬유년보」, 각 년도.
11. 동일방직주식회사, 「동일방직사사: 1955~1981」, 1982.
12. 이대근, 「정부수립후 귀속사업체의 실태와 그 처리과정」, 안병직 외, 「근대조선공업화의 연구」, 일조각, 1993.
13. \_\_\_\_\_, 「해방후 귀속사업체의 실태와 그 처리과정」, 안병직 외,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비봉출판사, 1990.
14. 재무부, 「재정금융의 회고」-전국십년업적, 1958.
15. 전방주식회사, 「전방 30년」, 1984.
16.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한국산업경제 10년사」, 1955.
17. \_\_\_\_\_, 「한국의 산업」, 1962.
18. 韓國生產性本部 產業經濟研究所, 「韓國의 工業」, 韓國生產性本部, 1971.
19. 韓國纖維產業聯合會, 「纖維年鑑」, 각 년도.
20. 한국은행 조사부, 「경제년감」, 각 년도.
21. \_\_\_\_\_, 「경제통계연보」, 각년판.
22. 한국일보사, 「제계회고」 1~10, 1981.
23. 황명수, 「성곡과 금성방직」, 「경영사학」 제 2집, 경영사학회, 1987.

24. 황명수, 「한국기업의 발달」(1910~1945), 「논문집」14호, 단국대학교, 1980.
25. \_\_\_\_\_, 「기업가사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서울, 1976.
26. 米川伸一, 「紡績業の比較經營史研究: イギリス・インド・アメリカ・日本」, 東京:有斐閣, 1994.
27.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巍南堂, 1979.
28. 神谷不二 編, 「朝鮮問題戦後資料」, I, II,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76.
29. 鈴木義嗣, 「50年代 韓國經濟의 成長과 工業化」, 梶村秀樹 외(우대형 역), 「한국경제의 구조」, 학민사, 1985.
30. 中村哲 編, 「東アジア資本主義の形成」, 東京:青木書店, 1994.
31. 河合和男・尹明憲, 「植民地期の朝鮮工業」, 東京:未來社, 1991.
32. 花房政夫, 「韓國綿工業の發展過程」, 山田三郎 編, 「韓國工業化の課題」, 1971.

## A Study on the Change of Vested Property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Seo, Moon-Seok\*

###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vested property changed in the processes of transferring of state property to private ownership and receiving economic assistance after liberation through the empirical inquiry.

After studying, I gained a few of results cotton textile enterprises not entirely lost their original form.

The Korean War had destroyed 70~80% of all facilities. So, it was impossible to retain their original shape during the war. But in the middle of 1950s, localization of cotton textile machinery was accomplished, and reproduction process of destroyed facilities was in full swing. That is, facilities destroyed in Korean War had been well operated through remaking by almost enterprises except several enterprises which closed the shop.

Second, from 1953 when started restoration of war damages, new cotton textile material system imported, and new equipments replaced as many as old one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From this time, a half of equipments were replaced with new equipments. That is to say, all the equipments and system of former times is not replaced new ones.

Thus I insist on new approach that economic assets under the Japanese rule is changed in character, not disappeared or maintained.

Key-Words : vested property, liberation

\* Lecturer of Dankook University, Ph. D.

# 成功的인 年俸制 導入과 運營方案\*

A Study on Introducing Successful  
Annual Salary System and Management Device

## 金 實 鑄\*\*

###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年俸制 導入 및 運營方案 |
| II. 年俸制 導入背景 및 内容 | IV. 맷는말            |

### I.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 각 기업에서 연봉제 도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연봉제의 도입은 임금 체계의 대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축에서 성과축」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부르짖는 지금 연봉제 도입이 인사·임금제도 개혁의 유력한 방책의 하나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듯 임금 문제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는 수익성 둔화로 인건비 억제 필요, 노동시장의 과잉인력, 산업계 전체의 과잉고용, 임금수준과 직무수행능력의 불균형 등을 들 수 있다.

연봉제 도입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임금의 능력주의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기 승급을 베이스로 하는 연공적 임금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능력화를 도모하는데 있어 제1의 해결 방안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공서열에 대해 능력주의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연령이나 근속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능·직무·업적을 중심으로 처우를 결정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임금에 대해서 말하자면 “속인(屬人)적 요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속직(屬職)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에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조기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 本 研究는 1998年度 喻圓大學校 學術研究費 的 支援을 받아 이루어졌음.

\*\* 喻圓大學校 經商大學 經營學科 教授, iohnk@mail.kyungwon.ac.kr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현행 임금제도에서 연봉제로 전환함에 있어 성공적인 연봉제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이론적인 틀과 운영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측면에서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해 볼으로서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年俸制 導入背景 및 内容

### 1. 年俸制의 導入背景

각 기업에서 연봉제 도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새로운 세기를 맞을 즈음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연봉제 도입을 끝마칠 것 같은 기분조차 듦다.

그러나 연봉제를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다. 선불리 도입하면 오히려 혼란이 초래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각 기업에서 연봉제를 도입할 때는 이론과 방법에 관해 가능한 한 구체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sup>1)</sup>.

#### 1) 貨金을 둘러싼 狀況의 變化

임금문제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임금파괴」가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임금파괴는 「임금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는 의미에서 통상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원간 임금 차별이 바뀌는」 것도 포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한다. 왜 임금 파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 배경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4 가지 요인이 임금파괴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연봉제가 관심을 모으게 된 것도 사실은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첫째 수의확보가 어려워져 인건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임금 파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와 같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된 데에 있다. 그로 인해 수의의 확보가 예정대로 되지 않으며, 인건비 압력이 무겁게 어깨를 내리누르고 있어 조속히 연공적 임금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에서 구직자가 과잉 유입되고 있다. 임금 파괴의 제2의 배경은 일할 사람이 남아도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졸자의 신규 채용이 줄자 급작스레 초임금을 동결하게 된 것은 노동력의 수요가 임금에 영향을 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각 기업은 앞다투어 신졸(그해 대학을 졸업한)채용자, 중도채용자의 임금을 올리고 그것이 재직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결과가 되었다. 노동 수요가 남아들수록 임금수준은 오르기 어

1) 竹内裕, “年俸制の正しい導入の實務”, 中經出版, 1996에서 요약 발췌함.

쉽고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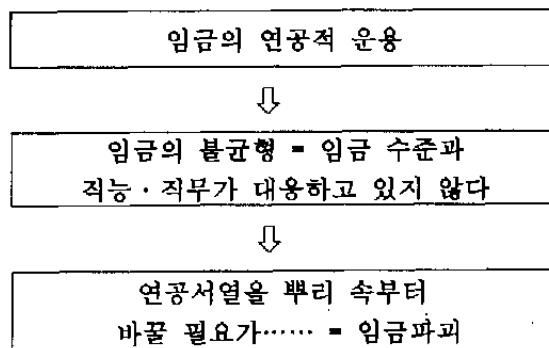
셋째 산업계 전체가 과잉고용 경향이다. 임금파괴의 제3배경은 산업계 전체적으로 인원과 임 경향이라는 것이다. 리스트럭처 또는 다운사이징으로 인원삭감 계획이 발표되는 것은 이제 보기 힘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두번째로 노동시장에서 구직자가 과잉유입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인원과 임이 임금을 오르게 하기보다도 떨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쉽다는 것은 확실하다.

넷째, 임금수준과 직능·직무의 불균형 확대이다. 임금파괴 제4의 배경은 본인의 임금수준과 직능(직무수행능력)·담당 직무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불균형이 보여지는, 간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사·임금제도의 연공적 윤용이 원인이다. 임금에 어울리는 일을 하고 있으면 임금은 오르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임금서열 수정이라는 의미에서 임금파괴가 진행된다. 임금파괴에는 임금수준 하향수정과 임금서열 수정의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자의 의미에서의 임금파괴가 진행되는 것은 틀림없다.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봉제 도입은 이 의미에서의 임금 파괴를 촉진하게 된다.

그러나, 임금수준 하향 수정이라는 의미에서의 임금파괴는 상당한 고임금 기업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한꺼번에 진행되는 일은 없다.



〈그림 1〉 임금제도의 변화

## 2) 現行 賃金制度의 問題點

각 기업이 안고 있는 현행 임금제도의 문제를 정리해 보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임금이 갖는 4가지 성격을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임금에는 노동의 대가, 노동의 가격, 소득 그리고 비용이라는 4가지 성격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각 기업은 〈표 2〉에서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임금이 갖는 4가지 성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노동의 대가이다. 다시 말하면 임금은 직능, 직무, 업무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 측면에서 보면 각 기업의 임금은 연령, 근속으로 인상해 온 부분이 많아 노동의 대가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직능, 직무, 업적 등을 중심으로 한 임금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노동의 가격이라는 성격은 임금 문제의 포인트는 직무가 임금의 결정 요소로 정의되는 사례가 대단히 적다는 점이다. 노동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직무(일)가 관계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불합리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면에 대해서도 개혁이 진행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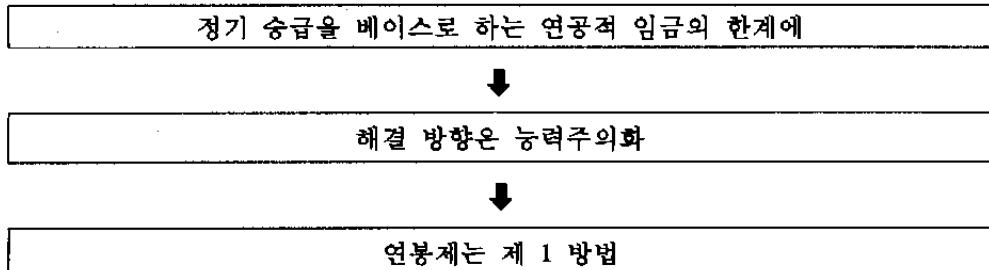
셋째, 임금을 소득면에서 본 경우의 문제점은 물가인상에 의해 대외적 명목임금은 급상승하고 있는데도 실질임금 인상으로 직결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도 물가인상에 의해 대외적 임금비용이 급상승하고 있는 점, 즉 달러 환산했을 경우의 인건비 생산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것이 커다란 문제이다. 이 측면에서 보면 연령이나 근속에 의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허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상 4가지 각도에서 검토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제 개혁을 자연시킬 수 없는 상태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임금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한다면 정기 승급을 베이스로 하는 적산(積算)방식에 의한 연공직 임금결정 시스템이 벽에 부딪친 격이다.

### 3) 能力主義 實現

임금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는 이상의 설명과 같다. 이대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데 문제 해결의 방향은 임금의 능력주의화를 도모하는 것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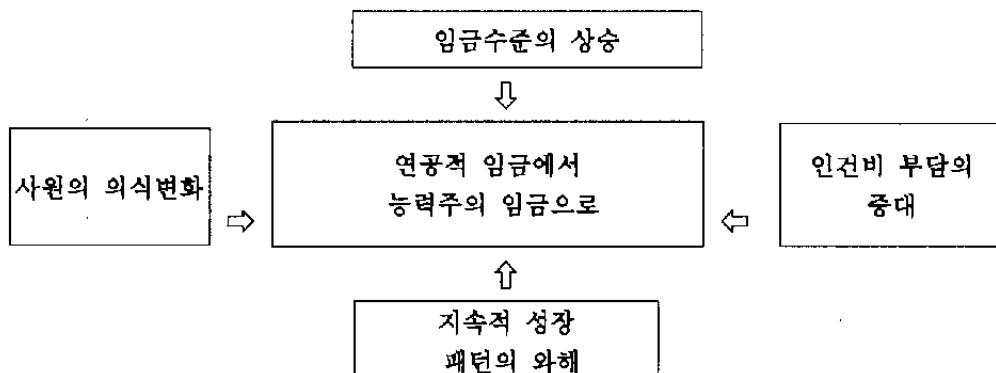


〈그림 2〉 능력주의와 연봉제

연공서열에 대해 능력주의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연령이나 근속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능·직무·업적을 중심으로 처우를 결정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임금에

대해서 말하자면 “속인(屬人)적 요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속직(屬職)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능급이니 직무급이니 해도 임금제도와 따로 떼어 넣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인사고과 제도나 직무평가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능력주의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직능급을 실행하는 데에는 인사고과 제도의 전 단계인 직능자격 제도에 자사에서 요구하는 직능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이것이 인사제도의 종합화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임금의 능력주의화가 왜 진행되는가를 다시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 왜 임금의 능력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는가

첫번째 이유는 임금수준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간수입 3,000만원을 넘는 상태가 되면 생계에 관해서는 걱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연령급을 지급하는 의미는 퇴색되어 버린다. 또, 매년 정기 승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도 없다. 직능, 직무, 업적에 의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임금의 능력주의가 진행되는 두번째 이유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연령이나 근속 등 연공적 요소에 의해 임금 총액이 자연히 부풀어오르는 구조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이 측면에서도 자연히 직능, 직무, 업적 등으로 임금을 결정하려고 하는 흐름이 강해진다.

세번째 임금에 대한 사원의 의식이 상당히 변화된 것이다. 연봉제로 전환하기에 앞서 실시한 어느 제조기업의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임금에 대한 사원들의 의식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sup>2)</sup>.

2) 수도권에 소재한 제조 기업으로 500명 규모의 회사임(설문 조사는 1997년 3월에 실시).

예를 들면 임금은 연령·근속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표 1, 2〉). 이러한 면에서도 능력주의화를 진행시켜도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임금의 능력주의화가 진행되는 네번째 이유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기업의 인건비 지불 능력에 여력이 없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금은 연령이나 근속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직능, 직무, 업적에 따라 정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

## 2. 年俸制의 内容

### 1) 年俸制 概念

연봉제란 사원 개개인의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그에 근거하여 임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연공서열에 의한 집단적인 임금제도에서 개인의 업적이나 능력이 임금에 반영된 개별적인 임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표 1〉 임금의 업적 및 능력에 따른 차별화에 대한 의식

□ 임금의 업적 및 능력에 차별화 의식							
평균	◎ 임금은 회사에서 일을 수행한 개인의 업적이나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3.6						
남녀별	남		여				
	3.7		3.0				
연령별	20대		30대		40대		
	3.3		3.9		4.0		
직급별	1급	2급	3급	4급	5급		
	4.5	3.9	4.0	3.9	3.2		
직군별	사무관리직	생산직		기술직	연구직		
	3.8	3.5		3.1	4.0		
학력별	고졸 미만		고졸	대졸	대학원 졸		
	3.4		3.4	4.2	3.8		
근속년수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3.0	3.1	3.7		3.9		
					10년 이상		
					4.2		

자료 : H사의 연봉제 도입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lt;표 2&gt;

능력평가에 따른 연봉제 도입에 관한 의견

□ 능력평가에 따른 연봉제					분석
평균	◎ 현행 임금제도를 능력평가를 기초로 하는 연봉제로 전환한다면				
	3.1				
남녀별	남		여		
	3.2		2.9		
연령별	20대		30대	40대	
	2.9		3.3	3.9	
직급별	1급	2급	3급	4급	5급
	4.2	3.5	3.3	3.1	2.9
직군별	사무관리직	생산직	기술직	연구직	
	3.2	3.0	3.0	3.8	
학력별	고졸미만	고졸	대졸	대학원졸	
	3.0	2.9	3.7	3.7	
근속년수별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3.1	2.7	3.1	3.5	3.2

자료 : H사의 연봉제 도입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 2) 月給制와 年俸制의 比較

월급제와 연봉제를 <표 3>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즉 월급제의 특징으로서는 첫째 생계비 보장의 성격이 강하다. 둘째 임금 결정에 있어서 연령이나 근속연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매년 승급으로 월급이 인상된다. 넷째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임금관리 제도이다. 또한 연봉제의 특징으로는 첫째 개인의 업적평가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실적주의 및 능력주의 임금관리가 가능하다. 셋째 경영에 대한 참여의식을 강화한다. 넷째 사원의 개별 임금관리가 가능하다. 다섯째 인건비 증가를 억제한다.

&lt;표 3&gt;

월급제와 연봉제 비교

월급제의 특징	연봉제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비 보장의 성격이 강함</li> <li>◇ 임금결정에 있어서 연령이나 근속연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li> <li>◇ 매년 승급등으로 월급이 인상</li> <li>◇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임금관리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업적평가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음</li> <li>◇ 실적주의 및 능력주의 임금관리가 가능</li> <li>◇ 경영에 대한 참여의식강화</li> <li>◇ 사원의 개별 임금관리 가능</li> <li>◇ 인건비 증가를 억제</li> </ul>

### 3) 美國型年俸制와 日本型年俸制

연봉제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미국형 완전연봉제, 일본형 부분연봉제 등 2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sup>3)</sup>.

연봉제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전에 연봉제의 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여기서 이 2가지 유형에 대해 그 특징, 장점, 단점 등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연봉제의 유형중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연봉제라 할 수 있는 것은 이 미국형 연봉제 뿐이다. 특히 미국기업의 연봉 적용대상은 시간외 수당 지급대상자인 생산직이나 단순사무직을 제외한 감독자 이상의 직급자와 전문가(기술계, 비기술계포함)이며, 바꿔 말하면 시간외 임금 비적용자(Exempt)이다<sup>4)</sup>.

〈표 4〉 미국기업의 연봉적용 대상자

구분	연봉적용 대상자	시간급 적용 대상자
직종	감독자이상, 관리자, 전문직	생산직, 단순 사무직 근로자
직무	- 이론과 원칙에 숙달되어야만 수행 할 수 있는 직무 (대출 사원이 배치되는 직 무)	- 읽고 쓰고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수행할 수 있는 직무 - 회사 업무의 처리 절차를 알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 선례, 전례를 알면 수행할 수 있 는 직무
임금형태	연봉	시간급, 주급, 월급
연방 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 Act)	시간외 수당 비적용자 (Exempt)	시간외 수당 적용 대상자 (Non exempt)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연봉제의 이론과 실제”, 1994.

이러한 미국의 연봉제는 실적에 대응한 색채가 강한 것이 특징이며 연봉 색채와 생계대응 색채가 약하다. 연봉 결정은 회사와 개인의 계약이라는 관행이 보통으로 매년 개인 실적에 근

3) 前掲書, 竹内裕, pp. 44~53.

4) タキザワカズオ, 年俸制賃金導入と 運用の實務, 經營書院, 1991 참조.

거한 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국형 연봉제는 「임금 관리를 연봉으로만 실시하는 순수한 연봉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프로야구 선수의 연봉은 바로 이 유형의 연봉제이다. 이른 바 프로의 세계에서는 비교적 자리잡기 쉽고 또 안정성 있는 연봉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여간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한 도입을 신중히 해야 하는 유형이다. 미국형 연봉제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미국형 연봉제의 장점과 단점

장 점	단 점
• 단순 명쾌하고 간단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제도로부터 이행이 상당히 위험하다.</li> <li>◦ 사원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어렵다.</li> <li>◦ 업적 부진 때는 연봉의 다운으로 직결된다.</li> </ul>

장점은 제도가 단순 명쾌하고 간단하다는 점이다. 제도는 복잡하기보다는 단순 명쾌한 쪽이 좋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구미형 연봉제는 합격이다.

그러나, 실무측면에서 보면 많은 단점이 있다.

첫째는 현행 제도로부터의 이행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다. 현행 기본급, 재수당, 그리고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전년도 각 개인의 수입에 인상을 가미함으로써 초년도 연봉액을 설정하면 능력주의 강화라는 점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임금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한편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연봉액을 이론적으로 설정하면 전체의 임금수준을 상당 수 올리지 않는 한 개별적인 임금의 대폭인상, 인하를 피할 수 없다. 이 유형의 연봉제를 도입할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두번째 단점은 사원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어려운 점이다. 완전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면 사원은 도입만으로도 비상태세를 갖춘다. 모든 인사제도는 사원의 이해·납득·지지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이 유형의 연봉제 도입에는 곤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관리직 외에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놀랄 만한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찬성을 얻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세번째 단점은 업적부진시 연봉 다운으로 직결되고 만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인건비를 상여금으로 조절한다는 수단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업적부진시 연봉이 내려가도 아무 문제도 없다. 오히려 자연스런 귀결이다.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어쨌든 임금은 연봉뿐이기 때문에 연봉 삭감은 사원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다.

또, 경영측도 상여금 인하에 비해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

제 본래의 운용이 저해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이 검토를 해보면 이 유형의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단기 고용계약이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장기 고용 관행으로 외부 노동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형 연봉제가 연봉만으로 임금 관리를 실시하는데 대해 일본형 연봉제는 월정임금 부분을 연봉화한 부분, 상여금, 그리고 약간의 수당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월급제의 내용을 연봉제에 반영한 것으로 월급제의 기본급이나 기준내 임금에 해당하는 기본 연봉과 상여금에 해당하는 업적 연봉을 합쳐 연봉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 연봉은 개인의 능력이나 역할, 책임에 대해 지급하는 연봉으로 장기 고용 관행에 따른 생계보장 색채가 강한 것이고 업적 연봉은 개인의 업적에 대한 공헌도, 업무 목표의 달성을 평가하여 지급되는 연봉으로 개인의 실적에 대응하는 색채가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미형 연봉제를 완전 연봉제라 한다면 일본형 연봉제는 바로 부분 연봉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형 연봉제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표 6〉 일본형 연봉제의 장점과 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제도로부터의 이행이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된다.</li> <li>◦ 사원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쉽다.</li> <li>◦ 업적부진시는 상여금으로 인건비의 조절이 가능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중간한 형태의 연봉제이다.</li> </ul>

첫번째 장점은 현행 제도로부터의 이행이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월정 임금 부분을 연봉화하기는 하지만 구미형 연봉제의 경우와 비교하면 이행이 용이한 셈이다. 이것은 실무상 커다란 장점이다. 임금제도를 설계할 때 이론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현실에 비추어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선불리 완전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전 사원의 임금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전형적인 예이다.

둘째는 사원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쉽다는 것이다. 물론 구미형 연봉제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의 이야기이며, 일본형 연봉제를 취하면 아무 문제없이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해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설명하는 기회를 여러번 갖는 것이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다.

세번째는 업적부진시 상여 부분으로 인건비의 조절이 가능한 것이다. 구미형 연봉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봉 그 자체가 일률적으로 다운되게 되면 지불 받는 측은 물론 지불하는 측도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다. 상여금이라는 완충 장치가 있는 것은 회사, 사원 쌍방에게 있어서 사실은 의외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형 연봉제의 단점인데, 이것은 정말 이지 어중간한 형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모양·형태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형 연봉제는 의견상은 좋아 보여도 내용상으로는 확실한 느낌이 없다. 이에 대해 일본형 연봉제는 보기는 좋지 않아도 내용적으로는 미국형 연봉제보다 안정성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미국형 연봉제는 일본형에 비해서 업적과 보다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연봉액 조정도 폭이 크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표 7〉 年俸制의 美·日 比較

구분	평가 시스템과 관행	연봉의 변경	인건비 억제 의도	배경
미국형	1. 개인의 목표 달성을 2. 평가에 합의·서명을 구한다.	1. 대폭 인상가능 2. 대폭 감봉가능	1. 경우에 따라 의도적 2. 비연봉자와는 별도 운영	1. 계약사회 2. 성과대가 임금 3. 개인업무 할당
일본형	1. 담당부분업적 2. 부서업적에의 공헌도 3. 추상적 평가항목	1. 최악의 경우 전년 연봉 2. 추계임금 인상을 참고	1. 억제의도 없음 2. 비연봉자의 평균 인건비에 준함	1. 종신고용 2. 연령기준생활급 3. 집단적 업무수행

資料：韓國勞動研究院·韓國經濟新聞社, “年俸制 어떻게 할것이가”, 1998.

구미형  
연봉제

→ 외형상은 좋지만 내용적으로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일본형  
연봉제

→ 외형상은 좋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안정성이 있다.

〈그림 4〉 연봉제의 안정성 비교

#### 4) 年俸制의 長點과 短點

연봉제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보아 왔는데, 다음으로 연봉제 전체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sup>6)</sup>.

「이제부터는 연봉제의 시대」라며 들뜨기 전에 다시금 연봉제의 장단점을 확실히 구별해

5) 韓國勞動研究院·韓國經濟新聞社, “年俸제 어떻게 할 것인가”, 1998.

6) 上揭書, pp. 55~62.

두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일본형 연봉제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진행하기로 한다. 연봉제 전체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lt;표 8&gt;

연봉제의 장점과 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능 · 직무와 업무의 상태에 따라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li> <li>◦ 의욕이 높은 역량 있는 인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li> <li>◦ 이유가 없는 임금 증액을 하지 않아도 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고과에 대한 납득성 · 신뢰성이 낮으면 전체적으로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li> <li>◦ 인사고과가 적정하더라도 일부 관리직의 사기 저하를 피할 수 없다.</li> <li>◦ 연봉제를 도입해도 베이스 다운의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li> </ul>

### (1) 장점

① 직능 · 직무와 업적에 따라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연봉제는 임금에서 연공색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연봉제로의 전환을 도모할 때 지금까지의 임금액을 백지화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은 통상 없다. 따라서 직능 · 직무와 업적의 상태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것은 앞으로 오를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다.

즉, 연봉제로 전환했다고 해도 제도 도입시에 개개인의 임금액의 대폭적 인상 · 인하를 하지 않는 한 임금의 연공색은 절제 남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적어도 이제부터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능 · 직무와 업적에 따라 엄밀히 결정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면 연봉제 도입 목표의 하나에 임금 절대액 관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에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과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정확히 말하면 연공에 의해 일체 임금은 올리지 않지만 직능 · 직무와 업적의 상태에 따라 지불할 것은 지불하는 것이 연봉제의 방식이다.

② 의욕과 역량이 있는 인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지금도 동일연령, 동일임금 또는 그것에 가까운 임금제도의 기업이 있다. 이 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미적지근한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연령, 동일임금은 능력과 의욕이 낮은 사람에게는 몹시 좋으나 능력과 의욕이 높은 사람에게는 보람감이 없는 임금 체계이다. 연봉제는 의욕이 높은 역량 있는 인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틀림없이 있다.

물론, 사람에게 의욕을 갖게 할 때는 임금은 물론이거니와 일 그 자체가 도전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연봉제와 관련하여 목표·과제 설정의 중요성이 반드시 언급되는 것은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③ 「교체(交替)방식」이므로 이유 없이 임금 총액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봉제에는 정기 승급도 없다면 베이스업도 반드시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직능·직무와 업적의 상태에 따라 임금 총액을 매년 교체(交替)하는 것이 본래의 연봉제이다.

따라서 이유 없는 임금 총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직능·직무와 업적의 상태에 따라 올릴 이유가 없을 때는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을 더욱 강하게 말하면 직능·직무와 업적에 비추어 내려 마땅한 이유가 있을 때는 연봉은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프로야구 선수의 연봉제와 비슷하게 된다.

그러나 연봉제의 목적은 인건비를 아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불할 것은 지불하고 그 다음에 개개의 임금 총액을 직능·직무와 업적의 상태에 따라 결정하는 데에 있다.

한편, 지불 받는 측에 있어서도 임금이 3,0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 되면 연공서열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기 보다 능력주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지지하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된다. 연봉제는 「적산방식」이 아니라 「교체(交替)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 (2) 단점

① 인사고과에 대한 납득성·신뢰성이 낮으면 전체적으로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

연봉제가 되면 연령·근속에 따라 승급되거나 현재 기본급을 정액과 정율로 개정하는 구조는 일절 배제되게 된다. 즉,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부분이 없어지고 모두 평가의 결과에 입각하여 결정되게 된다. 그만큼 인사고과가 담당하는 역할이 커진다. 그러나 만큼 인사고과에 대한 납득성·신뢰성이 어려한지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인사고과에 대한 납득성·신뢰성이 낮으면 연봉제가 성공할 수 없다. 오히려 전체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여 연봉제 도입은 실패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상태의 인사고과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연봉제의 설계와 동시·병행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프로야구 선수의 계약 갱신이 반드시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는 것은 연봉액 결정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단계 평가에 대해서 서로 양해 점에 달해 있지 못한 점이 최대 요인이다.

② 인사고과가 적정하더라도 관리직 사기가 양극으로 분화된다.

연봉제를 성공시키는 요건 중 하나에 인사고과의 적정성이 반드시 거론된다. 사실 그대로 이지만 문제는 인사고과가 정확히 실시되었다 해도 관리직 전원의 사기 양상을 도모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각 관리직간에는 상당한 능력차이, 업적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사고과

를 사실에 비추어 진정한 의미에서 엄격히 시행하면 평가가 높은 관리직과 낮은 관리직으로 나누는 것은 피해 갈 수 없다.

### ③ 베이스 다운의 실시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직능·직무와 업적에 따라 임금에 강약을 주고 싶다고 해서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좀처럼 생각대로 잘 안된다.

단적으로 말하면 직능·직무와 업적에 비추어 연봉액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실제로는 하향수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표현을 하면 연봉제는 「교체(交替)방식」인데도 불구하고 그와는 반대로 「적산방식」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임금 절대액의 하향수정은 그리 간단히 실시해도 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애써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고작 보류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연봉제 정신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사실에 비추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변함없이 「적산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직능·직무와 업적 상태에 따른 연봉 결정을 할 수 없다.

## III. 年俸制導入 및 運營方案

### 1. 年俸制導入

#### 1) 年俸의 構成

미국형 연봉과 일본형 연봉의 구성은 <표 9>과 같다. 즉 미국형 연봉은 기준내 연봉액에 상여금을 합한 것으로 하고, 일본형 연봉제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로 구성된다<sup>7)</sup>.

여기에서 우리 임금체계와 고용관행이 유사한 일본형 연봉제에 대한 설계 방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형 연봉제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을 구성되는데 기본연봉을 결정하는 방식을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섯가지가 있다. 즉 종합급방식, 기본급방식, 기본급+직책수당방식, 기본급+고정수당, 기본급+고정수당+고정상여금방식 등이 있다.

또한 업적 연봉의 결정 방식에는 <표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본연봉 기준」방식, 「평가 등급별 정액」방식, 「기본 연봉 × 지급 계수 + 정액」방식, 「전년도 실적 × 지급 계수」방식, 「평가점 × 단가」방식 등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누적 방식인지 아니면 비누적 방식인지 또는 경영 성과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7) 21세기북스 講, (オギハラ マサル著), 1996, 내용을 발췌 요약함

&lt;표 9&gt;

## 연봉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연봉액 방식 : 구미식연봉</li> <li>▷ 기준내연봉액+ 상여금 (업적연봉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봉결정시 고려사항 : 천년도 업무목표 달성을 고려</li> <li>◇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표에 따른 연봉결정 방법</li> <li>- 임금표없이 개인의 업적이나 기업의 지급 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봉결정 방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기본연봉+ 업적연봉 」 방식 (일본형 연봉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급제의 내용을 연봉제에 반영한것</li> <li>◇ 월급제의 기본급이나 기준내 임금에 해당하는 기본연봉과 상여금에 해당하는 업적연봉을 합쳐 연봉결정</li> <li>* 기본연봉 : 개인의 능력이나 역할, 책임에 대해 지급하는 연봉</li> <li>* 업적연봉 : 개인의 기업업적에 대한 공헌도, 업무 목표의 달성을 평가하여 지급되는 연봉</li> </ul>

&lt;표 10&gt;

## 기본연봉 결정방식

기본연봉 결정방식		
<input type="checkbox"/> 종합급방식	기본연봉	
	종합급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연령, 근속년수,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급액을 결정		
<input type="checkbox"/> 기본급방식	기본연봉	
	기본급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지급		
<input type="checkbox"/> 「기본급 + 직책수당」 방식	기본연봉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지급	
	개인의 책임과 역할에 따라 지급	
<input type="checkbox"/> 「기본급 + 고정수당」 방식	기본연봉	
	기본급	고정수당
	개인의 책임, 역할에 따라 지급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input type="checkbox"/> 「기본급 + 고정수당+고정상여금」 방식	기본연봉	
	기본급	고정수당 및 고정상여금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지급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및 상여금	

&lt;표 11&gt;

업적 연봉의 결정방식

업적 연봉의 결정 방식(I)							
방식	내용						
1. 기본연봉 기준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기본 연봉을 기준으로 업적 연봉을 결정하는 방법 (업적 연봉 = 개인의 기본 연봉 × 지급 계수)</li> <li>◇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 계수(상여금 년간 4개월분일때)               <table style="margin-left: 20px;"> <tr> <td>S(매우 탁월) : 6.4</td> <td>A(탁월) : 4.8</td> <td>B(보통) : 4.0</td> </tr> <tr> <td>C(약간 부족) : 3.2</td> <td>D(부족) : 2.4</td> <td></td> </tr> </table> </li> <li>▷ 기본연봉인 3,000만원인 사원이 업적평가 'A평가'를 받았을 경우 · 업적연봉 : <math>3,000\text{만원} \times 1/12 \times 4.8 = 1,200\text{만원}</math></li> </ul> </li> </ul>	S(매우 탁월) : 6.4	A(탁월) : 4.8	B(보통) : 4.0	C(약간 부족) : 3.2	D(부족) : 2.4	
S(매우 탁월) : 6.4	A(탁월) : 4.8	B(보통) : 4.0					
C(약간 부족) : 3.2	D(부족) : 2.4						
2. 평가등급별 정액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목표달성을 근거해 미리 일정액의 업적금을 정해 두는 것</li> <li>◇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 실적, 연봉제 이외의 사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액, 회사의 지급능력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li> </ul> </li> </ul> <table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S평가 : 900만원</td> <td>A평가 : 800만원</td> <td>B평가 : 700만원</td> </tr> <tr> <td>C평가 : 600만원</td> <td>D평가 : 500만원</td> <td></td> </tr> </table>	S평가 : 900만원	A평가 : 800만원	B평가 : 700만원	C평가 : 600만원	D평가 : 500만원	
S평가 : 900만원	A평가 : 800만원	B평가 : 700만원					
C평가 : 600만원	D평가 : 500만원						
3. 「기본연봉 × 지급계수 +정액」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분'과 '일률지급액'으로 업적연봉 결정하는 방법 (업적연봉 = 개인의 기본연봉 × 지급계수 + 정액지급액)</li> <li>◇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계수(상여금 년간 4개월분일때)               <table style="margin-left: 20px;"> <tr> <td>S(매우 탁월) : 6.4</td> <td>A(탁월) : 4.8</td> <td>B(보통) : 4.0</td> </tr> <tr> <td>C(약간부족) : 3.2</td> <td>D(부족) : 2.4</td> <td></td> </tr> </table> </li> <li>▷ 정액지급분 : 200만원            ※ 정액지급분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법</li> <li>- 직책에 따라 정하는 방법</li> </ul>           (과장급200만원, 차장급250만원, 부장급300만원)         </li> <li>▷ 기본연봉인 3,000만원인 사원이 업적평가 'A평가'를 받았을 경우 · 업적연봉 : <math>3,000\text{만원} \times 1/12 \times 4.8 + 200\text{만원} = 1,400\text{만원}</math></li> </ul> </li> </ul>	S(매우 탁월) : 6.4	A(탁월) : 4.8	B(보통) : 4.0	C(약간부족) : 3.2	D(부족) : 2.4	
S(매우 탁월) : 6.4	A(탁월) : 4.8	B(보통) : 4.0					
C(약간부족) : 3.2	D(부족) : 2.4						

업적연봉의 결정방식(II)							
방식	내용						
4. 「전년도실적 ×지급계수」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지급실적에 대해 인사평가에 근거한 지급계수를 곱하여 결정하는 방식</li> <li>◇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계수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S(매우 탁월) : 1.6</td> <td>A(탁월) : 1.3</td> </tr> <tr> <td>B(보통) : 1.0</td> <td>C(약간부족) : 0.8</td> </tr> <tr> <td>D(부족) : 0.6</td> <td></td> </tr> </table> </li> <li>▷ 전년도 업적연봉이 900만원인 사원이 업적평가 'A평가'를 받았을 경우  <math display="block">\text{업적연봉} = 900\text{만원} \times 1.3 = 1,170\text{만원}</math> </li> <li>* 지급계수를 직급별로 결정할 수도 있음</li> </ul> </li> </ul>	S(매우 탁월) : 1.6	A(탁월) : 1.3	B(보통) : 1.0	C(약간부족) : 0.8	D(부족) : 0.6	
S(매우 탁월) : 1.6	A(탁월) : 1.3						
B(보통) : 1.0	C(약간부족) : 0.8						
D(부족) : 0.6							
5. 「평가점× 단가」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평가를 득점방식으로하여 총득점에 단가를 곱해 업적연봉을 결정하는 방식</li> <li>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요소별 득점배분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업무목표 달성도 : 50점</td> <td>- 노력도 : 20점</td> </tr> <tr> <td>- 지도육성도 : 20점</td> <td>- 자기계발 : 10점</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계 100점</td> </tr> </table> </li> <li>▷ 단가 : 부장급 10만원, 차장급 8만원, 과장급 6만원</li> <li>▷ 연말에 업무목표달성도 45점, 노력도 17점, 지도육성도 18점, 자기계발 8점, 합계 88점을 받은 부장급의 경우  <math display="block">\text{업적연봉} : 88점 \times 10\text{만원} = 880\text{만원}</math> </li> </ul> </li> </ul>	- 업무목표 달성도 : 50점	- 노력도 : 20점	- 지도육성도 : 20점	- 자기계발 : 10점	계 100점	
- 업무목표 달성도 : 50점	- 노력도 : 20점						
- 지도육성도 : 20점	- 자기계발 : 10점						
계 100점							

## 2) 基本年俸과 業績年俸의 構成比率

기본 연봉과 업적 연봉의 구성 비율은 표준형과 자극형으로 <표 12>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lt;표 12&gt;

기본 연봉과 업적 연봉의 구성 비율

표준형	기본연봉 ( 70% ) + 업적연봉 ( 30% )
자극형	기본연봉 ( 50% ) + 업적연봉 ( 50% )

### 3) 手當

연봉제 도입의 목적 중 하나가 임금관리의 간소화이므로 연봉제 도입시 가능한 수당을 간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내용, 기업조직내의 역할, 직무의 능률이나 생산성과 관련된 수당은 모두 연봉속에 포함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수당 예를 들어 통근수당, 벽지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지역수당, 도시수당 등만을 지급한다.

### 4) 年俸制와 法定手當

노동관계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법정 수당은 연봉을 월봉으로 환산하여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간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할증임금(월)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1개월의 소정노동시간) × 1.5 × 추가 노동시간
- 연봉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씩 매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봉의 12분의 1’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됨
- 연봉을 16등분하여 16분의 1씩 매달 지급하고 나머지는 상여금 지급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봉의 16분의 1’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됨.

### 5) 年俸制의 設計 · 導入 節次

연봉제 설계의 실무로 들어가는데, 그 제1단계는 연봉제에 관한 기본 구상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 단계 1. 연봉제의 도입 목적을 명확히 한다
- 단계 2. 연봉제 유형을 결정한다
- 단계 3. 연봉제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 단계 4. 현행 임금의 문제점을 확인한다
- 단계 5. 주변 제제도의 정비 상황을 확인한다
- 단계 6. 연봉 적용자의 의식을 조사한다
- 단계 7. 연봉제의 기본 구상을 정리한다

연봉제 설계를 위한 기본 구상이 완료되면 현재 각 개인의 임금을 〈표 14〉와 같이 집계한다.

〈표 14〉에서 과장급이상의 각 개인의 임금을 집계한 H사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다. 집계한 임금을 〈표 15〉에서와 같이 직급별로 월평균 임금액을 산정하고부장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하여 차장과 과장의 월평균 임금을 지수화한다.

직급별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직급별 기본 연봉과 업적 연봉을 표준형으로 구분하

〈표 13〉

## 연봉제의 기본 구성 정리

항 목	내 용
도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접적으로는 철저한 능력·실적주의, 사원의 프로페셔널화, 인건비 절대액 관리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li> <li>그것을 통해서 조직풍토의 활성화와 인건비 생산성의 향상을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기업업적의 향상과 사원의 처우 개선에 이바지한다.</li> </ul>
연봉제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형 연봉제를 채택한다. 즉 연봉(기준연봉+업적연봉) + 일부수당을 기본으로 하는 임금체계를 채택한다.</li> <li>연봉은 연봉제의 취지에 따른 명쾌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연합 방식으로 한다.</li> </ul>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직층의 사원에게 적용한다. 라인관리직은 물론 스텝관리직, 스페셜리스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li> <li>시기를 봐서 모든 지도직층으로도 적용의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li> </ul>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관리제도와 업적고과제도의 연결을 피하는 것이 과제이다.</li> <li>연봉제의 도입에 앞서 임원의 연봉제에 대해 임원의 이해와 고파능력향상의 도모가 불가결하다.</li> </ul>

〈표 14〉

## 직급별 월정임금 자료 작성

No	성명	직급	직급명	기본급	제(諸)수당			상여금 (월평균)	합계
					○○ 수당	.....	△△ 수당		

〈표 15〉

## 직급별 월평균 임금(예)

직급	월평균임금합계	인원수	월평균임금	지 수
과장	44,818,800	15	2,987,920	78.0
차장	23,823,170	7	3,403,310	88.9
부장	19,135,050	5	3,827,010	100.0
합계	87,777,020	27	-	-

면 <표 16>과 같이 만들 수 있다.

<표 16> 직급별 기본 연봉과 업적 연봉 구성

직급명	월평균임금 합계	기본월봉 (70%)	업적월봉 (30%)	기본연봉 (기본월봉 × 12)	업적연봉 (업적월봉 × 12)	연봉합계
과장	2,987,920	2,091,500	896,420	25,098,000	10,757,040	35,855,040
차장	3,403,310	2,382,300	1,021,010	28,587,804	12,252,120	40,839,924
부장	3,827,010	2,678,900	1,148,110	32,146,800	13,777,320	45,924,120

기본월봉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 연봉표를 <표 17>과 <표 18>같이 작성한다.

<표 17> 직급별 기본 연봉설정 순서

① 각 직급의 기본월봉액을 B등급으로 한다.
② 각 직급 B등급 월봉액을 A, C로 전개한다.
74.0 ← 78.0 → 82.0    84.5 ← 89.0 → 93.5    95 ← 100.0 → 105
<hr/>
2,091,500원                  2,382,300원                  2,678,900원
• 각 직급별 기본월봉액에 ±5%한 금액을 A, C로 전개하여 이를 부장의 기본월봉으로 지수화한다.
③ 각 직급·등급별 월봉액을 12배하고, 각 연봉액을 구한다.
④ 얻어진 결과를 직급·등급별 연봉표에 정리한다.

<표 18> 기본연봉표

등급	과장		차장		부장	
	월봉	연봉	월봉	연봉	월봉	연봉
1년차(A)	2,196,100	26,353,200	2,501,400	30,016,000	2,812,840	33,754,080
2년차	2,143,800	25,725,600	2,441,850	29,302,200	2,745,870	32,950,440
3년차(B)	2,091,500	25,098,000	2,382,300	28,587,600	2,678,900	32,146,800
4년차	2,039,200	24,470,400	2,322,750	27,873,000	2,611,930	31,343,160
5년차(C)	1,986,900	23,842,800	2,263,200	27,158,400	2,544,960	30,539,520
격차(월)	52,300		59,550		66,970	

## 2. 年俸運營

### 1) 年俸制와 人事考課

기본 연봉의 승급은 태도 및 능력고과, 업적평가 등의 점수를 종합하여 반영하고 업적 연봉은 업적평가 결과만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표 19〉

연봉과 인사고과

연봉	인사고과	비고
기본연봉	태도 및 능력고과, 업적평가	
업적 연봉	업적평가	

기본연봉의 승급은 〈표 20〉과 같이 한다.

〈표 20〉

등급 업적별 승급비율

직급	S	A	B	C	D
과장	2.00	1.50	1.00	0.50	0.00
차장	.....	.....	.....	.....	.....
부장	.....	.....	.....	.....	.....

※ 예를 들어 과장 1년차에서 월봉 승급액이 52,300원이라면 인사고과 결과가 S이면 104,600원이고, D면 0이라는 것임.

업적연봉 인상을은 〈표 21〉과 같다.

업적연봉=기본연봉 × 인상을 × 업적연봉 지급계수

〈표 21〉

업적연봉계수 운영방안

평균임금인상률	S	A	B(표준)	C	D
15%이상	1.4	1.2	1	0.8	0.6
10~14%	1.5	1.3	1	0.7	0.5
5~9%	1.6	1.4	1	0.6	0.4
5%미만	1.7	1.5	1	0.5	0.3

※ 예를 들어 ○○년도에 연봉인상 재원이 15%의 경우 기본 연봉이 26,353,200원인 과장이 고과평점 S일때 업적연봉액은 21%(15%×1.4)증가한 31,887,372원이 된다.

### 3. 우리나라 年俸制 導入事例

#### 1) 年俸制 導入現況

우리나라 95년도 매출순위 100대 기업 중 연봉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2~3년 내에 연봉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과 검토 중인 기업을 포함하여 <표 22>에서 보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lt;표 22&gt;

연봉제 도입 현황

	실시중	실시할계획	검토중	계획없음	계
업체수(%)	17(17.7)	36(37.5)	7(7.3)	36(37.5)	96(100)
	60(62.5)			36(37.5)	96(100)

\* 자료 : 현대경영(한국능률협회발행 1997. 3.)

-100대기업 대상으로 조사

#### 2) 年俸制 導入事例

우리나라 기업들의 최근 도입한 연봉제 유형을 다음과 같이 보면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색은 미국방식도 일본방식도 아닌 독특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는데 대부분 어떤 검증된 원칙이 없이 현행 임금의 총액 개념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봉제는 현행 임금제도에서 전환하기는 용이하지만 향후 인건비의 추가 부담이라는 문제와 또는 동기부여 되지 않는 임금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sup>9)</sup>.

##### (1) H社

- 대상 : 1~5급 (기능직 및 현장직제외)
- 연봉 : (현행기본급+고정O/T)×12개월,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600%)
- 인사(개인)평가 등급별 연봉가감율

인사(개인)평가등급		S	A	B	C	D	E	F
가감율	'97년	-	+15%	+10%	-	-5%	-7.5%	-
	'98년 이후	+20%	+15%	+10%	-	-5%	-7.5%	-10%

8) 한국능률협회, “현대경영”, 1997. 3.

9) 한국능률협회, “연봉제사례집”, 1997. 7.

## (2) J社

- 대상 : 전간부  
 연봉 : 월급여 × 12, 상여금 800%,  
 고과등급별 점수 산출

126-	2%					
121-125	3%	2%				0 ~ -2%
116-120	4.5%	3.5%	2%			
111-115	6%	4.5%	3%	2%		
106-110	7%	5.5%	4%	3%	2%	
95-105	8%	6%	4%	3%	2%	
연봉지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연봉지수=개인별 기준연봉 ÷ 직급별 평균연봉

## (3) T社

- 연봉구성  
 -연봉총액=표준연봉+업적기급+연봉외수당+특별성과상여  
 -동일직위=동일능력=동일 표준연봉

- Base-up : 표준연봉 \* 인상을=인상된 표준연봉  
 인상된 표준연봉 \* 업적고과 등급별 개인지급률(5단계)=인상된 업적기급

## (4) A社

- 대상 :부장  
 연봉=기본급+정기상여(직급수당, 자격수당, 식대등은 제외)  
 인상을 : 인상기준율 \* 평가등급별 인상을  
 인상기준율 : 평균인상율+1.5%(2호봉 승급분)  
 평가등급별 인상을 및 인원비율

등급	S	A	B	C
인상을	1.4	1.2	0.9	0
인원비율	20%	40%	30%	10%

## (5) M社

- 연봉 = 기본급+능력급  
 -기본급 : 동일직급 동일지급  
 -능력급 :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  
 -Base-up : 연봉 \*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한 노사합의 인상을)  
 -능력급 : 인상된 기본급 \* 능력급 인상을

□ 능력급인상을(생산성 향상분을 감안하여 인상을 결정)

인상재원	S	A	B	C	D
A	14-16%	10-13%	7-9%	5-6%	3-4%
B	10-13%	7-9%	5-6%	3-4%	
C	7-9%	5-6%	3-4%		
D	5-6%	3-4%			
E	3-4%				

※ 인상을은 회사의 지불능력(성과)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함

#### 4. 成功的인 年俸制 導入을 위한 課題

##### 1) 任員의 能力主義의 철저한 人事 圖謀

관리직에 연봉제를 적용하는 등 능력주의의 강화를 도모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전에 임원의 능력주의가 철저하지 않으면 안된다. 관리직 연봉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제일 조건은 우선 임원의 능력주의화를 철저히 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아무리 능력주의니 연봉이니 해도 사장만은 예외라는 데에는 너무도 설득력이 없다. 사장이 자기 자신에게 엄격히 능력주의를 부과하는 것이 모든 전제조건이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가장 임금이 높은 사람은 사장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역할을 하고 성과를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남 얘기를 하기 전에 사장에게는 자신의 보수에 맞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성과를 올리고 있는가 하는 마음가짐이 항상 없어서는 안된다. 사장은 그러한 면에서도 진정으로 사원을 이끌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임원을 중역이라고도 하는데 능력주의 시대에는 임원은 바로 “중역=무거운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임원을 걸핏하면 “훌륭한 사람 지위,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중역에 투철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관리직에 연봉제가 도입되면 부장은 각자에게 기대되고 있는 역할을 어느 만큼 이루어냈는가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게 된다. 당연히 임원에게는 그 이상의 확실한 형태로 그러한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임원의 능력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적평가의 철저를 도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임원의 업적평가는 사장의 머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앞으로는 인사고과와 같이 명쾌한 규정에 입각하여 확실히 행할 필요가 있다.

##### 2) 人事考課의 納得性 · 信賴性을 向上

연봉제를 성공시키는 제2의 요소는 반복하여 강조해 온 인사고과의 납득성 · 신뢰성의 향상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인사고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가인데 아래에 정리한 바와 같아,

- 사실에 입각한 구체적인 고과 기준의 작성
- 고과자의 고과능력 수준 향상
- 합의 고과제의 도입
- 자기고과의 실시
- 피드백의 실시

인사고과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결국은 사실에 입각한 구체적인 고과 기준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고과자의 고과 능력이 우수한데 고과 기준이 애매하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기업은 연봉제 도입에 앞서 인사고과 제도의 개선, 경우에 따라서는 발본적 개혁에 임할 필요가 있다.

고과 기준에 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라도 보이는 형태로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사장이 관리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통상 적중한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납득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장의 머릿속 기준을 개방하여 눈에 보이는 규정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각 기업의 고과자 연수에 참가해 보면 임원이나 관리자의 고과 능력에 커다란 불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준이 상당히 구체적이어도 이렇게 불균형한데 기준이 추상적이라면 어떻겠는가 하고 걱정이 될 정도이다. 이러한 사실에서부터 추정하여 설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비되더라도 고과 능력 수준 향상을 위한 훈련은 불가피하다.

합의 고과란 복수, 통상은 2, 3명의 고과자가 고과 기준이라는 공통 척도에 따라 의견 교환을 하면서 고과를 행하는 방식을 가리키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1차 고과자와 2차 고과자의 의견이 다른 부분만 상의하는 스타일이 취해지고 있는데 합의 고과는 평가항목·요소의 모든 것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특색이다.

이 방식은 피고과자로부터의 지지가 암도적으로 높은 것이 장점이다. 단점은 기존의 고과 방식보다 번거로운 것이다. 그러나 연봉제를 도입할 때에는 합의고과제를 동시에 도입하는 편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사고과의 납득성·신뢰성을 높인 다음에 자기고과의 실시도 빼놓을 수 없다. 연봉제를 채택할 경우는 더욱 더 그렇다. 평가도 연봉액도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회사측의 평가와 자기고과의 결과를 맞대어 차분히 이야기하는 기회가 없으면 안된다. 경영측에서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편이 얼핏보면 편한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안이한 방법을 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커다란 것을 잊고 만다.

인사고과의 결과를 본인에게 알리는 것도 고과의 납득성·신뢰성을 높인 다음의 중요한 요건이다. 자기고과를 하면 틀림없이 상사의 평가결과와의 차이가 나온다. 그것이 걱정되어 피드백 실시를 망설이는 경향도 있지만 인사고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

극적으로 결과를 알리고 대화를 하는 편이 좋다.

「냄새나는 물건에 뚜껑을 덮는다」라는 식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제 해결은 안된다. 특히 연봉제의 경우는 납득이 될 때까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불가결하다.

### 3) 一定水準의 絶對額을 確保

임원의 능력주의적 인사의 철저, 인사고과의 납득성·신뢰성 향상에 이어지는 연봉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제3의 포인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절대액의 확보이다. 간단히 말하면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높지 않으면 연봉제는 안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봉제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임금형태이므로 일정액 이상의 수준에 달하지 않으면 본래적 운용을 할 수 없다.

젊은 사원, 중견 사원의 임금은 철저한 능력주의가 도모되어도 임금수준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는 「누적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영자는 사원을 향해 프로가 되라고 자주 말한다. 연봉제는 사원의 프로 의식을 자극하는 임금결정의 구조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투철한 프로를 바란다면 임금결정의 구조 뿐만 아니라 임금수준도 그 나름대로의 것을 준비해야 한다. 지불해야 할 것은 확실히 지불하고 직능·직무와 업적에 따라 강약을 줌으로써 사원의 프로 의식은 비로소 발휘된다.

### 4) 適合한 業務目標·課題를 設定

연봉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제4의 포인트는 적합한 업무목표·과제의 설정이다. 말을 바꾸면 업적에 관해 어떤 것에 몰두하고 어떠한 성과를 올리는가를 미리 분명히 하는 것이다. 연봉이라 해도 먼저 목표·과제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목표관리와 업적평가의 철저는 연봉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결코 목적은 아니다. 여하튼 업무의 목표·과제의 설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다음의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변혁의 시대에는 십년을 하루같이 꾸준한 모습으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

지속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지금, 결정된 것을 결정된 방법으로 충실히 해 낼 뿐인 관리직은 전혀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기업의 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몰두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경영방침·목표에 비추어 목표·과제를 적합하게 설정하는 것이 지금만큼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시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미리 무엇에 대해 평가하는가가 분명히 되어져 있어야 업적평가를 한다고 해도 무엇을 평가하는지가 미리 확실하지 않으면 초점이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평가가 되어 버리고 따라서 평가에 대한 납득을 얻기 어려워진다. 목표·과제를 설정하는 것은 동시에 무엇에 대해

여 평가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목표·과제에 도전함으로써 성장한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 $+ \alpha$ 의 목표·과제에 도전하고 마지막까지 해 냈으로써 성장을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매기 업무에 관해 설정한 목표·과제에 임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것은 인재육성 면에서 보더라도 의미있는 일이다.

#### IV. 맷는말

현행 우리 기업의 임금제도 대부분이 학력이나 근속, 연령 등에 기초한 연공서열에 의한 연공급이다. 이러한 임금제도는 회사가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적인 승급에 의해 임금이 인상되고 상여금은 고정급화 되어 전액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생계비를 훨씬 넘는 임금수준인 관리직의 임금도 업적과 관련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임금제도이다. 이러한 임금제도는 저능력, 저부가가치, 고임금, 고인건비 구조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능력주의를 강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연봉제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봉제를 도입하여 운영 할 경우 현행 임금제도에서 전환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제도의 합리적인 설계, 납득성있는 평가문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계된 연봉설계 등을 뽑을 수 있다.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의 수단이 됨은 물론 기업의 성과 창출에 연계된 임금 제도로서의 연봉제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기업에서 성공적인 연봉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기업에서 행해지고 있는 고용관행과 조직문화에 적합한 연봉제를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연봉제 시행에 필요한 제반 과제들을 실행하여 연봉제를 운영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강한 동기유발이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1. 韓國經營者總協會, 「年俸制의 理論과 實際」, 1994.
2. 韓國經營者總協會黃金研究센터, 「黃金研究(第2卷 第2號)」, 1994.
3. 韓國經營者總協會, 「黃金實務資料」, 1992.
4. 韓國經營者總協會, 「黃金實務資料」, 1995.

5. 韓國經營者總協會,『賃金實務資料』, 1997.
6. 韓國勞動研究院, 韓國經濟新聞社,『年俸制 어떻게 할 것인가』, 1998.
7. 韓國能率協會,『年俸制導入・運營實務매뉴얼』, 1996.
8. 韓國能率協會,『年俸制 事例集』, 1996.
9. 21세기북스 譯(オギハラ マサル 著),『年俸제매뉴얼』, 1996.
10. 竹内 裕,『年俸制の正しい導入の実務』, 中經出版, 1996.
11. 松田憲二,『社員の業績評価を正しく行なう手順』, 中經出版, 1996.
12. タキザワカズオ 著,『年俸制賃金導入と運用の実務』, 經營書院, 1991.
13. 日本能率協會・マネジメントセンタ,『年俸制で会社が変わる』, 1993.

## A Study on Introducing Successful Annual Salary System and Management Device

Kim, In-ho\*

### Abstract

A Study on Introducing Successful Annual Salary System & Management Device. Recently Korean company's pay system, seniority salary system based on years of employment, age and educational background has been rapidly transformed into annual salary system(yearly-based pay system) based on performance evaluation.

Therefore, pay system has changed a lot to meet the necessity of controlling labor force salary that is on the brink of decreasing productivity, increasing surplus manpower in labor market and discrepancies between the pay level and working competence.

Introducing the annual salary system is promoting salary-stabilization to solve mentioned problems. To have a successful settlement of this developed pay system, it should motivate employees and contribute reinforcing competition among organizations as a system related to firm's management performance.

To settle a successful annual salary system, first, reinforcing merit-based personnel administration is priority. Second, to improve acceptability and reliability of performance appraisal, set up clear rating standards have to be based on facts, evaluator's competence must improve, multiple rating system must be introduced and evaluators(rater) must conduct their own evaluation(self rating) and feed back. Third, without certain level of minimum wage, we may not have a stabilized annual salary system. Fourth, to have a proper working goals, we must make cer-

---

\* Professor of Kyungwon University

tain we are concentrating on performance.

The importance of setting goals could be explained by several reasons. First, without transforming we can not get very far in this cutting-edge era. Second, we have to make sure what we are evaluating in advance. If not, we will not have a focus that leads us to comprehend that evaluation. Third, we are able to develop ourselves through challenging high goals.

Key-words : annual salary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